

관세연구 12-05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 화물관리절차를 중심으로

2012.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장 근 호 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부교수

목 차

I. 서론	9
II. 자유무역지역 개황	12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지원	12
가.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12
나. 자유무역지역 지원내역	14
2. 경제자유구역 및 특허보세구역 등과의 비교	17
가.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17
나. 특허보세구역	19
3. 자유무역지역 이용 현황	26
가. 이용현황	26
나. 개별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성과	31
III.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제도	40
1. 주요 법적 절차	40
가.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입주	40
나. 조세감면 등의 지원	49
다. 화물 반입 및 반출	52
라. 화물재고관리 및 조사	58
2. 화물통제절차	60
가. 개요	60
나. 물품 반입신고	65
다. 물품 반출신고	71

라. 입주업체 관리체계.....	76
마. 화물관리체계.....	77
바. 내국물품 사용승인 및 공제.....	86
IV. 미국 자유무역지역 운영방식과의 비교분석.....	88
1. 미국 자유무역지역제도(FTZ) 개황.....	88
2.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및 운영방식.....	92
가. 자유무역지역 설립과 운영 개시.....	92
나. 화물반입과 역내작업절차.....	98
다. 물품양도절차.....	104
라. 관리감독과 장부기록의무.....	117
3. 우리나라 제도와와의 비교 분석.....	126
가.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적 차이점.....	126
나. 화물관리체계.....	132
다. 재고장부시스템.....	141
V. 요약 및 정책적 개선방안.....	148
1. 운영성과 및 향후 과제.....	148
가. 운영현황 및 문제점.....	148
나. FTA 확대와 자유무역지역.....	155
2.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방안.....	159
가. 화물관리의 중요성.....	159
나. 기타 고려사항.....	161
다.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	163
VI. 결론.....	173
참고문헌.....	179

〈부록〉 미국 자유무역지역제도	182
1. 자유무역지역 설립과 운영 개시절차	182
2.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관리감독 책임	190
3. 자유무역지역 화물신분(Zone status)	193
4. 화물반입절차	199
5. 운영자의 장부기록의무	213
6.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작업(operation)	224
7.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물품 양도	234
8. 오차보고의무(discrepancy report)	267
9.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 · 작업공정 · 양도 등의 규제	276

표 목 차

〈표 II -1〉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14
〈표 II -2〉 자유무역지역 입주지원 내역 사례(군산·김제).....	16
〈표 II -3〉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비교.....	18
〈표 II -4〉 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요건.....	22
〈표 II -5〉 관세법과 자유무역지역법 물품 흐름 비교.....	24
〈표 II -6〉 보세공장 수출과 제세 지원액.....	25
〈표 II -7〉 자유무역지역 유형과 지역 현황.....	26
〈표 II -8〉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정 현황.....	27
〈표 II -9〉 물류형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27
〈표 II -10〉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주요활동 지표.....	28
〈표 II -11〉 자유무역지역 유형과 지역 현황.....	29
〈표 II -12〉 외국인투자지역 주요 활동지표.....	30
〈표 II -13〉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동향.....	31
〈표 II -14〉 마산자유무역지역 고용동향.....	32
〈표 II -15〉 마산자유무역지역 국별 입주업체와 투자액.....	32
〈표 II -16〉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현황.....	32
〈표 II -17〉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업종.....	33
〈표 II -18〉 마산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33
〈표 II -19〉 마산 자유무역지역 무역동향.....	35
〈표 II -20〉 대불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36
〈표 II -21〉 군산자유무역지역 현황.....	37
〈표 II -22〉 군산자유무역지역 현황.....	37
〈표 II -23〉 울촌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38

〈표 II-24〉 동해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39
〈표 III-1〉 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요건	42
〈표 III-2〉 반출·입 신고유형 비교	62
〈표 III-3〉 내국물품 반입신고 사유	70
〈표 III-4〉 제도가공 후 국외반출 주요업무	73
〈표 III-5〉 제도가공 후 국내수입 주요업무	74
〈표 III-6〉 보수작업(재포장·라벨링) 후 국내수입 주요업무	75
〈표 III-7〉 법규준수도와 재고조사방식	85
〈표 IV-1〉 미국 자유무역지역 경제활동 내역	91
〈표 IV-2〉 미국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관리감독 역할 구분	93
〈표 IV-3〉 미국 재고장부 시스템의 주요 내용	143
〈표 IV-4〉 우리나라와 미국 자유무역제도 비교	145
〈표 V-1〉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해제 사례	151
〈표 V-2〉 기존 외국인투자업체 유치에 따른 피해 사례	153
〈표 V-3〉 자유무역지역 생산품 분쟁 사례	160
〈부표 1〉 반입신고목록에 보관되는 각종 양식 및 증빙서류	223

그림 목차

[그림 II-1] 마산자유무역지역 외화가득액의 추이.....	35
[그림 III-1]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전반적인 흐름.....	61
[그림 III-2]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입절차.....	65
[그림 III-3] 내국물품 반입절차.....	70
[그림 III-4] 입주업체 사이의 물품 이동.....	71
[그림 III-5]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출유형.....	72
[그림 III-6] 역외작업의 화물절차 도해.....	79
[그림 III-7] 자유무역지역 물품 보세운송절차 도해.....	82
[그림 III-8] 재고관리절차 도해.....	84
[그림 III-9] 내국 원재료 사용절차.....	87

I. 서론

-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지리적 특정 지역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와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고 마산과 이리에 자유무역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음
 - 이후 2004년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이 현재의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어 부산항 등 15개 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¹⁾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수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능에 따라 물류 중심과 산업단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물류 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은 주로 공항만 및 그 배후지역에 설치되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임해지역 부근에 설치되는데 근래에는 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 266개,²⁾ 인도 138개, 중국 15개, 영국 5개,³⁾ 대만 5개, 싱가포르 5개 등이 있음⁴⁾

- 자유무역지역은 비록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 외의 지역으로 관세법을 적용받지 않고 각종 내국세와 임대료를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받음

1) 200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여 제조업 생산에 국한된 수출자유지역을 생산, 교역, 물류, 유통, 서비스 등의 기능을 첨가한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2002년 국제물류업체와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세부과 유예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로운 물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자유지역' 제도를 시행한 바 있음

2)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Field Operations, Foreign Trade Zone Manual, 2011

3) 영국 국세청 Notice 334 Free Zone

4) 원종학 등(2008)

- 일반적 경제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와 같은 특혜는 엄격한 통제를 전제로 하며 만약 자유무역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관리가 허술할 경우 납세풍토의 문란은 물론 불법물품 유입으로 무역과 법질서 문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나아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국내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국내 산업기반에 위협이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이외 경제자유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 등 각종 특혜 제도가 다수 존재하는데 입지조건 등 각종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가 남발되면서 개별 제도가 추구하는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더욱이 FTA 확대 등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이들 특혜제도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지만 제도적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 및 사후 분석이 미비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나아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허가과 운영으로 인하여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은 물론 지역 지정해제, 부적합 업체 입주, 잦은 입주업체 퇴출 등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고 화물관리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남
- 자유무역지역은 조세감면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되는 제도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비용 대비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전술한대로 자유무역지역은 화물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기반을 약화할 수 있으므로 특혜에 상응한 책임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현실적이므로 입주업체는 물론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도 허가 및 입주와 관련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후 사후관리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유무역지역 운영현황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의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제도적 경쟁 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관리방안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현재와 같은 방만한 허가 및 운영을 통제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FTA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조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이 동북아 지역에서 교역확대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II. 자유무역지역 개황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지원

가. 자유무역지역의 설립⁵⁾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자유무역지역 필요성과 요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장⁶⁾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
 -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이외 공항·항만 및 배후지와 물류터미널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임

-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물품 반출입신고와 입주업체 사이의 물품이동 등에 대하여 관세법의 적용을 배제함
 -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반입 이전의 입출항 및 외국물품에는 관세법이 적용됨
 -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각종 공공·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등 입주·지원업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화물관리는 세관장이 실질적으로 통제함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역비중⁷⁾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과 도매업 이외 물품 하역·보관·운송·전시업체 등임⁸⁾
 - 이외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요건⁹⁾을 충족하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참조

6) 기획재정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7) 즉, 수출액이 매출액 대비 50% 이상인 업체가 대상임(도매업은 수출입비중)

8) 소요량이 일정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

9) 투자액이 1억원 이상으로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기술제공 내지는 공동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외투기업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주식의 일부 양도나 국내자본 증자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관없음

면 입주할 수 있음

- 또한 입주자격에 미달해도 자유무역지역 총 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입주업체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입주를 허가할 수 있음¹⁰⁾

□ 입주업체 사업을 지원하는 다음의 업종도 입주가 가능한데 다만 조세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은 적용되지 않음

- 금융보험, 통관, 세무, 회계, 해운중개 등의 선박 대여·관리, 항만 용역, 교육·훈련, 유류판매, 폐기물 처리, 정보처리, 음식점, 식품판매, 숙박, 목욕장, 세탁, 이·미용 이외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업종

□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산업단지, 공항(항만) 및 배후지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로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또한 물품 반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을 갖추어야 함

-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은 시설의 확충·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함

10) 시행규칙 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표 II-1〉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기업 유형
입주기업	수출이 주목적인 제조업·지식서비스업(수출액/매출액 50% 이상) ¹⁾
	제조업·지식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기업(투자비중: 대통령령 총족) ²⁾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무역비중이 50% 이상)
	물품하역·운송·보관·전시 등 물류업 및 기타 사업 ³⁾
	대통령령에 의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지원업종	금융·통관·음식·숙박·세무·유류판매·세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⁴⁾

주: 1) 입주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의 기간 중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① 의결권 주식 혹은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② 주식 혹은 지분을 소유하면서 임원 선임계약 또는 1년 이상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 혹은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나 외투기업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주식의 일부 양도나 감자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외국인투자자로 간주하며 입주허가 이후 신주발행 등으로 국내 자본이 증가하여 외국인 투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관없음

3) 국제운송수선, 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선박이나 항공기 수리·정비·조립업 등의 국제물류, 연료·식수·선식·기내식 등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임대업

4) 금융, 보험, 통관, 세무, 해운중개·대리, 선박대여·관리, 항만용역, 교육·훈련, 정보처리, 유류판매, 음식점, 식품판매, 숙박, 세탁, 이·미용, 폐기물 처리 이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업종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나. 자유무역지역 지원내역

1)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각종 조세와 임대료 감면 이외 통관절차 등 행정서비스에서 혜택이 부여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도 제공받을 수 있음

임대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공장을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임대 혹은 매각할 수 있는데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지원업체는 10년)까지 가능함

- 임대료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용지가액(국유지)의 1%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임대료 수준은 대체로 인접지역 임대료의 10~20% 수준임
 - 고도기술과 산업지원 서비스 외투기업이나 투자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무상지원이 가능함
- 둘째로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유예하고 이 밖에도 국내에서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함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입주 업체 간에 공급되는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됨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소득세와 함께 재산 관련 세금을 감면받음
 - 이외 입주업체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함¹¹⁾
-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감면을 제공함
- 기존 수출자유지역(마산·익산(이리) 외투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 100%·2년 50% 및 재산세·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최장 15년 50~100%
 - 이외 외투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과 물류형 자유무역지역(군산, 대불, 동해, 울춘, 인천공항 등) 외국인 투자액 1천만달러 이상 제조업과 500만달러 이상 물류업체: 법인세(소득세) 3년 100%·2년 50% 및 재산세·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최장 15년 50~100%
- 이 밖에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반입 신고하는 내국물품¹²⁾에 대해서도 주세법 등 각종 법에 의하여 수출된 물품으로 보거나 환특법에 따라 수출에 공여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함

11) 자유무역지역법 제4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자 이외 관리권자가 지역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관리요령에 포함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임

12) 내국물품은 수입통관 당시 이미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이므로 환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주된 대상이 됨

- 자유무역지역법에서 관세 등은 관세 이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함¹³⁾
-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공급하는 내국물품과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표 II-2〉 자유무역지역 입주지원 내역 사례(군산·김제)

	대상	지원내역
법인세 등	외투기업	법인세: 3년 100%, 2년 50%(고도기술·산업지원 서비스업종: 5년 100%, 2년 50%) 취득세·등록세·재산세 15년 100% 이내
	외투 제조업(투자액>1천만달러)	
	외투 물류업(투자액>5백만달러)	
관세·부가세 영세율	입주업체	면세(외국물품)/환급(반입신고 내국물품) 영세율: 반입신고 내국물품/입주업체 간 공급 외국물품·서비스
임대료	표준공장 ¹⁾	월 579원~725원/㎡(일정 기업: 10년 무상) ²⁾
	토지 ¹⁾	월 86원/㎡(일정 기업: 10년 무상) ³⁾
행정지원	입주업체	일괄처리: 입주허가~건축허가
지자체 지원	외투업체	투자보조금(투자액 5% 내), 고용보조금(5억원), 교육훈련보조금(5억원) 등
	국내기업	입지보조금(정상가 4% 내), 고용보조금(5억원), 교육훈련보조금(5억원) 등

주: 1) 기계 및 자동차 관련 업종은 50% 추가 감면
 2) 표준공장: ① 외투기업으로 신규 투자액 500만달러 이상 ② 외국인 투자지분이 30% 이상으로 신규 투자액 50만달러 이상 ③ 산업발전법 제5조 1항에 의한 첨단기술업종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1항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에 신규 외국인 투자액 25만달러 이상 ④ 기계 및 자동차 혹은 연관분야 업종에 신규 외국인 투자액 25만달러 이상(연장 가능)
 3) 토지: 투자액 상기 2배 이상일 때 무상(연장 가능)

자료: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현황(군산·김제), 2012

관세 등을 환급받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업체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업체에 공급한 물품으로 역내에서 사용 소비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이어야 함

13) 다만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은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세관이 아닌 물품 공급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을 해야 함

- 또한 관세 환급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기계·기구·설비·장비 및 부분품, 원재료·유탄유·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¹⁴⁾ 혹은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으로 한정됨¹⁵⁾
 - 신청자격은 입주업체가 아니라 입주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자에게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외국물품을 원상태 혹은 제조·보수 등의 과정을 거쳐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됨
- 다만 세관장 승인을 얻어 내국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그 수량이나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음(내국원료 가격공제)
- 이 밖에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업체가 반입물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업체 간의 물품이동에 대해서도 세관신고가 면제되며 물품장치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또한 건축허가, 공장설립, 조세감면, 외투신고 등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함
 - 재고조사 등 화물통제도 입주업체의 관리수준과 법규 준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함

2. 경제자유구역 및 특허보세구역 등과의 비교

가.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제도는 경제자유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및 특허보세구역이 있으며 도입 목적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유사함

14) 반면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 원재료는 수출물품에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품,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기계·기구의 작동 유지를 위해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은 제외), 포장용품 등임

15) 입주업체가 제조가공, 하역, 운송, 보고한, 전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창고, 사무실, 그밖에 시설물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말함

〈표 II-3〉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비교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법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정 목적	• 외자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지역개발	• 외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 외자유치
지정 권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도지사·중앙행정기관 장 지정요청	• 시도지사 - 시도지사 지정요청	•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관리 권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단형) • 국토교통부 장관(물류형)	• 시도지사	• 시도지사
지정 위치	• 산업단지·항만·공항·유통단지·화물터미널	• 국제공항만 주변지역·내륙지역 확대(2007)	• 산업단지 내
입지 형태	• 비관세지역, 집적지역	• 특별행정구역(2,000만~6,000만평)	• 임대단지 운영원칙
지정 지역	• 마산 익산(이리), 군산, 대불, 동해 울촌(산단형) • 부산, 광양, 인천, 인천공항(항만·공항형)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지역(2003년) • 황해(평택·당진), 대구경북(대구, 경산, 영천, 구미), 새만금·군산(2008년)	• 10개 지역 - 천안, 오창, 인주, 구미, 평동, 대불, 진사, 금의, 당동, 지사
입주 자격	• 외투기업·내국기업 • 제조업(수출주목적)·물류업·무역업·지원 서비스업 등	• 외투기업 • 제조업·물류업·주거·의료·교육·외국방송·금융 등	• 외투기업 • 제조업·물류업 등 • 외투자분 30% 이상(평동, 대불 10% 이상)
외투 기업 조세 감면	• 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 지방세 8~15년 • 감면조건 - 제조업 1,000만달러 이상 - 물류업 500만달러 이상	• 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 지방세 8~15년 • 감면조건 - 첨단제조·관광 1,000만달러 - 물류 500만달러	• 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 지방세 8~15년 • 감면조건 - 제조업 1,000만달러 - 물류업 500만달러
관세 부과	• 관세유보(수입물품·자본재)	• 자본재 3년 관세면제	• 자본재 3년 관세면제
임대료	• 부지가액 1%	• 부지가액 1%	• 부지가액 1%
임대료 감면	• 외투기업 100% 감면	• 관리청 결정	• 고도기술 100% • 일반제조 75%
자금 지원	•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분담 비율 결정 • 국비 최대 75%	• 분담 비율 미결정	• 수도권: 국비 40% • 비수도권: 국비 75%
행정 지원 업무	• 출장소 - 관세·조세, 출입국 관리 - 우편·통신, 검역·노무사무	• 시도지사직속 전담행정기구 - 경제자유구역청 - 국가 위임 및 시도 사무	• 산단공(7) 관리 • 지자체(3) 관리

자료: 관련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KIET)

- 다만 경제자유지역은 교육·의료·주거·금융 등 복합거주지역으로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시도지사 직속의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함¹⁶⁾
-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제조 및 물류를 중심으로 한 계획적 산업특화지역이며 외국인 투자지역은 개별 제조지역인데 최근에는 물류가 포함되는 경향이 있음

□ 개별 제도의 임대료 및 조세지원은 대개 유사함

-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투 제조업(물류 500만달러)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함
- 자본재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유보하는 데 비하여 다른 제도에서는 3년간 관세를 면제함¹⁷⁾

나. 특허보세구역

□ 보세구역은 통관과 화물검사 등을 위한 지정보세구역과 물품 보관·제조·전시·건설 등을 위한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모든 수입물품과 반송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¹⁸⁾을 경유하여 통관함으로써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관세채권을 확보하며 세관업무 효율화하는 데 보세구역의 기능이 있음
- 한편 특허보세구역¹⁹⁾은 통관업무보다는 보세상태를 통한 물품 제조나 전시 등을 허용함으로써 수출 및 산업지원기능을 수행함

□ 이 가운데 보세공장은 과세 보류 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을 말함

16) 경제자유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일부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중 지정되어 있음
 17) 한편 보세공장의 경우 '관세 등'의 정의가 환급특례법 제2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인데 자유무역지역은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됨
 18) 지정보세구역에는 공항만의 세관 구내창고인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음
 19) 특허보세구역에는 보세공장 이외 보세전시장, 건설장, 판매장이 있고 이외 복합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이 있을 수 있음

- 보세구역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통제 아래 보세 상태에서 보관·제조·운송단계를 거치는 물품으로 관세 등 제세의 채권 확보가 용이함
 -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국내에서 반입될 경우 수출품으로 간주함
 - 보세공장의 관리권자는 관세청장인 데 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단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물류단지)이 관리권자임
- 보세공장에서는 모든 작업이 원칙적으로 세관신고 및 허가사항이지만 자유무역지역작업은 신고가 필요한 물품 폐기를 제외하면 입주업체의 자율적 관리가 원칙임
- 한 예로 구역 내에서의 이동에서 보세공장은 반출입 신고가 필요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입주업체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함
 - 보세공장은 내수용, 수출용 혹은 겸용 및 기내식과 귀금속류 보세공장 등이 있음
- 보세공장 화물은 기업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출입 총량과 재고량을 실시간 관리하며 보세공장별로 화주, 물품, 법규 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함
- 재고위주의 실물관리로 원재료 사용신고 이후 화물관리번호가 해제되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연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함
 - 2010년 이후 자율관리형 보세공장제도²⁰⁾에서는 종합인증우수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휴일에는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일괄 신고할 수 있고 보세공장 이외 지역에서 제조하는 경우 반출입과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함
-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에서 화물관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화물장치기간이 보세공장은 일반적으로 6개월²¹⁾인 데 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정지역을 제외하면 장치기한이 없음
 - 둘째,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보세사를 고용하여 화물을 관리해야 함

20) 관세법 168조에 의하면 물품관리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세관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물품 반출입 신고나 검사에 있어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음

21) 보세창고는 1년 그리고 공항만의 경우 2개월이며 종합보세구역은 제한이 없음

- 셋째, 보세공장에서의 보수작업은 작업 승인신청과 완료보고가 필요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은 수입신고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음
 - 넷째,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은 반입신고가 필요하고 대신 반출신고의무가 없으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필요 시 반입신고를 하고 반출 시 반입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함
 - 다섯째, 자유무역지역과 달리 세관장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업종과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음²²⁾
 - 여섯째, 특별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출입물품, 생산물품과 내외국원료 혼합 그리고 역외작업 등에 대한 재고장부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를 포함하여 운영인을 감독해야함²³⁾
 - 일곱째, 보세공장은 화물 운송·보관·작업 등 전 단계에서 보세 상태가 유지되지만 자유무역지역은 운송을 제외하면 보세가 필요하지 않음
 - 이외 특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작업·원재료·제품 종류와 작업설비·능력 및 운영기간 등을 신고하며 장치물품, 작업 혹은 원재료 변경 시 승인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이 보세공장보다 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음
- 특히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자유무역지역보다는 보세공장이 미국의 자유무역지역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음
 - 한 예로 운영인(보세사)을 고용하고 보세상태의 화물을 작업함에 있어서 세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미국 자유무역지역도 마찬가지임
 - 다만 장치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필요 시에만 내국물품의 반입을 신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함
 - 그러나 종합보세구역의 경우 보세상태에서 물품을 제조·판매·보관·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장치기간이 없으며 다만 보수작업이나 역외작업에 대하여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미국 자유무역지역과 가장 유사함

22) 관세법 시행령 201조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세공장에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음

23)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인에게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음

〈표 II-4〉 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요건

구분	특허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	관세청장	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항만·배후지·물류터미널·물류단지: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관리: 관세청장)
예정지역	절차 없음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지정
화물장치기간	보세화물: 6월(6월 연장) 비축, 국제물류촉진물품: 비축기간 물류신속화보세구역: 2월(2월 연장)	원칙: 장치기간 없음 관세청장 지정 지역: 3월 화주 불분명, 부도·파산, 소재불명, 수취 거절 등: 6월
수입신고수리 물품 반출의무	물류신속화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수리물품: 15일 이내(위반 시 과태 료)	원칙: 수리 후 반출의무(15일) 없음 물류신속화 보세구역 지정 지역: 15일 이 내(위반 시 과태료)
체화처리	관세법 준용	원칙: 체화 없음 예외: 관세청장 지정 지역 및 화주불명 등 특이사유
보세사	1명 이상 채용(운영인=보세사)	채용의무 없음
보수작업 범위	보존·포장개선·라벨링·단순절 단·선별·분류·용기변경·단순조 립·유사작업(현상유지수준)	보존·선별·분류·용기변경·포장·상 표부착·단순조립·검품·수선(원산지허 위표 시·지재권침해행위 제외)
보수작업 절차	작업 전: 보수작업 승인신청 작업 후: 보수작업 완료보고	입주업체 자율작업: 보수작업 승인 및 완 료보고절차 생략(원산지표시시정작업 등 일부 예외)
내국물품 반입신고	장치전 반입신고의무 원칙: 1년 이상 장치불허	반입신고의무 없고 필요 시 반입신고
내국물품 반출신고	신고의무 없음	내국물품확인서·세금계산서 등 반입증 빙서류 제출/반출목록신고서 전자제출
출입자(차량) 통행증 부착의무	부착의무 없으나 출입 시 세관공무 원 지휘 준수	관리권자가 발급하는 출입증 소지·부착
‘관세 등’ (용어정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환특법 제2조)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어촌특별세, 교육세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 이외 우리나라 보세공장에서 세관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제품과세와 원료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우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으로 보지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내외국 물품을 혼합하여 제조된 물품은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²⁴⁾
 - 이러한 제품과세를 적용하려면 작업 성격상 내외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손모양이 확인되는 등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함²⁵⁾
 - 내외국물품의 품명·규격이 동일하고 손모양에 변동이 없는 동종 물품을 혼합하면 일괄신고가 허용됨

- 한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원료과세를 신청하면 사용신고 당시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원료과세)
 - 나아가 최근 2년간 수출물품의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성실도와 원자재 관리방법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의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원료·제품별 혹은 보세공장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원료과세가 가능함²⁶⁾
 - 원료과세를 신청하는 자는 외국원료의 규격과 생산지, 신청사유, 적용기간, 송품장 및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4) 관세법 188조

25) 관세법 시행령 204조 1~2항: 제품과세를 신청하려면 내외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양,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6) 관세법 189조 및 시행령 205조 3항

〈표 II -5〉 관세법과 자유무역지역법 물품 흐름 비교

구분	관세법	자유무역지역법
보세창고 특허	운영인의 신청→세관장 특허(법 제174조)	입주업체신청, 허가(법 제 11조)
외국물품 반입절차	적하목록제출→하선신고→반입신고(법 제157조)	좌동(법 제29조)
보수작업 등 신고 (분할, 합병, 라벨링 등)	세관승인 필요	세관신고 불요
장치기간	공항만 2월(법 제 158조)	좌동(법 제37조, 고시 제3-13조)
해체·절단작업	세관허가 필요(법 제 159조)	세관신고 불요
장치 폐기	세관승인 필요(법 제160조)	세관신고(법 제40조)
멸실, 도난·분실	세관신고(법 제155조)	좌동(법 제40조)
수입신고수리물품반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법 제157조의2)	좌동(법 70조 제3항)
역외 보수작업	세관허가(법 제187조)	세관신고(원자재 1년, 법 제 35조)
견품반출	세관허가(법 제161조)	일시반출허가(법 제33조)
수입신고절차 (입항전신고 포함)	수입신고→(검사)→수리→반출(법 제 241조)	좌동
수출물품 적재기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법 제 241조)	좌동(고시 제3-12조 제2항)
반출 시 세관검사	운영인에게 위임(자율관리보세구역)	
자율관리	자율관리 지정(법 제164조)	자율관리제도 없음
보세운송절차 (부두보세운송 포함)	반입신고→보세운송신고·수리→반출 (법 제213조)	좌동: 제조가공물품 운송기간 7일 (고시 제3-11조), 도착보고→반입신고
출입자 단속	보세구역 물품 취급자 및 출입자 단속(법 제162조)	출입증소지(법제52조, 제53조)
환급대상 내국물품 반입절차	반입→확인서발급신청(EDI)→(검사) →확인서발급 ※ 환급대상물품: 수출용원재료	좌동: 환급대상물품: 시설재, 원자재 등, 수입신고 제외대상에 한함(법 제29조 제 3항 제2호 가목 나목)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방지 대책	보세구역 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세관 신고 및 허가 ※ 반출확인인 운영인에게 위임	반출 시 정상적인 세관절차를 거쳤 는지를 확인, 재고조사
지역내에서 다른 창고 (구역)으로의 물품이동	세관에 반출신고(반출지)→반입신고 (반입지)	업체의 전체 재고관리시스템으로 관리
장치물품의 재고관리	세관장 재고조사(분기1회) ※ 자율관리는 년 1회	※ 세관장의 재고조사 년1회(고시 제4-3조)
환적화물의 관리	원칙적 반입신고 - 계류장 내 보세구역은 생략	반입신고 면제(적하목록 제출은 반 입신고로 본다) (고시3-1조 제5항)

- 미국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우리나라 보세공장과 마찬가지로 제품과세나 원료과세의 선택이 가능함
 - 그러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제품과세와 원료과세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제조물품에 포함된 내국원료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
 - 또한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간주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가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함
 - 그러나 보세구역의 경우 그 안에서 추가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 자유무역지역도 마찬가지임
 - 이처럼 국내 수입 시 과세방식은 보세공장이 자유무역지역보다 유리하며 이 부분이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각종 내국세 감면 혜택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음

- 2010년 당시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187개로 전체 수출기업의 0.26%에 불과하지만 수출액은 약 1,304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8.2%에 달함
 - 한편 수입액(사용신고액)은 427억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9.2%에 달함
 - 이에 비하면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 수는 17,946개로 전체 수출기업의 24.6%에 달함²⁷⁾
 - 보세공장은 대체로 반도체 · 조선 · 전자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이 활용하여 이들 업체의 비중이 약 74%에 이룸

〈표 II-6〉 보세공장 수출과 제세 지원액

(단위: 억달러,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수출액		1,938	2,538	2,846	3,254	3,714	4,220	3,637	4,624
보세 공장	업체 수	160	161	176	185	186	196	194	187
	수출액	423	599	701	862	1,001	1,089	1,025	1,304
	제세 지원액	24,798	30,849	34,302	37,270	44,689	56,833	60,385	67,338
	관세	4,978	6,107	7,029	7,560	10,140	13,178	14,505	15,928
	수출비중	21.9	23.6	24.7	26.5	27.0	25.8	28.2	28.2

자료: 김영춘 · 최해범(2011)

27) 김영춘 · 최해범(2011)

3. 자유무역지역 이용 현황

가. 이용현황

-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고용 및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0년 마산과 익산(이리)에 처음으로 수출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후 2000년에는 제조업 생산에 치우친 수출자유무역지역을 생산, 교역, 물류, 유통, 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였음
 - 인건비와 지가상승 등 국내적 요건 변화 이외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다변화로 국제물류가 강조되면서 2004년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였음²⁸⁾
 -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대만²⁹⁾ 카오슝 수출가공구, 멕시코 마킬라도라 혹은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제도로 이들 지역과 경쟁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등 산업단지형 7개와 인천항 등 물류 중심형 8개 총 15개 지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음

〈표 II-7〉 자유무역지역 유형과 지역 현황

	산업단지형	물류중심형(공항만)
지정지역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춘, 울산, 김제(7)	부산항(용당), 부산(감천), 부산항(부산·진해), 인천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포항, 평택·당진(6)
관리권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주: 1. 울산, 김제, 부산항(용당, 남항)은 미운영 2. 익산(이리)은 2010년 12월 지정 해제 3. 동해, 평택·당진, 울춘은 2011년 이후 운영 개시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28) 200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면서 제조업 생산에 국한된 수출자유지역을 생산, 교역, 물류, 유통, 서비스 등의 기능을 첨가한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였는데 2002년 도입된 '관세자유지역'과 통합하여 2004년 자유무역지역을 본격 시행함

29) 대만은 물류, 유통, 창고,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 물류기능 대폭 강화한 창고환적특별구(WTZ: Warehouse Transshipment Special Zone)를 도입한 바 있음(www.epza.gov.tw)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이전의 수출자유지역으로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하여 수출 증진,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용됨
 - 마산, 군산, 대불, 울촌(전남), 동해(강원), 울산, 김제 7개 지역이 산업단지형임³⁰⁾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관리함

〈표 II-8〉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정 현황

(단위: 천㎡)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울산	김제
지정일	1970.1	2000.10	2002.11	2005.12	2005.12	2008.12	2009.1
총면적	953	1,256	1,158	248	343	1,297	99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물류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은 이전의 관세자유지역으로 종합적이고 국제적인 물류·무역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항만과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지정됨
 - 즉, 역내에 반입된 물품을 자유롭게 장치, 분류, 포장, 상표부착, 전시 이외 단순한 가공·조립공정을 수행하고 최근에는 정보처리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복합적인 물류단지 기능을 수행함³¹⁾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6개가 물류중심형임
 -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은 지방해양항만청 및 공사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함

〈표 II-9〉 물류형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단위: 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2002.1.1	2002.1.1	2003.1.1	2008.12.8	2009.3.30	2005.4.6
면적	9,452	8,879	2,405	709	1,429	3,014
관리 기관	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지방해양항만청 컨테이너공단	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0) 익산(이리)은 2010년 12월 지정 해제됨

31)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물류: 하역, 장치, 환적, 분류, 보관, 운송 거래: 중계무역, 수출입, 전시, 판매 교류: 국제회의, 관광, 전시, 광고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분양률은 약 49%로 업무가 시작된 업체는 161개에 달함
 - 마산, 군산, 대불의 경우 분양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상대적으로 늦은 울춘, 동해, 울산, 김제는 분양률이 낮음
 - 다만 울춘과 동해는 지정일이 2005년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울산과 김제도 각각 2008년, 2009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조성 중인 단지로 나타남
 - 한편 업체수는 마산(100개)이 가장 많고 울춘과 동해는 각각 8개, 6개에 불과함

〈표 II -10〉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주요활동 지표

(단위: 천㎡, %, 개, 명, 억원, 백만달러)

	산업시설구역		업체 수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액
	면적	분양률	입주계약	가동			
울산 ¹⁾	577	-	-	-	-	-	-
동해	201	14.4	8	8	109	167	7.4
군산	1,082	99.4	29	18	1,249	2,807	240.6
김제 ¹⁾	787	-	-	-	-	-	-
대불	1,034	97.6	35	34	3,179	5,965	456.8
울춘	268	28.7	6	3	40	27	2.6
마산	704	100.0	100	98	7,384	47,712	3,353.2
합계	4,653	48.6	178	161	11,961	56,677	4,060.7

주: 1) 조성 중인 단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1 4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고용인원은 약 12,000명으로 대부분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는 마산(7,384명), 대불(3,179명)과 군산(1,249명)에 집중되고 울춘과 동해는 각각 40명, 109명에 불과하여 마산, 대불과 군산이 대부분을 차지함
 - 한편 이들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가액은 약 5.7조원이며 수출액은 40.6억달러로 수출비중은 약 75%를 상회함

〈표 II-11〉 자유무역지역 유형과 지역 현황

	지정 지역	입주업체 수
산업단지형(5)	마산	100
	동해	7
	군산	26
	대불	34
	울촌	3
물류중심형(8)	부산(용당)	3
	부산(감천)	3
	부산항(부산·진해)	37
	인천항	23
	평택·당진	10
	광양항	21
	인천공항	76
	포항항	4
합 계		350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 이외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 수는 177개로 인천공항(76개), 부산항(37개), 인천항(23개), 광양항(21개) 등임
 - 반면 부산과 포항항의 입주업체 수는 3~4개에 불과함

- 참고로 외국인투자지역 상황을 검토해보면 16개 지역의 평균 분양률은 83%로 자유무역지역보다 분양률이 높은 편임
 - 다만 입주업체 수는 239개로서 부산 지사, 광주 평동, 충남 천안, 전남 대불, 경북 구미, 경남 사천, 충북 오창, 경기 장안첨단 8개 이외 지역은 10개도 안됨

- 외국인투자지역에 고용된 인원은 약 19,500명을 상회하며 생산액 약 9.4조원 그리고 수출액은 30.9억달러에 달함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비하여 고용인원과 생산액이 각각 7,000명, 3.7조원 더 많은데 다만 수출액은 자유무역지역보다 10억달러 정도 적어서 상대적으로 내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즉, 생산액 대비 수출비중은 35% 이하 수준이며 1인당 생산액은 약 5억원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별 차이가 없음
 - 외국인투자지역은 관세유예의 혜택이 없고 수출입 비중 등에 대한 요건이 없으므로 화물규제가 적고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더 활발할 수 있음
- 2010년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법인세 감면은 135건으로 금액은 5,670억원에 달함
- 감면 대부분은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24.8%)와 외투기업 증자감면(62.6%)에 해당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지역 내 감면은 미미한 수준임
 -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3,102억원으로 약 55%에 달하고 이어서 서울과 경기도가 약 500억원으로 9%에 이름

〈표 II-12〉 외국인투자지역 주요 활동지표

(단위: 천㎡, %, 개, 명, 억원, 백만달러)

	산업시설구역		업체 수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액
	면적	분양률	입주계약	가동			
부산 지사	298	93.3	11	11	975	5,495	286.5
대구 달성	104	89.4	5	3	152	514	19.6
광주 평동	1,365	91.9	64	57	2,897	10,708	119.5
경기 당동	641	100.0	3	3	253	8,720	1.1
경기 오성	601	100.0	3	1	-	-	-
경기 장안첨단1	602	100.0	14	13	923	6,058	89.9
경기 장안첨단2	614	43.2	4	3	386	1,080	39.1
충북 오창	806	91.7	12	10	1,625	8,926	486.5
충남 인주	165	100.0	8	7	454	2,611	64.1
충남 천안	714	100.0	42	40	4,387	20,522	1,087.4
전북 익산(이리) ¹⁾	320	37.5	3	2	-	-	-
전남 대불	1,614	100.0	35	26	2,920	4,340	74.4
경북 구미 ¹⁾	1,579	82.9	15	10	4,052	22,525	789.9
경북 영일만 ¹⁾	327	100.0	1	1	-	-	-
경남 사천	496	100.0	14	11	365	1,896	29.4
경남 창원 ¹⁾	478	-	2	1	-	-	-
합계	10,724	83.1	239	199	19,573	93,655	3,089.1

주: 1) 조성 중인 단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1 4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표 II-13〉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동향

(단위: 개, 억원)

	2007		2008		2009		2010	
	개	억원	개	억원	개	억원	개	억원
총합	151	4,022	146	5,165	137	7,293	135	5,670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감면	76	1,631	76	2,056	72	2,097	71	1,406
외투자지역 내 외투자감면	10	223	9	664	21	1,611	23	700
경제자유지역 내 외투자감면	1	0.7	1	0.2	2	17	3	7
외국인투자기업 증가감면	64	2,167	60	2,445	41	3,568	36	3,552

주: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나. 개별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성과

1) 마산자유무역지역

-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외국인 전용공단으로써 외투자업체와 국내업체 99개 업체가 입주하여 총생산의 98%를 수출하고 있음
 - 마산은 마산항, 부산항, 김해공항과 인접하고 있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근의 창원 산업단지와 산업연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또한 국산 원부자재 구입과 역외가공업체를 이용한 가공 등 전후방효과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함³²⁾
- 그러나 근래에는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 수는 증가하는 반면 고용인원은 급속하게 감소함
 - 자본집약적 산업구조 재편으로 고용자 수는 1980년대 중반 3만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함
 - 즉, 고용자 수가 2000년 약 1.4만명에서 현재 8천명까지 감소하였는데 대신 업체 수

32) 2003년 당시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역외가공업체는 314개로 고용인원이 5,330명에 달하여 마산시 제조업체 고용인원의 약 54%가 연관업체로 추정됨(산업연구원, 2007)

는 77개에서 94개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업체당 고용인원은 84명에 달함

〈표 II-14〉 마산자유무역지역 고용동향

(단위: 명)

	1971	1973	1980	1987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인원	1,248	21,240	28,532	36,411	19,616	14,736	14,415	8,665	8,035	7,384
여성	90	81	78	77	70	65	65	53	50	46

-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내국업체와 외국투자기업의 비중은 비슷한데 일본기업이 36개로 가장 많고 미국과 EU 기업이 각각 6개, 5개가 있음
- 전체 투자액은 약 2.3억달러로 우리나라 업체의 투자액은 약 0.8억달러임

〈표 II-15〉 마산자유무역지역 국별 입주업체와 투자액

(단위: 개, 백만달러)

	일본	EU	미국	한국	기타	계
업체 수	38	6	8	43	4	99
투자액	66.7	82.9	1	81.9	2.0	234.4

〈표 II-16〉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현황

	외투기업		내국기업	계
	단독	합작		
한국			51	51
일본	11	25		36
EU	3	2		5
미국		6		6
기타		2		2
합계	14	35	51	100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 입주업체 업종은 전기·전자와 정밀기기가 각각 28개 업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기계 13개, 금속 8개 업체 등임

〈표 II-17〉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업종

	전기전자	정밀기기	금속	섬유봉제	기계	비금속	기타	계
업체 수	28	28	8	3	13	5	15	100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 전술한대로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고용인원은 1987년 약 36,000명에서 2000년 14,000명 그리고 2008년 약 5,900명으로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8,000명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2012년 다시 6,000명 수준으로 고용이 줄어들었다³³⁾
 - 최근 고용감축은 노키아와 소니 등 전기전자업체의 부진에 의한 것으로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에 의존한 결과 지역고용이 경기상황과 투자한 외국 본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좌우되는 부작용이 나타남
 - 한편 외국인 투자도 1.9억달러에서 1.4억달러로 줄어드는 대신 국내투자가 소폭 증가하여 약 0.7억달러에 달함

〈표 II-18〉 마산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단위: 백만달러, 개, 명)

연도	수출액	투자액			업체 수	고용인원
		내자	외자	합계		
2000	4,442.1	57.7	193.7	251.4	77	14,415
2001	4,503.4	55.3	202.4	257.6	79	11,995
2002	4,101.9	59.1	211.4	270.5	78	12,011
2003	4,459.9	60.3	199.3	259.6	77	11,306
2004	4,617.8	58.9	205.0	263.9	78	9,021
2005	4,241.0	76.5	201.8	278.3	73	8,665
2006	3,914.2	74.3	169.9	244.2	79	7,298
2007	3,256.0	88.6	125.5	214.1	88	7,046
2008	5,072.2	83.7	144.3	228.0	94	5,936
2009	3,850.5	78.9	116.9	195.7	95	8,200
2010	3,774.3	77.4	137.9	215.3	94	8,085

자료: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11

33) 연합뉴스 2013.2.11(www.app.yonhapnews.co.kr)

- 2000년 이후 수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1년의 경우 99개에 달함
- 또한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외화가득률도 1990년 54%로 정점을 이룩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는데 다만 최근에 약간 상승하여 2011년 31.6%에 달함
 - 이 가운데 국산 원부자재와 공공요금 등 기타의 비중이 비슷하며 임금은 외화가득액의 10%를 상회함
 - 반면 임대료는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함
- 수출액의 경우 2008년 약 48억달러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11년 29.7억달러로 떨어지고 무역흑자도 10억달러로 감소함
 - 다만 내국 수입액(2.7억달러)에 비하면 수출비중은 월등히 많음
 - 또한 수출액 대비 수입비중은 1980~1990년대에는 50% 수준에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그 비중이 60%대를 초과하였고 2011년에는 69%를 육박함
- 전술한대로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용은 2012년 약 5,900명으로 1972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적은 고용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11년 수출실적의 75%를 차지하는 노키아가 모기업의 부진으로 고용을 축소하고 이외 소니 등 전기전자업종의 부진 때문임³⁴⁾
 - 한편 2010~2012년 사이에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자격에 필요한 수출 요건³⁵⁾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출된 업체는 14개에 달함
 - 2012년의 경우 전체 99개 업체 중에서 단 한 건의 수출실적을 내지 못한 업체가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됨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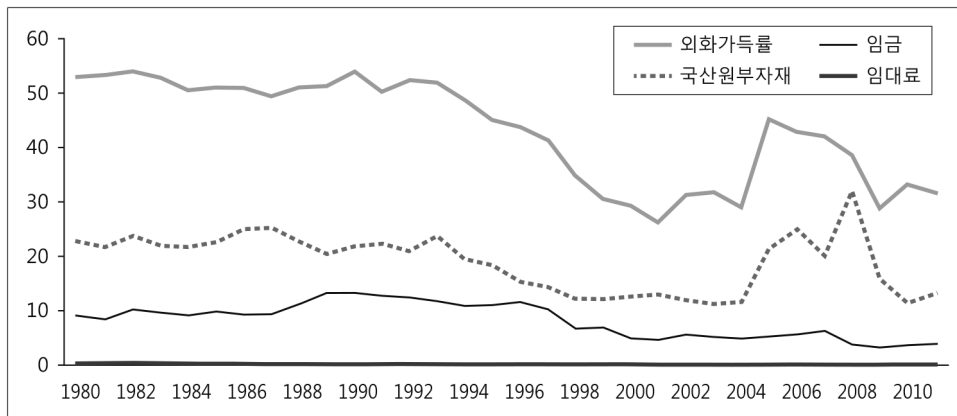
34) 경남신문 2012.10.09(www.knews.co.kr): 노키아는 2011년 당시 약 24억달러를 수출한 바 있음

35) 3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를 초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입주자격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2010년 8개, 2011년 2개 그리고 2012년 4개에 달하는데 산업별로는 휴대전화 부품업체(5개), 자동차 부품업체(2개), 전기전자 부품업체(2개), 밸브업체(1개) 등임(한국경제 2013.1.14 (www.yna.co.kr))

36) 한국일보 2012.12.18(www.hankooki.com)

- 그림에도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1·2단계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9만 m²의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신규기업을 유치하기로 함
- 이외 마산은 기숙사와 복지관 등을 건립하는 기반확충사업도 진행하고 있음³⁷⁾
- 입주업체의 진퇴가 자주 발생하고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변동이 상당한 상황은 자유무역지역의 안정성이나 지역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음

[그림 II-1] 마산자유무역지역 외화가득액의 추이



<표 II-19> 마산 자유무역지역 무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직수출	내국수출	합계		
1980	538.2	89.8	628.1	329.7	298.4
1990	1,165.3	240.1	1,405.4	701.8	703.5
1995	1,990.2	230.7	2,290.9	1,335.3	885.6
2000	4,330.1	112.0	4,442.1	3,178.7	1,263.5
2005	3,929.1	311.9	4,241.0	2,326.2	1,914.8
2006	3,480.0	434.2	3,914.2	2,226.0	1,688.1
2007	2,947.0	309.0	3,256.0	1,921.2	1,334.8
2008	4,806.1	266.1	5,072.1	3,103.9	1,968.3
2009	3,583.4	267.1	3,850.5	2,422.2	1,428.3
2010	3,450.0	324.3	3,774.3	2,422.2	1,332.1
2011	2,973.3	268.2	3,241.5	2,243.7	997.8

37) 경남신문 2012.10.09(www.knews.co.kr)

2) 대불 자유무역지역

- 전남 대불은 서남 경제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조성됨
 - 목포 신항, 무안 국제공항 및 호남선과 인접하여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인근 신재생 에너지와 선박제조 업체와의 산업연관효과를 기대함

〈표 II-20〉 대불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단위: 억원, 백만달러, 명)

	생산액	수출액	외자투자액		입주업체		고용인원
			금액	투자비중	전체	외투기업	
2005	928	93	3	2.6	9	2	1,100
2006	1,886	183	2	0.6	21	13	1,619
2007	2,608	271	26	8.6	29	22	2,067
2008	4,612	403	38	12.6	29	24	3,431
2009	5,714	428	38	11.7	31	26	3,222
2010	4,911	371	41	9.0	35	30	3,435
2011	4,568	214	41	8.6	33	30	3,179

자료: 대불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11

- 실제로 대불 지역 수출은 2005년 0.9억달러에서 2011년 4.1억달러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에 외국인 투자도 3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증가함
 - 고용인원은 1,100명에서 3,17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업체 수도 9개사에서 33개사로 증가하였는데 업체당 고용인원은 96명임
 - 33개 업체 중 외국인 투자기업이 30개 업체로 절대 다수임

3) 군산 자유무역지역

- 군산은 중국 주요항만과 단거리에 위치하고 또한 자동차산업단지과 인접해 있음
 -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11년 생산액 2,807억원, 수출액은 2.4억달러에 달하며 고용도 급속히 증가하여 1,249명에 달함

〈표 II-21〉 군산자유무역지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명)

	수출액	수입액	고용인원
2008	81	9	572
2009	59	16	584
2010	136	18	802
2011	241	56	1,249

자료: 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 현황(군산·김제), 2011

〈표 II-22〉 군산자유무역지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명)

	업체수	외투기업	수출	수입	외투금액	고용인원
기계	7	미국(5)	226.2	47.6	10.7	823
금속	5	일본(3)	0	2.6	20.6	47
전기·전자	4	중국, 스위스, 독일(2)	12.6	0.7	1.1	51
선박	3	포르투갈, 싱가포르(2)	-	-	5.1	55
물류	3	호주(2)	-	-	-	113
자동차	2	네덜란드(1)	1.2	0	-	42
의료기기	2	캐나다(1)	-	-	1.1	-
기타	4		0.6	5.1	19.8	118
합계	30	16	240.6	56.0	58.5	1,249

자료: 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 현황(군산·김제), 2011

- 업체 입주율은 약 95%로 전체 업체 수는 30개에 이르는데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19개 이고 외투기업은 약 절반인 16개 업체임
 - 업체 대부분은 기계 및 금속 전기, 전자와 관련된 업종이며 그밖에도 선박, 물류, 자동차,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입주해있음
 - 업체당 고용인원은 약 42명으로 대불(96명)과 마산(84명) 자유무역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동해나 울촌 등 여타 자유무역지역에 비해서는 4배 이상에 달함

4) 기타 자유무역지역

- 동해와 울춘은 2010년 조성되었고 김제와 울산은 현재 조성 중이므로 평가하기가 아직 이르지만 업체당 생산액으로 볼 때 대체로 영세업종이 입주하고 있음
- 우선 울춘의 경우 광양항과 울춘 컨테이너 부두, 여수공항과 인접하여 교통 이점이 있는데 입주율 등으로 볼 때 아직 미완성의 자유무역지역으로 평가됨
 - 외국투자기업 6개 업체가 현재 입주하여 입주율이 31%인데 고용자 수가 63명으로 업체당 고용인원이 10명에 불과함
 - 2010~2011년 사이에 생산액은 17억원에서 31억원 그리고 수출액은 200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 증가하였고 외국인 투자액은 200만달러로 증가함

〈표 II-23〉 울춘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단위: 억원, 백만달러, 명)

	생산액	수출액	외자투자액		입주업체		고용인원
			금액	투자비중	전체	외투기업	
2010	17	2	1	-	2	2	36
2011	31	3	2	-	6	6	63

자료: 대불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11

- 한편 2010년 6월에 입주를 시작한 동해 자유무역지역은 동해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인근의 북평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됨
 - 2010~2011년 사이에 고용은 119명으로 증가하였고 입주 업체도 5개에서 20개 업체로 4배 증가하였지만 업체당 고용자 수는 6명에 불과함
 - 2011년 당시 생산액과 수출액은 각각 100억원, 2,000만달러로 13개 업체 중에서 외국투자기업은 4개 업체임

〈표 II-24〉 동해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단위: 억원, 백만달러, 명)

	생산액	수출액	외자투자액		입주업체		고용인원
			금액	투자비중	전체	외투기업	
2011	101	20	3	-	13	4	119

자료: 동해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11

- 그러나 2012년의 경우 동해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 수는 6개로 24만여 m³의 부지가운데 임대건물 1동을 제외한 18만m³는 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됨
 - 전체 수출액은 약 800만달러에 불과하고 입주율도 3.3%로 실적이 미약하여 강원도와 동해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에 나섬³⁸⁾
 - 동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기반산업이 적고 교통망도 열악한 등 입주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원만하지 않음

38) MBC 뉴스 2013.1.17(www.imnnews.imbc.com)

Ⅲ.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제도

1. 주요 법적 절차

가.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입주

1) 자유무역지역 지정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에 의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법에 지정된 지역을 말함³⁹⁾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및 도지사 등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⁴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 실정과 필요성 및 지정 요건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 등⁴¹⁾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데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⁴²⁾
 - 자유무역지역 지정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⁴³⁾

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1항(정의)

40) 법 제4조 1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41)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함(시행령 제2조 3항):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함

42) 그러나 법 제7조 6항에 의하면 예정지역의 지정,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 제4조를 준용한다고 하므로 제4조 3항의 협의과정이 다시 필요할 수 있음

43) 법 4조 5항

-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청한 기관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역 위치, 경계, 면적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결정하는데 다만 면적 조정 등 경미한 변경⁴⁴⁾은 그렇지 않음

□ 신청자는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과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⁴⁵⁾

- 기본계획은 자유무역지역 명칭·위치, 경계·면적과 개발기간·방법 및 입주업체 업종·우선순위·선정기준·유치 및 배치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해야 함
- 또한 도로·항만·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계획과 화물처리능력 및 통제시설 설치계획도 포함하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평가나 검토 자료가 필요함
- 이외 자유무역지역 운영목표 및 방향 이외 외국인투자·무역·국제물류·지역개발 및 고용증진 전망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도 제출해야 함
- 마지막으로 관리권자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은 자가 둘 이상일 경우 관할범위와 통제시설 설치 등에 대한 비용분담방법도 포함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우선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나 물류터미널(물류단지) 혹은 항만 및 배후지⁴⁶⁾로써 일정 수준의 화물처리능력⁴⁷⁾을 갖춘 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물품 반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통제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 통제시설은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등 외국물품 불법유출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반출입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함⁴⁸⁾

44) 자유무역지역 면적 10분의 1 미만을 축소·확장하거나 위치·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혹은 진입도로·축대 또는 다리의 변경 설치 등을 말함(시행령 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4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2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항공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를 말함

47) 시행령 4조 1항(지정요건)에 화물처리능력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배후지는 항만과 접해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화물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의 항만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됨

- 자유무역지역 중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공항만 등 이외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함
- 관리권자는 입주업체와 지원업체⁴⁹⁾의 사업지원, 공공시설 유지, 각종 지원시설 설치 운영 및 기타 자유무역지역 관리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생산·지식서비스·물류·지원·공공 및 교육·훈련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표 Ⅲ-1〉 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요건

	주요 내용
정의	물품 반출·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요건	담장·출입문·경비초소 등 외국물품 불법유출 및 도난 방지에 필요한 시설(검사장 포함)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적·위치 등에 관한 기준 충족
관세청 고시	외곽울타리 및 외국물품 불법유출 및 도난방지를 위한 과학감시장비
	감시종합상황실과 화물차량통제소
	컨테이너 검사에 필요한 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관검사장
	세관공무원이 24시간 상주근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편의시설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운영하고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또한 관세 등의 부과 징수, 출입국 관리, 검역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은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상주할 수 있음⁵⁰⁾
-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와 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출입증이나 통행증을 소지하고 관리권자는 그 명세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함⁵¹⁾

48) 시행령 4조 2항

49)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함(법 10조 1항 6호)

50) 법 51조 2항(행정기구 등의 설치): 다만 출장소 설치나 직원 상주를 위하여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해야 함(시행령 36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51) 법 52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입 혹은 반출되는 외국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에게 출입증 등의 발급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중앙행정 기관장은 규정에 따라 권한 일부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⁵²⁾
 - 또한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이외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⁵³⁾

-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의 산업단지는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 그리고 항만 등 이외 자유무역지역은 서울지방항공청장(공항) 혹은 지방해양항만청장 등(항만)이 위탁 관리함⁵⁴⁾
 - 즉,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은 입주허가, 변경, 취소 및 건축허가 수리, 국유지 등의 임대·매각 그리고 통제시설 설치와 출입증 발급 이외 입주관리요령 공고 및 수출입제한물품의 반출입 승인 등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함
 - 국토교통부의 경우 상기 기관 이외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항만공사가 관리업무, 통제시설 유지, 출입증 발급 및 세관장 통보를 수행함
 - 대신 항공청장이나 항만청장은 입주허가, 변경, 취소 및 건축허가 수리, 국유지 등의 임대·매각 그리고 통제시설 설치와 출입증 발급 이외 입주관리요령 공고 등을 관장함⁵⁵⁾
 - 이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만 및 배후지에 있는 시·도나 시·군·구 공유재산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관리업무, 입주 허가, 취소, 건축허가 수리, 토지 등의 양수, 통제 시설 설치·유지 등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함⁵⁶⁾

52) 법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53) 이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주무부 장관은 입부업체가 도입하는 외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54) 시행령 40조(권한의 위임·위탁)

55) 시행령 40조 5, 7항: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자산, 사유자산 및 항만공사 자산에 한정함

56) 시행령 40조 9, 10항

2)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 허가 · 취소 및 사업개시 신고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관리권자의 입주(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음⁵⁷⁾
 - 수출이 주목적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⁵⁸⁾이나 이들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⁵⁹⁾ 수출입거래가 주목적인 도매업, 물품 하역 · 보관 · 운송 · 전시 혹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 이 밖에도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수출비중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도 규정에 따라 국제물류 원활화,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관리권자가 입주를 허가할 수 있음
 - 즉, 입주자격에 미달해도 자유무역지역 총 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⁶⁰⁾이나 입주업체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입주를 허가할 수 있음

- 수출업체와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지난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을 초과해야 함⁶¹⁾
 - 도매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출입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투비중은 일정 기준⁶²⁾을 충족해야 함⁶³⁾

57) 법 10조(입주자격)

58) 「산업발전법」 8조 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함

5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 6호에 따른 기업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이외의 기업을 말함(법 제2조)

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조 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함(시행규칙 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61) 시행령 7조 1항(입주자격)

6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2조 2항: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해야 함(다만 외투기업으로 등록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2.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과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 1년 이상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을 하거나 구매 혹은 기술제공 ·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63) 다만 입주허가 이후 신주발행 등으로 국내자본이 증가하여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

- 물품 하역·보관 등의 업체는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조립 등의 복합물류관련사업, 선박이나 항공기 수리·정비·조립업 등의 국제물류관련사업, 연료·식수·선식 등의 선(기)용품 공급업, 물류시설 개발·임대업 등을 말함
- 지원업체는 금융보험, 통관, 세무, 회계, 해운중개 등의 선박 대여·관리, 항만 용역, 교육·훈련, 유류판매, 폐기물 처리, 정보처리, 음식점, 식품판매, 숙박, 목욕장, 세탁, 이·미용 이외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함
- 입주(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이러한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고 관리권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함⁶⁴⁾
 - 수출업체나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할 경우 수출액과 비중(외투금액과 비중)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기준을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 정해야 함
 - 업종⁶⁵⁾이나 면적을 바꾸려면 관리권자의 변경 허가가 필요함
- 관리권자는 입주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조건은 공익 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 업종⁶⁶⁾ 및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이 우선적으로 입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입주허가와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함
 - 그러나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경제자유지역법이나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 혹은 관세나 내국세를 체납한 자 및 이와 같은 사람을 임원⁶⁷⁾으로 하는 법인⁶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입주허가가 내려질 수 없음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임

64) 시행령 8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입주(변경)허가 신청서 이외 사업계획서와 해당 사업에 관한 인허가나 면허 혹은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도매업, 하역 등 및 지원업종에 해당함)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 1항 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3조)

6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가 업종 변경기준임(시행령 8조 2항)

66)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2 1항1호에 규정된 산업을 의미함

67) 자유무역지역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됨(법 12조 7항 7호)

68) 즉, (경제자유지역)법이나 관세법에 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집행유

- 입주허가를 받은 업체는 60일 이내에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공장 등(토지, 공장,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장을 임차하는 자는 150일 이내에서 사업목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함
 - 이외 입주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0~180일 이내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야 함⁶⁹⁾

- 입주허가는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⁷⁰⁾
 - 입주업체에 대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공장 등록, 등록증명,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등은 동 법을 준용함
 - 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주허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허가도 마찬가지임
 - 이처럼 미리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 구입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함⁷¹⁾
 - 관리권자는 시설이 사업계획서와 부합하면 관리대장에 이를 명시하고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는 등 다음의 사항⁷²⁾에 해당하면 청문회를 거쳐서⁷³⁾ 입주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⁷⁴⁾

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벌금형이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입주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함(벌금형의 경우 법 56~57조, 59~61조와 관세법 269~271조, 274조를 말함)

69) 시행령 13조(입주업체의 준수사항)에는 각각 3, 6개월의 범위 이내이지만 시행규칙 4조(매매계약 등의 체결기간)에서 구체적인 기한을 규정함

70) 법 14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

71) 시행령 8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72)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에서는 1년 이내에 관리권자가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73) 법 제54조(청문)

74) 법 제15조(입주허가 등의 취소)

-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입주허가를 받은 사업 이외 사업을 하는 경우
 - 결격사유⁷⁵⁾에 해당하거나 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허가 취소로 자유무역지역 토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려면 처분계획서에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함⁷⁶⁾
- 허가 취소일로부터 토지 등을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처분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관리권자는 양수인을 선정하여 양도인과 매매 협상을 6개월 이내에 타결해야 함
 - 토지 등을 양도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입주허가가 취소되면 취소 당시 수출입계약에 의한 이행업무와 기타 잔무⁷⁷⁾를 제외하면 사업을 즉시 중지해야 함
- 또한 외국물품 등(반입물품과 환급물품)⁷⁸⁾의 종류나 수량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⁷⁹⁾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업체에게 양도해야 함
 - 이외 소유 토지나 공장 등도 다른 입주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처분해야 함
- 관리권자는 입주(변경)허가를 하거나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함⁸⁰⁾
-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권자가 입주업

75)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3개월 이내에 교체하는 경우는 예외임

76) 시행령 9조(입주허가가 취소된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

77)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함(시행규칙 6조)

78) 즉, 외국물품 이외 법 29조 1항 2호(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물품과 관세환급특례법 4조 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한 물품을 포함함

79) 「관세법」 2조 4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의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함

80) 법 16조((입주허가 등의 통보)

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⁸¹⁾

- 관리권자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나 공장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리·처분을 받아 입주업체 등에 임대나 매각할 수 있음
 -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각가격이나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음
 - 또한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0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음(지원업체는 10년)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한 매각이나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나 매각가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음⁸²⁾

- 관리권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⁸³⁾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줄 수 있음
 - 또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이 가능함

- 입주업체가 사용할 공장 등을 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장 등을 입주업체에게 인도할 때까지 입주업체로 간주됨
 - 또한 공장 등과 기계·기구 등 설비를 입주업체에 임대 혹은 분양하는 자도 임대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주업체로 간주함
 - 입주업체가 외국물품 등을 사용하여 공장 등을 건축하면 3년 내에 입주업체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다만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공장 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게 임대할 수 있음⁸⁴⁾

81) 시행령 10조 2항(입주허가 등의 통보)

82) 이외 매입대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함

83) 「외국인투자촉진법」 18조 및 13조 6항 또는 8항

- 외국물품 등(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과 환특법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에 공급한 물품)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 등의 일부를 입주업체에게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⁸⁵⁾
 - 세관장은 공장 등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임대를 허가할 수 있음
-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 혹은 변경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함
- 운영지침에는 국비지원 기준,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업종의 범위, 우선순위기준 이외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됨⁸⁶⁾
 - 운영지침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기관장과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함
 - 관리권자는 공동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유지비)⁸⁷⁾을 입주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나. 조세감면 등의 지원

-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을 원재료로 제조나 보수 등의 작업을 거쳐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부과함⁸⁸⁾
- 관세 등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함⁸⁹⁾
 - 입주업체가 사용·소비하려는 목적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양도한 내국물품 중에서 관세 등의 환급을 위하여 반입신고하지 않은 물품은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84) 법 24조(토지나 공장 등의 처분제한)

85) 시행령 15조 1항(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 등의 임대)

86) 시행령 18조의 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이외 시행령 2조 1항 단서에 따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87) 도로·가로등·울타리·체육시설·운동장 및 기숙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을 말함(시행규칙 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88) 법 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89) 법 2조 6호

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완제품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과세표준 공제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⁹⁰⁾
 - 내국물품 원재료와 제조·가공·조립 또는 보수하려는 완성품의 품명·규격·수량·중량 및 가격 그리고 작업기간 및 소요량
 - 원재료는 「관세법」 시행령⁹¹⁾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보수의 성격이나 공정에 비추어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원재료로 사용하는 내국물품 품명과 규격이 같고 소요량이 일정하면 세관장은 일정 기간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음⁹²⁾

- 내국물품 원재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 승인서, 내국물품 확인서⁹³⁾ 이외 원재료로 사용한 물품 수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과세표준 공제에 필요한 수량이나 가격은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이나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입주업체가 법에 따라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⁹⁴⁾은 관련법⁹⁵⁾에 따라 수출 혹은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이 면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음⁹⁶⁾

90) 시행령 30조(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 승인 및 과세표준 공제)

91) 199조 1항(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나 제조·가공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하며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은 포함됨

92) 시행령 30조 3항

93) 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내국물품에 대하여 신청하면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법 29조 2항)

94)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내국물품으로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나 그 부분품,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및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

95)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환급특례법을 말함

-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이외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업체 사이에 공급 혹은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세관은 이들 물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⁹⁷⁾
- 예정지역이나 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되는 시설재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제함⁹⁸⁾
- 관세가 면제되는 시설재는 건물이나 공장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와 건물 등의 설치·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및 장비임⁹⁹⁾
 - 이들 시설재에 대한 사후 관리는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와 용도의 사용에 대한 관세법이 적용됨¹⁰⁰⁾
-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등록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또한 입주업체 공장 등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함
 -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업체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규정에 따라 필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¹⁰¹⁾
 - 이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공장 유지·보수와 의료·교육·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며 필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96) 법 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97) 고시 33조: 아래에서 보듯이 이러한 물품 중 외국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은 환급대상임

98) 법 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99) 시행령 제31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100) 「관세법」 102조~103조

101) 지원이 가능한 입주업체는 다음과 같고 세부 시행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조의2 1항 2호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 사업 2) 산업발전법 5조에 따른 첨단기술사업이나 첨단제품 생산업 3) 이외 관리권자가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28조의2 2항에 따라 공고하는 입주관리 요령에 포함되는 사업(시행령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다. 화물 반입 및 반출

1) 반입신고

- 다음의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신고를 해야 함¹⁰²⁾
 - 외국물품 단,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화물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반입신고가 필요 없음
 -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물품으로 관세 등의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출용 내국물품 중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나 그 부분품,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및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
 - 반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온 내국물품에 대하여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입(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나 확인을 할 수 있음¹⁰³⁾
 - 물품 검사나 확인은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수행하며 다만 공항만 지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예외임
 - 세관장은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출입하는 자가 휴대 혹은 운송하는 물품이나 운송수단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음
 - 물품검사절차는 「관세법」 제246조 제2~3항(물품의 검사)을 준용하여 실시함

- 다음의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

102) 법 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반입신고서는 반입 일시와 반입 사유 이외 업체관리부호와 반입장소부호 이외 물품 품명·규격·포장명세(갯수·단위)·중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함

103) 법 42조(물품의 조사 등): 고시 29조에 의하면 물품을 실제로 반입하지 않고 반입신고나 반입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내역과 반입물품이 상이한 경우 그리고 반입물품 품명·규격·수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조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음

해야 함

- 입주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제조업, 외투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외국물품: 다만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나 그 부분품, 원재료(입주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 유탄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및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은 제외됨
- 도매업이나 하역·보관·운송·전시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외국물품: 다만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나 그 부분품, 원재료(입주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 유탄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는 제외됨

2) 반출신고

- 다음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¹⁰⁴⁾
 -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
 -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외국물품 등
- 외국물품 등¹⁰⁵⁾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수출신고절차를 준용하여 세관장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¹⁰⁶⁾
 - 물품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포장 종류·번호·갯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번호
 - 선(기)용품의 경우 선박(항공기) 종류, 명칭(등록기호), 선박중량, 항행예정일수, 여객 및 승무원 수 등 항행에 필요한 적정 수량을 파악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

104)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등에 사용된 외국물품 등의 송품장이나 소요량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105) 법 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경유화물이나 이미 수출신고를 한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자료를 제출하면 신고가 필요 없음
 106) 시행령 19조(국외반출신고)

- 반면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수출신고를 해야 함
- 한편 외국물품 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내국물품확인서나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반출목록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다만 세관장이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반출목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2년간¹⁰⁷⁾ 보관해야 함
 - 그러나 출입차량, 출입자 휴대품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려는 소비재나 소모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신고가 예외임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등을 수리, 견본품 전시, 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영역에 일시 반출하려는 입주업체는 세관장에게 일시 반출·반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일시 반출 혹은 반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전시나 홍보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면 기한 종료 전에 세관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함¹⁰⁸⁾
- 외국물품 등을 가공 혹은 보수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에 반출하려는 입주업체¹⁰⁹⁾가 그 내용을 적법하게 신고하면 세관은 이러한 '역외작업'을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함¹¹⁰⁾
 - 역외작업의 범위, 기간, 물품, 장소 등 작업내용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함¹¹¹⁾
 - 역외작업으로 가공 보수가 끝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수

107) 법 31조 3항(내국물품의 반출확인)에는 5년의 범위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 20조 2항에서 2년으로 제한함

108) 시행령 23조(외국물품 등의 일시반출·반입): 반출목적에 고려하여 물품수량·장소를 제한할 수 있음(고시 13조)

109) 외국에서 역외작업 장소로 직접 반입할 수도 있음

110) 신고수리절차는 관세법 187조 4항 및 6항(보세공장 신고수리절차)을 준용함

111) 역외작업 수탁업체 사업자등록증, 위치 및 시설배치도, 역외작업 계약서(계약금액·수량·기간), 부산물·폐기물 내용, 타 용도 사용금지 서약서(시설제·금형), 수출주문서·신용장 등, 전년도 수출실적(고시 14조)

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 한편 반출장소에서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려면 반출(수출)신고를 해야 함
- 역외작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역외작업 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¹¹²⁾

- 역외작업을 전후한 물품 품명, 규격, 수량 및 중량 그리고 작업 종류, 기간, 장소 및 작업 사유
- 역외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 규모는 입주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 및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임¹¹³⁾

□ 역외작업이 가능한 물품은 원자재나 금형을 포함하여 원자재 제조·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임¹¹⁴⁾

- 한편 역외작업에 의한 반출기간은 원자재의 경우 1년 이내임
- 시설재의 경우 최대 3년을 한도로 입주업체와 수탁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기간이며 다만 역외작업이 계약기간 이내에 끝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을 범위로 세관장이 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 역외작업 반출장소는 수탁업체의 공장과 부속된 가공장소임

□ 외국물품 등을 다른 자유무역지역, 개항만, 보세구역, 통관장 등과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이외 장소로 이동하려면 보세 운송해야 하며 이 때 보세운송절차를 준용함

112) 시행령 24조(역외작업의 신고 등)

113)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크지 않은 등 전년도 금액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시행령 24조 2항): 1. 해당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반출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 중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달의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다만 사업시작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연평균 실적으로 간주함) 2. 반출신고를 한 달의 수출주문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00분의 1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반출신고를 한 달의 수출 주문액을 월평균 실적으로 간주한 금액의 100분의 60 3. 전년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실적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전 달로부터 과거 1년간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114) 시행령 24조 4항(역외작업의 신고 등)

- 공항만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하거나 장치하는 물품¹¹⁵⁾의 반출, 장치기간과 매각은 관세법을 준용함¹¹⁶⁾
 - 이외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이 초과한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음: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파산 혹은 인수를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¹¹⁷⁾
 - 물품 하역·운송·보관·전시 등의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출입에 지장을 주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물품 반출이나 매각을 위하여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¹¹⁸⁾
-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관세법을 적용함¹¹⁹⁾

3) 출입 제한·금지물품

- 「관세법」 234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입할 수 없음
 - 세관장은 국민보건이나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 등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이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음
 - 폐기물, 총기 등 불법무기류, 마약류,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물품 및 이러한 제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¹²⁰⁾
 -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¹²¹⁾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입할 수 없고 세관장

115) 다음의 물품으로 입주업체가 사용하려는 물품은 예외임: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나 그 부분품, 원재료(입주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 윤활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및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은 제외됨

116) 한 예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해야 하는데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함(관세법 157조의 2)

117) 매각절차는 관세법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 절차(관세법 208~212조)를 준용함

118) 시행령 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119) 법 43조(관세법의 적용)

120) 시행령 29조(외국물품 등의 반입·반출 제한)

121) 상표권,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말함

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할 수 있음¹²²⁾

- 「대외무역법」 11조에 따라 수출입 제한물품을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거나 여기서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¹²³⁾
 - 다만 공항만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지역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¹²⁴⁾
 - 수출입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세관장)이 제한 물품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려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¹²⁵⁾
 - 한편 이들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동일한 절차를 준용해야 함¹²⁶⁾
 - 이 밖에 「대외무역법」 12조에 따라 통합 공고되는 물품은 관계 행정기관이 정하는 수출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반입이나 외국으로의 반출이 허용되며¹²⁷⁾ 다만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는 수출입 요령에 따라야 함

- 외국물품 등을 멸실·분실하거나 폐기하려면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서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화주성명 및 폐기사유·일시·장소를 포함해야 함
 - 또한 세관장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화주나 반입자 등에게 국외반출이나 폐기를 요청하거나 미리 통보하고 직접 폐기할 수 있음¹²⁸⁾: 유해 물품, 부패·변질품,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의 고시물품
 - 물품 폐기를 명령받은 화주 등은 미리 물품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화주성명, 폐기일시 및 방법을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폐기를 한 이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¹²⁹⁾

122) 단속을 위하여 관세법 235조 2~7항을 준용하여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23) 법 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124) 법 32조 1항

125)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다만 물가안정, 수급조정, 인도조건이나 거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시행령 21조 3항)

126) 시행령 22조(수출입제한 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127) 마약, 총기나 부패식품 등 통합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 물품은 예외임

128) 법 38조 3항(재고기록 등):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폐기사실을 지체 없이 화주 등에게 통보해야 함

- 화주 등의 거주 장소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통보가 어려우면 공고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폐기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함

라. 화물재고관리 및 조사

1) 재고관리 · 조사

-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함¹³⁰⁾
 -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 보수나 확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권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입주업체에게는 업체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업체 정보를 관리대장에 기록함¹³¹⁾
- 입주업체는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5년간 기록 · 관리해야 함¹³²⁾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물품,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 소비 · 생산한 물품,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한 물품과 외국물품 폐기 이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
 - 상기 물품 중 관세 등의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출용 내국물품¹³³⁾에 대한 재고관리기록은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 함
 - 재고장부기록은 장부나 자료보존매체를 통하여 각종 사항을 기록 유지하되 업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방법으로 기록 유지할 수 있음¹³⁴⁾¹³⁵⁾

129) 시행령 28조 1항(물품 폐기 공고 등)

130) 법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131) 입주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원재료 및 생산품, 주요설비 및 생산능력, 자본금, 입주계약기간, 외국인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4조)

132) 법 38조 1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예외임

133)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나 그 부분품, 원재료, 운할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및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을 말함

134) 고시 20조 3항: 1. 반입내역: 내외국물품 구분, 반입일자, 반입근거(반입신고번호 · 화물관리번호 ·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신청번호 · 공급자 등) 품명 · 규격 · 수량(중량) · 단가 · 가격 등 2. 제조공정별 원재료 등 사용 · 소비내역: 내외국물품 구분, 반입일자, 품명 · 규격 · 수량(중량), 반입일자, 사용 · 소비일자, 재고수량 등 3. 제품 및 잉여물품 내역: 품명 · 규격 · 수량(중량), 반출일

-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입주업체의 입주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의 재고관리에 필요한 물품관리체제와 내부감사체제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체를 차등 관리하고 부적절한 체제에 대해서는 보완이나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¹³⁶⁾

-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과 다음 물품은 재고관리규정에서 예외임
 - 출입자 휴대품과 자유무역지역에서 소비하는 물품 등 내국물품의 관세영역 반출 확인이 필요 없는 물품이나 내용연수가 지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물품¹³⁷⁾

- 세관장은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원재료와 제품 관리대장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¹³⁸⁾
 - 조사는 서면 및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월 이후 연 1회 실시가 원칙인데 다만 물류관리체제와 내부감사체제 심사결과 자율통제기능이 미흡하거나 부정 유출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음¹³⁹⁾
 - 입주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3월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반출입물품 관리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작성한 자율점검표¹⁴⁰⁾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세관은 자율점검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이외 업체에 대해서는 재고조사방법을 결정해야 함

자, 반출근거(수출신고번호·수입신고번호·보세운송신고번호·반출신고번호·화물관리번호) 등
 4. 역외가공신고물품 내역: 신고번호, 일자, 반출입일자 및 반출입내역, 품명·규격·수량(중량)·가격, 역외작업장소, 역외작업완료일자 등

- 135) 다만 세관장은 물품 성질이나 작업종류를 고려하여 기재가 필요없는 사항은 생략하게 할 수 있음(고시 20조 3항)
- 136) 고시 19조: 내부감사체제는 물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에 대한 부서간 업무분담, 책임 정도나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일상적 조치사항과 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물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경영조직 및 업무수행방식을 말함
- 137) 관세영역에 반입될 때 관세법 40조에 해당하는 물품임(시행령 26조 1항(재고기록 등))
- 138) 법 39조(입주업체의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등)
- 139) 고시 21조 1항
- 140)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며 공인회계사의 재고조사보고서가 자율점검표를 대신할 수 있음: 원재료, 제품 및 잉여물품 재고관리방법, 제품별 원재료 실소요량계산서, 반입물품 기초재고·반입/반출량, 기말재고(사용전 원재료, 사용후 원재료, 제품, 잉여물품, 수입신고제외대상인 기계·기구설비·장비 및 그 부분품), 재고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명 및 관리부서, 기타 물품관리 참고사항(고시 21조 2항)

- 세관장은 재고조사 개시일로부터 10일 전에 조사통지서를 운영인에게 송부하고 서면심사는 7일 그리고 실지조사¹⁴¹⁾는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¹⁴²⁾
-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조사결과 외국물품 등의 재고가 부족하면 세관은 입주업체로부터 관세 등을 지체 없이 징수해야 함¹⁴³⁾
 - 다만 분실 신고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것이 확인되거나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는 경우 그렇지 않음

2. 화물통제절차

가. 개요

1) 외국물품의 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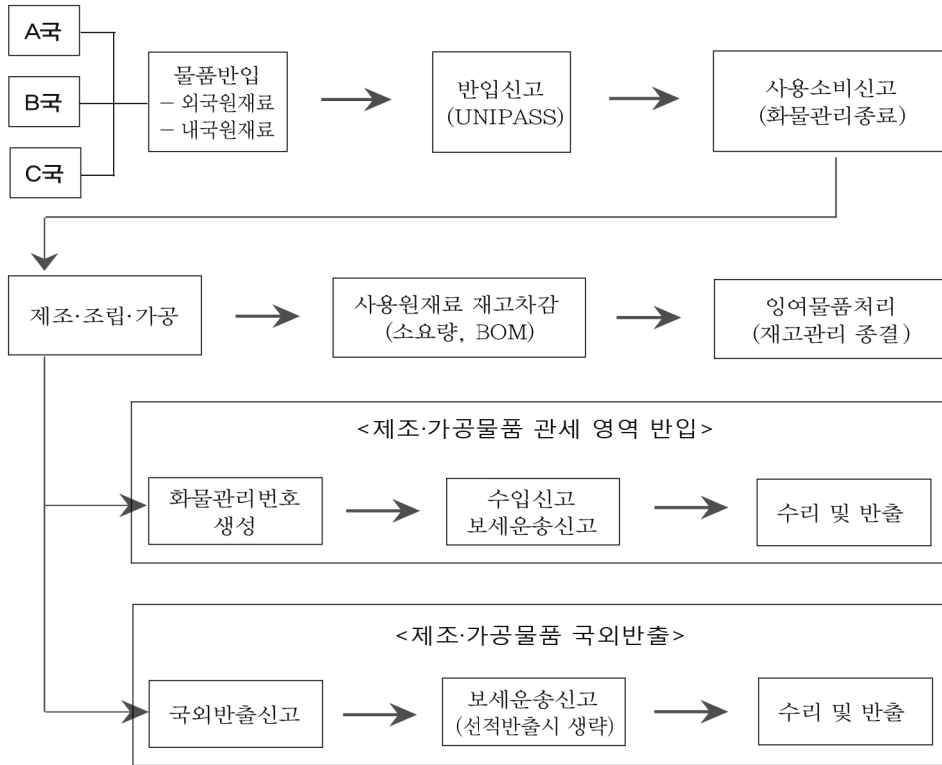
- 자유무역지역 물품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적용을 배제하지만 외국 물품 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관세법이 적용됨

141) 다음의 경우 실지조사가 수행되어야 함: 자율점검표나 증빙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실소요량관리가 타 보세공장에 비하여 불합리한 경우, 제출자료가 부적절하여 서면조사가 어려운 경우,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142)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재고조사가 완료된 대상기간 중에는 부정유출 혐의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반복 조사할 수 없음(고시 21조 4항)

143) 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하면 반입한 날을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로 간주하고 외국물품을 제조 가공한 경우 그러한 작업을 한 날이 확정일임(시행령 27조(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 등의 징수))

[그림 Ⅲ-1]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전반적인 흐름



- 반입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모든 외국물품과 환급대상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신고를 해야 함¹⁴⁴⁾
 - 즉, 외국물품의 경우 국내 도착 후 보세 운송되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때 반입 목적에 따라 반입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함
 - 반입신고는 사용소비, 보관·전시, 다른 자유무역지역(보세공장) 등으로부터 반입, 선용품·수리용품 반입으로 구분되어 과세 보류된 상태(외국물품 간주)에서 사용·소비, 가공 혹은 보관됨
 -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국물품으로 간주되는데 그 대상은 입주업체 외의 자가 사용·소비하려는 물품이나 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임

144) 법 제29조 1항: 다만 환적화물은 입항적하목록, 수출신고수리물품은 수출신고필증으로 반입신고를 갈음함

〈표 Ⅲ-2〉 반출·입 신고유형 비교

	물품성격	신고목적	비고
반입 ¹⁾²⁾	과세보류 (외국물품)	사용·소비	제조·하역·운송·보관·전시 등 업체
		보관·전시	제조·수리·보수·조립·건설 제외
		다른 경제자유지역 등 선·기용품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
	세금납부 (내국물품)	수입신고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 사용: 입주업체 외의 자, 신고 제외물품
반출	과세보류 (외국물품)	국외반출신고(비환급) ³⁾	
		보세운송	
	수입신고	외국물품 사용 제조·보수·그대로 반출 ⁴⁾	
세금납부 (내국물품)	수출신고(환급대상)	외국물품 등이 아닌 물품의 반출	
내국물품	반입신고	사용 후 환급목적으로 사전신청	대상: 기계·기구·설비·부분품, 원재료·유탄유·사무용 컴퓨터, 건축자재
	반입확인 서	반입신고 없이 사후 사정변경·위약물품대 체	관세영역 반출·과세 통관 시 공제 목적 ⁵⁾
일시 반출입	일시허가		수리·전시·검사 목적(6개월 한도)
	역외작업	일반	가공·보수(원자재: 1년, 시설재: 3년) ⁶⁾
직반출·입			역외작업 장소에서 국외반출·과세반출

주: 1) 환적화물은 입항적하목록, 수출신고수리물품은 수출신고필증으로 반입신고 같음

2) 보세운송기간 내 반입신고(선·기용품은 반입신고가 생략되지만 하선허가 후 7일 이내 반입)

3)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 선적(최대 3개월 연장 가능)

4) 내국 원료만 사용 제조한 물품은 비과세

5) 서류생략 대상: 출입차량·휴대품·소비목적으로 반입된 사무용휴대품·음식료품담배·유류 및 후생복지용 소모품으로 반입사실이 확인된 물품, 휴대 작업용구

6) 전년도 원자재 가공수출액의 60% 범위 이내 한도

자료: 마산세관 자유무역지역과, 「업무혁신 공유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통합 매뉴얼」, 2006

□ 반출은 목적지에 따라 국외반출과 관세영역 즉, 국내로의 반출로 구분됨

- 우선 국외반출의 경우 과세보류물품(외국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국외반출신고를 하고 이외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내국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관세 환급을 위하여 수출신고를 함

- 즉, 국외반출은 외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으로 관세환급에 사용할 수 없고 수

출신고는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으로 환급 사용이 가능함

○ 이외 국외반출은 원상태 반출(반송), 환적반출 및 선용품 적재로 구별됨

□ 국내반출은 크게 과세보류 상태가 지속되는 보세운송과 세금을 납부하고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기 위한 수입신고로 구분됨

○ 이외 예외적 절차로는 일시, 역외작업과 폐기 반출이 있음: 일시 반출은 수리, 전시, 검사를 위하여 외국물품 등을 관세영역에 일시적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역외작업은 일부 공정을 역외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임

○ 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전부 혹은 일부 사용·소비하여 제조·보수한 물품이나 혹은 그대로 반출할 때 이용함

2) 내국물품의 반출·입

□ 내국물품¹⁴⁵⁾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지만 관세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 함

○ 즉, 내국물품 반입신고는 수출신고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데 환급대상은 기계·기구·설비·장비·부분품, 원재료, 유탄유, 사무용 컴퓨터와 건축자재¹⁴⁶⁾

□ 내국물품은 반입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지만 이들 물품을 다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입확인서, 세금계산서 내국원재료 사용승인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¹⁴⁷⁾

○ 또한 반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내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여 과세 통관할 때 내국원료에 대한 공제가 가능함

145)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닌 것, 공해에서 채집된 수확물,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등을 말함

146)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은 수출용 원재료로 한정됨

147)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서류 제출이 생략되며 이외 출입차량·휴대품·소비목적으로 반입된 사무용휴대품·음식료품담배·유류 및 후생복지용 소모품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된 물품, 휴대 작용용구 등도 반출 확인을 생략하고 있음

3) 업체관리부호 등록절차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외국물품을 관세유보 상태에서 자유롭게 반입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반출하려면 엄격하면서도 원활한 화물 및 재고관리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관할 세관장은 입주업체에게 관세법상 ‘보세구역 설영특허’에 해당하는 업체관리번호¹⁴⁸⁾ 등록을 요함
 - 보세화물이 이동할 때에는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장치장소 부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음

- 입주허가 업체가 관리번호를 신청하면 세관장은 화물관리시스템¹⁴⁹⁾ 구비 등을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수출입화물시스템에 등록하며 관리대장을 유지해야함
 - 이를 위하여 관할 세관장은 사업계획서 등¹⁵⁰⁾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화물관리시스템 등 입주허가와 화물관리에 필요한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등록업무를 위하여 보세구역 특허에 준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서류)

- 관리권자가 입주허가를 취소하면 세관장은 지체 없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외국물품과 환급대상물품을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업체에 양도해야 함
 - 이외 관리권자가 변경사항을 통보하면 이를 입주기업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수출입 화물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148) 번호는 8자리로서 1~3자리 관할세관, 4~5자리 업종, 6~8자리 일련번호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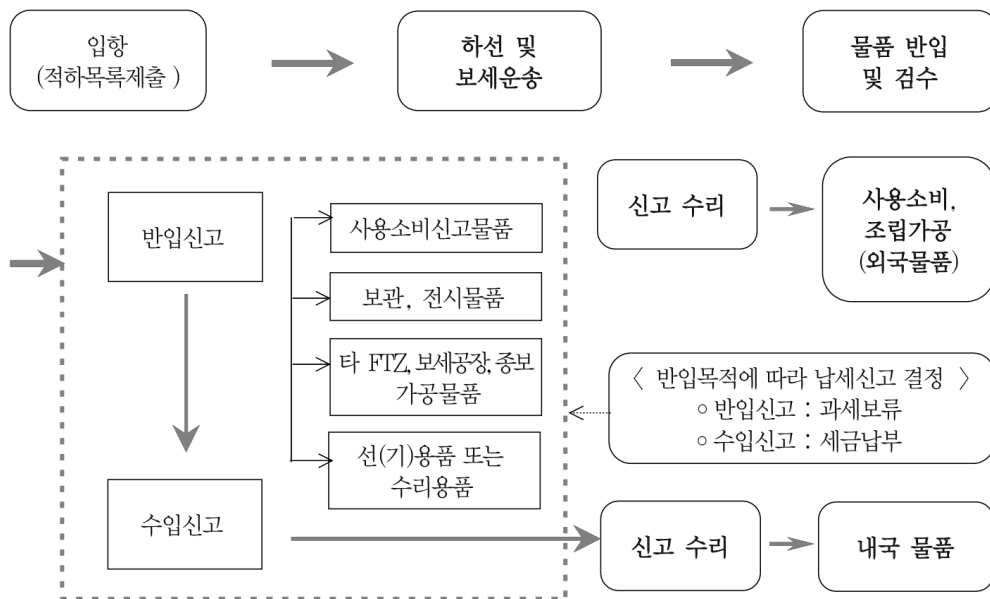
149)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으로 적하목록, 적재·하선(기)·보세운송신고·보세구역 및 보세화물관리·화물 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을 말함

150)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장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와 시설배치도와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서류

나. 물품 반입신고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모든 외국물품과 환급대상 내국물품은 반입신고를 해야 함
 - 즉, 외국물품의 경우 국내 도착 후¹⁵¹⁾ 보세 운송되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때 반입 용도에 따라 반입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함
 - 반입신고는 사용소비, 보관·전시, 다른 자유무역지역(보세공장) 등으로부터 반입, 선용품·수리용품 반입으로 구분되어 과세 보류된 상태(외국물품 간주)에서 사용·소비, 가공 혹은 보관됨
 -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국물품으로 간주되는데 그 대상은 입주업체 외의 자가 사용·소비하려는 물품이나 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임

[그림 Ⅲ-2]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입절차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151) 물품 도착 후 선사는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하선장소가 부두박보세구역(ODCY(부두박컨테이너장치장, 배후물류업체 등)인 경우 보세운송절차가 필요 없으나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해야 함(하선장소 반입기한은 컨테이너 화물 3일, 벌크화물 10일임)

- 입주업체 외의 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려면 「관세법」 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 다음의 물품은 반출입이 금지 혹은 제한되며 반입된 경우 즉시 세관에 보고해야 함
 - 금지물품: 헌법 · 공공질서 혹은 풍속저해물품, 정부기밀 누설, 화폐 등 위변조품
 - 제한물품: 국민보건 혹은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으로 폐기물, 총기 등 불법무기류, 마약류, 상표권 · 저작권 침해물품, 반입예정정보와 품명 · 수량이 상이하거나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 이상이 있는 물품

1) 외국물품

-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자는 EDI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함
 - 보세운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같음되며 이적 · 환적화물은 입항적하목록 그리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필증으로 같음함
 - House B/L¹⁵²⁾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선장소로 지정된 입주업체가 컨테이너로 반입할 경우 Master B/L 단위신고가 가능함: CY(컨테이너 창고)에서 반출 · 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컨테이너 단위로 반입 신고함¹⁵³⁾
- 반입물품 검사는 사용소비 신고물품의 경우 수입 C/S에 따라 처리하고 보관 등 일시반입물품의 경우 현품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함
 - 반입신고 이후 반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신고를 정정해야 함
 - 사용 · 소비신고 이후 보관 등 일시 장치하려면 신고를 취하하고 화물반입을 등록해야 하며 반대로 보관 등 장치물품을 사용하려면 사용 · 소비신고를 해야 함

152) Bill of Lading(선하증권): 화주와 운송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운송업체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153) 화물관리번호는 적하목록관리번호(11자리)+Master B/L 일련번호(4자리)+House B/L번호(3자리)로 구성됨

① 사용·소비신고

- 입주업체가 외국원재료를 반입하여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나 보수 등¹⁵⁴⁾을 하려면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함
 - 신고 자격: 제조업이나 물품 하역·운송·보관·전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 신고 대상: 그러나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물품과 입주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기계·기구·설비·원재료¹⁵⁵⁾·유탄유·사무용 컴퓨터·건축자재 외 일반물품의 경우 사용소비신고가 아닌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함
 - 국내도착 → 보세운송 → 자유무역지역 반입 → 반입신고(보세운송기간 내) → 사용·소비

- 자유무역지역 고시에 의하면 입주업체가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반입신고를 하면 사용소비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물관리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고 또한 수입통관시스템에 사용소비신고¹⁵⁶⁾를 별도로 수행해야 함
 - 사용신고가 수리되면 화물관리시스템상의 관리가 종결되고 대신 입주업체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함
 - 즉, 입주업체는 자체적으로 전산관리를 하여 정기 혹은 수시 재고조사시 재고목록, 제품생산내역, 소요량계산서와 BOM(부품구성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한편 내국물품이 관세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전산신고를 하고 반입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신고자는 입주업체가 아닌 물품 공급업체임
 - 이들 물품은 앞서 기계·원재료 등 앞에서 제시된 사용소비신고 대상물품과 동일함

154) 외국물품은 House B/L 단위로 화물관리를 해야 하지만 복합물류업체로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수량단위의 화물관리가 가능한 입주업체의 경우 물품의 분할·합병도 사용소비신고 대상으로 인정함

155) 원재료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함: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1)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제품 2)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포장용품(반면 보관·도매·전시·수리·하역 등 업종의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반입된 물품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에 한정됨)

156) 수입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사용소비신고서로 변환됨

- 환급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반입 후 2~3일 이내에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반입 확인신청서를 3일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 제출해야 함¹⁵⁷⁾
- 원재료 이외 물품은 매매계약서와 용도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신청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② 기타 반입신고

- 보관·전시물품 신고: 외국물품을 보관 혹은 전시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는 수출입 화물시스템에 정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를 해야 함
 - 신고 자격: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이나 물품 하역·운송·보관·전시 등을 영위하는 입주업체(제조·보수·건설 입주업체는 제외)
 - 국내도착 → 보세운송 → 자유무역지역 반입 → 반입신고(보세운송기간 내) → 보관 전시
- 다른 자유무역지역,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신고
 - 반출지 세관이 통보한 보세운송기록과 반입신고 내역을 심사하여 승인 처리
 - 국내 자유무역지역 등 → 보세운송 → 자유무역지역 반입 → 반입신고(보세운송기간 내) → 신고 내역심사(수출입통관 EDI 시스템) → 신고수리
- 선(기)용품 신고: 외국 무역선이나 무역기에서 사용되는 용품 및 수리용 물품을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선(기)용품관리시스템 하선신고로 반입신고를 갈음함
 - 실제로는 화물관리시스템에 반입신고 후 선용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재고관리가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이관되고 화물관리시스템에서는 재고 종결됨
 - 입항 → 하선신청 → 하선허가 → 자유무역지역 반입(7일 이내: 신고생략) → 보관 수리

157)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반입물품 내역이 담긴 매매계약서 등이 근거서류임

2) 내국물품¹⁵⁸⁾

- 내국물품은 기본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필요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 기계·기구·장비, 원재료, 운할유, 사무용 컴퓨터와 건축자재 등 관세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입근거자료로 활용됨
 - 이외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반출 시 해당 원재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됨¹⁵⁹⁾
 - 반입과 달리 반출은 엄격한 관리대상이기 때문임: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나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EDI 시스템에 반입 확인신청을 하면 즉시심사나 서류제출 심사(필요시 물품검사)를 거쳐 반입확인서가 발급됨¹⁶⁰⁾¹⁶¹⁾
 - 반입확인서 정정·취하를 신청할 경우 변동환급금을 환급지 세관에서 추징함

158)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물품이 아닌 것으로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과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물품을 포함함

159) 특허보세창고는 외국물품 장치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내국물품을 반입할 수 있고 장치기간도 반입일이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지만 자유무역지역은 이러한 전제조건이 없음

160) 심사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과 매매계약서를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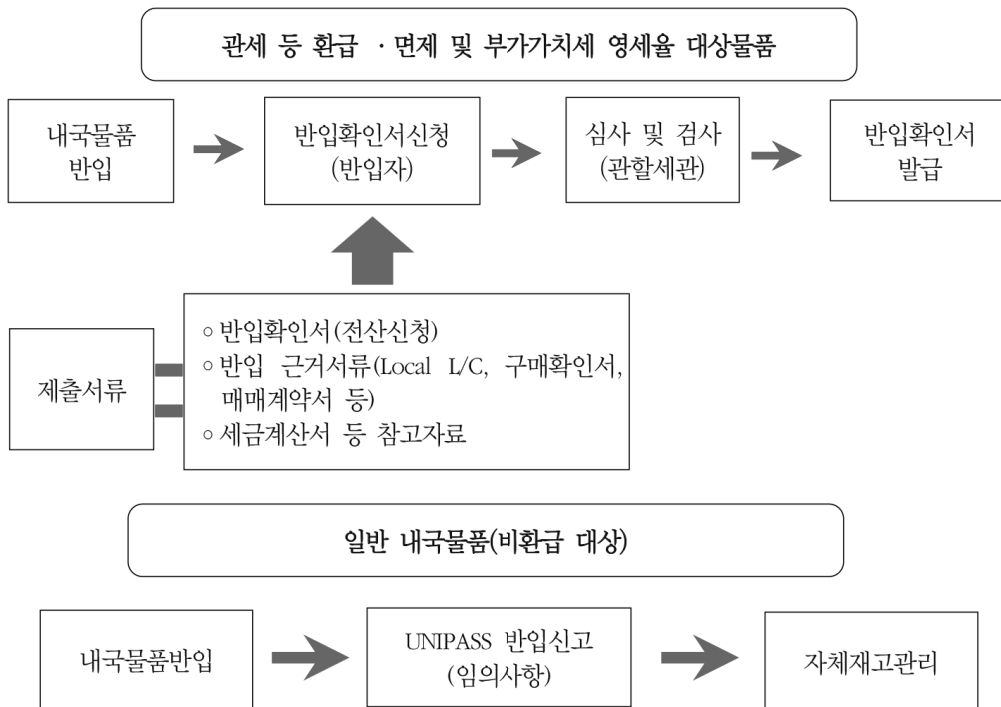
161) 서류생략 대상: 출입차량·휴대품·소비목적으로 반입된 사무용휴대품·음식료품담배·유류 및 후생복리용 소모품으로 반입사실이 확인된 물품, 휴대 작용용구

〈표 Ⅲ-3〉 내국물품 반입신고 사유

사용용도	물품종류	서식
관세환급	기계·기구·설비·장비·부분품, 원재료, 유탄유, 사무용 컴퓨터와 건축자재 및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 (법 제29조 1항 2호 물품)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부가세 영세율 ¹⁾	상과 동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반입근거자료	모든 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출시 반입근거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신청	내국물품 원재료: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한 물품 반입시 과세표준 공제용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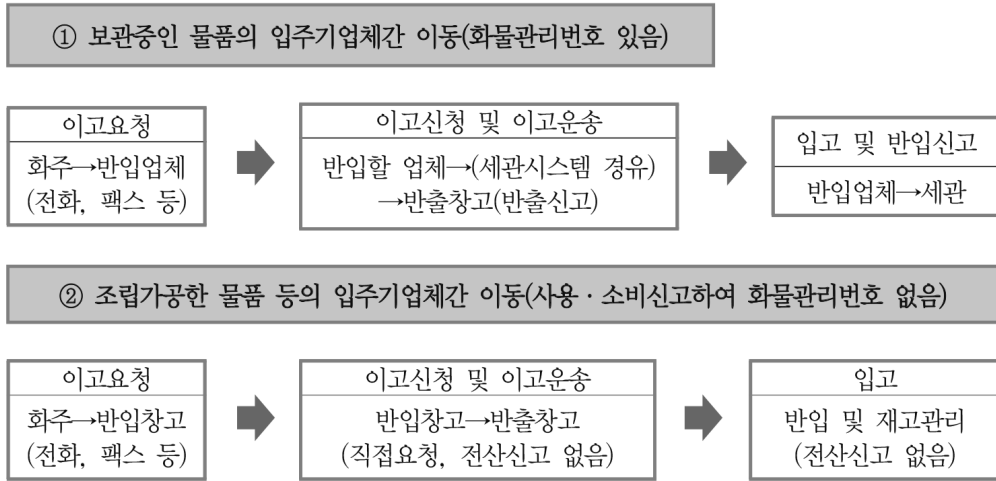
주: 1)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은 수출용 원재료로 한정됨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그림 Ⅲ-3] 내국물품 반입절차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그림 Ⅲ-4] 입주업체 사이의 물품 이동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다. 물품 반출신고

- 국외반출에 있어서 과세보류물품(외국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국외반출신고를 하고 이외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내국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관세 환급을 위하여 수출신고를 함
- 국내반출은 과세보류 상태인 보세운송, 일시반출과 역외작업 반출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고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기 위한 수입신고로 구분됨
 - 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전부 혹은 일부 사용·소비하여 제조·보수한 물품이나 혹은 그대로 반출할 때 이용함

1) 외국물품

- 외국물품 등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국외반출신고를 하며 그 이외 물품은 수출신고를 해야 함

- 이의 신고유형에서는 원상태 반출(반송), 환적 및 선용품 적재가 있음
- 제도가공 → 국외반출신고 → 보세운송신고(선적반출시 생략) → 심사 및 검사 → 신고수리 → 반출 및 적재(30일 기한) → 출항적하목록 제출

[그림 Ⅲ-5]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출유형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① 국외반출신고

- 국외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내역을 포함한 국외반출신고서를 수출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① 물품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 품목분류번호 ② 포장종류 · 번호 · 개수 ③ 목적지 · 원산지 및 선적지 ④ 사업자등록번호
 - 국외반출신고를 하면 자동수리, 즉시심사, 서류제출 혹은 검사대상으로 구분되어 해당 절차를 거쳐 신고 수리되면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선적해야 함¹⁶²⁾

○ 환적이나 수출신고 수리물품으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한 물품은 신고대상이 아님

〈표 Ⅲ-4〉 제도가공 후 국외반출 주요업무

주요내용	세관절차	유의사항
외국원재료를 반입하여 제조·가공이나 선별·분류·포장·상표부착·수선 등의 보수작업 ¹⁾ 후 완성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사용된 내국 원재료는 관세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 ²⁾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국외반출신고 반입원재료 재고관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입주업체가 아닌 반입자가 신청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원상태 반출시 필요

주: 1) 원산지 허위표시나 지재권 침해행위는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2) 화물관리시스템에 반입신고한 이후 사용소비신고를 하면 화물관리가 종결됨

② 기타 반출신고

- 외국물품 환적반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입 혹은 반송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적물품에 대해서는 환적화물특례고시를 준용하여 세관의 화물정보시스템에 반출·입신고를 하고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 함
 - 화물 적출작업 없이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에서 환적하면 반출입신고 없이 하선신고 이후 자체 반출입 기록관리로 같음함
 - 환적화물을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거나 화물 적출·입을 위하여 CY에서 CFS로 반출입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보세운송이 필요함

- 내국물품: 신고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출하려면 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¹⁶³⁾
 - 다만 유통이나 집배송 전문업체의 경우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

162) 부득이 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미선적시에는 물품 재반입 후 수리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163) 또한 품질불량이나 위약 등의 사유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동질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이후 내국물품 확인서 발급받아 대체대상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음

출하면 반입증명서류 제출이 생략됨¹⁶⁴⁾

- 반출확인 생략: 출입차량·휴대품·역내에서 사용 혹은 소비할 목적으로 반입된 사무용 휴대품·음식료품·담배·유류 및 후생복지용 소모품으로 반입사실이 확인된 물품, 휴대 작업용구·출입자의 개인용품

2) 수출입신고

① 수입신고

- 당해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은 수입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해야 함
 - 외국 혹은 내국 시설재와 상관없이 전부 내국물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나 과세 보류된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은 과세됨
- 수입신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이 있음
 - ① 역내에서 외국물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관세영역에 반출하는 경우
 - ② 외국물품 등을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 ③ 입주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④ 반입신고 제외대상물품을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표 Ⅲ-5〉 제도가공 후 국내수입 주요업무

주요내용	세관절차	유의사항
외국원재료 반입 후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국내수입 내국 원재료 과세표준 공제 고임금 국가 임가공료 절감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승인 수입신고 반입원재료 재고관리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내국물품화

164) 대신 목록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함

- 제도가공과 보수작업 후 국내 수입하는 경우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음¹⁶⁵⁾
 - 제조·가공공정의 경우 내국 원재료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과세표준 공제가 가능하며 보수작업은 미리 외국 원재료 수입신고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음

- 자체 재고관리가 가능한 입주업체의 경우 화물관리체계를 현행 B/L¹⁶⁶⁾ 단위에서 수량 단위로 확대하여 고객별로 상이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복해야 하는 B/L 분할·합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¹⁶⁷⁾
 - 즉, 제품 보관을 B/L 단위로 하여 상이한 B/L 단위에 속하는 물품의 주문 접수 시 B/L 분할·합병이 필요하였으나 업체 화물재고관리시스템이 개별 제품별로 B/L 추적 가능하면 B/L 분할·합병을 생략함

〈표 Ⅲ-6〉 보수작업(재포장·라벨링) 후 국내수입 주요업무

주요내용	세관절차	유의사항
제조·가공: 외국원재료 반입 후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국내수입 내국 원재료 과세표준 공제 고임금 국가 임가공료 절감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 내국 원재료 사용승인 수입신고 반입원재료 재고관리	제조·가공 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내국물품화
보수작업: 외국원재료 반입 후 보수작업(분류·재포장·라벨링) 을 거쳐 수입 B/L 분할·합병·물류작업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 수입신고 반입원재료 재고관리	B/L화물에 대한 보수작업은 특허보세구역과 달리 작업승인신청 및 완료보고절차가 생략
수입통관 후 분류·재포장: 완제품 수입신고 수리 후 재분류·포장하여 자유무역지역이 집배송장소로 사용	반입신고·수입신고 내국물품 반출신고 반입원재료 재고관리	내국원료 사용시 재고관리가 복잡하고 반출입 건수 상당(전산재고관리 필요)

165) 보수작업은 일반적으로 HS 품목분류(10단위)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분류·포장·용기변경·상표부착·검품·단순조립·수선 등을 활동을 말함(원산지 허위표시나 지재권 침해행위는 제외)

166) Bill of Lading(선하증권): 화주와 운송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운송업체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167)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글로벌 물류기지로 급부상, 인천공항세관 보도자료 2008.8.28

② 수출신고

-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¹⁶⁸⁾이 아닌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신고함
 - 국외반출신고는 과세 보류된 상태에서 반입되어 반출 신고를 하는 것으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으나 수출신고는 내국물품을 제조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이 적용됨
 - 수출신고수리물품에 대한 분출신고는 화물반출대장 기록으로 같음하고 선사 등은 기한¹⁶⁹⁾ 내에 적재신고를 해야 함

라. 입주업체 관리체계

- 관리권자로부터 입주허가가 나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업체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수출입화물시스템 등에 전산 등록됨
 - 입주허가 변경시에는 변경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허가 취소시에는 재고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6개월 내에 재고물품 정리를 통보함
 - 재고조사 결과 외국물품은 과세통관, 국외반출, 자유무역지역 내 양도나 보세구역 반입이 이루어지고 환급대상으로 반입 신고된 내국물품은 신고취하 및 정정이 이루어짐
- 입주업체는 공장 연면적 4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금융·보험업 등 입주지원업체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할 수 있음
 - 임대허가를 신청하면 임대 입주업체의 외국물품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조치함

168) 외국에서 도착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수출신고 수리물품,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된 기계·기구·설비·원재료·유탄유·사무용컴퓨터·건축자재,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된 환급대상 내국원재료

169)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이전이 원칙인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은 적재 전 가능하며 항공화물은 적재 전임

마. 화물관리체계

1) 내국물품 반출·입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면 반입확인서 등¹⁷⁰⁾ 내국물품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서류생략 대상: 출입차량·휴대품·소비목적으로 반입된 사무용휴대품·음식료품·담배·유류 및 후생복지용 소모품으로 반입사실이 확인된 물품, 휴대 작용용구

-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관은 반입신고, 내국물품 반입 확인서 신청, 수입신고, 역외작업신고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음
 - ① 물품 반입 없이 반입신고 ② 반입물품이 신고내역과 상이 ③ 신고물품 품명·규격·수량 확인 필요
 - 검사는 원칙적으로 반입 장소에서 실시하며 다만 검사가 어려운 경우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능 장소에서 검사를 수행함
 - 이외 사용소비, 수입, 국외반출, 수출신고 물품의 검사는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고시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일시 반출·입

① 일시 반출·입신고

- 일시 반출·입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고 통상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 반출하였다가 재반입신고를 할 수 있음¹⁷¹⁾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외국물품 등을 수리, 전시, 검사 혹은 불가피한 포장작업 등의 목적으로 일시 반출하는 경우

170) 수출신고취하승인서, 내국물품원재료사용승인서나 기타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171)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함

- 검사(측정)장비를 반출하여 관세영역에 있는 물품 검사(수리)작업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소모품 제외)
- 일시반출 신청 → 서류심사(반출목적 · 기간 · 반출수량 · 장소) → 일시반출 → 재반입신고
- 일시 반출입은 역외작업과 달리 원재료나 시설재의 제조 · 가공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대상물품에 대한 제한이 없음

② 역외작업 신고

- 역외작업은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등을 보세운송신고 없이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여 역외작업 장소에서 가공, 보수하여 재반입하거나 국외반출 혹은 국내 수입하는 작업을 말함
 - 대상물품은 원자재나 원자재 제조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¹⁷²⁾로서 작업기간은 원자재 1년, 시설재는 최대 3년 내에 계약기간임¹⁷³⁾
 - 역외작업은 입주업체가 전년도 원자재 가공 후 수출한 금액¹⁷⁴⁾ 100분의 60 이내 범위로 한정됨¹⁷⁵⁾
 - 역외작업 장소는 수탁업체의 공장이나 부속된 가공장소로서 입주업체의 관할세관에 위치할 필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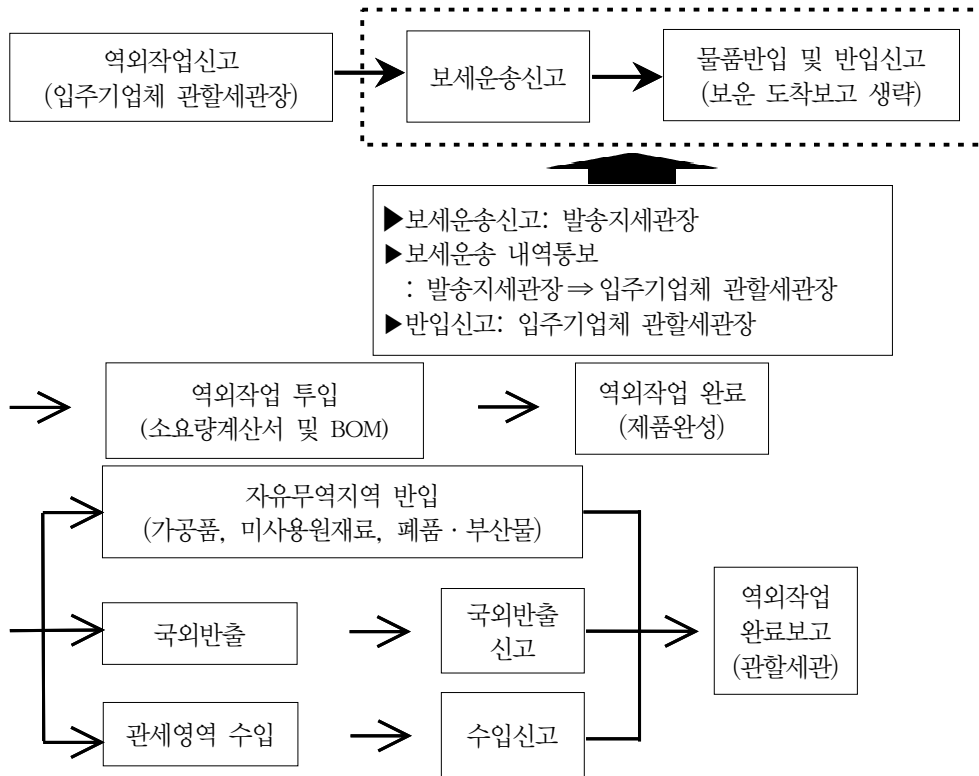
172) 시설재의 경우 세관장이 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함

173) 작업 미완료 등 부득이한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장소변경 신고도 허용됨

174) 대외무역법상 통관기준 수출 이외 중계무역, 내국수출, 용역제공,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포함(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175)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한 경우 월평균 기준 등의 신축적 적용이 가능함

[그림 Ⅲ-6] 역외작업의 화물절차 도해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 역외작업 신청시 작업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과 반출장소를 정하여 신고하는데 인터넷 통관포털을 이용할 경우 일정기간 포괄신고가 가능하고 또한 제출서류도 자율 보관할 수 있음¹⁷⁶⁾

○ 신고(서면·전산)¹⁷⁷⁾→역외작업 반출→역외작업→작업완료→완료 보고서 제출

○ 물품 반출·입 확인 생략과 업체 간 물품 반출·입 확인은 업체 간 자율관리가 가능하지만 불시 발취검사나 필요 시 수탁업체 재고 확인이 이루어짐

176) 동일한 작업장에 동일한 원자재를 공급하여 동일한 작업을 반복할 경우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역외작업 신고를 할 수 있음

177) 역외작업 수탁업체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약도, 시설배치도,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금액, 수량, 기간), 부산물 및 폐품 내역, 시설재나 금형의 타 용도 사용금지 서약서, 수출주문서·신용장 혹은 내국신용장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 작업이 완료되면 입주업체는 역외작업 완료를 보고하고 가공물품, 미사용 원재료, 폐품(부산물)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해야 함
 - 가공물품을 역외작업 장소에서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를 위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한 물품이나 폐품(부산물)로 세관장에게 미리 처분 신고한 물품은 제외됨

- 직반출·입신고제도
 - 입주업체와 역외작업 장소(수탁업체)가 먼 경우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원자재 등 외국물품을 역외작업 장소로 곧바로 반입하여 제품 생산 후 직접 자유무역지역 반입, 국외반출신고나 관세영역으로 과세 반출할 수 있음
 - 입주업체가 아닌 외국이나 다른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 함

- 이 경우 역외작업장의 위치와 상관없이 입주업체의 관할세관이 보세운송신고를 제외한 역외작업장소 반입, 국외반출, 수입 등의 관리 책임을 맡음
 - 발송지 세관이 보세운송을 승인하면 입주업체 관할세관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이후 보세운송물품 반입신고와 역외작업 신고를 받아 작업완료를 관리함¹⁷⁸⁾
 - 역외작업장 관할세관에게 보세운송 반입신고와 제품 처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3) 보세운송

-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선적을 위한 보세운송을 위해서는 수출신고서 서식으로 국외반출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음
 - 보세운송기간과 선(기)적은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며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여 신고수리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이외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보세구역외장치장 등으로 외국

178) 관세면제나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역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할 때에도 반입신고를 해야 함

물품을 반출할 경우 보세운송고시를 준용함

- 화주, 보세운송업자나 관세사가 보세운송을 신고하며 신용·포괄담보업체가 아닌 화주나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아닌 자는 관세 및 제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함
- 또한 물품감시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함¹⁷⁹⁾
- 일반 해상화물의 보세운송기간은 10일(항공화물 5일)이지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7일이며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하면 입주업체는 관세청 화물정보시스템상의 보세운송반입예정 정보와 보세운송신고필증 및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신고필증에 날인한 후 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해야 함¹⁸⁰⁾

□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이동할 경우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하고 화물시스템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같음하거나 입주업체 사이의 물품계약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고 이동할 수 있음

-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입주업체간 물품이동도 마찬가지로 업체 간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같음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세관 화물관리시스템에 반출·입 신고사항을 전송하려면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번호 등 근거번호가 필요하므로 자율적 화물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고운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함

□ 즉, 입주업체가 미리 반출·입 신고를 위한 업체부호를 등록하고 기존의 보세운송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출예정신고를 하고 반입신고를 함

- 이 경우 세관 전산시스템에서 모두 전산 처리되어 보세운송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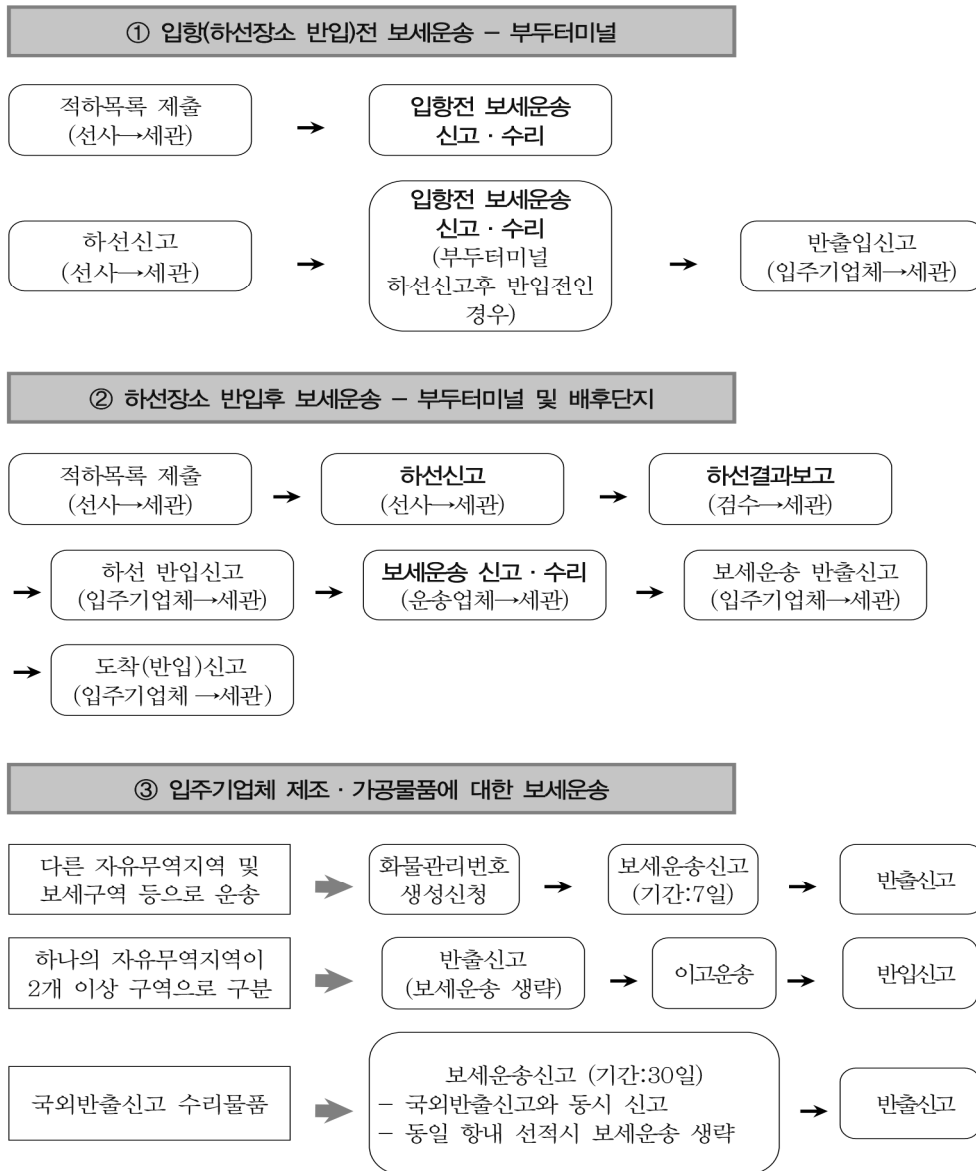
179)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3항: 보세운송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보세운송되는 물품, 검역, 위해, 유해물품, 보세구역 반입일이 30일 경과된 물품, 귀금속·한약재·의약품·향료 등 부피가 작은 고가품, 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분할운송품, 통관지 제한물품, 통관보류 혹은 수입신고 불가능 물품

180) 이 때 전자봉인 부착, 관세청 화물정보시스템상 보세운송예정정보와 보세운송신고필증와의 일치, 보세운송신고필증 차량번호,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일치 여부 및 파손과 현품 과부족을 확인해야 함

신속운송이 가능하며 과적, 담보, 승인, 장소 등 각종 제한 심사가 배제됨

- 화물관리번호가 있는 물품의 경우 세관시스템을 경유한 전산신고가 이루어지고 조립가공한 물품으로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물품은 직접 이고신청, 운송, 입고함

[그림 Ⅲ-7] 자유무역지역 물품 보세운송절차 도해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4) 재고관리방식

① 재고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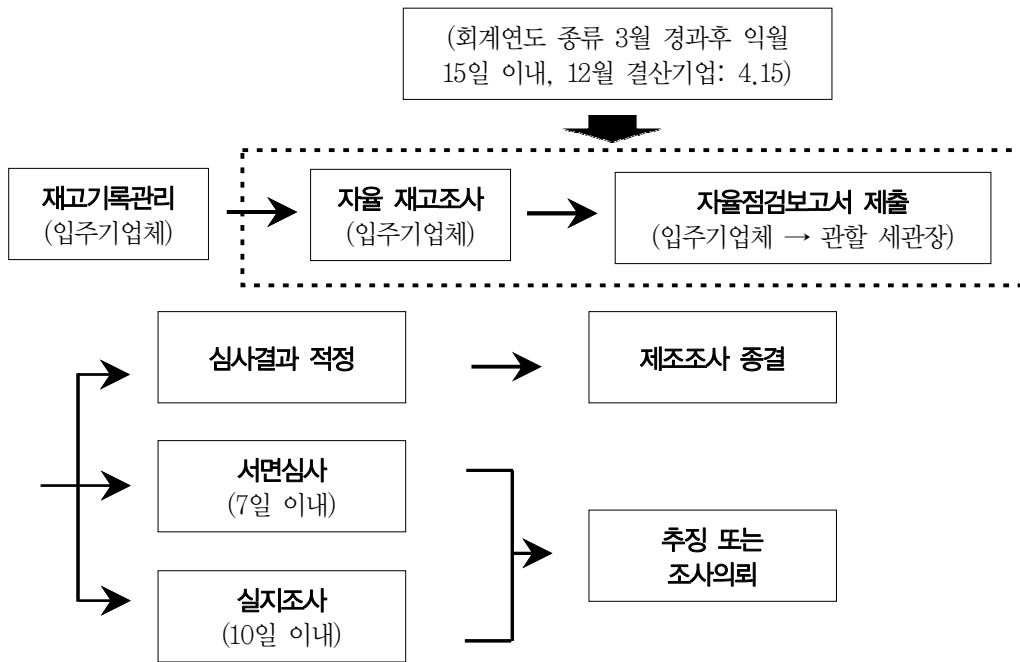
- 세관은 자율점검표를 심사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조사 생략, 서면심사나 실지조사 등 재고조사방식을 결정함(연 1회 실시 원칙)
 - 자율점검표가 적정하면 재고조사가 생략되고 일부 자료가 미비한 경우 진행되는 서면심사는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재고조사를 완결하는데 서면조사가 곤란하면 실지조사를 함

- 자율점검표 심사는 입주업체가 회계연도 종료 3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반출입물품 관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세관의 재고조사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함
 - 대상물품: 외국물품(사용소비신고 수리물품 포함), 부가가치 영세율 및 환급대상 수출품으로 신고한 내국물품,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 승인을 받은 물품
 - 제출자료: ① 원재료, 재고품, 제품 및 잉여물품 재고관리방법 ② 제품별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BOM) ③ 시설재 보유현황 ④ 폐시설재와 원부자재 등 잉여물품 처분 내역 ⑤ 반출·입 내역(반출입량, 기초·기말재고) ⑥ 기타 물품관리 참고사항과 의견(도매 및 창고업자 등은 ①~④ 제외)

- 서면심사는 재고조사 개시 10일 전 통보하여 자율점검표에 누락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시행되며 조사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가 마감되거나 7일 연장 혹은 실지조사로 심사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업체는 다음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수입신고필증(반입신고서),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국외반출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 가격결정자료, 재고기록장부, 실소요량 자료

- 실지조사도 조사 개시 10일 전 통지되고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장부/물품관리 소홀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위법사실 발견 시 관련 조치를 취함
- 조사대상: ① 자율점검표나 서면조사 자료를 기한 이내 미제출 ② 부정유출 우려 ③ 실소요량 관리가 불합리 ④ 서면조사 대상이나 제출서류로는 서면심사가 곤란 ⑤ 입주허가 취소업체
-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실지조사 연장이 가능함

[그림 Ⅲ-8] 재고관리절차 도해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② 법규 준수도에 따른 차등관리

- 입주업체의 물품관리¹⁸¹⁾와 업무처리체제에 대한 법규 준수도를 평가하여 입주업체를 A~E등급으로 구분하여 물품·재고 조사를 차등 관리함

181) 물품 반출·입 등에 대한 장부 혹은 전산 관리를 추후 재무제표 및 기타 서류에 연계하여 보세 화물 재고를 파악하는 일련의 체계

- A등급은 위법 사실이 없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업체로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시검색도 없음
- B, C등급도 위법사실이 없으나 수출/내수업체 여부 등에 따라 서면·실지조사에 차등을 두고 불시검색을 연 1회 이하 실시함
- 이외 D, E등급은 범위반(체납) 사실이 있거나 부도 혹은 신규업체로서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연 2회 불시 검색하고 E등급은 특히 필요 시 수시조사 대상임

〈표 Ⅲ-7〉 법규준수도와 재고조사방식

등급	기준	재고조사방식
A	최근 3년간 무역 관련 법령 위반사실 없음 내부통제시스템 관리 ¹⁾ · 재고조사결과 A등급	서면조사(단, 자율점검표 심사결과에 따라 실지조사 가능)
B	최근 3년간 무역 관련 법령 위반사실 없음 외투기업 · 수출주목적(80% 이상) · 재고조사결과 B등급	서면/실지조사 불시검색 연 1회 이하
C	최근 3년간 무역 관련 법령 위반사실 없음 내수전용, 수입과세후사용, 수출입 혼합형	실지조사 불시검색 연 1회 이하
D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사실 혹은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존재(체납일 7일 이외)	실지조사 불시검색 연 2회 이하
E	부도, 폐업, 휴업업체(1개월 이상) 신규업체(사업영위 3년 이내, 불법우려 존재)	실지조사(필요시 수시조사) 불시검색 연 2회 이하

주: 1) 내부통제시스템(자체 반출입 전산시스템),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이나 보세사에 의하여 관리되는 업체를 말함

자료: 마산세관 자유무역지역과, 「업무혁신 공유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통합 매뉴얼」, 2006

5) 화물 장치기간과 외국물품 폐기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모든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없으나 공항만의 경우¹⁸²⁾ 물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세물품 장치 고시를 준용하여 화물장치기간 및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물류신속화 자유무역지역)
-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3개월이며 경과물품은 체화나 공매 등 정리됨

182) 부산항: 신항 5개 부두터미널, 신선대부두, 인천항 내항 1~8부두와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 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물품¹⁸³⁾이나 장치보관물품이며 입주업체가 사용·소비하려는 내국물품으로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윤활유, 건축자재 등은 제외됨
- 또한 악성 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부도, 계약위반 물품 등 일부 화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반입일로부터 6개월 이후 공매 처리함
- 물류신속화 지역 이외 물품에는 장치기간이 없으나 외국물품을 멸실·분실·폐기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함
 - 멸실·분실의 경우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 추징이 이루어지고 고철 등 잔존가치가 있는 폐기품 수입 시 과세함¹⁸⁴⁾
 - 사용 소비 후 수입되는 중고 시설재의 경우 제1방법~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¹⁸⁵⁾
 - 폐기대상물품에 대한 국외반출(폐기) 명령이 내려지면 화주는 자기비용으로 폐기 혹은 국외반출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바. 내국물품 사용승인 및 공제

- 우선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내국물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함
- 한편 환급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을 신고없이 반입한 후 세관장 승인하에 외국물품 전부 혹은 일부와 함께 제조·가공·조립하여 국내로 수입할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완제품의 과세표준에서 내국 원재료의 수량 혹은 가격을 공제할 수 있음¹⁸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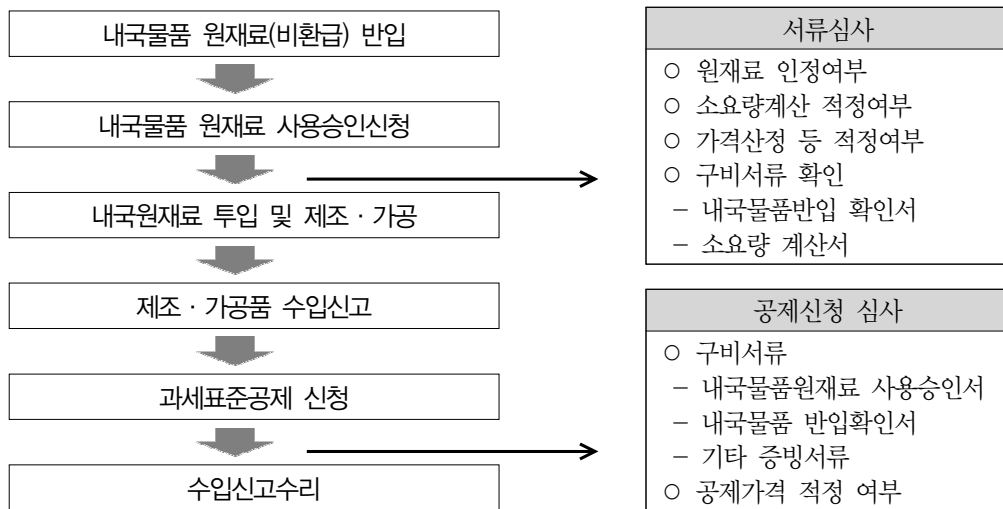
183) 반입된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되면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함

184) 자유무역지역법 제43조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것 중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반출절차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85) 실제로는 국내 공인감정기관 감정가격, 국내도매가격 시가역산율로 산출한 가격, 국내 신품에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함

- 대상 원재료는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¹⁸⁷⁾를 준용함
- 입주업체가 비환급 내국 원재료 사용 승인을 요청하면 세관은 서류심사를 거쳐 승인하고 이후 수입신고 시 과세표준공제를 신청함
 - 내국물품 반입확인서와 소요량 계산서를 제출하면 세관은 원재료, 소요량 계산,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함¹⁸⁸⁾
 - 공제신청서 사용승인서,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은 공제가격 적정 여부를 심사함
 - 당해물품의 반입일 혹은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을 기준으로 공제금액과 수량을 산정함

[그림 Ⅲ-9] 내국 원재료 사용절차



자료: 부산경남본부세관

186) 「자유무역지역법」 제44조(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제5-2조)

187)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1항1호: 입주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품이나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기계·기구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간접적으로 투입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포장용품 2) 2~3호: 보관 전시를 위하여 반입된 물품의 보수에 사용되는 물품

188) 내국물품의 품명·규격이 동일하고 소요량이 일정하면 일정기간 동안 일괄 승인이 가능함

IV. 미국 자유무역지역 운영방식과의 비교분석

1. 미국 자유무역지역제도(FTZ) 개황

- 미국은 대공황이 엄습한 1934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법(Foreign Trade Zone Act)을 제정하고 1936년 뉴욕에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음
 - 자유무역지역법¹⁸⁹⁾과 위원회 규정¹⁹⁰⁾은 Title 19 of the United State Code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세법의 일부를 구성하며 법 준수를 위하여 관세법 규정(19 CFR 146)이 따로 적용됨¹⁹¹⁾

-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공익성에 대한 심의(public interest review)를 거쳐야 하며 공익 이외 공공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외 운영기간, 관세영역으로의 반입 금지 혹은 특혜 수입품(PF status)으로의 강제 지정¹⁹²⁾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자유무역지역 설립이 승인될 수 있음
 - 특히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관세당국이 작업 개시를 허가해야만 비로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등 관세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음

- 자유무역지역은 일반적 목적의 구역(zone)과 준구역(subzone)으로 구분됨
 - 일반구역은 전통적인 공항만 시설이나 산업공단 혹은 미개발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
 - 반면 준구역은 일반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할 수 없는 석유정제나 자동차 조립 등 일

189) 19 U.S.C.(United State Code) 81a~81u

190) 15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400

191) 19 U.S.C. §(subtitle) 66, 81h, 81p, 1624

192) 한 예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물품은 특혜 해외물품 상태에서만 반입될 수 있음

정 용도의 제한적 목적으로 공익에 부합할 때 기업단위로 허용됨¹⁹³⁾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공항만 부근의 일정 지역으로 관세 목적상 외국영역으로 간주되어 수입품에 적용되는 각종 조치가 유예됨
 - 자유무역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제활동은 제조, 가공, 조립, 전시, 혼합, 재포장, 보수, 저장, 검사 등의 행위로서 제도가공 작업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The Board)의 별도 허가가 필요함
 - 즉,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제조 작업은 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신규 원자재 수입이나 새로운 완제품 제조도 허가가 필요함
 - 다만 내국세가 부과되는 다음의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될 수 없음: 주류, 알콜 함유한 향수, 담배, 설탕, 총기류 및 시계제품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와 지방세 유예(면제)¹⁹⁴⁾ 이외 주기적 신고 등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음¹⁹⁵⁾
 -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원료관세율이 완제품 관세율보다 낮을 경우 완제품이 아닌 부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Inverted Tariff)
 -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된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하면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외 자유무역지역에 기간 제한 없이 물품을 계속 보관할 수 있음

- 반면 법¹⁹⁶⁾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공급되는 물품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이러한 물품으로는 사무용 가구·기계설비, 역내소비를 위한 음식료품, 물품을 구성

193) 19 CFR 146.1(b)(17), 15 CFR 400.2(n)

194)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 혹은 보관되는 유형 개인자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세(중가세) 적용이 금지되며 수출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산품도 마찬가지임(19 § 81o(e)).

195) 자유무역지역 물품이 미국 관세영역에 반입되거나 NAFTA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관세는 납부함: 후자는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NAFTA 관세유예제도에 따라 캐나다 등에 납부한 관세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함

196) 19 U.S.C. §81c(a)

하지 않는 연료 이외 생산설비,¹⁹⁷⁾ 도구, 건설자재·장비 등을 포함함

- 따라서 이들 물품을 반입할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들여와야 하며 역
내에서 수입 원자재로 생산된 물품도 마찬가지임¹⁹⁸⁾¹⁹⁹⁾

□ 한편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설립자와 위원회가 허가하지 않는 한 소매사업을 할 수 없고
허가된 경우에도 내국물품이나 관세를 납부한 외국물품만 거래할 수 있음

- 국내소비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나가는 물품은 수입신고절차에 따라 반출됨
- 또한 구역 제한물품(zone restricted status)으로 반입되는 내국물품은 소비세나 관
세환급 등의 목적상 수출품으로 간주되어 직접 수출되어야 함

□ 2010년 당시 가동 중인 자유무역구역은 168개로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가액
은 구역 810억달러, 준구역 4,533억달러로 총 5,343억달러에 이룸

197) 다만 생산설비의 경우 역내로 반입하여 조립을 완성하고 사용을 시작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연기
할 수 있음(19 U.S.C. § 81c(e))

198) 한 예로 사무실용 가구 도매업자가 역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에서 가구를
꺼내면 수입신고를 해야 함

199) 정유공장 연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Hawaiian Independent refinery v. Unites States 460 F.
Supp. 1249 (Cust Ct 1978))

〈표 IV-1〉 미국 자유무역지역 경제활동 내역

(단위: 억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화물	총합	4,914	5,019	6,926	4,306	5,343
	구역	727	687	749	759	810
	준구역	4,188	4,332	6,177	3,547	4,533
	(준구역 비중)	85	86	89	82	85
내국물품 원료 ¹⁾	총합	3,019	3,003	3,962	2,486	3,112
	비중	61	60	57	58	58
	구역	451	384	406	370	417
	준구역	2,569	2,619	3,556	2,116	2,695
외국물품 원료	총합	1,895	2,015	2,963	1,820	2,231
	구역	276	302	343	388	393
	준구역	1,619	1,713	262	1,432	1,838
수출 ²⁾	총합	304	316	405	282	348
	구역	97	92	116	67	92
	준구역	207	224	289	215	256
수출/외국 원료	총합	16	16	14	15	16
	구역	35	30	34	17	23
	준구역	13	13	11	15	14
전체지역수(허가기준) ³⁾		256	354	253	253	254
운영 기준 ⁴⁾	총합	163	161	164	168	168
	구역	127	126	130	132	132
	준구역	257	256	254	261	263

주: 1) 내국물품 이외 국내소비를 위하여 관세를 이미 납부한 외국물품으로 반입된 물품을 의미함

2) 부가가치를 제외된 원료 기준임

3)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허가 건수에서 시간경과 등의 이유로 종료된 건수를 제외함

4) 준구역을 포함하여 실제로 1개 이상 작업이 개시된 자유무역지역을 말함

자료: US Foreign Trade Zone Board, Annual Report(2011)

2.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및 운영방식

가. 자유무역지역 설립과 운영 개시²⁰⁰⁾

1) 자유무역지역 당사자의 구성

-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상무성과 재무성 장관으로 구성되는데 상무성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명함
 - 세관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관세법 이외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련 법령을 집행함으로써 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관리 감독함

- 즉, 자유무역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세관 및 항만청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물통제를 제외하면 항만청장이 대부분 관리임무를 수행함
 - 위원회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동 지역의 설립과 관리유지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을 제정함²⁰¹⁾
 - 위원회는 설립자와 운영자의 사업장, 작업, 회계기록을 감독하고 역내작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제활동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매년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함

200) <http://ia.ita.doc.gov/ftzpage/info/ftzstart.html>.

201) 15 CFR 400.11

〈표 IV-2〉 미국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관리감독 역할 구분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세관	항만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심의·인가 • 관련규정 제정 • 역내작업 제한·금지 • 설립자·운영자 감독 • 벌칙부과·설립허가 취소 • 의회에 성과 보고 • 공식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반출입 통제 • 세수 관리 • 화물관련 법령 준수 확인 • 물품 양도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대리인: 구역 관리 • 화물반입·운영·이동 등 관리 • 설립·허가 취소 자문 • 구역 가동 승인 • 운영자 담보(Bond) 설정 • 벌칙 부과 • 필요시 운영·작업활동 금지

- 항만청장(Port Director)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대리인으로 관리감독업무를 위임받고 자유무역지역 설립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함
 - 항만청장은 설립 인가 이후 업무 개시²⁰²⁾를 허가하며 물품관리과 함께 운영자로부터 담보(bond)를 제공받고 벌칙을 부과하거나 필요 시 업무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항만청장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세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항만청장과 세관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세관은 자유무역지역법(19 USC §81c, e, o(b))에 따라 재무성 장관이 도입한 규정²⁰³⁾을 이행하고 또한 지역 관련 업무(§81d)를 수행함

- 자유무역지역 자체의 이해 당사자는 설립자(grantee), 운영자(operator), 사용자(user)로 구분될 수 있음
 - 설립자: 자유무역지역 설립 권한을 허가받은 공공기관 등으로 시설·설비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장부기록²⁰⁴⁾을 유지하고 매년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함
 - 운영자: 항만청장의 동의 아래 설립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책임 수행을 위한 담보(bond)²⁰⁵⁾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 설립자나 운영자와의 협약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공간이나 건물을 임대하여 물품 보관이나 제조 등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체로 물품 반입, 처리나 반출

202) Activation: 자유무역지역 화물신분을 취득한 물품의 반입과 처분을 허가하는 승인 행위를 말함

203) 19 CFR 146

204) 15 CFR 400.46(a), (b)

205) 19 CFR 113.73(19 CFR 146.6(d), (e))

을 요청하는 자는 사용자임²⁰⁶⁾

-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물품에 대한 신고는 통관지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또한 물품 검사는 통관지에서 수행하지만 세관이 자유무역지역 안에서의 검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하려면 보세운송이 필요함²⁰⁷⁾
 - 통관지 세관이란 물품이 위치하거나 도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관할 세관을 말함
 - 이 밖에도 항만청장이 동의할 경우 신고서류나 물품검사가 다른 통관지 세관에 제출할 수 있음²⁰⁸⁾
 - 내국물품과 달리 관세영역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송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운송되는 수입품(우편물품 포함)은 보세운송이 필요함²⁰⁹⁾

-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려면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운영자가 물품 인수를 확인해야 함
 - 즉, 물품 반입 및 화물 신분(status) 지정을 위하여 반입신고서(CBPF 214)²¹⁰⁾를 제출하면 세관장이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허가함²¹¹⁾
 - 신고자격이 있는 자가 반입신청을 해야 하는데 다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있으면 관세사나 운영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함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자가 30일 전에 신청하면 항만청장은 반입신고절차에 따르지 않고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음(Direct delivery: 직접인도절차)²¹²⁾
 - 해당 물품은 세관 검사나 물품 도착 이전 서류심사가 필요 없는 물품이어야 함
 - 대상물품과 역내작업이 미리 통보되고 예측 가능하며 위험도가 낮고 반복적인 성격

206) 준구역의 경우 보통 사용자와 운영자가 동일함

207) 보세운송의 예외는 19 CFR 112.2 참조

208) 이러한 예외는 세관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특수장비가 없는 경우 혹은 통관지 세관으로 물품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말함

209) 19 CFR 18, 112, 125, 146.11, 144.37(g)

210) Customs Form 214(Application for Foreign Trade Zone Admission and/or Status Designation)

211) 또한 통계자료 목적상 Customs Form 214A도 같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12) 19 C.F.R 146.37(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어야 함

- 또한 운영자가 물품의 소유주거나 구입자이어야 함

2) 설립 및 가동

- 전술한대로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설립 허가와 함께 항만청장(세관)의 작업개시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운영이 개시됨
 - 즉, 위원회는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승인하고 운영인에게 관리감독을 위임한 이후세관이 별도로 물품 반입을 승인해야 자유무역지역에서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음
 - 특히 자유무역지역법²¹³⁾에서는 화물관리를 위하여 재무성 장관이 따로 규정²¹⁴⁾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관은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함
-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나 가공작업은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위원회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함
 - 또한 설립허가 당시 운영기간이나 작업내역 등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함
 - 기존 자유무역지역 확장 등 중요한 사업변경 사항은 설립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승인됨
- 세관은 설립 당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고 설립 승인 이후 작업개시 신청서가 제출되면 일련의 조사과정을 거쳐서 작업개시(가동) 여부를 결정함
 - 작업개시는 자유무역지역 화물신분을 취득한 물품이 역내로 반입되어 제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함
 - 작업개시 신청서와 함께 장부기록 시스템에 대한 작업매뉴얼을 제출해야 하며 사후 심사를 거쳐서 매뉴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 항만청장은 신청서 내용, 인적 사항, 시설 및 화물보안체계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는데 특히 법령에 구속되지 않고 가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²¹⁵⁾

213) 19 USC §81c

214) 19 CFR 146

- 설립허가 이후 5년 이내에 작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설립 승인이 취소됨
- 항만청장이 작업개시를 승인하고 운영자가 담보를 제출하면 화물이 반입되어 각종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음
 - 대체로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외국물품 평균가액에 상당한 세금이 담보액으로 설정됨²¹⁶⁾
 - 주요 사업 변경이나 지역 확장 등 중대 사안을 제외한 경계선 조정이나 작업 중단 혹은 운영인 변경 등 사업 조정의 경우 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

3) 자유무역지역 화물신분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특혜 외국물품, 비특혜 외국물품, 내국물품, 구역제한 물품 중 한 가지 신분을 부여받고 이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음²¹⁷⁾
 - 화물 신분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신청하는 자나 화물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지만 반덤핑제품처럼 제품에 따라 특혜물품의 지위를 강제로 부여받을 수도 있음
 - 반입 시점에 화물신분이 결정되지만 규정이 허가하는 경우 나중에 반입물품의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음
- 특혜 외국물품은 역내작업으로 인하여 물품이 변형되어도 역내로 반입될 당시의 상태에 따라 과세되는 제품으로 완제품 세율이 부품세율보다 높으면 특혜물품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함
 - 또한 반입 이후 품목분류가 변경될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특혜물품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일단 특혜물품 신분을 부여받으면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고 보세창고로 양

215) 세관이 사전에 허가하면 작업 개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보세창고, 컨테이너운송 장소나 중앙검사장(CES)으로 사용할 수 있음

216) 따라서 반입화물이나 역내작업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담보가 수정될 수 있음

217) 금지대상물품, 환송물품, 단순작업(보수)을 위한 일시장치 물품, 대기물품, 사무용품 등 자유무역지역법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의 물품 등은 화물신분이 부여되지 않음

도될 수도 없음

- 비특혜 외국물품은 반면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시점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관세가 적용됨
 - 반입 이후 특혜물품이나 구역제한물품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지만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작업을 거친 물품은 신분 전환이 허용되지 않음
 - 특혜물품이나 구역제한물품이 아닌 역내 외국물품은 모두 비특혜 물품으로 간주되며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내국물품임이 확인되지 않는 물품도 동일함

- 내국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내국세를 납부한 물품²¹⁸⁾이나 관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한 수입물품을 말함
 - 내국물품은 반입신고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와서 제조, 전시, 멸실, 폐기, 단순작업²¹⁹⁾ 등의 과정을 거쳐서 관세영역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되어 재고장부 시스템에서 내국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신분이 다른 물품과 결합 혹은 혼합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사전허가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구역제한물품은 수출, 폐기 혹은 보관을 위하여 관세영역에서 반입된 물품으로 환급이나 보세 등의 내국세법 적용에 있어서 수출품으로 간주됨
 - 역내 물품도 제조가공 이후 구역제한물품의 신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단 신분이 부여되면 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음
 - 국내외물품 모두 구역제한물품의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보세창고에서 반입된 물품, 수출 목적의 물품,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주류·담배 등의 물품은 구역제한물품으로만 반입할 수 있음
 - 구역제한물품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관세영역으로 반출될 수 없고 수출 등의 목적으로 반입되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나 가공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음²²⁰⁾

218)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은 구역제한물품으로만 반입할 수 있음

219) 우리나라의 보수작업에 해당함

나. 화물반입과 역내작업절차

1) 화물반입

- 금지물품이나 조건부 수입물품을 제외하면 모든 국내외 물품이 관세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수 있음
 - 수입신고 자격이 있는 자나 대리인이 반입신고서(CBPF 214)를 제출하여 항만청장의 승인을 받고 운영인이 신고서에 인수사실을 서명하고 재고장부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이 반입시점이 됨
 -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은 인수보고서 등에 기록하고 물품이 실제로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면 반입으로 간주함

-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을 반입신고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들여와서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세법에 따라 세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경유물품은 항만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증빙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물품은 반입신고서에 '일시장치'를 표시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올 수 있음
 - 이들 물품은 모두 관세법을 적용받으며 일정 기간²²¹⁾이 지나면 역외에 유출되거나 수입이나 반입 등 정식신고가 필요함

- 반입신고서와 함께 상업송장, 운송업체의 인출허가서(하역신청서), 기타 항만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전자신고를 제외하면 통계자료 목적의 반입신고서 복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입신고가 거부되거나 사기나 오류의 경우 처벌받음
 - 동일한 운송신고를 통하여 같은 날짜에 동일한 신청인에게 인도되는 선적화물에 대해서는 일괄신고가 허용됨(blanket admission)
 - 항만청장은 중앙검사장을 위시한 하역장이나 물품 도착장소에서 운영인의 책임 설

220) 단순작업도 물품 수출, 보관 혹은 멸실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함

221) 일시장치는 원칙적으로 5일간 보관이 가능하며 항만청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 등을 위하여 물품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에 적시해야 함

- 항만 등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동하는 물품은 모두 보세운송 절차를 밟아 이동해야 함²²²⁾

□ 항만청장이 반입을 승인해야 운영인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데²²³⁾ 세관조사가 없으면 운영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가동 중인 구역으로 물품을 인수함

- 우선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물품 상태와 수량을 반입신고서와 상업송장 등 각종 증빙 서류와 비교 점검하며 항만청장에게 인수 사실을 보고함²²⁴⁾
- 오차가 발견될 경우 운송업체와 공동으로 오차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차이에 대한 운영인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또한 포장화물에는 고유의 구역관리번호²²⁵⁾를 부여하는 등 인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가 불완전한 물품은 '반입정지목록'에 기입하여 나중에 정식 반입함
- 이후 구역관리번호를 기준으로 물품수량, 날짜, 가액, 화물신분, 물품명세서 등 인수 보고서 내용을 재고장부 시스템에 입력하여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함
- 정식반입절차를 밟아 반입된 내국물품은 동일한 방법으로 인수, 관리하고 이외 사전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은 재고장부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함

□ 운영인이 구입한 물품으로 위험도가 낮고 반복적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30일 전에 서면 신청하면 반입신고(허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양도될 수 있음(직접인도절차, direct delivery)

- 다만 세관이 물품반입시점과 그 이전에 일상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 전부나 일부에 대한 직접인도를 취소할 수 있음
- 도착 전후 현물검사나 서류심사가 필요없는 물품으로 반입물품²²⁶⁾과 역내작업 내역

222) 항만 안에서의 이동도 물품인도서(CBPF 6043: Delivery Ticket)를 제출하여 세관이 승인하면 보세 운송함

223) 직접인도절차에서는 반입신고와 허가절차가 생략됨

224) 반입신고서, 상업송장, 운송서류 등 각종 증빙서류는 반입신고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된 반입물품목록(zone admission file)에 보관함

225) 구역관리번호체계(zone lot system)를 말하는데 이외 화물식별번호(UIN)나 세관이 승인한 재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이 잘 알려져 있고 장기간 변동 없는 물품이 그 대상임

- 운영인은 보세운송서류에 서명하여 자신의 담보하에 물품을 인수하고 보세운송서류를 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세운송절차를 종료하며²²⁷⁾ 모든 선적물품이 반입되면 반입신고서에 주석을 달아 그 사실을 항만청장에게 보고함²²⁸⁾
- 인수보고서와 오차보고서 및 재고장부 시스템 입력 등은 일반 반입절차와 동일함

- 수출 목적의 주류·담배제품으로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이나 관세환급 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구역제한물품으로 반입이 허용됨
 - 일부 상황에서는 다른 신분을 부여받아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자유무역지역에서 실제로 수출되거나 폐기되어야 함
 - 반입신고서상의 운영인의 양도 확인이 수출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양도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운영인의 서명이 있는 신고서²²⁹⁾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원상태 환급의 경우 반입 이전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입신고서 대신 사용해야 함

2) 역내작업

- 금지물품을 제외한 모든 국내외 물품은 관세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 판매, 전시, 분할, 재포장, 조립, 유통, 정리, 분류 혹은 외국물품과 혼합되거나 제조된 이후 수출, 폐기되거나 혹은 관세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음
 - 그러나 법²³⁰⁾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된 물품은 과세되고 또한 관세법을 적용받으며 대신 역외에서 허용되는 모든 작업이 가능함

226) 새로운 종류의 물품에 대한 허가는 자유지역무역 위원회 허가와 함께 세관이 물품을 숙련되게 처리할 기회가 필요함

227) 전자신고에서는 도착 완료가 보세운송서류를 대체함

228) 물품 도착 이후 15일 이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지 않으면 수입신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방출되어야 함

229) 자유무역지역의 위치와 번호, 포장갯수·종류·표시 형태, 중량 등을 포함한 물품 명세서, 물품 양도인 등을 포함해야 함

230) 19 U.S.C. § 81c

- 운영인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모든 단순작업, 제조, 폐기, 전시와 보안 및 보관 상태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즉, 운영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수입자나 소유주가 물품을 보관 혹은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또한 운영인/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명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역내로 반입하고 제조 가공할 수 있음²³¹⁾
 -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도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 없으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세관이 법령 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화물안전 등에 우려가 있으면 항만청장은 결함이 보완될 때까지 역내작업이나 물품 인수를 정지할 수 있음

-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 이외 다른 물품은 세관의 반입, 일시장치, 직접인도 혹은 이와 유사한 승인 없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할 수 없음
 - 반입신고서별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포장화물에는 구역관리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기타 재고관리방식에서도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가 되어야 함
 - 또한 구역관리번호 등을 부여받은 모든 물품은 물품위치시스템에 따라 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은 작업개시가 허용된 지역 이외 장소에 보관할 수 없음²³²⁾
 - 내국물품도 작업이 개시된 지역에 보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내보낼 경우 그 사실을 재고장부기록에 입력해야 함
 - 그러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동일한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 다만 세수 확보와 법 집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항만청장은 언제나 자유무역지역 신분을 취득한 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231) 신고 시점에는 신고권한이 있는 자가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음(toll processing): 19 U.S.C. § 1484

232) 그렇지 않으면 허가 없이 물품을 양도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역외에 나가는 물품은 제외함

- 자유무역지역에 정식으로 반입되면서 화물신분을 취득한 물품과 다음의 이유로 화물신분을 부여받지 못한 물품은 따로 장치해야 함: 일시장치물품, 경유물품, 직접인도절차물품, 조사대상물품, 관세영역으로 실질적으로 양도된 물품, 사무용품 등 자유무역지역법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의 물품
 - 또한 반출신고가 승인되어 관세영역으로 실질적으로 양도된 물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유무역지역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별도로 보관되거나 운영인이 양도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항만청장은 대체 가능한 물품과 섞일 가능성이 있는 구역제한물품에 대하여 별도 보관을 요구하는 등 반입시점에 보관방식을 지정할 수 있음

-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은 작업신고서(CBPF 216)를 세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단순작업, 제조, 전시 혹은 폐기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함
 - 항만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모든 작업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승인 후 취소의 경우 신청인은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음
 - 내국물품의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요구하거나 다른 자유무역지역 신분을 취득한 물품과 결합 내지는 혼합되는 경우 작업허가가 필요함
 -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하여 작업을 변경하거나 생산을 상당히 확대하거나 원료 구입처를 변경하거나 혹은 완제품 관세율(inverted tariff)을 적용받는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작업은 1년 단위의 일괄신청이 가능함(blanket operation)
 - 일괄작업을 허가받은 운영인은 일괄작업 목록이나 재고장부 시스템에 작업내용을 기록하고 작업 신고서는 반입물품목록에 보관해야 함
 - 항만청장이 현장 감독을 수행하지 않으면 운영자는 작업신고서에 작업결과를 기록해야 함(일괄작업은 제외)

- 운영자는 작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물품을 폐기할 수 있고 1년 단위의 일괄 신청도 가능함²³³⁾

- 상업적 잔여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은 폐기가 아닌 단순작업으로 간주됨
 - 구역제한물품 폐기로 발생한 잔여물은 수출 혹은 보관이 가능하지만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공익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으면 관세영역으로 반입될 수 없음
 -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폐기가 어려우면 역외작업도 허용되는데 이 경우 세관의 현장 감독이 있을 경우 세관은 작업신고서에 서명하여 확인함²³⁴⁾
-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반입, 제조, 단순작업, 전시 혹은 폐기하려면 운영인의 동의를 필요하며 또한 운영인 자신이 물품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³⁵⁾
- 따라서 유기물품이나 소유주가 체납한 물품 처분에 대한 책임은 운영인에게 있음
 - 즉, 소유주가 서면으로 물품을 포기하면 운영인은 해당 물품을 처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처분이 가능함
- 운영인은 세관이 작업개시를 승인할 때 요구한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세관의 화물 보안기준에 따라 화물 안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세관직원을 자유무역지역에 파견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설립자가 운영자와 경비계약 체결하여 자유무역지역 보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운영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자나 물품 소유주가 물품을 보관, 유지 혹은 취급하고 관련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심각한 보안기준 위반이나 중대한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세관이 포괄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결함이 발견되면 손실청구, 작업정지²³⁶⁾ 혹은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운영인은 내국물품을 포함한 화물 도난이나 의심 사례를 즉각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233) 주류는 폐기를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수 없고 다른 목적으로 반입된 주류를 폐기하려면 관할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234) 구역제한물품도 마찬가지로 항만청장이나 운영인이 현장감독을 할 수 있음

235) 19 CFR 146.71(a)

236) 중대한 화물 손실을 유발하는 만성적이고 개선되지 않는 보안 결함에 대해서만 작업정지조치가 취해짐

-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도난은 대체로 주간교역 혹은 무역물품의 도난으로 간주되어 최대 25만달러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처벌됨
- 항만청장은 자유무역지역 직원이나 물품 운송, 전달, 인수를 위하여 고용한 사람에 대한 신원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다. 물품양도절차

1) 기본원칙

-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온 국내외 물품은 원 상태나 제조가공을 거쳐서 수출, 폐기 혹은 관세영역으로 양도(transfer)될 수 있음
 - 양도는 화물신분을 취득한 물품을 소비, 수출, 운송, 보관이나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함
 -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외국물품은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다른 물품과 결합 혹은 부품을 구성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²³⁷⁾
-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을 제외한 그 어떤 물품도 적정한 양도신고²³⁸⁾에 의한 세관의 허가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될 수 없음
 - 한 예로 다른 화물신분을 적용받는 물품의 부품을 구성하지 않는 내국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세관 허가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될 수 있음
 - 이 경우 운송업체, 소유주, 구입자 등의 인수 영수증으로 입증되듯이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양도되고 또한 재고장부 시스템에 물품 양도가 입력되면 해당 내국물품은 양도된 물품으로 간주되어 화물신분을 상실함
 - 이 밖의 물품은 세관이 양도신고를 허가하고 운송업체, 수입자 혹은 당사자가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실제로 이동하도록 서명하면 자유무역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양도된 물품'²³⁹⁾으로 간주되어 운영자에게 부여된 감독책임이 해제됨

237) Second Proviso, 19 U.S.C. § 81c(a)

238) 19 CFR 146

- 항만청장은 실물조사 없이 물품 양도를 허가할 수 있지만 운영자에게만 물품을 양도해야 하고 그 이후 운영자가 수입자나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음
 - 운영자가 별도로 물품 양도를 허가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물품 양도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운영자가 반출을 거부하면 양도신고는 취소됨
 - 세관의 현장조사가 없으면 운영자는 양도신고나 기타 관련 양식에 표시된 물품 수량과 상태에 한하여 그 책임을 부여받음²⁴⁰⁾
 - 운영자는 신고서상의 수입자나 운송업체가 서명한 인수 영수증을 수령해야 그 책임에서 해제되고 또한 오차보고서를 통하여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운영자는 화물신분을 취득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전출)된 모든 물품을 재고장부 시스템에 기록해야 함

- 관세영역으로의 양도를 허가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유무역지역에서 나가야 함
 - 이들 물품은 실질적으로 관세영역으로 반출된 물품이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가로 제조나 단순작업을 할 수 없고 다른 물품과 격리되거나 구분이 가능해야 함
 - 다만 수입신고, 운송 혹은 운송 및 수출을 목적으로 주기적 신고가 허용된 물품은 제조나 단순작업이 가능하고 반출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이 제공될 수 있음
 - 또한 운영자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면 양도허가가 난 물품도 기한 없는 보관이 가능한데 다만 수입시점에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장부기록을 유지한다는 수입자의 서약이 필요함

2) 수입신고

- 외국물품이나 구역제한물품은 일반적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서(CBPF 3461)를 전자나

239) constructive transfer: 실물조사 등에 따른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물품이 실제로 관세영역으로 이동하기 이전에 수입신고를 승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화물신분을 상실하여 자유무역지역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운영자에게 책임이 부여됨

240) 운영자는 항만청장의 지시에 따라 운송수단을 봉인할 권한이 있음

서면방식으로 제출하고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해야 함

- 통상적인 방식에서는 수입신고서(CBPF 3461)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송장, 포장명세서와 이외 물품 양도를 위하여 항만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함²⁴¹⁾
- 요약신고(import summary)는 수입신고 이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수입자가 원하면 수입신고시점에 요약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또한 일정 상황에서는 항만청장은 요약 수입신고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밖에 항만청장은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즉시인도절차를 승인할 수 없음

□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물품 양도가 허가됨²⁴²⁾

- 항만청장이나 물품 양도를 신청하는 자가 요구하면 운영자는 물품 반입 당시 제출한 검사보고서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함²⁴³⁾
- 구역제한물품은 정부 기관의 특별허가나 신고면제가 있어야 세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

□ 특혜 외국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반입을 신청한 시점의 물품의 성격, 상태 및 수량과 당시 관세율 등에 따라 품목이 분류됨²⁴⁴⁾²⁴⁵⁾

- 특혜물품으로 지정되면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고 자유무역지역에 정식으로 반입되지 않은 물품은 화물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물품으로 간주됨
- 특혜물품에 대한 제조 등으로 2개 이상의 물품이 생산될 경우 관세 등은 물품분리시점의 상대가격에 따라 분배되며 회수 가능한 폐기물도 특혜신분을 유지함

241) 자유무역지역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물품이 장치된 자유무역지역, 화물신분, 사용자 이름, 외국 제조업자에 대한 정보(MID: 외국산 물품이나 특혜물품), 물품 원산지 등을 입력해야 함

242) 건별 담보금은 대체로 물품가액과 관세 등의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며 포괄담보는 5만달러를 최저한으로 이전연도 관세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243) 반출 당시 실물검사는 일반 수입품 보다 적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부분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 당시 조사대상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거나 또는 반복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물품이기 때문임

244) 19 CFR 146.65(a)(1)

245)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물품은 수입 상태로 특혜물품으로 지정되지만 관세영역으로 수입할 때에는 반입시점의 관세율이 아닌 수입시점 관세율이 적용됨

- 반면 비특혜 물품의 경우 관세영역으로 수입 신고된 시점의 물품의 성격, 상태 및 수량과 당시 관세율 등에 따라 품목 분류됨
 - 특혜물품이나 내국물품의 제조가공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비특혜 물품으로 간주됨

-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되는 물품가액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 반입을 초래한 거래를 위하여 실제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법정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임²⁴⁶⁾
 - 실제 지불한 금액이나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양도 당시 전체 완성품 가액(zone value)²⁴⁷⁾에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가공 혹은 제작비용, 일반경비 및 이윤과 운송·보험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관세평가액이 됨
 - 관세 평가액은 수입신고되는 완성품 제조나 작업에 투입된 외국물품의 가격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가공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이나 부산물 가액은 제외됨
 - 외국물품 제조 등에서 발생한 회수 가능한 폐기물이나 부산물은 이들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되도록 초래한 거래에서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평가됨

- 한편 2000년부터는 세관이 허가하면²⁴⁸⁾ 제조물품을 포함한 모든 자유무역지역 물품에 대하여 사용인이나 운영자가 1주 단위의 주기적 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처음 날 추정 수입신고서(CBPF 3461)를 제출하고 개별 HS 물품의 성격과 수량 및 물품가액을 명시한 견적서를 첨부해야 함
 - 주기적 신고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약식신고(entry summary)를 해야 하는데 수입신고서에 명기된 HS 품목수가 주기적 신고에 적시된 품목 수를 초과하거나 물품 수량 혹은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입신고는 승인되지 않음

246) 19 CFR 146.65(b)

247) 해당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되도록 초래한 거래에서 판매자에게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이러한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양도된 물품과 관련된 모든 부품비와 가공비용을 포함함(19 CFR 146.65(b)(1))

248) 세관이 승인한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설치하여 신고와 관세납부를 하고 회계, 운송 및 기타 물품 통제가 세관기준을 만족해야 할 수 있음

- 다만 주기적 신고(및 보완신고)²⁴⁹)에 적시된 물량을 초과한 물품 반출은 수입허가 없는 반출로 운영인의 담보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물품 반출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됨
- 주기적 신고에서는 수입신고 이후 제조 등의 작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아직 수입되지 않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후 물품이 반입되고 요약 수입신고서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주기적신고가 허용됨
 - 식약청(FDA)이 규제하는 물품에 대한 주기적 신고는 식약청과 세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절차에 따라 식약청과 세관에게 서면신청을 해야 함

3) 수출신고

- 수출방식은 물품양도 형태에 따라 직접수출, 즉시수출과 간접수출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직접수출은 관세영역으로의 양도 없이 세관운송인(cartman)이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수출선박 등에 직접 선적하는 방식을 말함
 - 즉시수출은 자유무역지역이 위치한 항만에서 수출하지만 우선 관세영역으로 양도되는 방식으로 운송신고서에 즉시수출을 위한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운송인이 화물을 선적장소로 운반하여 수출절차를 진행함
- 간접수출은 다른 항만으로 운송 및 수출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양도되는 방식으로 운송신고서에 '운송·수출'을 명기하며 보세운송인에게 수출 책임이 부여됨
 - 선적분할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구역제한물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은 수출신고 이후 수입신고로 변경할 수 있음
 - 부두 책임자나 항공사가 동의하면 보세구역이 아닌 부두나 공항에 90일간 화물을 보관할 수 있고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함

249) 주기적 신고가 적용되는 7일 동안 추가되는 수입물품을 위하여 보완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수출신고는 운송신고서(CBPF 7512)를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운송신고서 복사본을 운영인, 세관, 보세운송업체 및 수출선박에 교부해야 함
 - 수출 신고인은 각종 진술서를 운송신고서에 첨부하고 직접수출과 즉시수출방식의 경우 담보확인서(CBPF 301)를 항만청장에게 제출하며 구역제한물품은 이서를 받아야 함
 - 담보 당사자는 수출을 책임진 자이며 ‘운송·수출’을 담당한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수출 증빙서류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 우편을 이용한 수출이 가능한데 이 경우 우편물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세관운송인이 우체국으로 이송해야 함

- 세관 혹은 수출선박의 대리인이 운송신고서에 수출선적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담보가 해지되는데 수출사실에 대한 증빙책임은 운송업자에게 있음
 - 즉,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항만청장은 수출신고인이나 보세운송업자에게 손실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출신고를 하였지만 선적되지 않은 물품은 항만청장이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받음
 - 다만 수출선박 등이 인수하지 않은 화물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환될 수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이 다른 항만에 있을 경우 물품 반송을 위하여 새로운 운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 신고한 물품을 신고 없이 미국에 다시 하역되면 불법 수입된 물품으로 간주됨
 -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이 수출 후 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을 적용받아 국내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내부품만으로 제조된 사실이 규정에 따라 확인되는 물품은 감면이 가능함²⁵⁰⁾

- 운영인(사용자)이 주기적 신고를 명기한 운송신고서²⁵¹⁾와 함께 견적서(일정표)를 같이

250) 19 CFR 146.67(e): 품목분류 98부 Sub-Chapter I 참조

제출하면 1주 단위의 주기적 수출신고가 허용될 수 있음

- 주기적 신고는 세관을 대신하여 운영인이 개별 운송신고서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7일간 세관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지만 수입신고와 달리 수출물품에 대한 운송업자의 인수 서명이 있어야 함
- 항만청장이 승인하고 신청서를 반환하면 물품 양도를 시작할 수 있는데 실제 양도물량이 신고물량보다 많으면 보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운송신고는 물품을 이동하는 보세 운송업자가 인수를 서명한 시점으로 간주되며 운영인은 운송업자가 물품을 인수한 날 다음 영업일까지 항만청장에게 운송신고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 항만청장은 운영자 그리고/혹은 신고인이 보세운송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여 운송업체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운송신고서를 접수하면 세관은 즉시 보세운송시스템에 입력하여 항만 사이의 화물 이동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주기적 신고가 종료되는 주의 두 번째 영업일까지 신고인은 항만청장에게 고유 보세운송번호에 따른 개별 운송신고서와 함께 양도물품목록을 제출해야 함
- 실제 양도물량과 신청물량이 차이가 나면 이를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양도물량이 더 많으면 운영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환급절차와 다른 규정이 적용됨

- 부품 수입일²⁵²⁾로부터 5년 이내에 완성품이 수출되지 않으면 제조에 따른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품 수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하지 않거나 폐기되지 않으면 미사용에 따른 환급이 허용되지 않음
- 완성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특혜 외국부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제조 이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환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음

251) 물품별 명세서와 함께 기간 및 관세평가액을 명시해야 함

252) 부품 수입일은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일이나 수입신고일이 아니라 19 CFR 101.1에 규정된 날임

- 한편 비특혜 외국부품을 사용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반출되었다가 나중에 수출되면 직접 혹은 대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4)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양도

- 다른 항만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이동할 수 있으며 혹은 법이 허가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항만에서의 수입신고나 보세창고로의 보세운송이 가능함
 - 자유무역지역 사이의 물품 양도도 건별 혹은 주기적 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서면신고에서는 운송신고서(CBPF 7512)에 자유무역지역 물품임을 명기하고 화물 신분과 출발지 자유무역지역 고유번호를 기입하고 필요하면 구역제한물품, 섬유제품, 다른 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이동 등을 명기하거나 이서를 해야 함
 - 한편 자동 전자신고시스템(ABI)의 보세운송신고절차를 이용하면 주기적 신고가 필요 없이 운송신고서를 발급받아 이송할 수 있음
- 만약 동일 항만에 위치한 다른 운영자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양도하려면 운송신고서에 즉시수송을 표시하여 승인받음
 - 이 경우에도 세관운송인, 보세운송업체 혹은 물품을 인수하는 운영인이 운송을 직접 담당하며 물품이 도착하면 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물품을 보내는 자유무역지역 운영인은 해당 물품의 이력서도 함께 보내야 하며 항만 청장은 물품인수시점에 운송신고서 복사본을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이와 달리 동일한 항만에서 같은 운영자가 담당하는 자유무역지역 사이의 물품 이동은 물품인도서(CBPF 6043)를 승인을 받거나 또는 항만청장이 승인한 지역물품 통제 시스템에 따라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항만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양도하려면 보세운송절차(QP/QX 7512)에 따라 즉시수송을 신고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또한 물품을 인수하는 운영자에게 해당물품의 이력서를 보세운송물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함

- 구역관리번호에 의한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유지되고 있는 물품의 경우 다음의 자료를 송부해야 함: 반입신고서(CBPF 214) 원본, 반입 당시 제출된 모든 송장(보고서), 반입 이후 물품신분 변경 당시 제출된 반입신고서 복사본 그리고 물품 제조나 단순 작업시 제출한 작업신고서(CBPF 216) 복사본²⁵³⁾
 - 구역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송부해야 하는 자료는 이와 유사하지만 세관이 승인한 재고관리방식에 따른 자료임
-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물품이 반입되는데 다만 항만 청장은 세관의 물품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이전 자유무역지역에서 취득한 물품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에도 이전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을 고려하여 화물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함
 - 물품을 인수받은 운영인은 물품이력 서류를 반입신고서와 함께 보관하고 관련 정보를 재고장부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또한 물품을 양도한 운영인도 양도시점으로부터 5년간 모든 자료를 유지해야 함
-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자유무역지역 물품은 일정 절차에 따라 다른 항만으로 이동하여 수입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 보관될 수 있음²⁵⁴⁾
- 이 경우 운송신고서(CBPF 7512)에 명시하여 도착지 항만청장과 하물 인수인에게 양도의 성격을 주지해야 함
 - 즉, 물품 구입자나 소유주 등 신고 당사자가 올바르게 신고할 책임이 있음

5) 일시 반출, 보세창고, 선용품, 구역제한물품 양도

- 항만청장이 허가하면 화물신분을 취득한 물품도 최대 120일간 보수, 복원 혹은 부수작

253) 이와 같은 자료 송부가 어렵거나 상당한 서류작업이 필요할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운영자는 운송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물품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신분, 물품가액, 관세평가액, 수량, 물품 명세서, 화물식별번호(반입 후 신분변경과 세번변경을 초래하는 단순작업 수행 여부)와 함께 이들 자료가 자신의 재고장부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함

254) 그러나 주류나 담배제품이 원래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되지 않고 이동하게 되면 일정 기한 내에 내국세를 납부해야 함

업²⁵⁵⁾을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잠시 반출될 수 있음

- 물품 소유주나 구입자가 작업신고서(CBPF 216)를 제출해야 하는데 1년 단위의 일괄적인 일시전출은 허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반출된 물품은 운영자의 담보책임 아래 있으며 그 상태에서 관세영역으로 수입될 수 없음
- 신고서상의 물품이 모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환되면 신청자는 작업 신고서에 반환 사실을 서명한 작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일시반출기록을 종식함

□ 일시반출에서는 보수를 제외하면 다른 물품을 추가하거나 결합하지 않고 물품가액이 추가되지 않아야 하는 등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우선 승인 이전에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동하지 말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금지된 작업이나 거래를 위하여 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 또한 120일 이상의 기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건별로 양도된 물품과 반환된 물품의 수량이 대조되어야 함²⁵⁶⁾

□ 규정에 의하면 특혜신분을 취득한 외국물품은 관세 등을 납부해야 관세영역으로 반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등의 납부가 지연될 수 없음

- 따라서 특혜 외국물품이나 이러한 부품으로 구성된 물품은 보세창고로 양도하기 위한 신고를 할 수 없음
- 그러나 특혜부품이 포함되지 않은 비특혜 외국물품은 수입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보세창고에 양도, 보관될 수 있음²⁵⁷⁾
- 구역제한물품의 경우 내외국물품 공히 보관후 수출을 조건으로 보세창고로 양도신고 할 수 있으며 보관 후 수출 이외 다른 조건은 자유무역위원회 허가가 필요함
- 이외 내국물품이나 이미 수입 신고한 물품은 보세창고로 반출될 수 없음

255) incidental operation: 환급법상(19 U.S.C. § 1313(a))의 제조 가공이 아닌 검사, 분석, 측정, 견본, 세척, 재포장, 측량, 복사 등의 작업을 말함

256) 다만 상이한 신청건이지만 특정장소에 이동하였다가 다시 반환되는 대체가능한 물품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추적이 가능하면 됨

257) 19 CFR 146.64(d)

- 마찬가지로 특혜 외국물품이나 이러한 부품이 포함된 물품은 일시보세수입절차(TI B)²⁵⁸⁾를 통하여 반출될 수 없음
 - 구역제한물품은 자유무역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승인하고 일반적 수입신고 이외 다른 형태의 신고를 지정하지 않으면 일시 보세수입이 가능함
 - 한편 비특혜 외국물품은 특혜 외국물품을 포함하거나 1년 이상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되어 있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보세수입절차에 의한 양도가 가능함

- 이외 특혜 외국물품은 무역 전시를 위한 반출신고가 허용되지 않음
 - 구역제한물품은 자유무역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승인하면 전시용으로 반출되었다가 통상의 수입신고가 가능함
 - 특혜 외국부품을 포함하지 않는 비특혜물품은 전시용으로 반출되었다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
 - 외교·국제기구용품은 일반수입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운영인이 별도로 통제할 책임이 있음

- 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되는 물품과 보수 유지를 위한 물품은 선(기)용품으로 간주되어 수출에 따른 면세가 적용됨
 - 그러나 미국 국기를 장착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되는 물품은 수출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구역제한물품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²⁵⁹⁾
 - 어선의 경우 주류에 대한 면세는 어업허가를 받은 등록된 미국 국기 어선이거나 혹은 5톤 이상의 외국 국가 어선에 대해서만 허용됨²⁶⁰⁾
 - 자유무역지역 물품을 선용품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신고서와 함께 진술서

258) Temporary Importation Bond: 미국으로 반입된 이후 1년 안에 재수출되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한시적으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제도임(HS Subchapter XIII, HTS 9813.00.05 ~75)

259) 다만 미국 국기를 장착한 선박(어선 포함)이나 항공기에 공급되는 물품 중 음식료품, 필름, 페인트, 로프, 연료 등은 면세가 가능함

260) 마찬가지로 국내 담배제품의 선적과 관련하여 세관은 선박 정원, 일정 및 항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세물량이 적정하며 항해용품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선박 소유주가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를 제출하고 일반적인 양도절차를 밟는데 담보확인서(CBPF 301)도 제공해야 함

- 구역제한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출, 폐기 혹은 보관²⁶¹⁾ 등의 용도로만 관세영역으로 양도될 수 있음
 - 다만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공익을 이유로 양도방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허가하면 국내소비나 보세창고 혹은 즉시운송 등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음
 - 그러나 구역제한물품이 미국산 물품이나 이전에 정상적으로 수입물품일지라도 다시 수입신고하고 관세법에 따라 면제가 되지 않는 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다만 품목분류 98부 Sub-Chapter I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²⁶²⁾
 -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물품 반출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물품가액이 50만달러 이하이면 사무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항만청장이 수입신고서에 이서해야 함
 - 구역제한물품은 보세창고에 일시장치 후 수출될 수 있는데 수출 목적의 포장작업 이외에는 어떠한 단순작업도 허용되지 않음²⁶³⁾

6)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반환

-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정해진 기한 이내에 물품이 반출되지 않거나 반출되더라도 그 이후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지 않고 내국물품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다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항만청장이 수입 승인을 취소해야 함
 - 수입 승인이 취소된 물품은 가장 근래의 화물신분을 다시 부여받아야 함
 - 수입신고에 포함된 물품 일부만이 반환 혹은 보류되는 경우 그에 상당한 관세는 수입자에게 반환되고 나중에 관세영역으로 양도될 때 다시 수입신고해야 함
 -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²⁶⁴⁾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261) 구체적으로는 운송·수출, 수출을 위한 보세창고 일시장치, 멸실(주류 제외),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양도, 선용품 포함함

262) 수출 이후 원상태로 재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임(19 CFR 146.67(e))

263) 항만청장은 해당 물품이 국내소비용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약 수입신고서(CBPF 7501)에 이서해야 함

- 이러한 규정은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입하고 난 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다시 반환하여 관세율이 높은 완성품으로 추가 가공되거나 수입이 금지된 물품으로 변환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 그러나 관세법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수입신고 이후 관세영역으로 들어왔다가 자유무역지역으로 다시 반환되는 물품임이 확인되는 화물은 내국물품으로 반입되어야 함
 - 또한 다음의 물품은 수입 승인이 취소되지 않음: 내국물품, 수입신고 면제물품, 보유기간이 제한되지 않은 물품, 생산설비나 건설자재를 포함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소비되는 물품, 구역제한물품으로 다시 반입된 물품, 무형재화

7) NAFTA 관세유예도

- 자유무역지역은 미국 관세영역에서 제외되지만 NAFTA에서는 미국 영토에 포함되므로 NAFTA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음
 - 하지만 특혜관세와 수출에 따른 부품 면세라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 그리고 일시 보세수입제도(TIB)에서 제조나 상태 변경²⁶⁵⁾을 거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출되면 미국 국내수입으로 간주되어 해당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부과됨
 - 다만 미국 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부과한 관세에 상당한 부분을 감면해주기 위하여 최대 60일간 미국에서 관세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²⁶⁶⁾
- NAFTA 환급대상물품은 모두 관세유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었다가 원 상태로 캐나다 등에 수출되는 물품은 NAFTA 관세유예제도가 적용되지

264) 즉, 역외 장치기간, 사용 및 판매 여부, 물품 반환을 신청한 자의 신분(수입자 등), 사전적인 반환 의도, 역외에서의 추가 제조가공 여부와 함께 내국물품으로 반환됨으로써 고율 관세나 수입 규제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함

265) 동일한 상태(same condition)란 검사, 포장, 세척, 손질, 방부제나 상표 부착 등의 작업이 가능하지만 물품 성격을 바꾸지 않는 작업을 의미함(19 CFR 181.45(b)(1))

266) 19 CFR 181.53

않음

- 또한 NAFTA 국가가 원산지이거나 완제품이 이들 국가에서 무관세를 적용받으면 제외되며 이외 사탕무당, 캐나다로 수출되는 감귤류와 의류 부품도 마찬가지임
- 한편 수입자는 동 제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서를 하고 운송신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관세유예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약식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세관이 수출일로부터 60일간 수입신고를 보류하면 운영인은 그 동안 수출과 캐나다나 멕시코 관세 납부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차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들 국가에 납부한 관세가 미국 관세보다 많으면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라. 관리감독과 장부기록의무

1) 세관의 관리감독

□ 세관은 운영자의 장부기록과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상태 그리고 운송업체, 공급자 및 구매자의 기록을 대조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관리 감독함²⁶⁷⁾

- 다만 1986년 사후심사제도 도입으로 세관의 관리감독체계는 운영자에 대한 이행평가나 사후심사 등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대신 운영자가 담보 책임하에 실물 관리를 담당함²⁶⁸⁾
- 즉, 항만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품 인수, 배송, 보관, 장부기록, 폐기, 제조, 처분, 보안 등의 모든 작업은 운영자가 담보 책임하에 관리함²⁶⁹⁾
- 이와 같은 전반적인 책임을 위하여 반입, 처리, 제조, 전시나 폐기를 신청할 때 운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항만청장은 허가를 거부해야 함

267) 세관 관리감독권의 범위와 성격은 19 U.S.C. § 81a~u, 19 CFR 1646a, 161.2, 146에 제시됨

268) 운영자의 장부기록 관리와 보고의무에 대한 규정은 19 CFR 146 참조

269) 운영인은 사용자가 행사하는 관리 수준을 참작하여 자체적인 관리감독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 세관은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물품검사를 통하여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물품 인수·배송·역내작업을 허가하며 이후 화물 및 장부기록에 대한 운영인의 관리 책임을 결정함
 - 그 이후에는 사후심사나 이행조사를 통하여 운영자의 관리감독을 점검하고 담보에 대한 손실청구 등을 통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음
 - 규정 위반 시 세관은 최대 90일간 작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고의적이고 반복적 입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음

- 불시점검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지되는 사후심사(audit)는 운영자 회계장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서 많게는 수개월간 소요되며 심사 빈도도 기밀사항임
 -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이행조사(compliance review)는 장부나 물품 상태 등에 대한 현장검사로서 위험관리평가에 따라 고위험군은 1년에 최소 3번 그리고 저위험군은 2년에 최소 1번 수행됨
 - 이와 별도로 항만청장은 실물조사를 세관에 위임할 수 있는데 운영자는 세관조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세관 재량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직원이 세관요원을 수행할 수 있음

2) 운영인의 장부기록의무

- 운영자는 세관심사에 대비하여 법에 규정된 모든 장부기록²⁷⁰⁾을 수입시점이 아닌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이 양도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지해야 함
 - 세관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운영인은 재고장부에 대한 ‘절차 매뉴얼’을 세관에 미리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세관에 통보해야 함
 - 운영자는 재고장부기록에 대한 관리를 사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음

- 운영인은 내국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의 일시장치나 반입 이후 신분 취득과 변경, 각

270) 19 CFR 163.4와 19 CFR 146을 의미함

중 작업 및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 물품 양도까지 사후심사에 필요한 물품 추적
을 위하여 모든 회계기록을 재고장부 시스템에 적시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 이외 물품 반입이나 양도 시 신고서와 상이한 물품에 대하여 항만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물품의 신분, 수량, 성격, 품목분류, 가액 등의 자료를 유지해야 함
- 장부기록에 입력되지 않아 내국물품임이 확인되지 않는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
되지만 확인이 가능하면 외국물품과 혼합되어 완성품이 만들어져도 내국물품의 지
위를 유지함

□ 우선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운영인은 구역관리번호체계²⁷¹⁾ 등
을 이용하여 인수보고서²⁷²⁾에 기록하고 반입신고서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으면 항만청
장에게 통보해야 함

- 이후 운영자는 물품 추적을 위하여 구역관리번호 등에 따라 인수보고서 내용²⁷³⁾을
재고장부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함²⁷⁴⁾
- 또한 반입신고서 복사본, 물품조사서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입신고서 일련번호에 따
라 '반입물품목록'에 보관해야 함
-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장부기록에 입력이 불가능한 물품은 보완이 이루어져 정식으로
반입신고가 될 때까지 '반입정지목록'에 기록하고 세관심사에 대비함

□ 반입물품목록에는 반입시점의 신고서 복사본, 물품조사서 및 각종 증빙서류 이외 반입
이후 물품 전시, 단순작업, 제조가공, 멸실(폐기) 혹은 양도에 대한 세관 허가서 복사본
과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동안 물품의 상태나 수량 변화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 복사본이 보관됨

271) 개별 반입물품이 하나의 구역을 구성하면 반입신고서 번호가 구역관리번호가 될 수 있지만 하나
의 반입신고서에 포함된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구역관리번호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구역관리번
호는 반입신고서 번호와 다를 수 있고 또한 물품이 결합되어 새로운 완성품을 구성하면 새로운
구역관리번호가 필요할 수 있음

272) 인수보고서는 다른 물품과 구별하여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함

273) 수량, 반입일자, 물품가액(가능한 경우), 화물신분, 부품·상품번호 등을 포함한 물품 명세서 등임

274) 재고관리방식은 세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리방식을 통하여 구역관리번호 등에 따
라 물품 위치, 화물신분, 물품가액, 일자별 및 물량별 기초잔액· 누적인수· 전출· 조정분, 멸실,
폐기· 부산물 등에 대한 추적이 관리됨

- 한 예로 운영인은 허가받은 단순작업, 제조가공, 전시 혹은 일시전출 또는 폐기 사실의 증명을 작업허가서(CBPF 216)²⁷⁵⁾에 명시해야 함²⁷⁶⁾
 - 반입목록은 구역관리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 유지되며 이후 물품이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양도되면 운영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과거 이력에 대한 목록을 인계해야 함
- 운영인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연차정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보고하고 요청이 있으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고서는 구역관리번호(화물식별번호)별로 물품에 대한 명세서, 화물신분, 시작물량, 누적 인수·양도, 말기잔량, 연간 누적 조정물량 등을 포함하고 이상 상황에 대해서는 세관에 보고함
 - 운영자는 연차보고서와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장부와 차이가 있으면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재고조사에 앞서서 필요한 경우 세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3) 오차보고의무

- 운영인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인수, 반입, 반출, 제조, 폐기, 전시되는 모든 물품과 장부 기록, 화물안전 및 보관 상태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세관조사 없이 반입 승인된 물품에 대하여 운영자는 즉각 물품 수량과 상태를 확인해야 함
 - 운영인은 항만청장의 승인 하에 봉인을 탈·부착할 수 있고 이상 상태에 대해서는 항만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화물을 그대로 보관해야 함
 - 통상적인 경우 항만청장이 사전에 반입을 허가한 물품의 경우 운영인이 인수사실을 서명하는 시점부터 운영자가 화물에 대한 책임이 지게 됨²⁷⁷⁾: 그러나 양도허가를 받

275) Application for Foreign Trade Zone Activity Permit

276) 일괄작업신고(blanket application)의 경우 운영자가 작업결과를 재고장부시스템에 기록하여 사후심사에서 물품 추적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277) 그러나 직접인도절차나 일시장치절차의 경우 운영인이 물품을 인수하고 서명하는 순간부터 책임

아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한 물품의 경우 반입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보세운송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하고 반입허가가 아직 없는 물품 중에서 봉인이 손상되거나 오차가 있는 벌크화물에 대해서는 운영인이 보세운송업체와 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공동으로 보고해야 함
 - 한편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한 이후 20일 이내에 손상되지 않은 봉인화물이나 포장화물의 내용물에서 오차가 발견되면 운영인은 적하목록 오차보고서와 함께 물품인수나 수입사실이 없다는 증명서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함
 - 20일이 경과한 물품의 이상 상태는 반입 이후 신고절차를 따름

- 봉인이 손상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세관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반입허가서에 적하목록 물량과 인수물량과의 차이를 기록함으로써 운영자인의 책임이 면제되는데 세관감독 없이 하역을 승인받는 경우 그 차이를 보고해야 함
 - 온도 차이 등에 의한 자연적인 벌크화물의 물량 변화는 보고할 필요가 없고 또한 독립적인 측량보고서를 통하여 물량 조정이 가능하지만 석유제품은 물량이 1% 이상 차이가 나면 보고가 필요함
 - 손상물품의 경우 공제신청서(CBPF 4315)를 제출하면 항만청장이 조정하여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

- 한편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도착하여 물량 차이 등 이상 상태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상이 발견되면 보고 등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됨
 - 반입 이후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장부상 차이가 있는 물품의 경우 항만청장이 다음의 물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운영인이 관세납부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처음부터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적정한 허가 없이 반출되지 않았거나 혹은 화재 등의 재해나 증발 등 자연적 원인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없어져서 관세영역으로 유입되지 않은 물품

- 정식 수입되면 100달러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절도, 위법 반입 혹은 1%²⁷⁸⁾ 이상 물량이 부족한 화물²⁷⁹⁾에 대해서는 항만청장에게 5일²⁸⁰⁾ 이내에 서면보고해야 함
 - 이외 물품은 장부기록에 입력하고 연차조정보고서에 물품 차이를 명시하면 됨
 - 기록 오류 등 사무적 착오에 의한 물품 차이는 항만청장에게 보고하고 서로 상계하는 등 재고기록 수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상기 1%/\$100 요건은 확인할 수 없는 분실품에만 해당하며 고의나 사기 혹은 태만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물품 차이는 손실청구 대상임
 - 한편 과다물품이 발견되면 5일 이내에 반입이나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운영인은 관세액이나 물품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물품 오차는 재고장부와 연차조정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러한 입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여 물품 수입시 제출하도록 해야 함
 - 화재 등 천연재해나 온도차이 등에 의한 자연적 용량 변화는 운영인의 책임이 아니지만 1%/\$100 요건을 충족하면 보고하고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CBPF 4315)
 - 자연적 용량 변동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 항만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업절차 매뉴얼에 명기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 보고가 필요 없지만 담보금 조정을 위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고 수입시점에 물품가액 조정이 허용됨

-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물품을 양도할 때에는 세관감독이 없을 경우 수입 혹은 양도신고서에 명기된 물량과 상태를 기준으로 운영인의 책임이 해제됨
 - 다만 책임 종료를 위해서는 항만청장이 물품 양도를 허가하고 운영인은 운송업체의 서명 영수증을 확보해야 함
 - 세관이 현장 조사를 할 경우 이상 상태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복사본 등에 명기되고

278) 1% 요건은 누적적인 개념으로 운영자의 사업연도에서 일련의 물량부족 사태가 1%를 초과하는 시점에 보고함

279) 구역관리번호 등이 부여된 화물을 말하며 허가가 필요없는 내국물품은 절도가 아니면 보고할 필요가 없음

280) 절도의 경우 즉시 전화 등을 통하여 항만청장에게 보고함

이에 따라 운영인의 책임이 조정됨

- 만약 양도 이후 15일 이내에 운영인과 보세운송업체 혹은 수입자 등이 공동으로 서명하는 오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항만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운영인의 책임이 조정될 수 있음

4) 물품, 작업 혹은 양도규제

- 자유무역지역법에 규정된 물품을 제외하면 모든 내외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보관, 판매, 전시, 재포장, 유통, 분류, 제조, 가공될 수 있음
 - 수입금지물품은 압류대상이지만 국내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관계기관의 승인하에 역내에서 작업을 거쳐 수입될 수 있음

- 또한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공익, 보건 혹은 안전을 침해하는 물품이나 작업공정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배제할 수 있음
 - 특정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지만 대체로 특정 공정의 배제, 기한부 허가 혹은 화물신분 부여 배제 등 일정한 거래나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이 많음
 - 자유무역지역에서 허용되는 제조활동, 완성품과 부품의 범위는 자유무역지역 허가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제도가공이나 부품 공급처의 변경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수입금지 혹은 공익저해 물품 이외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반입절차를 지키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이 거부될 수 있음
 - 또한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던 물품이나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주류 및 담배제품²⁸¹⁾은 구역제한물품으로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이 가능함
 - 총기류는 별도의 규정과 보안체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물품은 특혜 외국물품의 신분으로만 반입이 허용되며 이후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할 때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적용됨

281) 이전에 미국에서 수출된 담배제품도 관할당국의 증명서가 있어야 수입되거나 또는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음

- 모든 제도가공 작업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새로운 공정은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연방관보에 공지되어야만 작업이 가능함
 - 특별허가가 없으면 작업 중인 구역에서는 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지만 같은 자유무역 지역이라도 작업개시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는 소매업이 가능함
 - 자유무역지역법에서 허용하는 (단순)작업을 제외하면 주류, 담배 혹은 총기류를 역 내에서 제조할 수 없음
 - 다만 의약품, 식료품 혹은 향료제조를 위하여 면세 상태로 반입된 증류주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세금을 납부하고 반입된 변성 증류주는 환급대상임

- 철강제품에 대한 모든 제조 가공작업은 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외국 철강부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정으로 완성품을 국내 수입하는 공정은 아예 금지될 수 있음
 - 혹은 수출용이 아닌 철강제품의 경우 완성품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하거나 폐철회수공정을 금지하기도 함
 - 이 밖에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철강제품이 있으면 선박 등의 물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한편 섬유, 설탕 혹은 육류 등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이나 수출 목적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관세나 쿼터물량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함
 - 한 예로 품목 세번이나 원산지가 변경하는 섬유공정을 금지하거나 석유제품은 제조 가공 이전에 특혜 외국물품의 지위를 부여받고 정제과정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함²⁸²⁾
 - 이외 물품에 대한 과거 규제는 다음과 같음: 1) 특정 외국산 색소를 이용한 프린터 잉크 제조 금지 2) 타이어, 골프카트, 체인 톱 제조에 대한 완성품 관세 선택권 (inverted tariff) 제한 3) 텔레비전 튜브(TV tube)의 품목분류와 관세율을 변경하는 제조작업 제한 4) 품목분류가 바뀌는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에 대한 가공 금지

282)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알콜이나 개스홀의 제조 및 혼합은 위원회 규제 대상임

-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물품 양도와 관련하여 보세창고 양도는 다음과 같이 제약됨
 - 비특혜 외국물품은 수입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있음²⁸³⁾
 - 그러나 특혜 외국물품이나 특혜물품이 부품을 구성하는 완성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없음
 - 또한 내국물품이나 내국물품 혹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으로 구역제한물품의 신분을 취득한 물품도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없음²⁸⁴⁾

- 구역제한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허락되지 않음
 - 한 예로 폐기과정에서 회수한 귀금속은 구역제한물품이지만 위원회가 승인하면 공익을 위하여 수출되지 않고 국내로 수입될 수 있음
 - 이외 육류, 설탕, 자동차, 유독성 물질, 알콜원료 등 일정 규제가 적용되는 물품은 물품 양도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설립 당시 운영기간을 제한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위원회가 기간연장을 하지 않으면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물품을 역내로 반입하거나 가공할 수 없음
 -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물품과 구역제한물품은 다른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창고로 양도되거나 수입 혹은 수출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양도 처분되어야 함

283) 세번이나 원산지 변경을 유발하여 제도가 제한된 섬유제품은 국내수입용이 아닌 조건으로 항만 청장이 이서하면 보세창고로의 이동이 가능함

284) 다만 구역제한물품의 신분을 취득한 외국물품은 일시보관 및 수출이라는 조건 아래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있음

3.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분석

가.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적 차이점

1) 자유무역지역 설립 및 입주허가

-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은 명칭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내용도 유사하지만 세부절차와 화물 및 작업관리 측면에서는 차이가 상당함
 - 한 예로 미국 자유무역지역은 운영인이 작업을 관리하고 보세 상태의 화물을 제조 등 각종 역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관리가 아니라 세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세공장과 유사함

- 우선 미국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설립 당시 공익성에 대한 심의²⁸⁵⁾를 거쳐서 운영기간, 제조공정, 반출입 규제 등 일정한 제약 하에 설립을 허가하고 설립 승인과 별도로 작업개시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비로소 자유무역지역이 운영되기 시작함
 -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설립 허가 등 최종적 책임이 있는 상무성 소속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매년 의회에 자유무역지역 운영현황 및 성과를 보고해야 함

-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허가하지만 허가 당시 심의 이외에는 작업개시에 대한 심사나 운영 평가 혹은 작업 승인 등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무역지역이 운영됨
 - 또한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와 공항만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리함
 - 반면 미국의 경우 항만청장이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대리인으로 모든 지역을 감독하며 동시에 운영인이 담보 책임하에 물품 반입부터 작업 및 반출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을 지도록 함

285) 즉, 미국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설립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위원회가 직접 검토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신청하는 자가 경제적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한편 세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별도의 재무성 규정²⁸⁶⁾을 마련하고 화물의 이동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모든 작업을 세관이 감독 및 허가함
 - 특히 미국 세관은 관세법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²⁸⁷⁾이며 항만청장이 세관에게 관리 감독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항만청장과 세관의 역할에 특별한 구분이 없음
 - 또한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설립을 허가해도 세관(항만청장)의 작업개시 허가²⁸⁸⁾ 없이는 자유무역지역이 가동을 시작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이 5년간 지속되면 설립 허가가 자동적으로 취소됨
 - 미국 세관은 설립허가 당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외 작업개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청내용, 신원조사, 각종 시설 및 화물보안체계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작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면 승인 여부는 법령에 구속되지 않음
 - 또한 화물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결함이 보완될 때까지 항만청장이 물품 인수와 작업 개시를 정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규정이 없음²⁸⁹⁾

-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설립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고 난 이후 화물이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되거나 멸실되는 상황을 제외하면 세관의 역할이 크지 않음
 - 한 예로 미국의 작업개시 허가와 유사한 장치로 입주허가²⁹⁰⁾가 있으나 전자는 일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²⁹¹⁾에 대하여 관리권자가 입주를 허가하고 그 이후 역내 활

286) 19 CFR 146

287) Foreign Trade Zone Manual 17쪽 1.5: 실제로 미국 관세청에 의하면 관세법이 규정된 미국법 19부(Title 19 U.S.C.)에 자유무역지역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법도 관세법의 일부로서 자유무역지역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세관의 역할이라는 입장임(19쪽 2.1(c), 23쪽 2.2(e)(1))

288) 작업개시 허가가 있어야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온 물품이 화물신분을 부여받고 제조 등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음

289) 즉, 미국 세관은 규정 위반 시 최대 90일간 작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에 설립 취소를 건의할 수 있음

290) 사용소비신고는 반입신고의 일종으로 단지 세관의 화물관리를 종료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291)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개발이나 수출촉진을 명목으로 연면적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제조 등의 위탁을 받거나 입주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고 입주할 수 있음(시행규칙 2조)

동에 대해서는 따로 통제하지 않음²⁹²⁾

- 세관은 입주허가(취소)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에게 입주업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 따름임
-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7일 이내에 입주 여부를 승인하는 데 비하여 미국에서 작업개시를 신청하면 항만청장이 1~4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항만청장이 화물이동뿐만 아니라 역내작업을 허가하고 나아가 운영자가 제공하는 담보 책임 아래 관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 화물, 작업 그리고 업체(사용자)를 엄격하게 관리함

- 한 예로 모든 제조공정은 위원회 허가가 필요하며 신제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공정을 수행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주류, 담배나 총기류 등을 제조할 수 없고 쿼터 대상제품 등 국내산업에 민감한 물품에 대한 제조공정도 제한함
- 또한 위원회가 운영기간, 반입물품 혹은 작업공정²⁹³⁾²⁹⁴⁾ 을 제한할 수 있는데 대신 입주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요건이 별도로 없음
- 이외 미국에서는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관할기관의 승인이 있으면 자유무역지역에서 작업공정을 거쳐서 수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입 제한물품을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입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이외 지역에서는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관·항만용역 이외 유류판매, 음식점, 식료품 판매, 숙박, 목욕장, 세탁, 이미용 등의 다양한 업종이 지원업체의 명목으로 역내에 입주할 수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작업개시를 허가받은 지역에서는 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음²⁹⁵⁾

292) 제조업 이외의 자가 입주허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는 시설이 사업계획서와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불과함(시행령 8조의 2)

293) 한 예로 철강제품의 경우 국내수입을 위한 제조공정이 아예 금지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섬유, 설탕 혹은 육류 등 관세할당(쿼터)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공정이 금지될 수 있음 또한 과거에는 프린터 잉크, TV 튜브, 타이어 등에 대한 규제가 있었음

294) 또한 석유제품은 특혜 외국물품의 신분을 부여받아야 하며 정제과정에서 생산·사용되는 석유제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함

- 특히 미국은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지원혜택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관세와 각종 소비세에 대한 유예(환급)와 함께 임대료도 감면받고 이외 필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등²⁹⁶⁾을 유예받고 원로나 건축자재 등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환급과 함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입주업체에 공급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받음²⁹⁷⁾
 - 또한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받음
 - 이외 예정지역이나 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입주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되는 시설재²⁹⁸⁾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제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 등의 작업을 거쳐서 국내로 반출하면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관세 등이 부과됨
 - 다만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내국물품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면 완제품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업체가 내국물품 반입확인서와 소요량 계산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세관이 원재료, 소요량 및 가격 등을 심사하여 승인함²⁹⁹⁾
 - 공제금액은 물품 반입일 혹은 반입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평가함
-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내국물품은 다른 물품과의 결합 등의 작업을 거치려면 사전허

295) 같은 자유무역지역이라도 작업개시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는 소매업이 가능하지만 내국물품이나 관세 등을 납부한 외국물품만 거래할 수 있음

296)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말함

297)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내국물품으로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나 그 부분품, 원재료, 운할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및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

298) 건설자재와 건물 등의 설치·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및 장비

299) 물품 품명과 규격이 동일하고 소요량이 일정하면 일정기간 동안 일괄 승인도 가능함

가가 필요하며 대신 관세영역으로 반출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미국에서는 물품가액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이 반입되는 거래에서 지불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제 지불가격이 없으면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제조·일반경비 및 이윤과 부산물 가액을 완성품 가격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됨³⁰⁰⁾

□ 우리나라는 수출과 외국인투자 증대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므로 관세 및 소비세 유예 이외 임대료를 감면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함

- 특히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내국물품으로 원재료 이외에도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나 부분품, 운할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및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함
- 반면 미국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되는 사무용 가구, 기계설비, 건설자재나 장비 및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연료에 대하여 면세하지 않음

□ 미국은 대공황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관세 및 판매세 유예 이외 별도의 지원규정은 없음

- 대신 미국에서는 신청자가 원하면 '특혜 외국물품'의 신분을 부여받아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관세영역에 반출될 때 완제품 세율 대신 부품세율을 선택할 수 있음
- 이에 비하면 '비특혜 외국물품'은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할 때 물품 상태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됨

□ 이외 미국에서는 NAFTA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와 수출에 따른 부품 면세(환급)이라는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등을 거쳐서 캐나다나 멕시코에 수출될 경우 국내수입으로 간주하여 해당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 징수함

- 다만 미국 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캐나다나 멕시코에 납부한 관세 상당분은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미국 관세 부과를 60일간 유예할 수 있음

300) 관세평가액은 완성품 제조에 투입된 외국물품 가격을 모두 반영해야 함

- 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우 FTA 특혜관세와 관세환급 이중혜택이 부여됨

3) 화물신분

-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자유무역지역 물품을 특혜·비특혜 외국물품, 내국물품 그리고 구역제한물품 4가지 종류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차별 관리함
 - 특혜³⁰¹⁾와 비특혜 물품³⁰²⁾은 전술한대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³⁰³⁾ 내국물품과 구역제한물품은 물품 성격에 따라 신분이 결정됨
 - 구역제한물품은 수출·폐기·보관용 물품으로 환급 등의 목적상 수출품으로 간주되므로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허가 없이 관세영역에 반출할 수 없고 제조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없음³⁰⁴⁾³⁰⁵⁾
 - 내국물품은 미국산 물품이나 관세 등을 납부한 외국물품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올 때 반입신고가 필요 없지만 다른 신분의 물품과 혼합 등이 되려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비특혜 외국물품을 제외한 특혜물품이나 특혜물품으로 제조된 물품 혹은 내국물품으로 구역제한 신분의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없음
- 우리나라도 수출용 내국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제공하지만 미국과 달리 장부기록 이외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301) 물품이 반입된 이후에도 세 번이 변경될 정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은 물품은 특혜물품의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이후 신분변경이 되지 않음

302) 특혜물품이나 구역제한물품이 아닌 모든 외국물품은 비특혜물품으로 간주되며 내국물품임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도 마찬가지임: 세번이 변경되는 작업을 거치면 신분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303) 다만 반덤핑물품은 특혜물품 신분이 강제적으로 부여됨

304) 보세창고 물품이나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담배나 주류 등도 구역제한물품으로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수 있으며 물품 반출입에 있어서 관할당국(재무성)의 별도 승인이 필요함

305) 구역제한물품은 자유무역위원회가 허가하지 않는 한 화물신분을 변경할 수 없음

나. 화물관리체계

1) 반입신고

-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는 외국물품이나 환급 등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물품³⁰⁶⁾은 반입 목적에 따라 신고해야 함
 - 반입목적은 사용·소비,³⁰⁷⁾ 보관·전시, 보세공장(다른 경제자유무역지역), 선기용품 반입으로 구분하여 미리 신고해야 함
 - 보관용으로 신고한 물품을 사용하려면 사용·소비신고를 하는 등 반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신고를 정정해야 함
 - 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House B/L 단위로 컨테이너 단위의 신고도 가능함³⁰⁸⁾
- 보관·전시 목적의 반입신고는 도매업이나 물품 하역·보관·전시 등의 입주업체만 가능하며 제조업 등은 그러한 신고가 허용되지 않음
 - 한편 다른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공장에서 물품 반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반출지 세관은 보세운송기록과 반입신고 내역서를 보내야 함
- 내국물품의 경우 전술한대로 환급 등의 목적으로 반입 신고하고³⁰⁹⁾ 그렇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없음
 - 관세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재료의 경우 반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재료 물품 이외에는 매매계약서와 용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나중에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 공제를 위하여 처음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내국물품이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내국물품 확인서 등³¹⁰⁾의 증빙서류가 필

306) 수출용 내국물품 중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나 그 부분품, 원재료, 유탄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및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 다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한정됨

307) 실제로는 화물관리시스템에 반입 신고하고 수입통관시스템에 사용·소비신고를 하는데 사용신고가 수리되면 화물관리시스템상의 물품 관리가 종료되고 입주업체가 재고 관리를 시작함

308) 환적화물은 입항적하목록 그리고 수출신고수리물품은 수출신고필증이 반입신고를 같음

309) 내국물품에 대한 반입신고는 수출신고와 같은 동등한 효과가 있음

요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반입신고서(CBPF 214)를 제출하여 화물신분을 부여받는 등 허가를 받고 운영자가 물품인수 사실에 서명하며 또한 재고장부시스템에 입력해야 반입이 완료됨³¹¹⁾³¹²⁾
 - 미국에서는 반입 목적에 따른 신고가 필요 없고 반입목적에 따른 신고주체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대신 통계자료 작성과 평가를 위하여 반입신고 복사본을 통계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입신고가 거부됨
 - 운영자가 소유한 물품으로 위험도가 낮고 반복적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반입허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양도할 수 있음(직접인도절차)³¹³⁾: 대신 보세운송서류를 항만청장에게 제출하고 물품이 모두 반입될 때 반입신고서를 제출함
 - 미국은 1주 단위의 주기적 반출입신고와 최대 1년의 포괄 작업신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외작업에 한정하여 직반출(입) 제도 및 포괄 작업신고를 적용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화물 신분을 취득한 물품과 다음의 이유로 화물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물품은 따로 보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별도 규정이 없음
 - 직접인도절차, 일시장치, 환적, 조사대상 물품, 관세영역으로 실질적으로 양도된 물품, 사무용품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의 물품
 - 또한 세수확보와 법 집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화물신분을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별도 보관을 요구할 수 있음
 - 한 예로 대체 가능한 물품이나 섞일 가능성이 있는 구역제한물품도 별도 보관하는 등 반입시점에 항만청장이 보관방식을 지정할 수 있음

- 내국물품의 경우 인수보고서와 재고장부 시스템에 기록해야 하는데 외국물품과 내국

310) 세금계산서나 내국원재료 사용승인서를 말함

311) 환적물품이나 증빙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물품도 일시적으로 역내에 장치될 수 있으나 관세법을 적용받음

312) 동일한 운송신고를 통하여 같은 날짜에 동일한 자에게 인도되는 화물은 일괄신고가 허용됨

313) 운영인이 30일 전에 대상물품과 작업내역 등을 미리 신청해야 함

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³¹⁴⁾

- 세관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으면 운영인은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반입신고서와 각종 서류 등을 비교, 확인하여 물품을 직접 인수하고 그 사실을 항만청장에게 보고함
 - 오차가 발견되면 운송업체와 공동으로 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 책임을 면제받음
 - 운영인은 반입신고서별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역관리번호 등을 부여하고 그 번호를 기준으로 인수보고서의 물품 내역³¹⁵⁾을 재고장부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외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도 재고장부에 기록함
 - 반입신고서, 상업송장, 보세운송서류 등의 각종 증빙서류는 반입물품목록에 보관하고 구역관리번호 등을 부여받은 물품은 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운영인은 세관이 사전에 승인한 재고관리시스템에 따라 물품을 기록·보관해야 함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업체 등 입주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반입하면 수입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 기계, 기구, 설비나 원재료, 운할유, 건축자재 등 이외의 물품으로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려는 외국물품도 수입 신고해야 함
 - 미국에서도 자유무역지역법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는 물품은 관세 등을 적용받는데 특히 전술한대로 우리나라와 달리 원재료 이외 기계, 건축자재, 연료, 사무용가구 등은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 미국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무제한 보관이 가능하고 우리나라도 장치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공항만 물품은 예외적으로 보세물품 규정을 준용하여 3개월을 적용함
 - 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물품이나 장치보관물품이며 입주업체가 사용·소비하려는 내국물품으로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운할유, 건축자재 등은 제외됨
 - 또한 악성 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부도, 계약위반 물품 등은

314) 항만청장이 세수확보와 법 집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별도 보관을 요구할 수 있음

315) 물품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자세한 내용으로 물품 수량, 반입일, 화물신분, 물품가액, 부품 혹은 상품번호 등을 포함한 물품명세서 내용임

6개월 이후 공매 처리함

2) 작업신고

- 우리나라에서도 입주업체가 외국물품 등에 대하여 제조 등의 작업을 하려면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데 화물관리시스템상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미국의 작업신고와는 성격이 다름
 - 고시에서는 반입신고와 사용소비신고가 구분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화물관리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한 이후 수입통관시스템에 별도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함
 - 신고가 수리되면 화물관리시스템의 관리가 종료되고 이후 입주업체가 재고 관리함
 - 이외 멸실을 제외한 역내작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고·승인이 없고 다만 입주허가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입주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음

- 미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설립 허가 당시 신고한 제조업 작업공정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생산을 확대하거나 원료 구입처를 변경하거나 혹은 완제품과 부품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작업하려면 작업신고서(CBPF 216)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신고서에 기록해야 함
 - 항만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모든 작업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³¹⁶⁾
 - 내국물품도 관세청장이 지정한 경우나 다른 신분의 물품과 결합 혹은 혼합하려면 작업 허가가 필요함³¹⁷⁾
 -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은 1년 단위의 일괄 신청이 가능함³¹⁸⁾: 폐기작업의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역내에서 폐기가 어려우면 역외작업도 허용됨

316) 다만 허가를 한 이후 취소하면 신청자는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음

317) 미국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작업절차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보다는 작업신고와 완료보고가 필요한 보세공장의 작업절차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318) 이 경우 작업내용을 일괄작업목록이나 재고장부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작업신고서는 반입물품 목록에 보관해야 함

- 반출신고가 승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음
-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물품 등을 가공·보수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에서 수탁업체에게 위임한 제조 등의 작업 즉, 역외작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역외작업이 허용되면 보세운송 없이 자유무역지역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 제조 등의 작업을 거쳐 재반입, 수출 혹은 수입할 수 있음
 - 역외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 규모는 입주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 및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임
 - 역외작업이 가능한 물품은 원자재와 시설재로서 반출기간은 각각 최대 1년, 3년이며 반출장소는 수탁업체의 공장과 부속된 가공장소임
- 세관장에게 역외작업을 전후한 물품 품명·규격·수량·중량 및 작업 종류·기간·장소·작업 사유 등을 명기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작업이 종료되면 완료보고서를 제출함
 - 동일 장소에서 같은 원자재로 반복 작업을 하면 최대 1년간 포괄신고도 허용됨
 - 또한 입주업체와 역외작업 장소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하에 역외작업 장소(수탁업체)로 직접 운반하여 작업할 수 있음(직반출입제도)
- 이 밖에도 수리·전시·검사·포장 등의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물품을 최대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고 반출입할 수 있음(일시반출입제도)
- 미국에서도 항만청장이 허가하면 운영자의 담보 책임 하에 최대 120일을 기한으로 검사·세척·재포장 등 물품 보수를 위한 일시 반출이 가능함
 - 물품 소유주가 작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물품이 모두 반환되면 그 사실을 서명한 작업신고서를 제출함
 - 일시반출작업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하는 등 물품가액이 증가하는 제조 등의 작업을 할 수 없고 기한 연장도 허용되지 않으며 관세영역으로 직접 반출될 수 없음
- 한편 미국의 경우 역외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신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할 수 없는

석유정제나 자동차 생산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익성에 부합하는 경우 업체 단위로 자유무역지역 이외 장소에 준구역(sub-zone)을 설치할 수 있음

○ 준구역 허가를 포함한 각종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은 일반 자유무역지역과 동일함

- 전술한대로 미국에서는 운영자에게 화물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운영자가 화물을 직접 인수하거나 양도받는 이외 제조 등의 작업, 폐기, 전시 등에 대하여 운영인의 동의가 필요함

3) 반출신고

-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내외물품을 원상태나 제조 등의 작업을 거쳐서 수출, 폐기 혹은 관세영역이나 다른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양도할 수 있음
 - 이 때 외국물품은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내국물품의 경우 관세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구입 영수증과 함께 내국물품으로 재고장부기록에 입력된 사실로서 확인함
 - 또한 외국물품 등을 역외로 이동하려면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 함
- 미국의 경우 세관이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양도를 허가하고 운영자에게 물품을 양도하면 운영자는 보세운송업체³¹⁹⁾나 수입자에게 인수 서명을 받고 물품을 양도함으로써 담보 책임에서 해제됨
 - 세관 검사가 없으면 운영인은 오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재고장부에 기록함
 - 주기적 신고나 수입신고 물품을 제외하면 양도가 허가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제조 등의 작업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이 나가야 함

① 수입

- 우리나라의 경우 원상태 외국물품을 포함하여 외국물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319) 수출이 아니면 운송신고서에 명기하여 항만청장과 하물 인수인에게 물품 양도의 성격을 주지하고 물품 구입자나 소유주가 올바르게 신고하도록 해야 함

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수입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 한편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내국물품확인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³²⁰⁾
- 유통업체 등은 반출목록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반입증명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함
- 그러나 출입차량과 휴대품 및 작업용구 그리고 역내에서 사용 혹은 소비할 목적으로 반입된 음식료품·담배·유류 및 후생복리용 소모품으로 반입사실이 확인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확인하지 않음

□ 미국에서도 외국물품이나 구역제한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고 이외 허가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양도할 수 있음³²¹⁾

- 전술한대로 외국물품의 화물신분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는데 이들 물품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폐기물도 해당 물품의 신분을 유지함
- 미국에서는 HS 품목별로 추정 수입신고서와 견적서(일정표)³²²⁾를 제출하면 1주 단위의 주기적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 이후 추가 제조 등의 작업이 허용됨

② 수출

□ 우리나라에서 외국물품 등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수출신고절차를 준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국외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함

- 물품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포장 종류·번호·갯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번호
- 반면 내국물품이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환급을 위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함

□ 미국의 경우 수출 시 먼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양도되는지 여부에 따라 직

320) 즉,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만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은 과세 대상이 아님

321) 미국의 경우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양도가 가능함

322) 물품성격, 수량 및 가격을 신고하는데 신고 물량을 초과하는 반출은 허용되지 않음

접, 즉시 간접수출³²³)로 구분하여 수출신고방식을 따로 규정함

- 이 때 사용되는 반출(수출) 신고양식은 운송신고서(CBPF 7512)로서 다른 항만으로 운송하여 수출하는 간접수출방식에서는 수출책임이 보세운송인에게 부여됨
- 직접 및 즉시수출에서는 수출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운송신고서 복사본을 세관, 운영인, 보세운송업체 그리고 수출선박에 교부해야 함
- 간접수출에서는 선적분할이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되고 부두나 공항으로 이동하고 책임자가 동의하면 90일간 보관이 가능하며 나중에 수입신고로 변경할 수도 있음
-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면 국내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지만 국내부품만으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물품은 감면이 허용됨

□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운송신고서와 견적서를 제출하면 1주 단위의 주기적 신고가 허용됨

- 세관을 대신하여 운영인이 개별 운송신고서를 허가하는 제도로써 7일간 세관허가 없어도 되지만 수입신고와 달리 운송업자의 인수 서명이 있는 운송신고서 복사본을 항만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주기적 신고가 종료되면 양도물품목록을 제출하는데 신고물량을 초과하여 양도할 수 없음

③ 기타 양도방식

□ 미국의 경우 다른 항만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이동할 경우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반입신고서 및 작업신고서 등 대상 물품의 과거 이력(history)에 대한 자료³²⁴)를 새로운 운영자에게 송부해야 함

- 물품이 새로운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하면 일반절차에 따라 반입되며 운영인은 관련 정보를 재고장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323) 직접수출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선박에 직접 선적하는 방식이고 즉시수출은 자유무역지역이 있는 항만에서 수출하지만 관세영역을 거친 방식이며 간접수출은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수출방식임

324) 과거 이력에 따라 화물신분 변경과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 자유무역지역 사이의 물품 이동에 대해서도 주기적 신고가 가능함
 - 동일한 항만에 위치한 다른 운영자에게 물품을 양도할 경우 운영자가 직접 운송을 할 수 있지만 반입신고 등은 앞서 논의한 절차를 따름
-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보세운송 고시를 준용한 유사한 절차에 따르지만 물품 이력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음
- 한편 동일한 지역 입주업체 간 물품 이동의 경우 보세운송을 생략하는 것은 같지만 세관에 물품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거나 이고운송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 미국의 경우 운영자가 다르면 보세운송 생략 이외에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고 다만 동일한 항만에서 같은 운영인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물품인도서를 제출하거나 항만청장이 승인한 지역물품 통제 시스템에 따라 물품이 이동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물품이 제한 없이 보세구역이나 보세장치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특혜물품이나 그러한 물품이 부품을 구성하는 물품은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없음³²⁵⁾
- 다만 비특혜 물품은 수입일을 기준으로 5년 그리고 구역제한물품은 수출을 조건으로 보세창고 양도가 허용됨
 - 비특혜물품이나 구역제한물품과 달리 특혜 물품은 전시용 반출이 허용되지 않음
- 마지막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관세영역으로 반출되지 않고 내국물품으로 다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승인이 취소되고 관세가 반환되며 가장 최근의 화물신분을 다시 부여받음
- 이러한 규정은 수입금지 물품 제조 등 관세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도로 자유무역지역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러한 목적이 아니면 관세영역으로 반출되었다가 자유무역지역으로 다시 반환되는 물품은 내국물품의 지위를 부여받음

325) 내국물품이나 수입 신고한 물품도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없음

다. 재고장부시스템

- 우리나라에서는 입주가 허가된 업체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에 해당하는 업체관리번호가 부여됨
 - 세관장은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등을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수출입화물시스템에 등록하며 업체정보에 대한 관리대장을 유지해야 함³²⁶⁾
 - 입주변경사항도 관리대장에 기록되고 허가 취소시 즉각 재고조사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정리해야 함
 -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세관은 물품관리체계와 내부감사체제를 심사하여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고조사를 차등 관리할 수 있음

-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입하는 물품과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혹은 생산하는 물품 및 부산물에 대한 장부기록³²⁷⁾을 5년간 유지해야 함³²⁸⁾
 - 한편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 제출하는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는 2년간 보관해야 함
 - 이들 물품 중 환급을 적용받는 내국물품 기록은 별도로 관리해야 함
 - 세관장은 회계장부와 원재료 및 완제품 관리대장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반출입/수출입물품을 조사할 수 있음
 - 이외 고시에 의하면 장부기록은 업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방법으로 기록 유지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물품성질과 작업종류에 따라 기재가 필요 없는 사항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음

- 미국과 마찬가지로 분실물품 등 재고에서 차이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즉시

326) 이를 위하여 관할 세관장은 사업계획서 등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장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와 시설배치도와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서류

327) 재고목록, 제품생산 내역, 소요량계산서, BOM(부품구성표) 이외 수입신고필증(반입신고서),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국외반출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 가격결정자료 등임

328) 다만 출입자 휴대품 등 자유무역지역에서 소비하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은 예외임

납부해야 하며 다만 확인이 되거나 천연재해 등으로 부득이 하게 멸실된 물품은 그렇지 않음

- 세관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입주업체가 제출하는 자율점검표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고조사 여부를 결정함³²⁹⁾
 - 자율점검표가 미비하면 우선 서면조사³³⁰⁾를 실시하고 서면조사가 곤란하면 현장조사³³¹⁾를 실행함
 -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는 개시 10일 전 통보되어야 하며 조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7일, 1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³³²⁾
 - 우리나라는 법규 준수도에 따라 입주업체를 A~E등급으로 나누어 조사와 불시점검에서 차등 관리함
 - 장부기장이나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고조사를 할 수 없거나 실지조사 결과 물품수량이 부족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발견되면 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³³³⁾

- 미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실제로 입주하는 업체(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지 않고 운영인의 담보 책임 아래 운영인과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함
 - 미국 세관은 1986년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장부기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자가 작업 개시를 신청할 때 장부기록 절차 매뉴얼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자 책임 아래 화물을 관리하도록 함³³⁴⁾

329) 이외 고시 21조에서는 물품관리체계가 부적절하거나 자율통제기능이 미흡하면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30) 서면조사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음: ① 원재료, 재고품, 제품 및 잉여물품 재고관리방법 ② 제품별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BOM) ③ 시설재 보유현황 ④ 폐시설재와 원부자재 등 잉여물품 처분 내역 ⑤ 반출·입 내역(반출입량, 기초·기말재고) ⑥ 기타 물품관리 참고사항과 의견 (도매·창고업자 등은 ①~④ 제외)

331) 현장조사는 다음의 경우 수행함: ① 자율점검표나 서면조사 자료를 기한 이내 미제출 ② 부정유통 우려 ③ 실소요량 관리가 불합리 ④ 서면조사 대상이나 제출서류로는 서면심사가 곤란 ⑤ 입주허가 취소업체

332)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이 7일 연장될 수 있음

333) 고시 21조 7항

- 즉, 세관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운영인이 물품 인수, 보관, 제조 등의 작업, 처분, 보안 등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데 재고관리시스템은 세관이 사전에 승인해야 함
 - 이를 위하여 물품 반입, 처리, 제조나 폐기를 신청할 때 운영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미국도 장부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된 시점부터 시작됨
- 장부기록 시스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법규에 명시된 자료와 보고서를 정확하게 적시에 작성해야 함
 - 이와 같은 장부기록은 세관이 승인한 재고관리방식에 따라 물품 반입 이후 보관·작업·멸실·전시 혹은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양도까지 사후심사에 필요한 추적 경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표 IV-3〉 미국 재고장부 시스템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내국물품, 일시장치·반입, 화물신분 취득·변경, 보관·전시·단순작업(보수)·제조·폐기 및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양도 혹은 방출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에 대한 회계기록
초과/부족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수량·성질·품목분류·신분·물품가액 등 세부사항
물품 수량, 성격, 세번, 가액, 신분 등 관세영역으로의 수입 신고시 필요한 정보

- 세관은 물품반입시점에 화물조사³³⁵⁾를 통하여 운영인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이후 각종 심사나 조사를 통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함
- 세관은 운영자의 장부기록, 물품 상태, 운송업체, 물품 공급자와 구매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관리 감독함
 - 원칙적으로 사전에 통보되는 사후심사(audit)는 우리나라와 달리 조사기간에 제한 없이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심사빈도는 기밀사항임

334) 반입허가가 떨어지고 운영인이 인수를 확인 서명하는 순간부터 물품에 대한 책임은 보세운송업체로부터 운영인에게 전가됨

335) 세관조사가 없을 경우 운영인이 항만청장의 승인 하에 봉인을 탈착하고 물품을 확인해야 함

- 반면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현장 이행조사(compliance review)는 위험관리평가에 따라 업체별로 빈도가 다름³³⁶⁾
- 운영인은 물품 반입 이후 신분취득(변경), 작업 그리고 물품 양도까지 사후심사시 물품 추적에 필요한 모든 회계기록을 장부기록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물품 반입이나 양도시 신고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항만청장에게 오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반입시점에 인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역관리번호체계 등에 따라 장부시스템에 입력하며 각종 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반입물품목록에 보관함³³⁷⁾
- 나아가 운영인은 최소한 1년에 한번 재고조사³³⁸⁾를 실시하고 발견된 오차는 보고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우리나라의 자율점검표와 유사한 연차 정리보고서(annual reconciliation report)를 작성하여 세관에 보고해야 함³³⁹⁾³⁴⁰⁾
 - 물품반입시점을 포함하여 손상이 발견된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신청서로 보고하면 관세 경감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재고조사 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지만 반출입 과정이나 재고조사에서 손상이나 오차가 발견될 경우 관세를 납부하는 이외 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운영인은 자신의 담보 책임하에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며 세관의 화물보안기준에 따른 화물안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³⁴¹⁾

336) 고위험군은 1년에 최소 3번, 저위험군은 2년에 최소 1번 조사를 수행함

337) 물품이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양도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과거 이력목록도 물품을 인수한 지역으로 연계되어야 함

338) 재고조사에 앞서서 필요하면 세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연차정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재고조사를 할 수도 있음

339) 관세가 100달러 이상 부과될 수 있는 물품으로 절도나 위법 반입된 물품 혹은 물량이 1% 이상 부족한 물품은 5일 이내에 항만청장에서 서면 보고해야 하는데 이외 오차는 연차보고서에서 보고하면 됨: 과다 물품은 5일 이내에 반입 혹은 수입신고서를 해야 함

340) 온도 차이 등에 의한 자연적 용량 변화는 운영인의 책임이 아니며 이러한 물품은 항만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업절차 매뉴얼에 명기할 수 있음

- 운영인은 내국물품을 포함한 화물 도난이나 의심 사례를 즉각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도난은 대체로 주간교역 혹은 무역물품의 도난으로 간주되어 최대 25만달러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처벌됨
 - 항만청장은 자유무역지역 직원이나 물품 운송, 전달, 인수를 위하여 고용한 사람에 대한 신원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심각한 보안기준 위반이나 중대 도난 사고 시 세관이 보안점검을 수행하여 손실청구, 작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별도의 보안기준이 없으므로 보안규정 위반 시 따로 조치할 수가 없음

〈표 IV-4〉 우리나라와 미국 자유무역제도 비교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국
법 규정	자유무역지역법	자유무역지역법과 재무성 규정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지정	자유무역지역 승인 이외 공익성 검증: 제조공정 ¹⁾ 등 구체적 내용, 반입물품, 원재료, 생산규모, 운영기간 등
제도 설립	지정 이후 별도 작업허가 없음	지정 이후 작업허가 별도 필요
세관의 역할	물품 반입과 반출절차에 국한	자유무역지역 신청자 신원조사 작업허가 이외 물품 반입, 작업, 반출 전 과정 허가 보안기준 위반시 손실청구와 작업정지 이외 허가취소 건의
관리감독권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해양부 이원화	자유무역지역 위원회(항만청장)
운영 책임	입주업체: 담보 없음	운영인이 담보 책임하에 입주업체 관리: 물품 반입·제조·전시·반출에서 운영인 동의 필요
입주허가	신청 후 7일 이내 결정	신청 후 1~4개월 내 항만청장 결정

341) 운영인은 자신의 담보 책임하에 사용자나 물품 소유주가 화물 보관 등을 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표 IV-4〉의 계속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국
작업내용	제한 없음	제조공정은 위원회 사전 승인 필요
지원업체 입주	가능: 금융·통관·항만 이외 소매업, 음식료품, 숙박, 세탁, 이미용업 등	불가능
거주 여부	규정 없음	불가능
지원혜택	관세 등 소비세 이외 임대료 감면 역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용가구, 기계설 비, 건설재 등 관세면제	관세 및 소비세 유예
국내 수입품	제품과세: 국산원료 비과세 과세가격 평가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제품과세와 원료관세 선택 가능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과 세가격에서 제외
반입물품 구분	외국·내국물품: 반입목적에 맞게 신 고	특혜 ²⁾ ·비특혜·내국·구역제한물품 ³⁾ 구분
반입신고	반입목적에 따라 신고 보관·전시신고는 허가 업체만 신고	반입신고: 화물신분 부여 반복 반입물품: 사전요청시 포괄신고
주기적 신고	역외작업에 한정	주기적 반출입신고: 1주, 작업신고: 1 년
보관기간	무제한: 공항만물품(3개월)	무제한
작업신고	사용소비신고: 특별한 승인절차 없음	작업신고: 승인 필요
역외작업	허용	폐기물에 한정
일시 반출입	수리·전시·포장·검사: 6개월 한도	검사·세척·포장: 120일 한도로 기간 연장 불가(수리 제외)
내국물품	내국물품 확인서	구입영수증 및 재고장부기록
수출	일반 수출신고절차 준용: 다른 자유 무역지역 이동시 보세운송고 시 준수	수출품 향방에 따라 직접·즉시·간접 수출로 구분 관리하고 주기적 신고 허 용
물품 이동	보세운송절차 적용	보세운송절차 적용
재고장부시 스템	재고장부시스템: 별도 규정 없고 관 세청 고시에서 업체 자율로 규정 장부 심사에 따라 재고조사 차등화	운영인의 재고장부시스템: 세관 승인 사항으로 물품 반입·작업·반출 전 과정의 모든 회계기록 입력 필요
장부기록 유지기한	5년: 내국물품 반입 서류는 2년	구분 없이 5년

〈표 IV-4〉의 계속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국
재고조사	연 1회 원칙: 자율점검→서면조사→현장실사: 사전통보 및 7~10일 조사기간	사후심사: 사전통보·기간 제한 없음 이행평가: 불시점검·업체에 따라 조사빈도 상이
자율점검표	연 1회: 물품 오차 조정규정 없음	연 1회: 물품 오차에 대한 조정 가능
물품 도난	손상이나 오차 발견시 관세 부과	주간교역 혹은 무역물품 도난: 최대 25만달러 혹은 10년 이하 징역형
사후 평가	별도 규정 없음	통계청에 통계자료 제출의무 매년 의회에 평가보고서 제출

- 주: 1) 한 예로 국산제품 보호에 필요한 제조공정을 아예 허가를 하지 않거나 수출 용도로 제한함
 2) 특혜물품은 반입 당시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비특혜물품은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함: 석유제품은 비특혜물품으로 반입되어야 함
 3) 구역제한물품은 수출이나 폐기 등의 물품으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고 제조 등의 작업도 할 수 없음

V. 요약 및 정책적 개선방안

1. 운영성과 및 향후 과제

가.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70년에 마산과 익산(이리)을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 산업단지형 7개 그리고 물류중심형 8개 총 15개의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있음
 - 마산의 경우 수출액이 1974년 1억달러에서 2008년 50.7억달러까지 증가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선진기술 유치를 통한 수출 및 고용증대에 크게 일조한 바 있음
 - 특히 근래에는 세계적 분업생산에 기초한 복합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이 각광을 받으면서 중국, 대만, 멕시코, 싱가포르 등 경쟁국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경합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된 바 있음

- 즉, 다국적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공급사슬 관리망(SCM)에 따라 공항만 부근에서 부품 조달·제조·보관·물류·유통 등 경제활동을 집중하는 체계(Hub & Spoke System)가 확산되면서 복합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쟁 국가들은 자유무역지역 개발, 입주 및 운영의 전 단계를 일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체계 구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외국인 거주까지 포함하는 경제자유지역 개발에 공을 들여왔음
 - 다만 경제구조의 변화 및 유사 제도와 경쟁 그리고 FTA 확산 및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현재 자유무역지역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임

- 한 예로 대만 까오슝과 함께 성공한 수출가공지역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경우 근래에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³⁴²⁾

- 과거 수출액 50억달러 그리고 고용인원 3.6만명까지 증가한 적이 있지만 최근 수출액이 약 30억달러로 감소하고 특히 고용은 6천명에도 미치지 못함
- 이외 수출액 대비 수입비중이 이전 5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외화가득율도 54%에서 32% 수준으로 하락함

□ 이밖에도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난 3년간 14개 업체가 퇴출되었음

- 입주업체의 잦은 진입과 퇴출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고용의 불안정성은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음³⁴³⁾

□ 자유무역지역(산업단지형) 전체로 보면 분양률이 49%에 불과하며 약 1.2만명을 고용하여 41억달러를 수출함

- 분양률이 100%에 달하는 마산, 군산과 대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분양율도 낮고 입주업체도 업체당 고용인원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업체임
- 예컨대 동해는 2005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기반산업이 적고 교통망이 열악한 등 입지 여건이 좋지 않아 입주업체가 6개에 불과하고 75%의 부지가 여전히 비어 있으며 율촌도 유사한 상황임³⁴⁴⁾
- 이외 물류형 자유무역지역도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과 광양항을 제외하면 입주업체가 10개 이하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다만 대불의 경우 2005~2011년 사이에 입주업체 수와 고용인원이 3배로 증가하고 수출도 약 0.9억달러에서 2.1억달러로 증대되는 성과를 올림

□ 참고로 외국인투자지역은 분양률이 83%에 달하며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자유무역지역

342) 박재곤·강기천, 2007,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343) 즉 2011년의 경우 노키아가 마산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 32억달러 중에서 24억달러를 수출하였는데 2012년 노키아 본사의 부진으로 한국공장에서도 1,200명의 해고가 단행됨

344) 결국 마산, 군산과 대불의 수출액은 각각 2.4억달러, 4.6억달러, 33.5억달러로 총 40.5억달러인데 이는 자유무역지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보다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임³⁴⁵⁾

- 즉, 2011년을 기준할 때 외국인투자지역은 약 2만명을 고용하여 9.4조원을 생산하고 31억달러를 수출함
-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조업 중심으로 관세유예 혜택이 없지만 화물관리에 대한 규제가 적고 수출입 비중 요건이 없으므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활발할 수 있음

□ 또한 보세공장의 경우 참여업체 수가 자유무역지역과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전자와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활용하면서 수출액은 약 1,300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8%를 담당함

□ 이와 같은 자유무역지역의 위축은 국내적으로는 인건비 및 지가상승 등에 의한 경쟁력 약화와 함께 다른 자유무역지역과의 경쟁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지역, 특히 보세구역 등 유사 제도가 난립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임

-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경쟁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한 FTA의 확대를 비롯한 무역자유화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는 등 자유무역지역의 이점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운영성과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이 미흡한 등 기초자료마저 부족하여 제대로 된 평가가 쉽지 않고 따라서 개선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즉,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책목표 설정과 함께 이에 알맞은 지원수단 제공 없이 유사한 성격의 각종 제도를 마구 도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렵고 나아가 당국조차 이들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함

□ 더욱이 근래에는 주변 경제상황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활용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 한 예로 2005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4부두는 7년이 경과하는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민원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입주업체에게 혜택도 없어 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제가 추진되고 있음

345) 외국인투자지역도 8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입주업체 수는 10개 이내임

- 결국 인천시를 포함한 정부가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자유 무역지역 설립을 남발한 결과 정부예산 등 소중한 자원이 낭비됨
- 해당 지역은 상당 부분이 사유지로 임대료 감면을 제공할 수 없는 등 애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당국이 설립 허가함

〈표 V-1〉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해제 사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4부두는 설립 이후 7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함 · 인천시가 83억원을 투입하여 통제시설과 도로를 정비하였으나 관리권을 인천시로부터 이전 받은 항만청 실태조사 결과 14개 입주업체가 내수 위주의 단순 보관·창고기능만 수행하는 업체이고 전체 부지 중 87%가 사유지로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수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 항만청은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운영을 계속할 경우 입주업체에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운영을 계속하려면 펜스 설치 등 추가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실익이 없고 오히려 도난 및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물류흐름에 방해가 되는 등의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임

자료: 서울경제,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공염불, 2012.3.28

- 과거에도 마산의 경우 김해공항 및 마산·부산항과 인접하고 저렴한 인건비와 지가 및 창원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으나 같은 시기에 익산(이리)에 설립된 수출자유지역은 성과가 없어서 결국 지정이 해제됨
 - 이러한 상황에서도 광양시는 1,0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현재 200만TEU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270만평 부지를 1,000만평으로 넓히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업체 입주를 위한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자체의 내실 있는 운영 보다는 무분별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음³⁴⁶⁾
- 한편 입주업체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내용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집중함으로써 입주 당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여 입주업체가 퇴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와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되

346) 노컷뉴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과제 ‘산적’, 2010.3.26

고 있음

- 2010~2012년 사이에 마산에서 매출 대비 수출비중이 50%를 넘기지 못하여 퇴출된 업체가 14개에 달하는 사실은 입주요건의 합리성과는 별도로 입주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례임
- 이외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역내에 기숙사나 복지관 등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지자체 사이에 있는데 이는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성격을 망각한 행위로서 화물보안을 위협하는 요인임³⁴⁷⁾

- 이 밖에도 이미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 투자업체에게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수출 및 고용 증대 없이 지자체 사이에 조세경쟁을 유발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한 예로 이천에서 28년간 영업 중이었던 반도체 기업이 인천시가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위하여 공장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천시 경제가 타격을 받고 국가적으로는 혜택 없이 예산만 낭비하게 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천시는 자체적인 지원책을 계획하였고 경기도도 외투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지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함
 - 결국 기존의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역 혜택을 적용하는 법령상의 맹점이 지자체 사이의 무분별한 조세경쟁(tax competition)³⁴⁸⁾을 낳을 수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시급함

347) 미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안에서는 그 누구도 거주할 수 없고 소매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엄격한 통제요건을 적용함

348) 실제로 이천시는 업체 이전을 막기 위하여 저렴한 공업용수와 전력공급을 해당업체에게 공급하고 부지 임대료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하여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음 (JTBC, 2012.10.17)

〈표 V-2〉 기존 외국인투자업체 유치에 따른 피해 사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는 반도체 부품업체인 싱가포르 스타츠칩팩코리아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동 지역에 제조업체가 입주하는 첫 사례라고 홍보함 · 해당 업체는 100% 외투기업으로 연매출 7,000억원 그리고 종업원 2,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영종시 물동량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주장함(경향신문) ·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미 인천시에서 28년간 공장을 운영하던 업체로서 자유무역지역이 제공하는 세금감면과 임대료 지원 혜택을 위하여 인천에서 이전하기로 함 · 해당 업체는 인천에서 SK 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업체로서 공장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인천시는 우려함 ·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현재 외투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유무역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함(JTBC)

자료: 경향신문,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직원 2500명 제조업체 첫 등지, 2012.11.19 및 JTBC, 인천 외국인 투자기업들 자유무역지역 이전 '비상', 2012.10.17

-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지역 등 각종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운영 및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소기의 성과가 어려운 지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즉, 낙후지역 개발이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개별 정책목표에 가장 적합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지역은 규모의 경제나 집적 경제를 고려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구축과 주변 공항만 등의 산업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이고 계획적인 지역 조성을 해야 함
 - 한편 타당성 조사를 지금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투자·고용·외자 비중·산업특성 등의 경제 기여도에 따라 지원 내용을 차별화해야 함
 - 또한 국내업체에 대한 피해와 무역·법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혜에 상응한 보안체계를 적용하되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 이와 같은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통계 등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세금감면 등의 기회비용 대비 운영성과 등 지역 및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절실함

- 자유무역지역 평가는 지역 설립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별도의 조직이 맡아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이나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하여 세금감면과 임대료 지원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므로 그와 같은 혜택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정당화됨
 - 그러나 외국인 입주업체의 경우 외국인이 1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혹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입주를 허가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을 위장한 국내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으면서 수출·고용 등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전락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액(투자비중)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가 입주하지 않도록 입주요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³⁴⁹⁾
 - 한 예로 아래에서 보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농산물 재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등의 사례가 없어야 함
- 한편 일각에서는 FTA의 확산으로 관세감면의 이점이 줄어들면서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³⁵⁰⁾
 - 즉, FTA로 각종 원자재가 관세를 면제받고 정상적으로 수입되면³⁵¹⁾ 자유무역지역이 제공하는 관세우대가 의미가 없고 나아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물품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한 공정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물론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을 전제로 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국내 수입에 따른 문제점은 부수적이나 일정 부분 제도가 정비될 필요는 있음
-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동시다발적인 FTA를 통한 통상허브 국가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349) 외국인 투자업체의 투자액 기준은 42년 전에는 5,000만원이었으나 2010년에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짐(서울경제, 수출없는 자유무역지역, 2013.2.5)

350) 산업연구원(2007)

351) 물론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없음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지역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미 및 한·EU FTA는 자유무역지역이 중국과 일본의 생산체계를 활용하여 거대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 더욱이 일본지진과 원전사고가 비교우위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급변하는 동북아 경제상황에 맞추어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의 부실한 운영 및 관리감독 상태를 고려할 때 예산 낭비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

나. FTA 확대와 자유무역지역

- 현재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며 다만 세관장 승인을 얻어 내국 원재료를 사용하면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한편 FTA에서는 양자누적조항에 따라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이라도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즉, 수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협정 내용에 따라 단순 경유나 세관통제 아래 재포장·보존 등 단순작업을 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³⁵²⁾
- 따라서 완제품을 직접 수입할 경우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지만 자유무역지역에서 FTA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제조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이 FTA로 인하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음

352) 따라서 제3국에서 선적, 추가 가공 혹은 제3국 수출 후 수입되는 물품에는 FTA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과거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8%)이 아닌 방콕협정³⁵³⁾ 세율(6.2%)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 「WTO 협정 등에 관한 양허관세규정」은 일반 양허관세 이외 방콕협정과 개도국 양허관세 등을 일괄 규정하고 있고 1997년 재정경제부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서도 WTO 양허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함에 따라서 방콕협정 세율을 적용하였음³⁵⁴⁾
 - 그러나 2006년 재정경제부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별도로 원산지규정이 존재하므로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림³⁵⁵⁾
-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뒷받침하는 판정을 2008년 내림³⁵⁶⁾
- 방콕협정 제5조³⁵⁷⁾는 다른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함
 - 또한 협정 부속서 II 제1조는 “다른 참여국으로부터 일방 참여국의 영역으로 제5조의 의미 내에서 직접 운송된 상품으로서 수출 참여국에서 완전 생산 또는 획득한 상품이거나 수출 참여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한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가 우리나라일 뿐만 아니라 협정 참여국 간의 물품이동을 전제로 하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므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음

353) 1976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라오스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WTO 최혜국 대우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데 2002년 중국 가입으로 아·태 무역협정(APTA)로 개정됨

354)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물품도 마찬가지로(관협 47040-167(1997.7.22)호

355) 관세청 상담번호 20080714-0007

356) 심판원은 다만 오랜 기간 방콕협정세율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소급과세로서 청구인 주장을 인용하였다(국심 2007관0084).

357)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apply such tariff, border charge and fee, and non-tariff concessions in favor of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are set out in national List of Concession.

- 한편 미국에서는 직접운송원칙과 상관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세번 변경을 거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NAFTA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³⁵⁸⁾
 - 즉,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면 화물신분에 따라 부품이나 완제품 세율을 적용받음³⁵⁹⁾
 - 이에 자유무역지역과 NAFTA 국가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된 바 있음³⁶⁰⁾

-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FTA 협정의 기본취지와 자유무역지역의 특수한 법적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해석으로 자유무역지역이 위축되지 않으려면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도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즉, 원산지를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세율을 적용한다는 FTA의 기본취지를 고려할 때 협정을 문언대로 해석하거나 절차상의 이유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임³⁶¹⁾
 - 직접운송원칙은 우회수출을 배제하는 등 FTA 국가에서 발생한 제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협정세율을 제외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임

-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된 물품이 국내 수입될 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기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움

358) 19 U.S.C. 3332: (a) Originating goods. (1) ... a good originates in the territory of a NAFTA country if (A) the good i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NAFTA countries; or (B) (i) each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o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 undergoes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Annex 401 of Agreement as a result of production occurring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NAFTA countries ... (2) Special rules. (A) Foreign trade zones.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 good produced in foreign trade zone or subzone that is entered for the consumption in the customs territory of United States.

359) HQ W967896(20082.25) 및 HQ 183474 참조: 후자의 경우 브라질 혹은 멕시코산 설탕과 미국산 차와 구연산을 혼합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된 아이스티에 대한 판정임

360) HR 6415(www.naftz.org/index_categories.php/resources/66)

361) 원종학 · 마정화 · 정경화(2002)

- 자유무역지역 물품은 원료와 완성품 관세를 모두 면제받지만 국내물품은 역외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료관세를 부담하면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물품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은 협정세율 적용 여부가 아닌 원료 관세와 제품관세 선택권 및 역내 부가가치 과세 여부로 해결해야 함
- 마찬가지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되어 FTA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역외국가의 무임승차가 심각할 수 있음
- 즉, 제3국 원료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완성품으로 가공하여 다른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면 원료에 대한 관세 면제와 함께 FTA 특혜관세라는 이중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회수출이 성행할 수 있음
 - 한 예로 중국산 원료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완제품으로 제조되어 캐나다로 수출되면 원료와 완제품 관세가 모두 면제되는 반면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부담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³⁶²⁾
- 이에 따라서 미국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수출되면 국내수입으로 간주하여 미국 법에 의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캐나다나 멕시코에 납부한 관세에 상당한 금액을 미국에 납부하는 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밖에도 미국의 경우 특혜물품의 화물신분을 선택하면 원료관세를 적용받고 나아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추가된 각종 부가가치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없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 FTA 협정에서 관세환급제도 적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수출품이 부품과 완제품 관세 면제라는 이중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³⁶³⁾
- 이 경우 전술한대로 제3국이 원자재 수출을 통한 무임승차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역외부품을 활용한 수출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불가피한 지원제도임

362) 미국의 경우 관세환급제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

363) 다만 한·EU FTA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품에 대한 환급을 5%로 적용하는 셰이프가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미국은 칠레와 NAFTA에서 그리고 EU는 대부분 국가와의 FTA에서 관세환급을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한 예로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은 아무런 관세 부담 없는 반면 미국제품은 역외산 원료 그리고 중국제품은 완제품에 대한 관세부담을 안고 경쟁하게 되어 관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유리함³⁶⁴⁾

- 다만 전술한대로 자유무역지역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직접 수입품에 비하여 차별이 불가피함
 - 협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자유무역지역 이외 국내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측면과 직접운송원칙은 FTA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 또한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원칙적으로 국내수입이 아닌 수출이 주목적임을 고려해야 함
 - 대신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원료와 제품관세에 대한 선택권 등 별도의 방안을 통하여 일정 부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2.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방안

가. 화물관리의 중요성

- 자유무역지역은 국가 영토의 일정 부분을 외국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 각종 조세와 임대료를 감면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제도이므로 엄격한 업체·화물·작업 관리가 필수적임³⁶⁵⁾
 - 관리가 허술할 경우 부정·불법물품의 유입으로 인하여 납세 및 교역질서가 흔들릴 수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유무역지역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대부분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국내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이 됨

364) 장근호·허용석(2012)

365) 보세공장의 경우 관세유예 이외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엄격한 화물관리를 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됨

-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 때문에 미국의 경우 비록 상무성에게 자유무역지역 운영 책임이 있더라도 재무성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세관이 사실상 일상 업무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 물론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에는 세관의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통제가 전제되어야 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제도 도입 당시 입주자격에 중심을 두고 작업통제나 화물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한 예로 인천항 4부두의 경우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나 항만청이 실태조사를 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혜택은 커녕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짐
 - 또한 <표 V-3>에서 보듯이 자유무역지역 취지에 맞지 않는 농산물 업체가 입주하고 이에 따라 물품 관리에서 허점이 드러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국산 농산물 보호를 위하여 상당 수준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버젓이 입주한 사실은 입주자격 심사마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함

<표 V-3> 자유무역지역 생산품 분쟁 사례

-
- 청구법인은 콩나물콩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2cm 이상 싹을 키워 2011년 11월 15일 16:01분에 국내로 반입하면서 기타 채소(HS 0709.90.9000 기본세율 27%)로 수입신고함
 - 처분청은 같은 날 17:45분에 쟁점물품을 확인한 결과 싹의 크기가 1cm 정도로 콩나물용 기타대두(HS 1201.00.9010 기본세율 487%)로 수정 분류하여 경정 고지함
 -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 16일 10시에 싹이 2cm 이상인 견본품(1)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 물품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당시로서 수입검사가 종료된 이후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콩나물콩으로 부과 처분함
 - 청구법인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출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반출시점으로 당시 쟁점물품은 기타 채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시점으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콩나물콩으로 품목 분류해야 한다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조세심판원에 구함
-

주: 콩나물콩은 1~2일 사이에 싹이 1cm 정도 클 수 있다고 알려짐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12관167

- 또한 현행 법 규정은 자유무역지역 설립과 입주에만 주안점을 두고 이후 업체·작업·화물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적 원칙만 제시할 뿐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인한 문제점과 파급효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설립에만 급급하였고 아직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그 결과 업체는 입주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사항이 종료되고 세관의 사후 관리감독은 법령에 없는 자의적인 간섭 내지는 규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반면 미국의 경우 사후관리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나라 시행령에 해당하는 재무성 규정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규정 위반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함³⁶⁶⁾

- 전술한대로 자유무역지역은 엄격한 관리감독을 전제로 예외적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특혜의 반대급부인 화물관리의무를 입주업체가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작업 중단과 퇴출 나아가 설립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제도가 남용되면서 납세풍토와 교역질서 문란은 물론 국내업체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운영성과와 비교되는 각종 비용 및 부작용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지역 제도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과 현행 보세공장제도 등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성과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유인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후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나. 기타 고려사항

-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증진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임대료와 내국세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이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되기

366) 한 예로 자유무역지역 물품을 도난하면 최대 25만달러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때문에 관세(소비세) 유예 이외에는 별다른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 수출지원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관세유예 이외에는 혜택이 없는 미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지역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 담보 적용 및 세관 허가라는 이중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함
- 미국의 경우 대공황 이후 오랜 기간 착오를 거듭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해왔으므로 우리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한편 기대한 만큼 자유무역지역이 잘 운영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FTA 확산에 따라 관세 유예의 이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주장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전술한대로 자유무역지역 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의 기본 취지가 수출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외를 인정하고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바 국내수입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함
- 오히려 생산비용 인상과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 등 주변 환경 변화와 함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배후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남발하였고 나아가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사 제도가 경쟁적으로 도입되면서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한·미 및 한·EU FTA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가가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한 우회수출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전망이 부정적이지는 않음

-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하면 우리나라 및 수입국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아가 각종 내국세와 임대료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차제에 경제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등 각종 유사 제도에 대하여 운영성과를 재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도적 특성과 정책목표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특혜에 상응하는 엄격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

1) 추가적 지원방안

- 자유무역지역에 한정하여 역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외국인 투자, 고용, 수출 및 산업적 특성 등의 경제 기여도에 따라 지원 내용을 차별화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전술한대로 외국인 투자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 간의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국가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하여 순수한 투자 증대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요건 정비가 필요함
 - 다만 경제 기여도 등에 따른 지원 차별화는 경제자유지역 등 유사 제도와의 경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제도와의 조율이 필요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부분적 개편방안으로는 원료관세 선택권 부여와 함께 주기적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검토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지원방안은 미국 자유무역지역이나 우리나라 보세공장제도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안인데 다만 원료관세는 그 성격상 물품 및 역내작업의 사후관리가 불가피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함
 - 원료관세를 통하여 입주업체의 관세부담을 줄이고 전술한 바 FTA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발생하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음
 - 즉, 화물 반입 당시 원료관세를 선택하는 시점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역내물품 및 작업신고를 통하여 나중에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면 기본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³⁶⁷⁾

- 다만 이미 각종 세금과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상당량의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료관세 도입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지 않은 국내업체에 대한 상대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원료관세를 적용

367) 다만 반덤핑물품이나 관세쿼터 물품 등에 대해서는 반입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른 관세법 적용이 필요함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한 예로 화물관리 등에서 성실한 업체에 우선 적용하거나 유치산업이나 사양산업 등 정책적으로 민감한 산업에 대해서는 원료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나아가 수출을 제외한 국내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음
- 미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활동을 할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반출입 물품이나 제조공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승인을 요구함

□ 한편 원료관세와 함께 미국이나 우리나라 보세공장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면세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음

- 현재 자유무역지역 제도에서는 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 내국원재료에 상당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므로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함
- 반면 보세공장 제도에서는 제품과세를 할 경우 외국부품에 상당한 부분만을 과세하고 원료과세를 할 경우 사용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원료의 성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역내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미국 자유무역지역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물론 이 경우 역내물품과 작업신고 및 부산물 그리고 관세평가 등에서 세심한 관리가 불가피함

□ 이 밖에도 역외작업에만 적용되는 주기적 신고를 일정한 전제조건 아래 차등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령 준수와 업체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한 예로 법규 준수도가 높은 성실업체가 사용하는 반복적이고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는 일괄신고를 허용할 수 있음
- 다만 주기적 신고는 자율관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세관이 인증하는 재고관리체계를 도입한 업체에 대해서만 동 제도를 적용해야 함

2) 자유무역지역 설립과 가동

- 미국 자유무역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후관리 감독체계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보다는 보세공장제도와 더 유사함
 -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미국 자유무역지역 제도와 우리나라 보세공장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한 예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세관 허가 아래 진행하되 자율관리 지역의 경우 운영인(보세사)이 실질적으로 모든 작업을 관리하고 세관은 운영인을 감독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어쨌든 현재의 관리체계보다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운영감독체계가 필요하며 원료 관세 선택권이 도입될 경우 특히 화물과 역내 작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미국에서는 운영인이 자신의 담보 책임 아래 보세 상태의 화물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물품 운송·반입·작업·반출의 전 단계에서 세관의 허가를 요구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우선 우리나라도 미국 재무성 규정과 같이 상위 법령에 화물관리방안에 대한 세관의 책임을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확실히 주지할 필요가 있음
 - 관세청 고시를 통한 화물관리는 자의적인 규제라는 인식이 있어 관리감독이 쉽지 않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법적 판단이 예측 불가능하고 사후 구제 및 처벌도 쉽지 않음
 - 따라서 허가나 입주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 되어 있더라도 화물보안 책임은 상위 법령에서 세관에게 일임함으로써 일관된 관리 감독과 함께 부정행위를 최소화해야 함

- 만약 화물관리방안을 기획재정부령이 아닌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에 마련한다면 집행 권한은 세관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함³⁶⁸⁾

368) 혹은 미국처럼 자유무역법을 관세법의 일부로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혼동을 피할 수 있음

- 시행령은 손상물품이나 폐기물 그리고 관세평가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업체 피해를 보전하고 예상 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상세 규정에 대해서는 부록 미국 자유무역지역 제도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음
- 둘째로 자유무역지역 설립 및 입주절차와 관련하여 신중하고 엄격한 심의절차와 함께 허가 과정에서 세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관리책임의 방기, 잦은 입주업체의 퇴출 혹은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의 입주 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꾀하려면 입주신청 이후 7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는 요식절차를 지양하고 미국과 같이 1~4개월 동안 신원조사를 포함한 입주업체 경력을 조사하는 등의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함
 - 미국에서는 설립 신청 당시 세관과 재무성이 별도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설립이 허가되더라도 실제로 작업을 시작하려면 세관의 가동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세관은 입주업체 임원의 경력, 시설 및 보안체계의 적정성 그리고 화물관리체계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자신의 재량으로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데 설립허가 이후 5년 이내에 가동을 허가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자동 취소됨
-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반출입 물품, 제조공정 혹은 업종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³⁶⁹⁾³⁷⁰⁾
- 즉, 보세공장과 마찬가지로 산업정책 차원에서 자유무역지역에서 민감한 품목을 제조하거나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며 특히 원료관세를 도입한다면 유치산업이나 사양업종 보호가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개발이나 수출촉진의 명목으로 연면적 30%의 범위에서 입주

369) 한 예로 석유제품, 주류나 담배 등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구역제한물품으로 지정하여 반입을 제한하거나 별도 관리가 필요함

370) 미국의 경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설립허가 시점에 작업공정, 생산량, 원료 구입처나 부품 세부내역을 신고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자유무역위원회에 다시 신고해야 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체를 입주하도록 하는 조항은 폐지해야 함

- 나아가 미국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지원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과 기숙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금지를 포함한 논의도 필요함³⁷¹⁾

- 한편 세관이나 자유무역지역 관리자는 반입신고서상의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운영성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은 세금감면을 동반하므로 예산심사와 마찬가지로 주기적 성과분석을 통하여 제도 통폐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함
 - 미국의 경우 통계청에 반입신고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반입이 허가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셋째로 설립 허가가 나더라도 각종 시설·보안·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원활한 관리가 가능한지 조사하여 작업 개시를 승인하는 2단계 절차를 도입해야 함
 - 즉, 세관이 사전에 규정한 일정 수준의 통제시설, 재고장부기록, 작업절차 매뉴얼³⁷²⁾, 화물보안체계 등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세관이 확인한 다음 가동이 허용되어야 함³⁷³⁾
 - 우리나라는 현재 통제시설 이외에는 관세청 고시로 물품관리체계를 심사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고조사를 차별할 수 있을 뿐 자율관리원칙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전심사 및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음
 - 산업단지과 물류단지형에 따라 이들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는데 다만 자유무역지역이 점차 복합단지형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참작해야 함

-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이 확인되면 화물 운송·반입·제조·전시·반출 등의 작업 전 과정에 있어서 세관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인(보세사)을 고용하는 경우 이들의 책임 하에 역내 작업을 자율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371) 미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누구도 거주할 수 없고 소매 판매도 할 수 없음

372) 신속한 심사를 위한 재고장부기록 시스템의 설명서에 해당함

373) 결함이 보완되지 않으면 작업개시를 승인할 수 없고 이러한 상태가 5년 지속되면 설립허가가 취소됨

- 이 경우 세관은 화물을 운영인에게 양도하고 운영인의 동의 아래 입주업체는 물품 반입·제조·폐기·반출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운영인은 이상 상황에 대하여 세관에 보고함³⁷⁴⁾
 - 운영인은 재고장부기록 등을 자신의 책임 아래 유지 관리하므로 입주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³⁷⁵⁾
 - 세관은 대신 화물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시점에 물품 검사를 통하여 운영인의 책임범위를 설정하고 이후 역내작업과 물품반출을 허가하며 운영인의 화물 관리와 재고장부기록을 감독함
 - 이처럼 운영인(보세사)을 이용한 자율적 관리체제에서는 운영인(보세사)과 입주업체 사이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 넷째로 작업 승인 이후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세관은 벌과금 이외 작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업체 퇴출이나 설립 취소를 건의할 수 있어야 함
- 미국에서는 세관이 정한 보안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지만 보안점검 결과에 따라 상기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는 중죄로 처벌하여 도난의 경우 주간교역이나 무역물품 도난으로 간주하여 최대 25만달러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됨

3) 화물이동 및 작업

- 전술한대로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방식은 우리나라 보세공장에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미국 방식을 참고하여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화물 운송·반입·작업·반출 모든 단계에서 세관의 허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영인이 자신의 담보 책임 아래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므로 각각의 작업

374) 유기물품이나 체납 등에 대한 책임도 운영인에게 있는데 장부기록과 실제 물품의 차이에 대한 오차조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375) 물론 운영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입주업체에게 물품보관과 장부기록 유지를 위임할 수 있음

단계에서 입주업체는 운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더욱이 우리나라는 운송을 제외하면 보세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보세공장절차를 완전히 준용하지 않는다면 화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이외 세관은 물품 반입·작업·반출에 대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허가를 하지 않거나 법규 준수나 화물안전 등에 우려가 있으면 물품 인수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 자유무역제도에는 작업허가절차가 없으므로 반입신고를 할 때 사용·소비나 보관·전시 등 반입목적을 명시하는데 미국의 경우 작업신고를 별도로 하므로 반입 시 그 목적을 따로 명시하지 않음³⁷⁶⁾

- 대신 원료과세나 제품과세 여부에 따라 화물신분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또한 주류나 휘발유 등 개별소비세 물품 혹은 관세환급 물품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구역 제한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원료관세를 도입할 경우 반출입 물품과 역내작업에 대하여 세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입목적에 따른 구분이 필요 없게 됨
- 작업허가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조·보수·전시·폐기작업에 적용됨

□ 또한 반입시점에 운영인, 운송인 그리고 세관책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여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세관의 반입 승인 이후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입사실을 입력해야 세관 관리가 종료되며 오차가 발견되면 운영인과 운송업체가 공동으로 세관에 보고하여 추후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데 다만 일정 수준 이하의 오차는 보고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이를 명기함
- 이외 주기적 신고물품, 일시장치물품, 수입신고물품 혹은 대체 가능성이 있는 물품 등 주의 물품에 대해서 세관이 별도 보관을 명하는 규정이 필요함

376) 실제로 보면 화물관리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시스템에서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작업신고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관이 불가피하게 규정한 절차임

- 미국의 경우 작업신고 이외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에서 설립 당시부터 원료와 생산물품 등 제조공정을 일일이 사전에 허가하는데 우리나라도 원료과세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작업신고를 통한 관리가 필수적임³⁷⁷⁾
 - 다만 작업신고절차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1주 단위의 주기적 반출입신고와 1년 단위의 포괄적 작업신고를 허용할 수 있음³⁷⁸⁾
 - 현재 보세공장 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포괄적인 작업신고를 준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이 문제가 없으나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공장과 달리 중소기업체가 다수 입주한 사실을 고려해야 함³⁷⁹⁾
 - 또한 위험도가 낮고 반복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기적 반출입 신고를 허용할 수 있음³⁸⁰⁾

- 나아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다양한 생산방식을 고려할 때 관세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필요함
 - 한 예로 한 개의 자유무역지역 물품에서 두 개 이상의 물품이 생산될 경우 관세는 물품분리시점의 상대가격에 따라 과세할 수 있고 부산물(폐기물)의 과세방식과 평가 기준도 필요함
 - 관세평가는 세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평가시점과 방식이 현재 자유무역지역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측이 어렵고 분쟁 소지가 있음
 - 물론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면 과세 산정이 더 간편해질 수 있음

377) 전술한대로 미국에서는 설립허가 시점에 작업공정, 생산량, 원료 구입처나 부품 세부내역을 신고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자유무역위원회에 다시 신고해야 함

378)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역외작업을 제외하면 이러한 일괄신고제도가 없음

379) 최근 2년간 수출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원자재 관리방식이 관세청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업체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원료·제품·보세공장별 일괄적 원료과세 신청이 가능함

380) 서류심사나 실물검사가 필요없는 물품으로 HS 품목별로 추정 신고서와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함: 다만 이 경우 신고 이후 추가적인 제조공정이나 추정신고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관세영역을 경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출을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함
 - 특히 다른 항만으로 가서 수출되는 경우 보세 운송인에게 수출 책임이 있고 선적분할도 제한되는데 다만 최대 90일간 보관이나 수입신고로의 변경이 가능함³⁸¹⁾
 - 우리나라는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보세운송 고시를 준용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 미국은 물품 추적을 위하여 해당 물품의 반입과 작업신고서 등 과거이력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송부하여 수출 이외 물품 처분이 가능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³⁸²⁾
 - 또한 원료관세가 적용되는 특혜물품과 그러한 물품으로 구성된 완제품은 보세창고 등으로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음

4) 재고장부시스템

- 우리나라는 물품관리체계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고조사를 차별하고 그 이외 규제는 없으나 미국은 세관이 재고장부시스템을 사전에 승인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작업절차 매뉴얼을 사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운영인은 장부기록을 수입시점이 아닌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이 양도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지해야 함
 - 구역관리번호나 화물식별번호에 의한 장부시스템으로 내국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의 반입 이후 작업 등의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되기까지 사후심사에 필요한 추적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부체계가 완비되고 또한 물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각종 증빙서류는 반입물품목록에 따로 보관해야 하며 세관은 재고장부와 물품 이외 운송업체나 물품 공급자와 구매자의 기록까지도 조사할 권한이 있음
- 우리나라는 자율점검포 심사를 거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사전에 고지하

381) 미국의 경우 다른 항만을 이용한 수출에 있어서 수출 확인에 대한 책임이 운송업체에게 부여됨

382) 이 경우 서류보관기간은 새로운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양도한 시점부터 시작함

여 최장 17일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물품수량이 부족한 등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조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미국에서도 운영인은 1년에 최소한 한 번 자체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세관이 요청하는 경우 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³⁸³⁾
- 사후심사는 사전에 통보하지만 심사기간이 세관의 판단에 따라 수개월 간 지속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와 달리 이행조사는 불시 점검이 원칙임
- 조사결과에 따라 미국 세관은 벌과금 이외 손실청구, 작업중지나 허가취소 건의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신고와 실제 물량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면 관세를 납부하는 규정만 존재하지만 미국의 경우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예외조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³⁸⁴⁾

383) 운영인이 재고조사를 하는 시점에 세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세관에 미리 통보해야 함

384) 한 예로 물품이 손상되면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이외 반출입 시점에 발견된 분실 등의 오차에 대하여 세관에 보고하면 운영인 책임을 면제하고 자연적 요인에 따른 용량 변화에 대한 예외 그리고 미세한 오차는 연차보고서에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자세한 규정이 있음

Ⅵ.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 자유무역지역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화물관리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함
 - 2000년을 전후하여 세계적 분업생산에 기초한 자유무역지역이 각광을 받자 우리나라는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 개발에 심혈을 기울려 현재 15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투자와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지역과 같은 특례 제도도 도입 운영함

- 그러나 외국 유사 제도와의 경쟁, 임금상승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변화, FTA 확산 및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지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마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분양률이 매우 낮고 분양이 되어도 상당 부분 영세업체가 입주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나아가 이미 국내에서 영업 중인 업체가 각종 특혜를 제공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사이에 조세경쟁이 벌어지는 사례도 등장함
 - 또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잘못 설치하여 지정 해제가 논의되고 입주업체가 사후 요건 미달로 자주 퇴출되며 심지어 농산물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등 제도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됨
 - 나아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지자체는 기숙사나 복지관을 역내에 설치하려는 등 자유무역지역의 기본 취지를 몰각한 발상이 제기되기도 함

- 이와 같은 상황은 각종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유무역지역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동시에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사 제도가 병행 추진되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즉, 자유무역지역 설립이라는 성과주의에 집착하여 실질적 내용보다 형식적 절차에 치중함으로써 설립 이후 입주, 가동, 작업 및 화물관리에 대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이에 편승한 입주업체는 당국의 사후관리를 자의적 간섭이나 규제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자유무역지역 설립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 운영으로는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교역질서가 문란해지며 국내업체가 피해를 입고 결국 운영성과가 미미하여 장기적으로는 제도 무용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및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자유무역지역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 지역의 생산체계와 외국인 투자를 활용한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원료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환급을 허용하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과 FTA 특혜세율의 이중 혜택이 가능하므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게 상당한 매력이 됨³⁸⁵⁾
-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국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엄격한 사후관리와 운영성과에 대한 사후분석 등을 수행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자유무역지역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화물관리를 강화하여 자유무역지역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함

- 이 과정에서 특허보세구역과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원료관세 선택권 도입 가능성 등을 논의함
- 이외 우리나라 보세공장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괄작업신고와 주기적 신고제도

385) 다만 한·EU FTA에서는 대 유럽연합 수출이 급증할 경우 관세환급 세이프가드가 발동할 수 있음(장근호·허용석(2012))

도입도 제안함

- 다만 자유무역지역이 지역을 한정하여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는 특례 제도임을 명심하여 자유무역지역 설립과 운영 및 사후 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산낭비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국내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관세를 포함한 소비세 유예라는 제한된 혜택만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보세절차 이외 물품 반입부터 반출까지 전 과정에서 세관의 허가를 요구하는 이중 관리를 통하여 특혜를 제공받는 업체의 책임을 분명히 함

- 구체적으로 원료관세 선택권과 함께 주기적 신고 및 포괄 작업신고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지역 설립, 가동, 작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FTA 확대로 각종 원자재 관세가 면제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관세유예 측면에서 보면 자유무역지역이 존재할 의미가 사라지게 됨
 -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현 상황을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세공장제도에서 운용 중인 원료관세와 완성품 관세 선택권을 자유무역지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보세공장과 달리 자유무역지역 제도에서는 상당 규모의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므로 원료관세를 허용할 경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³⁸⁶⁾
 - 즉, 자유무역지역의 다양한 특혜, 사양·유치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효과 그리고 역내 부가가치 면세 및 조세경쟁 등 다양한 문제점과 보완책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386) 이외에도 역내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 여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물품에서 2개 이상의 물품이 생산되거나 부산물 발생시 관세평가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필요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원료관세를 적용할 경우 역내작업에 대한 관리가 불가피하므로 현재 보세공장에 적용되는 화물관리체계를 자유무역지역에 도입해야 함
- 원료관세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지역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세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원료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재무성 차원에서 시행령을 마련하여 자유무역지역 설립 이후 작업개시에 필요한 여건 충족을 확인하여 가동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물품의 반입에서 작업 및 반출까지 전 과정을 통제함
 - 물론 이 과정에서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 신고와 자율관리를 허용함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에서 세관 책임에 대하여 일반적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책임이 불투명하고 관리가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많음³⁸⁷⁾
-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세부적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함
- 우선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수출입 포함) 물품과 제조공정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정책효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함
 - 둘째로 설립허가 당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입물품, 제조공정, 입주업체 등을 제한 내지는 금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체도 지역개발 등의 명목으로 연면적 30% 이내로 입주를 허가하거나 기숙사 등의 부대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은 금지할 필요함
 - 또한 입주업체에 대한 세밀한 심사와 함께 반출입 물품과 제조공정 변경시 관리권자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함

387) 한 예로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운송절차 이외 증빙자료 이관을 포함한 자료보관기간이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실제 물량과 장부상의 물량이 차이가 있을 때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관세 부과가 필요함

- 셋째로 자유무역지역 설립허가가 있더라도 통제시설 등의 화물보안체계나 재고장부시스템 등 지역 운영에 필요한 기본 여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세관의 확인을 거친 다음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함
 - 이후 화물 운송·반입·작업·반출 시 세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물품 성격에 따라 구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입주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 신고나 포괄적 작업신고와 함께 미국과 같이 자유무역지역에 운영인(보세사)을 두고 전문적인 화물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운영인과 입주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세관은 운영인을 통하여 입주업체를 간접 관리하지만 법규 위반이 발견되면 벌과금 이외 작업 중단을 포함하여 엄격한 제재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마지막으로 입주업체의 재고장부시스템이 사후심사에 필요한 물품 추적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화물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세관이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방식이나 심사기간을 세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율관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재고장부체계와 사후심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심사기간 제한이나 사전고지의무 등으로 세관의 심사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함
 - 미국의 경우 세관이 업체의 재고장부체계를 사전에 승인하며 불시점검과 함께 운송업체와 물품 구매자 및 공급자의 장부까지 조사할 권한이 있음

- 우리나라는 세관을 제외한 자유무역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엄격한 화물관리를 불필요한 규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상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로서 특혜에 합당한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제도임
 -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각종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국내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엄격한 통제가 불가피함

- 지금과 같이 지역균형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고 설립 이후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업체의 피해는 물론 운영성과가 미미하여 추후 제도 무용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주요국과의 FTA 체결로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증대를 위한 생산 및 투자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현 단계에서 자유무역지역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즉 지역경제 활성화나 성과주의에 집착하여 단기적인 시각에서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기 보다는 수출 및 성장정책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다시 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임

참고문헌

- 강용수 · 정대철, 「자유무역지역 제도비교를 통한 마산항 발전방향」,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19집 제1호, 2003, pp. 161~188
- 김영춘 · 최해범, 「보세공장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3호, 2011, pp. 25~52
- 김현덕,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5권 26호, 2011, pp. 533~538
- 김동룡 · 신용준, 「FTA 확대에 따른 마산자유무역지역 운영 및 물품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5권 제4호, 2010, pp. 275~299
- 김성용,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한 관세자유무역지역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관세와무역』 5월호, 2003
- 김태인, 「동아시아 주요국의 FTZ 화물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홍콩, 대만, 상해 FTZ 비교」,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2006, pp. 125~145
- 마산세관 자유무역지역과, 『업무혁신 공유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통합 매뉴얼』, 2006
- 박병주 외, 『신항 배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업 유치 전략』, 경남발전연구원, 2009
- 박재곤,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추진 방향」, 『KIET 산업경제』 통권117호, 2008, pp. 35~47
- 박재곤 · 강기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 부산경남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국가 · 일반 · 도시첨단 · 농공단지』, 2011
- 원종학 · 마정화 · 정경화,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관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이기웅 · 곽현,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1호, 2006, pp. 167~182

이명배,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화물정보관리에 관한 합리화 방안」,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4호, 2006

장근호 · 허용석,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작용이 교역과 내수물품의 경쟁조건(보호 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세무학연구』 제29권 3호, 한국세무학회, 2012. 9, pp. 167~189

Andrew Feltenstein and Florenz Plassmann, “The Welfare Analysis of a Free Trade Zone: Intermediate Goods and the Asian Tigers,” *The World Economy*, 2008

An-Shuen Nir and Wei-Ling Hung, “Assessing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n implementing maritime policy in Taiwan,”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Vol. 6 No. 1, 2012, pp. 140~151

Dennis Puccinelli, “Foreign Trade Zone US Customs procedures and Requirements,” *Export America*, 2003, pp. 16~17

Foreign Trade Zone Board, “72nd Annual Report of the Foreign Trade Zone Board to the Congress of United States”(www.trade.gov/ftz), 2011

Gi Tae Ueo and Michael Roe, “Evaluating the competitiveness of container ports in Korea and China,”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82, 2005, pp. 910~921

Lee, Kang Bin, “The Activation Measures of Airport Free Trade Zone for the Building of a Hub of International Logistic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Vol. 28, 2005, pp. 63~88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Field Operations, “Foreign Trade Zone Manual, Publication Number 0000-0559A”(www.cbp.gov/linkhandler/cgov/trade/cargo_security/cargo_control/ftz/ftzmanual.ctt/FTZManual2.pdf), 201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www.ftz.go.kr/gunsan/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www.ftz.go.kr/daebu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www.ftz.go.kr/donghae/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www.ftz.go.kr/
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www.ftz.go.kr/yulchon/
인천항만공사, <http://www.icpa.or.kr/>

〈부록〉 미국 자유무역지역제도

1. 자유무역지역 설립과 운영 개시절차³⁸⁸⁾

- 자유무역지역은 위원회의 설립 허가와 세관의 작업개시 인가라는 두 단계를 거쳐서 운영이 개시됨
 - 즉,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자유무역지역 설립,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연후 세관은 자유무역지역으로의 화물 반입을 허가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무역지역이 작동하기 시작함

가. 신청 및 허가

- 자유무역지역 신청 및 허가는 각종 법령³⁸⁹⁾에 따라 진행되지만 위원회가 별도로 다른 요건을 설정할 수 있음
 - 주 의회가 권한을 부여한 민간 혹은 공기업만이 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준구역(subzone)도 주 의회가 지역 설치를 허가한 설립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제조 등의 작업이 기존 자유무역지역에서 진행되기 어렵고 공익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는 준구역 설립을 승인할 수 있음³⁹⁰⁾

-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자유무역지역의 필요성, 운영계획의 적절성, 현장 및 설비의 적정성, 지방정부의 지원내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과 업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허가함

388) 「Foreign Trade Zones Manual」,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Field Operations, Publication 0000-0559A, 2011

389) 자유무역지역법(19 U.S.C. § 81) 및 위원회 규정(15 CFR 400.21~33)

390) 15 CFR 400.31(c), 23(b)

-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³⁹¹⁾
- 통상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항만에 인접한 지역³⁹²⁾에 설치되는데 세관이 있는 지역에도 설립될 수 있음
 - 준구역은 세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세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장부기록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하고 또한 세관이 정하는 검사장에 화물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항만에 인접하지 않아도 됨³⁹³⁾
- 가장 먼저 상무부 소속의 자유무역지역 사무총장에게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신청해야 함³⁹⁴⁾
 - 기존 자유무역지역도 주요한 사업 변경이 있으면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사실이 통보되면 세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함³⁹⁵⁾
 - 반면 중요하지 않은 사업 변경은 신청 당시 세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결정함
 - 한 예로 기존 자유무역지역의 확장은 설립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경계선 조정은 사전에 항만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다만 세관의 작업개시 인가가 여전히 필요함
-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해당 설립 요청이 공익과 관련이 있을 경우 연방 및 주정부 기관과 민간협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한편 항만청장은 설립 신청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관련 정보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심의기간은 원칙적으로 10개월이지만 제조업의 경우 1년 동안 심의할 수 있음

391) 15 CFR 400.31

392) 즉, 항만에서 60마일 혹은 자동차로 90분 이내 지역이어야 함

393) 15 CFR 400.21(b)(2)(ii)

394) 신청절차와 요건은 15 CFR 400.24~400.26 참조

395) 19 U.S.C. § 81f(b) 및 15 CFR 400.26

-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사무총장은 조사관을 지정하여 신청서를 심의하는데 우선 설립 신청 사실을 관보에 회람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회람기간은 60일인데 공청회가 개최될 경우 공청회 이후 15일간 계속 게재되고 이후 15일 동안 반대의견 제시가 가능함
 - 회람이 끝나면 120~15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고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이 통보하는데 이의가 제기되면 유사한 심의절차를 다시 거쳐서 확정됨
 -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국민건강, 안전 혹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 허가서에 일정한 전제조건을 추가하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충족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도입할 수 있음³⁹⁶⁾

- 항만청장은 회람이 끝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함³⁹⁷⁾
 - 신청자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통하여 세관과의 컴퓨터 인터페이스(interface)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세관은 신청자와 주요 임직원의 인적사항을 조사하여 밀수 등 범죄사실 등이 있으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세관이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하면 동 보고서는 재무성에 제출되어 검토를 거쳐서 재무성 의견이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에 통보됨³⁹⁸⁾

나. 운영기간

- 따로 운영기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서의 효력은 영구적이지만 다음의 경우 설립 허가가 정지, 취소 혹은 제한될 수 있음
 - 위원회는 설립자나 운영자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유무역지역법을 위반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³⁹⁹⁾
 - 허가 이후 5년 이내에 운영을 개시하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됨

396) 15 CFR 400.33(a)

397) 15 CFR 400.27(d)

398) 15 CFR 400.27(e)

399) 19 U.S.C. § 81r과 15 CFR 400.28(c)

- 이외 허가서에 명기된 시한이 갱신되지 않으면 자유무역지역이 종료되며 또한 공익을 이유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일정 행위를 제한 내지는 금지할 수 있음⁴⁰⁰⁾

다. 운영 개시(activation)

- 자유무역지역은 항만청장의 작업개시 즉, 가동허가⁴⁰¹⁾가 있어야 운영이 시작될 수 있으며 특히 제조·가공작업은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함⁴⁰²⁾
 - 가동 승인은 항만청장과 설립자가 자유무역지역 신분(zone status)을 취득한 물품을 역내로 반입하여 제조 등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함⁴⁰³⁾
- 운영자는 작업장소와 내용 그리고 반입화물의 성격 등을 포함한 작업개시 신청서를 항만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해야 함⁴⁰⁴⁾
 - 건물, 출입구, 파이프라인, 탱크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인 구역의 청사진(배치도)
 - 재고·장부기록 시스템에 대한 작업절차 매뉴얼(procedures manual): 설립자나 운영자가 동 매뉴얼이 법적 요건⁴⁰⁵⁾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설립자의 서면 동의서(운영자가 작업 개시를 신청할 경우)
 - 가동 승인이 작업절차 매뉴얼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매뉴얼에 대해서는 이행조사(compliance review)나 사후심사(audit)를 통하여 검증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청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항만청장은 작업개시 신청서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운영자/설립자 및 구역 운영을 맡은

400) 15 CFR 400.43

401) 19 CFR 146.6(a)

402) 15 CFR 400.2(g): '제조'는 외국물품의 실질적 변형으로 인하여 이름, 성질 및 사용처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가공'은 제조 이외의 물품 상태의 변경으로 품목분류의 변화나 수입신고자격의 변동을 유발하는 활동을 말함(15 CFR 400.2(k))

403) 19 CFR 146.1(b)(2)

404) 19 CFR 146.6: 운영자가 없으면 설립자가 신청하며 기존의 가동 중인 구역도 운영자가 다른 경우 작업개시 신청이 필요함

405) 19 CFR Subpart B

주요 임직원의 자격, 인성 및 경험, 물품 반입시설의 적정성과 보안체계 등에 대한 세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security survey)

- 세관조사는 운영자, 구역관리자와 재고·장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동 시스템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 직원으로 국한되며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
- 또한 세관의 지문카드 작성 등 신원 확인을 위해 조사가 수행될 수 있음⁴⁰⁶⁾

□ 조사 결과 부정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항만청장은 작업개시를 거부할 수 있음

- 부정적인 조사결과는 첫째, 신청서에 포함된 중요 사실의 허위 진술이나 사기행위 둘째, 법령⁴⁰⁷⁾에 명기된 명단을 부정확하거나 불안전하게 제출한 경우 셋째, 절도, 밀수, 사기나 유사한 재산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자가 운영자 경영진에 포함되거나 혹은 직원으로 고용되어 화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임
- 화물보안조사: 세관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작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신청자가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만약 운영자가 중대한 결함을 보완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작업개시 신청이 거부되어야 함

□ 항만청장은 또한 운영자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등 각종 요인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즉, 항만청장이 가동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⁴⁰⁸⁾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그러한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면 됨
- 항만청장의 조사는 대체로 1~4개월 소요되며 그동안 조사결과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임시로 작업 개시를 승인할 수 없음
- 일단 허가되면 법에 명기된 경우⁴⁰⁹⁾를 제외하면 승인이 정지 혹은 취소되지 않음

406) 19 CFR 146.6(a) TD 93-18: 신원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는 정보 및 사생활 보호법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면 공개할 수 없음

407) 19 CFR 146.7(g)

408) 19 CFR 146.82(a)

- 항만청장은 작업개시에 대한 결정 내용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함
- 작업 개시가 승인되면 즉시 운영자 보증금(Customs Bond)이⁴¹⁰⁾ 집행되며 이 경우 작업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되어 화물에 신분(status)이 부여되어 역내로 반입될 수 있음
 - 작업개시 시점에 이미 자유무역지역에 존재하는 물품으로 국산품이나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은 내국물품의 자격으로 반입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외 물품은 반입절차(19 CFR 146.32)에 따라 작업지역으로 정식 반입되거나 외부로 전출되어야 함
 - 항만청장은 규정에 따라 보증금(bond)을 결정하는데 대체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외국물품 평균가액에 상당한 관세 등 납부금을 담보액으로 함
 - 운영자가 담보(bond)를 집행한 사실이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설립자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지 않음⁴¹¹⁾

라. 지역범위 조정(Alteration)

- 자유무역지역의 범위를 조정하려면 항만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항만청장은 적정성과 안전성을 조사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함⁴¹²⁾
 - 지역 조정은 기존 지역(준구역)의 경계선 변경, 기존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의 작업개시(동일 항만으로 같은 운영자), 작업 중단, 작업이 중단된 구역의 재가동으로 경계선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함⁴¹³⁾
 - 이러한 범위 조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되어도 화물안전에 대한 책임이 각 운영자의 담보를 통하여 명확하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음

- 운영자는 이미 작업 중인 지역의 조정이나 경계선 조정을 위한 신청서를 항만청장에게

409) 19 CFR 146.82, 83

410) 19 CFR 113.73

411) 19 CFR 146.6(d), (e)

412) 19 CFR 146.7

413) 19 CFR 146.1(b)

제출해야 함

- 일반적인 작업개시 신청과 마찬가지로 지역 건물의 배치도(변경사항 포함)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재고·장부기록 시스템이 기존 체계와 달라지면 설립자로부터 인증을 받은 절차 매뉴얼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세관조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 대신 항만청장이 보안검사를 지시할 수 있음
- 지역 조정은 대체로 신청 이후 2~3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됨
- 세관이 사전에 허가하면 작업 개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일부분을 보세창고, 컨테이너 운송 장소나 중앙검사장(CES)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항만청장은 다른 시설과 보세창고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함⁴¹⁴⁾

마. 작업 중지(deactivation)

- 설립자나 또는 설립자가 동의하는 경우 운영인은 자유무역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작업 중지(deactivation)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정확한 장소가 표시된 배치도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운영자는 내국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을 해야만 항만청장이 작업 중단을 승인할 수 있고 또한 승인의 조건으로 역내 모든 물품에 대한 실사를 지시할 수 있음⁴¹⁵⁾
- 한편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고 운영자나 지역의 변화가 없으면 이전에 작업을 중단한 지역에서 작업중지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작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 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역조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바. 기타 변동사항

- 항만청장은 다음의 경우 규정⁴¹⁶⁾에 따라 운영자 담보(bond)를 새로 요구할 수 있음

414) 19 CFR 19.4(b)(6)

415) 19 CFR 146.7(b)

- 첫째, 작업이 시작된 지역이 많이 변경된 경우 둘째, 반입화물이나 작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셋째, 기존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넷째, 담보와 관련된 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운영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화물반입이 중단되고 내국물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은 양도되거나 국내 반입되어야 함
- 운영자가 바뀔 수도 있지만 항만청장이 새로운 운영자를 승인하고 신원조사를 완료하고 또한 담보를 승인하기 이전까지는 설립자가 기존 운영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
- 설립자는 항만청장에게 운영자 변동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재고·장부시스템이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운영자의 인증서와 절차 매뉴얼을 제출해야 함
 - 항만청장은 운영자와 그 임직원에게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새로운 운영자가 승인되고 담보가 제출되기 이전까지는 기존 운영자에게 법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다만 작업승인이 중지되거나 작업이 정지되고 내국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된 경우 그러한 책임에서 면제됨
- 운영업체의 소유권에 변화가 있을 경우 소유권의 주체가 개인, 파트너십 혹은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차이가 있음
- 개인이나 파트너십의 경우 신규로 작업개시를 신청해야 하지만⁴¹⁷⁾ 주식회사의 경우 새로운 실체로 바뀌지 않는 한 단순한 명의변경으로 간주함
 - 운영자 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관에 통보해야 함

416) 운영인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담보를 다시 설정해야 하며 법령(19 CFR 113.13(c))이 규정한 다른 경우 30일이 제공됨(19 CFR 146.7(d))

417) 19 CFR 146.6

2.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관리감독 책임

가. 기본 사항

- 세관은 자유무역지역 물품과 역내작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직접적인 감독보다는 회계심사(audit)를 통한 사후 관리에 치중하고 대신 운영자가 실물 관리를 담당
 - 자유무역지역에 필요한 세관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유예가 가능함⁴¹⁸⁾

- 세관의 심사방식은 다음의 6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됨
 - 역내에 장치하기에 앞서서 실물조사를 통하여 운영자의 책임을 결정
 - 물품 인수·배송 및 역내작업을 위한 사전허가를 운영자에게 발급
 - 물품의 실물관리, 채권, 장부기록, 보관 및 가공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 설정
 - 운영자가 제대로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고 장부기록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심사(audit) 및 이행조사(compliance review)
 - 운영자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 설정과 손실 평가
 -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90일의 가동정지 권한 행사⁴¹⁹⁾(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위원회에 권고)

- 항만청장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감독을 세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독권한은 사후심사, 재고물품, 특정 거래나 절차의 이행, 장부·보안·보관상태 조사 등을 포함함⁴²⁰⁾
 - 사후심사와 이행조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규준수 확인 수단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조치임

418) 19 U.S.C. § 81n: 화물수수비(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를 말함

419)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동 정지가 90일을 초과하여 지속될 수 있음(19 CFR 146.82)

420) 세관 관리감독권의 범위와 성격은 19 U.S.C. § 81a~u, 19 CFR 1646a, 161.2, 146에 제시됨

나. 구체적 관리방안

- 우선 항만청장은 자유무역지역 신분을 취득한 물품과 관련된 거래로서 세관 허가가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 실물조사를 세관에게 명령할 수 있음
 - 운영자는 지역 경비를 위하여 보안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항만청장은 이와 별도로 세관요원을 파견할 수 있음
 - 운영자는 세관요원의 출입을 허용하고 이행조사나 사후심사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운영자 및 사용자의 장부기록과 재고체계를 설명하는 등 세관조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세관 재량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직원이 세관요원을 수행할 수 있음⁴²¹⁾

- 사후심사는 운영자(사용자)의 재고·재무장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회계조사로서 이행검사보다는 덜 빈번하게 실행되는데 그 빈도는 기밀사항임
 - 사후심사(audit)는 물품의 성격, 재고규모, 적발내용 등에 따라 1주에서 수개월 간 지속될 수 있고 당해 연도를 포함한 수년간의 작업내역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후심사는 원칙적으로 미리 고지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불시 점검이 가능함
 - 세관은 운영자/사용자와 적발사실에 대하여 비공개 면담을 개최하고 본청(현장감사관리실)⁴²²⁾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항만청장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됨

- 항만청장은 위험관리평가에 근거하여 이행조사를 수행해야 함⁴²³⁾
 - 이행조사(compliance review)는 세관요원이 역내 상태, 절차, 장부, 거래를 실물검사 혹은 관찰하기 위한 방문으로 운영자(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후심사 이전에 감사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지역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421) 19 CFR 146.4(b)

422) Field Regulatory Audit management

423) FTZ Compliance Review Handbook, HB3500-10(19 CFR 146.3(b))

- 사후심사와 달리 이행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데 다만 필요하면 미리 통보할 수 있고 세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감사대상 직원이 동행할 수 있음
 - 이행조사는 대개 1~2일 이내에 완료되는데 다만 적발사실에 따라 항만청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빈도는 개별 자유무역지역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결정됨
 - * 고위험군: 연간 최소 3번, 중간급: 연간 최소 2번, 저위험군: 최소 2년당 1번
 - 세관은 책임자와 비공개 면담을 통하여 적발사실을 협의하고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두로 경고한 후 사후방문을 통하여 조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음
- 세관 관리와 별도로 항만청장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음⁴²⁴⁾
- 운영자는 항만청장이 지정한 요건을 준수하고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하고 적절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⁴²⁵⁾
 - 또한 설립자는 위원회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항만청장이 실물관리를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회계감사원칙 아래 자유무역지역 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영자에게 부여됨
- 즉, 운영자는 물품 인수, 배송, 보관, 장부기록, 폐기, 제조, 처분, 보안 등의 모든 작업을 감독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행사하는 관리 정도를 참작하여 감독 수준을 결정해야 함⁴²⁶⁾
 - 법령⁴²⁷⁾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손실청구(liquidated damage)나 벌금(fine)이 적용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위하여 화물 반입, 처리, 제조, 전시나 폐기를 신청할 때 운영자의 동의를 필요하며 동의를 없으면 항만청장은 허가를 거부해야 함⁴²⁸⁾⁴²⁹⁾

424) 15 CFR 400.41

425) 15 CFR 400.46(a), (b)

426) 19 CFR 146.4(a)

427) 19 CFR 146, 113

428) 다만 운영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주이거나 구입자인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 없음

3. 자유무역지역 화물신분(Zone status)

- 화물 신분(zone status)이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어 자유무역지역 규정을 적용받는 화물의 법적 신분을 의미하는데 관세법에서는 이들 화물을 4가지로 구분하여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영역으로 이동할 때 다른 절차를 적용함
- 화물 신분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신청하는 자나 화물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규정에 따라 화물 신분이 미리 결정될 수도 있음
 - 화물신분은 특혜 외국물품(PF), 비특혜 외국물품(NPF), 내국물품(D), 구역제한물품(ZR)으로 구분됨⁴³⁰⁾
 -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다음의 물품은 화물 신분을 부여받지는 않음: 1) 금지물품 여부 조사가 필요한 물품 2) 단순작업(보수)⁴³¹⁾을 위하여 일시 저장된 물품⁴³²⁾ 3) 자유무역지역 환송물품 4) 반입허가를 위하여 보관중인 물품 5) 직접인도절차(direct delivery procedure)에 따라 반입허가를 기다리는 물품⁴³³⁾ 6) 사무용품 등 자유무역지역법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⁴³⁴⁾
-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반입되는 시점에 화물신분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입 신청이 반환됨
 - 또한 법에서 허가하는 경우 이미 반입된 물품의 신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음
 - 화물신분을 신청할 때 어떤 화물이 그 대상인지 세관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도 충분히 설명해야 함

429)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이동도 세관이 신고자가 아닌 운영자에게 양도하므로 동의를 필요 없음(19 CFR 146.71(a))

430) Privileged Foreign Status, Domestic Status, Zone-Restricted Status

431) manipulation: 미국 관세법 562조에 따라 포장, 재포장, 포장 해체, 정리, 분류, 세척 혹은 물품 상태 변경 등의 작업을 말함

432) 19 U.S.C. § 1562, 19 CFR 19.11(19 CFR 146.33)

433) 19 CFR 146.40(a)

434) 15 CFR 400.1(c)

가. 특혜 외국물품(PF)

- 외국물품은 관세영역으로 세관통제를 벗어나지 않은 수입품을 말하며 수출 후 재수입된 국산물품도 외국물품으로 간주됨
- 자유무역지역 반입 당시 화물 상태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길 원하면 수입자는 특혜 외국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⁴³⁵⁾
 - 또한 품목분류가 변화될 정도로 제조나 단순 작업되지 않으면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반입된 이후에도 특혜물품의 신분을 사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신청 당시 물품의 성격, 상태 및 수량에 따라 품목세번과 관세가 결정됨⁴³⁶⁾
 - 항만청장은 해당 물품의 재고분류와 구역관리번호(zone lot)⁴³⁷⁾에 대한 조사를 거쳐 물품가액 및 관세 등을 확정해야 함⁴³⁸⁾
-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된 완성품에 대한 관세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처음 반입된 원료 관세보다 높을 때 특혜 외국물품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함
 - 또한 특정 부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특혜 외국물품의 신분을 법이 강제할 수 있음
- 화물반입 시점이나 혹은 반입 후 세번변경에 상당한 제조가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전자방식으로 또는 서면(CBPF 214)으로 특혜물품의 지위를 신청해야 하며 항만청장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음
 - 신청서와 함께 품목분류번호와 관세율 등이 표기된 송장(invoice)을 항만청장에게 제출해야 함⁴³⁹⁾

435) 19 U.S.C. § 81c

436) 19 CFR 146.65(a)(1): 폐기물에 대한 관세평가는 Section 9.7(g)(1)과 (h)91) FTZM(자유무역지역 매뉴얼) 참조

437)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화물을 각 구역과 구역번호에 따라 구분하여 재고 관리하는 방식임

438) 한편 담배와 주류의 경우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동하는 시점의 세율이 적용됨(Tobacco Tax and Trade Bureau(TTB) excise taxes)

439) 19 CFR 146.41(a)~(c): 법령에 따라 송장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19 CFR 141.92)

- 또한 신청서에 화물 수량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
- 특혜물품 지위가 부여된 이후에는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남아 있는 한 이를 포기할 수 없고 제조가공으로 형태가 변경되어도 특혜물품 자격을 유지함
 - 특혜물품은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없으며⁴⁴⁰⁾ 다만 물품이 수출되거나 선박·항공기 보수 등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회수 가능한 폐기물의 경우 그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데⁴⁴¹⁾ 손상이나 천연재해로 인하여 물품이 회수 가능한 폐기물로 전락하면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비특혜 외국물품(NPF)

- 수입자가 비특혜 물품의 지위를 선택하면 관세영역으로 수입, 신고되는 시점의 물품 상태와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⁴⁴²⁾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이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비특혜 물품의 신분을 특혜물품이나 구역제한물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그러나 비특혜물품이 이미 역내에서 세번변경을 초래할 정도로 제조 가공된 이후에는 특혜물품으로 신분을 전환할 수 없음⁴⁴³⁾
- 반입 당시 신청자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한 경우 다음의 물품은 비특혜물품으로 간주됨
 - 첫째, 합법적으로 역내에 있지만 특혜물품이나 구역제한물품이 아닌 외국물품
 - 둘째, 역내 특혜/비특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취득한 폐기물
 - 셋째, 규정 불이행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내국물품: 물품조사나 이해당사자의 즉각적인 증거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세관이 내국물품임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은 비특

440) 19 CFR 146.64(a)

441) 19 CFR 146.42(b)

442) 19 CFR 146.65(a)(2): 비특혜물품은 수출, 보세창고 보관, 선용품, 임시수입 혹은 다른 자유무역 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될 수 있음

443) 19 CFR 146.41(b)

혜물품으로 간주되는데 다만 세관이 승인한 재고·회계시스템에 의하여 신원이 확인되는 물품은 내국물품의 지위를 유지함⁴⁴⁴⁾

다. 내국물품(D)

- 내국물품은 세관의 통제하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어 다른 물품과 결합된 이후 관세영역으로 반출될 수 있음⁴⁴⁵⁾
 - 내국물품의 지위는 수입자나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 즉, 미국에서 생산 내지 제조된 물품으로 내국세를 납부한 물품, 이전에 수입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 혹은 관세 등이 면제된 상태에서 수입된 물품을 말함
 -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은 구역제한물품으로만 반입이 가능함

- 국산 포장재나 보수용품을 포함한 내국물품은 반입 신청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역내로 반입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내국물품은 신청 허가 없이도 역내에서 제조, 전시, 단순작업(manipulation), 폐기(destruction) 혹은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이 가능함
 - 다만 신분이 다른 역내물품과 결합 혹은 혼합되는 경우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함

- 역내에 위치한 모든 내국물품은 규정⁴⁴⁶⁾에 따라 회계 처리되어야 함⁴⁴⁷⁾
 - 관세법령의 불이행으로 내국물품의 지위를 상실한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반출될 경우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당시 법령에 따라 처리됨
 - 전술한대로 세관이 승인한 회계절차에 따라 내국물품임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444) 19 CFR 146.42

445) 19 U.S.C. § 81c

446) 19 CFR 146 Subpart B

447) 19 CFR 146.43(b)

재고장부기록시스템이 내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신분이 상이한 유형의 물품에 적용되는 화물식별번호체제(UIN)에서는 이러한 재고장부기록이 충분한 증빙자료로 간주됨

라. 구역제한물품(ZR)

- 수출, 멸실(폐기)⁴⁴⁸⁾ 혹은 보관을 목적으로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관세 환급, 보세, 담보나 기타 내국세법 적용에 있어서 수출된 것으로 간주됨⁴⁴⁹⁾
 - 역내물품은 제조 가공 이후에도 언제나 구역제한물품의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일단 승인을 받으면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명령하지 않는 한 구역제한물품의 지위를 유지해야 함
- 이해 당사자가 원하면 내국물품이나 외국물품 상관없이 구역제한물품 신분을 서면(CBPF 214)이나 전자방식(e-214)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보세창고로부터 진출된 물품,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담배·주류 혹은 연방 정부기관이 수입허가를 거부한 물품은 반드시 구역제한물품의 지위를 신청해야 함
 - 일반적으로 수출 혹은 양도·수출을 위하여 항만에 도착한 물품은 구역제한물품의 신분으로 반입되지만 법령에 따라 수출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의 경우 항만청장이 다른 신분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음
- 구역제한물품으로 역내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 목적상 수출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즉, 수출품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구역제한물품 신분을 신청하는 자는 역내로의 화물 반입이 항만에서의 선적으로 취급될 만큼 실제 수출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수출신고 등의 양식에는 수출 대신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되었음이 표시되고 반입 승인서(CBPF 214)가 선적의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⁴⁵⁰⁾

448) 단, 주류의 멸실(폐기)은 예외임

449) 19 CFR 146.44(a), (b)

- 이와 같은 구역제한물품의 지위는 관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임시 보세수입절차(TI B)⁴⁵¹⁾를 정산하려고 할 때 사용될 수 있음
 - 제조를 목적으로 역내에 반입되는 물품으로 구역제한물품이 아닌 물품은 수출품으로 간주될 수 없음⁴⁵²⁾
- 이 밖에도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주류나 담배의 수출을 위하여 구역제한물품을 시정할 수 있음⁴⁵³⁾
- 이 경우 항만청장은 반입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항만청장/운영자는 물품 도착을 인증해야 함⁴⁵⁴⁾
- 한편 보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있었던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경우 구역제한물품으로 반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입신청이 반환됨⁴⁵⁵⁾
- 다만 역내에서 잠시 단순 작업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보세물품은 예외임⁴⁵⁶⁾
- 구역제한물품의 목적상 멸실·폐기(destruction)는 멸각으로 인한 잔여물이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순작업으로 간주됨
- 하지만 부분적 소실 이후 수출 혹은 보관하면 폐기로 간주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수출이 아닌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은 위원회 승인이 필요함
 - 주류는 소실을 목적으로 반입될 수 없으며 만약 반입 후 수출이 불가능하면 주세 관할기관(TTB)의 승인하에 일정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음⁴⁵⁷⁾

450) 19 CFR 146.44(c)(1)

451) Temporary Importation Bond: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으로 반입되어 1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조건의 특정 품목(HS Subchapter XIII, HTS 9813.00.05~75)에 대하여 관세 등 납부해야 하는 세급의 2배에 달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한시적으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이동할 수 있는 제도

452) Chrysler Motor Corporation v. United States, Slip Op 90-130 (CIT 1990) 945F. 2d 1187(Fed Cir 1991)

453) 19 CFR 290

454) 19 CFR 146.44(c)(2)

455) 19 CFR 146.44(d), 146.11(d), 144.37(g)

456) 19 CFR 146.33

457) 27 CFR 252.35

- 구역제한물품은 수출, 보관 혹은 소실을 목적으로 반입되므로 역내에서 제조나 가공될 수 없음
 - 또한 단순작업의 경우에도 포장, 해체, 검사 등 수출이나 소실에 부수되는 작업과 같이 수출, 소실 혹은 보관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단순작업이 가능함
 - 그러나 비특혜물품이나 내국물품이 역내에서 제조 가공된 이후에는 항만청장이 해당물품을 구역제한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구역제한물품은 소비를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될 수 없는데 다만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공익에 이바지한다고 결정하면 반출이 가능함⁴⁵⁸⁾
 - 이 경우 해당 물품은 품목분류를 포함한 관세법령⁴⁵⁹⁾을 적용받고 국내로 수입됨

4. 화물반입절차

가. 일반 사항

- 법에서 금지한 물품을 제외하면 국내외 물품은 관세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admit)⁴⁶⁰⁾이 가능함
 - 특정 물품의 반입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항만청장은 수입자에게 자유무역위원회의 견해나 결정을 습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⁴⁶¹⁾
 - 항만청장은 반입 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물품에 대하여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인 장치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함

458) 19 CFR 146.70

459) Chapter 98 Subchapter I HS 및 (19 U.S.C. § 81c(a), 19 CFR 146.70(b))

460) 반입(admit)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신분을 취득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함(19 CFR 146.1(b))

461) *Arbor Foods, Incorporated v. United States* 97F.3d534(Fed. Cir 1996)

- 한편 허가나 면허 등 조건부 수입이 가능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반입 금지를 포함하여 관련 연방규정을 적용받음⁴⁶²⁾
 - 한 예로 국내 수입에 필요한 환경청 승인을 받지 못한 유해물질이 조건부로 역내에 반입되어 규정에 합치되는 물품으로 전환되기 위한 작업을 거칠 수 있음

-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시점은 전자신고(e-214)에 따른 승인이 내려지거나 혹은 항만청장이 반입을 승인하고 또한 운영자가 물품 인수에 서명하면서 재고관리 시스템에 물품 인수를 입력하는 시점으로 규정됨
 - 반입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의 경우 인수확인서(receiving report)나 규정에 적시된 서류⁴⁶³⁾에 기록하고 작업 중인 구역으로 물품이 실제로 들어오면 반입으로 간주됨

- 이외 자유무역지역 신분(status)을 취득하지 않고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 우선 수입 신고한 물품으로 지속적인 세관의 통제에 있는 물품이 일시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유입되어 단순작업을 거쳐서 세관 감독하에 관세영역으로 반출될 수 있음⁴⁶⁴⁾
 - 이와 같은 물품은 자유무역지역법이 아닌 관세법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른 작업은 운영자가 아닌 수입자의 위험부담으로 진행됨⁴⁶⁵⁾

- 둘째로 관세영역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을 경과하여 선적되거나 하역되는 물품도 역내로 물품을 양도하기 앞서서 항만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함(Transit)⁴⁶⁶⁾
 - 항만청장은 해당 물품이 역내에서 신속하게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할만한 사유가 없거나 반입신고 대상인 물품⁴⁶⁷⁾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경유 신청을 허가해

462) 19 CFR 146.31(b)

463) 19 CFR 146.22(a)

464) 19 U.S.C. § 1562

465) 19 CFR 146.33

466) 이와 같은 경유 신청은 CBPF 3171에 작성함

467) 19 CFR 146.32(a)

야 함

- 승인이 내려지면 해당 물품은 관세영역에서 선적이나 하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경유기간이 지연되면 자유무역지역에서 방출되거나 정식 반입신고를 해야 함⁴⁶⁸⁾

□ 마지막으로 물품의 도착시점에도 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인 장치가 허용되지만 대신 실물조사를 받을 수 있음⁴⁶⁹⁾

- 신청자는 '일시장치'가 표기된 반입신고서(e-214/CBPF 214)를 가능한 한 자세히 작성하여 항만청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자는 해당 물품이 정식으로 반입신고, 수입신고 혹은 이동될 때까지 반입신고번호 목록을 잘 유지해야 함
- 일시장치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신분을 부여받지 않고 관세영역에 있는 물품으로 간주되므로 다른 물품과 따로 보관되고 운영자의 담보책임 아래에 있어야 하며 적합한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으로만 단순작업을 할 수 있음⁴⁷⁰⁾
- 일시장치 이후 5일 이내(항만청장의 기한 연장 가능)에 완전하고 정확한 반입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일반절차에 따라 처분되어야 함⁴⁷¹⁾

□ 물품은 관세영역이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직접 반입될 수 있음

- 관세영역을 통하여 보세 상태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관세영역에 포함되는 두 개의 장소를 오가는 보세 상태의 물품처럼 관세법이 적용됨⁴⁷²⁾
- 직접인도절차를 적용받는 물품을 제외하고 반입신고 대상인 모든 물품은 하역장소와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항만청장이 지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세관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직접인도절차(direct delivery):⁴⁷³⁾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은 동일한 세관 관할에 있

468) 19 CFR 146.34

469) Temporary deposit for manipulation: 세관 증빙서류가 불완전한 물품이나 재고장부시스템에 입력이 불가능한 물품을 반입정지목록(admission suspense account)에 기록하고 추후 증빙서류가 완성되면 정식으로 반입절차를 이행하는 절차와 성격이 다름(19 CFR 146.22(c))

470) 19 CFR 146.35(c)

471) 19 CFR 146.35(e)

472) 19 CFR 146.31(a), (b)

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직접 양도할 수 있도록 항만청장이 인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세운송업체나 운영자가 담보 상태에서 물품을 운송해야 함

나. 반입신청 및 물품조사

- 전자신고 승인이 나거나 혹은 항만청장이 서면 반입신고를 허가하고 운영자가 물품 인수를 서명하고 재고장부 시스템에 기록할 때까지는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음⁴⁷⁴⁾
 - 고유의 일련번호로 구별되는 전자방식의 신고(e-214)⁴⁷⁵⁾나 서면신고서(CBPF 214)를 제출하면 항만청장의 동의를 있어야 물품 반입이 허용되는데 해당 문서에는 운영자의 서명이 있거나 혹은 별도의 승인서가 있어야 함⁴⁷⁶⁾
 -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위임장이 있는 경우⁴⁷⁷⁾ 운영인이나 관세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음
- 한편 통계자료가 자동적으로 이첩되는 전자신고가 아닌 서면신고의 경우 통계청으로 송부할 반입신고서 복사본(CBPF 214A)도 함께 제출해야 함⁴⁷⁸⁾
 - 통계자료 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불완전한 내용의 경우 물품이 반입된 날로부터 익월 5일까지 보완해야 함
 - 통계자료 제출은 의무적이며⁴⁷⁹⁾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서류가 반환되는데 위반자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사기의 경우 처벌이 가능함⁴⁸⁰⁾

473) 19 CFR 146.39

474) 반입허가가 필요없는 내국물품은 예외임

475)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전자방식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반입신고에서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인도하기 이전에 전자신고를 해야 하며 최소한 재고장부시스템에 물품을 입력한 이후 24시간 내에 전자신고를 해야 함

476) 19 CFR 146.9, 19 CFR 146.32(a)

477) 19 CFR 141 Subpart C

478) 무역통계를 위하여 통계청 해외무역국에 반입신고서의 복사본이 이송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하면 수령이 거부됨

479) 13 U.S.C. § 302

480) 13 U.S.C. § 305 및 19 U.S.C. § 1592

- 또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항만청장이 반입신고서를 거부할 수 있음

- 반입신고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해야 함
 - 운영자는 반입신고서에 일련의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들 번호는 자유무역 지역 ID, 연도 및 통제번호로 구성됨
 - 지역 ID는 구역(3자리 숫자)+준구역(2)+장소ID(2)로 구성되는데 연도는 2자리 숫자이고 통제번호는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8자리 숫자이어야 함

- 신청인은 반입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관련 요건⁴⁸¹⁾을 충족하는 상업송장(examination invoice): 특혜물품의 지위를 신청하지 않으면 품목분류와 관세평가액을 명시할 필요가 없음
 -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증빙서류⁴⁸²⁾
 - 운송업체의 인출 주문서(release order):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인도를 위하여 동일한 운송업체에게 방출되는 경우는 예외
 - 하역신청서: 수입 운송선으로부터 직접 자유무역지역에 하역하는 경우 필요함
 - 기타 증빙서류: 항만청장은 물품 조사나 반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항만청장은 원활한 법규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반입시점과 이를 전후하여 물품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⁴⁸³⁾
 - 세관은 쟁점 물품이 역내로 반입될 수 있는 물품인지 여부, 운영자 담보하에 유입된 물품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 한도, 동일한 상태로 추후 관세영역이나 보세창고로 양도될 경우 추가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목적 및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을 조사할 수 있음
 - 세관은 조사결과를 조사 보고서(examination invoice)에 명기해야 함⁴⁸⁴⁾

481) 19 CFR 141 Subpart F

482) 19 CFR 146.32(b)(2)

483) 19 CFR 146.10

- 물품 조사는 대부분 중앙 검사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검사장은 자유무역지역 내에 위치할 수도 있음⁴⁸⁵⁾
 - 상황에 따라 운영자나 운송업체의 담보 하에 물품이 조사를 위하여 중앙 검사장으로 이동하며 그 비용은 운영인이 아닌 반입 신청자 혹은 하물 인수인 (consignee)이 부담해야 함
 - 중앙 검사장이 없는 항만의 경우 항만청장이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하역장이나 물품 도착장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신고항 외의 지역에서는 조사가 불가능함

- 세관은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입력해야 함
 - 사소한 하자의 경우 반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으나 중대 하자나 법령 위반의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반입이 거부되고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 반입 신청자나 항만청장이 요청할 경우 운영인은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물품 양도(transfer)를 신청하는 자에게 조사보고서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함

다. 반입허가

- 다음의 경우 항만청장은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물품조사를 거쳐서 반입을 허가해야 함
 - 운영인 허가를 수반한 반입 신청⁴⁸⁶⁾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물품조사를 위하여 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이 제시되며 다른 요건⁴⁸⁷⁾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동일한 운송신고를 통하여 다수의 선적 화물이 같은 날짜에 동일한 신청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일괄신고가 가능함(blanket admission)⁴⁸⁸⁾
 - 일괄신고는 전자신고방식(e-214)으로 반입신고를 해야 함

484) 19 CFR 146.36

485) 19 CFR 151.15

486) 신청인이 원하는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신분도 제시해야 함

487) 19 CFR 146.32(c)

488) 19 CFR 141.55

- 일시적인 단순작업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동하는 보세화물이나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주류·담배제품은 구역제한물품으로만 반입이 가능함
 - 일시보세수입절차(TIB)가 적용되는 물품도 담보 취소를 위하여 구역제한물품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될 수 있음: 운영자가 구역제한물품으로의 도착을 증명하는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출로 간주되어 일시보세수입에 따른 담보가 취소됨⁴⁸⁹⁾
 - 무역전시회에 출품되는 물품은 전시회가 종료되기 이전이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양도될 수 있는데 법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자가 해당 물품의 신분을 선택할 수 있음⁴⁹⁰⁾
 -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이전되는 화물도 통상적인 절차⁴⁹¹⁾에 따라 반입이 되는데 다만 항만청장은 상업송장 제출과 물품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직접 인도절차의 물품이 아니면 반입허가가 있어야 하며 반입시점에는 물품 신분도 변경될 수 없음⁴⁹²⁾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운송은 수입자의 부담 아래 보세 운송업체나 등록된 세관운송인⁴⁹³⁾이 수행해야 하며 항만청장은 규정⁴⁹⁴⁾ 준수를 점검해야 함⁴⁹⁵⁾
 - 또는 운영자가 자신의 관할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동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운영인 담보 하에 물품을 운송하거나 민간 보세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음

- 항만 안에서의 물품 이동은 물품인도서(CBPF 6043)⁴⁹⁶⁾를 제출하고 세관이 승인하면 하역장이나 중앙검사장 또는 기타 장소로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보세 운송함

489) 19 CFR 10.31(Fourth Proviso, 19 U.S.C. § 81c(a) 참조): 물론 다른 신분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출로 간주되지 않아 담보가 취소되지 않으며 추후 실제로 수출되지 않거나 멸실되지 않으면 손상청구가 뒤따를 수 있음

490) 19 CFR 147.42(a)

491) 즉, 19 CFR 146.32 및 19 CFR 146.66(d)에 규정된 절차를 말함

492) 추후 물품신분의 변경을 신청하면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작업내역을 모두 고려하여 그 지위를 결정함

493) Cartman: 항만 내에서의 이동을 담당함

494) 13 U.S.C. § 1565

495) 19 CFR 112 Subparts C, D

496) Delivery Ticket: 전자신고에서는 이동 신청을 함(Permit to Transfer)

- 보세운송업체는 물품 인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서에 서명해야 함⁴⁹⁷⁾
 - 항만청장이 물품 검사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이동한 경우 검사 이후에는 운영자에게 물품이 인계됨
 - 항만간의 이동: 세관이 보세운송을 허가해야 하역장 등으로부터 이동할 수 있음
- 항만청장이 물품 반입을 허가해야만 운영인은 화물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인수할 수 있음
- 전자신고의 경우 세관이 전자방식으로 승인하며 서면신고에서는 신고서에 세관이 서명을 하는데 다만 직접인도절차를 승인하면 반입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간주됨
 - 항만청장은 세관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 인수를 허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영인은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 인수를 관리하고 물품 상태와 인수 사실을 보고해야 함⁴⁹⁸⁾
- 즉, 운영인은 물품인도시점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물품 상태나 수량이 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⁴⁹⁹⁾
- 반입신고서(CBPF 214)상의 반입허가 일자와 서명
 - 신고서상의 물품 명세서와 상업송장을 실제 물품과 비교 점검
 - 서류상의 물품 수량과 실제 수량
 - 봉인 상태: 봉인 상태에 대한 운송업체의 동의를 구하고 손상되거나 대체된 봉인이 발견되면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물품이 작업 중인 지역으로 직접 하역되어 인수되도록 함(가동 중이지 않은 장소에 서는 일시적이라도 물품을 보관할 수 없음)
 - 구역번호관리 시스템(zone lot system)에서는 포장화물을 고유의 구역관리번호로 표시하여 개별 반입신고서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함⁵⁰⁰⁾
 - 이 밖에 세관이 승인한 재고관리방식에 따라 확인된 물품은 세관이 재고검사를 할

497) 19 CFR 125.34

498) 19 CFR 146.4(a) 및 19 CFR 146.37(d)

499) 19 CFR 146.37(c)

500) 펠레트 포장화물 등의 경우 사후심사나 이행평가에서 세관이 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포장화물을 구역관리번호에 따라 표시해도 됨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구분해 놓음⁵⁰¹⁾

- 운영자에게는 자신의 담보를 통하여 반입신고서에 표시된 물품 수량과 상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여됨
 - 다만 물품 반입 이후 15일 이내에 운영자와 운송업체가 오차보고서(discrepancy report)를 작성하여 공동 서명하고 항만청장에게 2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 전자신고방식에서 세관에게 보고하고 운송업체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 혹은 물품 반입 이후 20일 이내에 규정⁵⁰²⁾에 따른 적하목록 보고서(MDR)⁵⁰³⁾를 제출하면 반입신고서와 인수보고서상의 차이는 운영인의 책임이 아님

- 반입물품을 인수하면 운영인은 반입신고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입물품목록(zone admission file)에 반입신고서, 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기타 서류를 보관해야 함
 - 구역번호관리 시스템 이외 세관이 허가한 재고방식을 사용할 경우 반입신고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입신고서를 보관해야 함⁵⁰⁴⁾
 - 개별 반입신고서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구역번호(구역관리번호 이외는 화물식별번호⁵⁰⁵⁾)를 사용하여 인수보고서(receiving report)에 물품을 기록해야 함
 - 상업송장 등의 자료와 인수보고서상의 수량을 확인, 조정함⁵⁰⁶⁾
 - 증빙서류가 불완전한 물품이나 재고장부시스템에 입력이 불가능한 물품은 반입정지목록(admission suspense account)⁵⁰⁷⁾에 기록하고 추후 증빙서류가 완성되면 정식으로 반입절차를 이행해야 함: 인수보고서에는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다른 물품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501) 구역관리번호나 반입신고번호를 표시할 필요가 없음*(19 CFR 146.37(d))

502) 19 CFR 112 Subparts A: 운영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음

503) Manifest Discrepancy Report

504) 19 CFR 146.37(a)

505) Unique identifier: 이러한 고유 신원번호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착되는 반입신고서상의 번호와 다른 번호임

506) 19 CFR 146.22(b)

507) 반입정지목록은 관련 정보가 충분히 기록되어 세관심사에서 그 차이와 정정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19 CFR 146.22(c))

- 구역관리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수보고서로부터 수량, 날짜, 금액, 자유무역지역 물품신분, 물품형상에 대한 명세서 등 인수 사실을 재고기록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운영자는 사전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의 반입도 관리 감독하여 반입 사실을 재고장부 시스템에 기록해야 함⁵⁰⁸⁾
 - 만약 내국물품이 반입신고서에 따라 공식적으로 반입되면 물품 인도시점에 운영인은 구역관리번호(화물식별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수보고서에 물품을 기록하고 송장 등과 실제 인계받은 물품 수량의 차이를 확인, 인수보고서에 기입해야 함
 - 증빙자료가 불완전한 물품은 반입정지목록에 기록하며 또한 구역관리번호 등에 따라 물량, 반입일자, 금액 등 인수보고서상의 정보를 재고장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운영자는 또한 운송업자의 서류와 물품을 비교 점검하여 물품 상태와 수량 차이 등을 적시한 인수서류에 서명하고 복사본을 교부받아야 함
 - 이외 봉인 상태를 조사하여 이상이 있으면 이를 인수서류에 명시하고 물품을 하역하면 즉시 가동 중인 작업장소로 인수받아야 함

라. 직접인도절차(Direct delivery)

- 직접 인도란 사전 반입신고와 허가 없이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영인이 물품의 소유주나 구입자로서 위험도가 낮고 반복적으로 운송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임⁵⁰⁹⁾
 -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는 직접인도절차를 적용받기 최소 30일 이전에 항만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 신청서에는 대상물품과 역내에서의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 다음의 기준⁵¹⁰⁾을 모두 충족하면 직접인도방식이 허용됨

508) 19 CFR 146.4(a), 146.21(a)(1)

509) 19 CFR 146.39(a)

510) 19 CFR 146.39(c)

-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 도착을 전후하여 세관의 현물검사나 서류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⁵¹¹⁾
 - 반입물품과 역내작업 내용이 사전에 잘 알려지고 예상 가능하며 장기간 변동이 없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 성격상 다양성이 제한된 작업이어야 함: 새로운 종류의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서면으로 허가하고 세관에게 물품을 검사하고 익숙해질 기회가 사전에 부여되어야 함⁵¹²⁾
 - 운영자가 물품 소유주나 구입자이어야 하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만청장이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⁵¹³⁾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직접인도절차를 승인하고 서면으로 그 사실을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함
- 물품반입시점이나 그 이전에 세관이 해당물품이나 증빙서류를 일상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물품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직접인도 적용을 취소할 수 있음⁵¹⁴⁾
 - 절차 적용이 취소되면 대상물품은 일반적인 사전허가방식으로만 반입이 가능함
- 세관에 의한 사전 반입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물품을 신속하게 반입하기 위한 직접인도 절차에 따른 우선적인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음
- 화물 가운데 직접인도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안전장소에 장치하고 별도의 반입허가를 기다려야 함: 직접인도절차를 신청하기 이전에 운영자는 안전장소를 자유무역지역 내에 확보해야 함
- 직접인도절차가 적용되는 화물이 도착하면 운영인은 운송업체로부터 보세운송 혹은 운임서류를 교부받고 봉인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하역하기 이전에 항만청장

511) 쿼터 등이 적용되는 물품이나 규정(19 CFR 146.40)에 따라 운영인이 제시하는 반입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항만청장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 등은 제외됨

512) 직접인도절차를 처음에 신청할 때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추후에 보완신고를 통하여 동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513) 소유주에 대한 정의는 관세법에 따름(19 U.S.C. § 1484(a)(2)(B))

514) 19 CFR 146.39(e)

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함

- 실제 물량과 신고 물량(운송서류상의 물량 포함)을 비교 확인함
- 보세운송서류에 서명함으로써 운영자의 담보 아래 물품을 인수하여 운송업체의 책임을 해제하고 보세운송서류를 물품 도착 후 2일 이내에 항만청장에게 제출함
- 도착한 화물이지만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지 않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물 도착일자별로 보세목록을 유지함
- 모든 선적화물이 반입되면 반입신고서(CBPF 214)에 주석을 달아서 그 사실을 항만청장에게 보고하며 세관이 보세운송서류를 수령하면 세관통제하의 관련 보세운송 업무가 종료됨⁵¹⁵⁾
- 세관은 보세운송서류, 선하증권, 적하목록 서류나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운영자가 인수한 물품을 조사할 수 있음
- 전자 반입신고에서는 운송업체가 도착을 신고하면 보세운송서류를 항만청장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고 전자방식에 의한 물품 도착 완료에 운영자에 의한 물품 인계 및 책임 인수를 의미함

□ 직접인도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의 반입을 신고하는 방식에는 통계청에 통계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신고방식이 있음

- 전자신고방식(e-214)의 경우 화물별, 반입일자별 그리고 누적신고방식이 있는데 물품이 재고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이후 전자신고를 하며 통계청은 관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취득함
- 전자신고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운영인은 그 이전 날짜에 재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개별 화물별로 서면신고서(CBPF 214와 214A)를 항만청장에게 제출해야 함⁵¹⁶⁾

□ 물품 도착 후 15일 이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는 물품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운영인은 그러한 사실을 항만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515) 19 CFR 146.40(a): 항만청장은 운영인과 협력하여 자유무역지역 직원이 운송업체로부터 보세운송서류를 교부받아 세관에 제대로 송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함

516) 19 CFR 146.40(c)(2): 세관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인수된 월말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계청에 CBPF 214A를 제출해야 함

- 수입자는 해당물품을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물품을 전출할 수 있음
- 운영인은 반입서류상의 물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입증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정확하게 재고장부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재고관리시스템에 기록된 물품 수량에 대해서는 운영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함
 - 운영인이 일단 인수보고서에 서명을 하면 오차보고서(discrepancy report)에 적시된 차이를 제외하면 화물의 반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세운송서류에 적시된 물품 상태와 수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포장상태로 인수된 화물을 포함함⁵¹⁷⁾
- 다른 연방정부 기관이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 도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항만청장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허가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음
 - 대신 운영인은 물품도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일정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운영인은 반입신고서 복사본을 도착 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음
-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류나 담배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관할당국(TTB)이 지정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⁵¹⁸⁾
 -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관할당국이 통제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장소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운영인은 구역제한물품으로 반입한 당시 관련 서류에 서명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인도되면 해당 물품은 내국세법상⁵¹⁹⁾ 수출로 간주되고 담보가 해제됨

517) 19 CFR 146.40(c)(4)

518) 27 CFR 28, 44

519) 27 CFR 44.61a 및 28.30

마. 환급대상 물품의 반입

- 원칙적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면 해당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때 구역제한물품으로 지정되고 구역관리번호체제(zone lot system)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⁵²⁰⁾
 - 일부 상황에서는 다른 신분을 부여받아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자유무역지역에서 실제로 수출되거나 멸실 폐기되어야 함⁵²¹⁾
 - 운영자가 서명한 반입신고서(양도 통지)나 환급신청서에 명기된 당사자가 양도인으로 간주되어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하고 돌려받을 자격이 부여됨

- 수입원료 혹은 국산 대체원료를 사용하여 물품⁵²²⁾을 제조 및 수출하고 환급을 제공받으려면 일정한 절차⁵²³⁾를 따라야 함(manufacturing drawback)
 - 반입신고서상의 양도 통지가 구역제한물품으로의 반입에 따른 수출을 증빙하는 서류를 대체함
 -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양도하기 전이나 혹은 양도 후 3년 이내에 반입신고서를 해당 자유무역지역 환급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반입 후 신고하려면 자유무역지역 반입번호와 구역관리번호를 명기해야 함⁵²⁴⁾
 - 각 양도 통지서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위치와 번호, 포장갯수·종류·표시 형태, 중량 등을 포함한 물품 명세서, 물품 양도인 등을 포함해야 함

-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이후 운영자는 물품양도 통지서에 반입을 서명하고 물품 양도인에게 교부해야 함⁵²⁵⁾
 - 양도인은 운영자 이서를 확인하고 수출신고서에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양도 사실을

520) 19 CFR 191 Subparts R(19 CFR 191.182)

521) 19 U.S.C. § 1313

522) 국산 알콜을 사용하여 제조된 향료 추출물, 약물, 화장실 부품 등도 환급대상임

523) 19 CFR 191

524) 19 CFR 191.183(b)(2)

525) 요약 수출신고절차(summary procedure(19 CFR 191.73))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류 교부가 필요 없음

신고 서명하고 세관에 제출함

- 한편 사용되지 않거나 인수가 거부된 물품에 대한 환급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환급이 진행됨(unused/rejected merchandise drawback)⁵²⁶⁾
 - 구역제한물품으로 물품을 반입하기에 앞서서 수입자는 환급 담당자에게 물품의 양도 의사를 명기한 환급신고서(CBPF 7551)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복사본을 운영인에게 전달함
 - 물품이 반입되고 나면 운영인은 환급신고서 복사본 첨부서류에 인수 사실을 서명하여 양도인에게 교부하고 양도인은 환급 담당자에게 선하증권 대신 환급신고서를 다시 제출함

5. 운영자의 장부기록의무

가. 일반사항

- 세관은 운영자의 장부기록과 자유무역지역의 실제 물품 상태 그리고 운송업체, 공급자 및 구매자의 기록을 대조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관리 감독함⁵²⁷⁾
 - 1986년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세관의 직접적인 재고관리를 종료하고 대신 운영자에 대한 이행평가, 사후심사 및 기록 관리에 실패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liquidated damage)
 - 운영자의 장부기록 관리와 보고의무에 대한 규정은 19 CFR 146에 명기되어 있음
-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유도하는 수입자, 수하인, 중개자 등은 수입신고서와 관련한 자료나 정보 그리고 일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작성 및 기록하여 조사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⁵²⁸⁾

526) 19 CFR 191 Subparts C and D(19 CFR 191.185(a))

527) 19 U.S.C. § 81h, 81p, 1624

- 항만청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와 절차에 대하여 세관이 감독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또한 운영자의 장부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심사나 조사를 통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음⁵²⁹⁾
 -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양도되면 비록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수입자는 장부기록을 자유무역지역에 유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법에 따라 조사대상이 됨⁵³⁰⁾
 - 또한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설립자와 운영자의 장소, 업무 및 회계자료를 조사할 권한이 있음⁵³¹⁾

- 운영자는 세관이 장부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함⁵³²⁾
 - 세관 조사를 저해하거나 지연하지 않기 위하여 화물식별번호 목록, 구역관리기록과 반입 자료는 가동 중인 자유무역지역이나 근접한 곳에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운영자는 자유무역지역 물품과 관련하여 법⁵³³⁾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록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이 양도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지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양도된 물품이나 관세법 적용이 면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규정상⁵³⁴⁾ 필요한 수입관련 자료는 수입신고시점으로부터 5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함
 - 기한이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양도시점부터 시작하므로 수입신고가 관련된 반입까지 추적되려면 사실상 장부기록은 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함

528) 19 CFR 163

529) 19 CFR 146.3(b)

530) Title 19 U.S.C. § 1508~1509

531) 15 CFR 400.11(a)(6)

532) 19 CFR 146.4(d)

533) 19 CFR 163.4와 19 CFR 146을 의미함

534) 19 CFR 163.3

나. 재고장부시스템(Inventory control and record-keeping system)

- 운영자는 자유무역지역 법규에 따른 재고장부 시스템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은 관리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⁵³⁵⁾
 - 첫째, 내국물품, 일시장치 혹은 반입, 자유무역지역 신분 취득 및 변경, 보관·전시·단순작업·제조·폐기 및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양도 혹은 전출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에 대한 회계 기록
 - 둘째, 법규에 명시된 자료와 보고서를 적시에 정확하게 작성
 - 셋째, 초과/부족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수량·성질·품목분류·신분·물품가액 등 세부사항
 - 넷째, 물품 수량, 성격, 세번, 가액 및 신분 등 관세영역으로의 수입신고 시 필요한 정보 제공
 - 다섯째, 세관이 승인한 재고관리방식⁵³⁶⁾ 즉, 구역관리번호 시스템이나 고유식별번호방식에 따라 물품 반입 이후 저장, 단순작업, 멸실, 전시 혹은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양도까지 사후심사에 필요한 추적경로 제공

- 운영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자가 재고기록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음⁵³⁷⁾
 - 즉, 개별 사용자가 재고장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지만 법규 요건(19 CFR 146)의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음

- 운영자는 항만청장에게 재고장부관리에 관한 절차 설명서(procedure manual)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매뉴얼의 주된 목적은 세관의 신속한 사후심사나 조사를 위한 것으로 운영자 장부시스템의 기록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변경사항을 항만청장에게 통보해야 함⁵³⁸⁾

535) 19 CFR 146(19 CFR 113(a)(2), 146.4(d))

536) 19 CFR 146.21(a)

537) 19 CFR 146.4(c)

538) 세관이 절차 매뉴얼을 인수한 사실이 재고관리시스템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지 않음(19 CFR 146.21(b)(4))

- 전술한대로 운영자가 장부 관리를 사용자에게 위임한 경우 사용자의 절차 설명서를 항만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이나 관리체제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가 부담함

-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구역관리번호(zone lot number)나 고유식별번호(unique identifier)⁵³⁹⁾를 사용하여 인수보고서에 기록이 되고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통하여 추적이 가능해야 함
 - 반입신고서와 인수보고서(receiving report) 또는 송장을 비교 확인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증빙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재고장부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은 보완이 이루어져 정식으로 반입신고가 될 때까지 반입정지목록(admission suspense account)⁵⁴⁰⁾에 기록되어야 함
 - 인수보고서는 다른 물품과 구별하여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함
 - 세관조사가 있을 때 그 차이와 정정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반입정지목록이 완비되어야 함

- 연후 운영자는 물품 추적을 위하여 구역관리번호나 고유식별번호에 따라 인수보고서로부터 재고장부기록으로 인수받은 물품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입력해야 할 정보는 수량, 반입일자, 물품가액(가능한 경우), 물품 신분(status), 부품·상품번호 등을 포함한 물품 명세서 등입⁵⁴¹⁾

- 물품을 인수하면 운영자는 반입신고서 복사본, 물품조사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반입목록(admission file)에 보관해야 함
 - 개별 반입신고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입목록을 유지해야 함⁵⁴²⁾

539) 이러한 고유 식별번호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 제외)에 부착되는 반입신고서상의 번호와 다른 번호임

540) 불완전한 서류로 인한 일시 장치(19 CFR 146.35)와 반입정지목록은 차이가 있음

541) 19 CFR 146.22(d)

- 컴퓨터를 이용한 구역관리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운영자는 출력 상태의 반입목록을 유지하지 않고 화물식별번호 시스템(UIN's system)에 의한 파일을 보관해도 됨
- 선입선출방식(FIFO)이나 외국물품 선출법(FOFI)⁵⁴³⁾ 등 구역관리번호체제(zone lot number system) 이외 세관이 허가한 재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운영자는 모든 반입신고서 목록을 순차적으로 관리해야 함⁵⁴⁴⁾
 - 이외 방식으로 물품을 관리하려면 내부절차에 따라 세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대상물품과 작업내역 그리고 관세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해야 함
 - 한편 물품이 나중에 반입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일시장치물품에 대해서도 재고장부시스템을 유지해야 함⁵⁴⁵⁾ 이들 물품에 대한 고유번호는 반입된 물품에 부여되는 번호와 구별되어야 하고 물품이 일시장치에서 해제되면 해당 목록은 폐기되어야 함
- 전술한대로 운영자는 보관·전시·단순작업·제조·멸실 혹은 자유무역지역 신분 변경이 허용된 모든 물품에 대한 회계기록이 가능한 재고장부시스템을 유지해야 함⁵⁴⁶⁾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구역관리번호방식이나 고유식별번호방식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구역관리번호방식(ZLN):⁵⁴⁷⁾ 구역번호에 따라 반입물품을 식별하는 재고관리방식으로 구역목록, 물리적 구분과 구역번호 표시가 필요함
 - 고유식별번호방식(UIN):⁵⁴⁸⁾ 반입물품을 식별할 때 고유번호나 문자를 이용하는 누적적인 기록방식으로 일반적 회계원칙에 따라 선입선출법(FIFO)이나 다른 선출법(FOSI)을 기준으로 재고가 조정됨

542) 구역번호 재고시스템에서 동일한 반입번호 아래 다수의 구역관리번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유지함

543) Foreign First: 외국물품이 가장 먼저 사용된다고 가정하는 재고관리방식임

544) 19 CFR 146.37(a)(2)

545) 일시장치 신청은 '일시장치'라고 표시된 반입신고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546) 19 CFR 146.21(a)(1)

547) zone lot number inventory control method

548)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inventory method

- 재고기록은 이러한 관리번호나 식별번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입력되고 추적 관리됨
- 물품 위치, 화물신분, 물품가액(운영자/사용자의 재무장부에 물품가액을 기록하고 세관 조사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일자별 및 물량별 기초잔액·누적인수·방출·조정분, 물품 멸실, 폐기·부산물⁵⁴⁹⁾
- 구역관리번호체계에서는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반입될 당시 번호를 부여 받는데 물품의 일련번호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구역번호이거나 혹은 운영자가 개별 반입신고서에 부여하는 순차적 번호일 수 있음
- 하나의 반입신고서에 명기된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구역관리번호가 부여되면 반입 신고번호가 구역관리번호로 사용될 수 없음
 - 반면 만약 개별 반입물품이 하나의 구역으로 관리된다면 반입신고서상의 반입번호가 구역관리번호로 사용될 수 있음
 - 각각의 구역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물품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재고장부시스템에 기록됨
 - 다수의 구역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물품을 결합하여 작업이 진행된다면 새로운 완제품 구역관리번호를 생성하여 원래의 구역관리번호와 함께 기록해야 함⁵⁵⁰⁾⁵⁵¹⁾
- 운영자는 규정에 명시된 절차⁵⁵²⁾에 따라 구역관리번호체계 대신 다른 재고방식을 세관에 신청할 수 있음
- 세관은 이미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관리방식을 승인하였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선입선출법은 동일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한

549) 19 CFR 146.23(b)

550) 앞서 제시한 물품 위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신분, 물품가액(운영자/사용자의 재무장부가 물품가액을 기록하고 세관 조사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일자별 및 물량별 기초잔액·누적인수·전출·조정분, 물품 멸실, 폐기·부산물 등의 정보도 포함됨

551) 한 예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될 수 있음: 100 Fishing poles admitted under zone lot #860813; 100 Fishing reels admitted under zone lot #860814; 50 Fishing kits(manipulated from zone lot #860813 and #860814)

552) 19 CFR 177

물품에만 적용될 수 있음

- 선입선출법에서는 가장 오래된 재고물품이 먼저 출고되는 것으로 가정함: 따라서 각각의 반입물품은 하나의 단위군으로 간주되어 운영자가 각각의 단위군이 순차적으로 사용되도록 확인해야 함
 - 또한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 물품가액이 상이하거나 화물신분이 다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입선출법에서는 운영자가 물품의 입출고를 잘 관리해야 하고 가능한 한 이들 물품을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며 물품 명세서와 부품(상품)번호를 바탕으로 재고관리기록을 유지해야 함(반입일자별로 각 단위군에 대한 이력 목록(history file)을 작성하여 세관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운영자는 내국물품을 포함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모든 물품에 대한 재고장부관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함
- 내국물품의 지위를 상실한 물품은 비특혜 외국물품으로 간주됨: 물품 검사나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도 불구하고 내국물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항만청장은 해당 물품이 내국물품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함
 - 내국물품 원료와 외국물품 원료를 같이 사용하여 완제품이 만들어진 경우 세관이 사전에 승인한 재고장부관리체계에 따라 투입된 원료의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각각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한 예로 사전에 내국원료 비율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서 외국원료를 혼합한 내국원료 물품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으로 구성된 물품의 과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내국물품이 부족한 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한 과부족은 외국물품의 과부족으로 간주됨: 세관이 허가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들 물품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면 내국물품의 과부족을 인정할 수 있음
 -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의 경우 관세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관세영역에 수입되었다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신분은 내국물품이나 구역제한물품으로만 반입 가능함
 - 원유정제에 대한 재고 관리는 재무성 장관이 승인 또는 확인한 별도의 관리회계방

식⁵⁵³⁾에 따라 통제됨

-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양도되는 모든 물품은 재고장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세관이 허가한 구역관리체계나 기타 재고관리방식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까지 추적이 가능해야 함⁵⁵⁴⁾
 - 관세영역으로 이미 방출되어 더 이상 자유무역지역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물품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음

- 운영자는 재고통제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계속 재고 집계를 하지 않는 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모든 재고물품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해야 함
 -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세관이 감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재고조사를 통보하고 규정⁵⁵⁵⁾에 부합하지 않는 장부와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재고조사는 연차 정리보고서를 위한 조사와 같이 혹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재고조정으로 기록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부족이나 과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항만청장은 사전 통보가 이행되는지 여부와 개별 자유무역지역의 현물조사 일정을 확인해야 함

- 운영자는 자유무역지역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차 정리보고서(annual reconciliation report)를 작성해야 함⁵⁵⁶⁾
 - 세관의 조사나 사후심사에 대비하여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고서에는 구역관리번호나 화물식별번호별로 물품에 대한 명세서, 화물 신분, 시작 물량, 누적 인수·양도, 말기잔량, 연간 누적 조정물량 등을 포함해야 함⁵⁵⁷⁾

553) 한 예로 Industrial Standards of Potential Production on a Practical Operating Basis에 따른 재고회계방식 등을 말함(19 U.S.C. §81c(d), 19 CFR Subpart H)

554) 19 CFR 146.24(a)(1), (2)

555) 19 CFR 146.53 및 19 CFR 146.23(c)

556) 19 CFR 146.25: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항만청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557) 19 CFR 146.25(a), (b)

- 연차보고서가 완료되면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정확한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고 심사에 응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항만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운영자 이름과 주소 이외 심사에 필요한 장부기록이 보관된 장소, 보관인의 이름, 전화번호 및 직함을 진술서에 기입해야 하며 항만청장은 제 때 진술서가 제출되는지를 확인하는 목록을 유지해야 함
 - 진술서와 함께 재고의 과부족이나 과다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⁵⁵⁸⁾
- 운영인은 재고장부 시스템이 규정⁵⁵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조치를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재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손실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⁵⁶⁰⁾ 이외 재고관리체계에 대한 결함으로 물품 확인이 어렵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고 작업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항만청장은 자유무역지역 가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⁵⁶¹⁾

다. 반입물품목록(zone admission file) 작성 및 보관

- 구역관리번호체계(zone lot system)에서는 반입신고서(e-214/CBPF214) 복사본, 물품조사서 및 기타 반입신고서상의 물품 확인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보존하는 반입물품목록을 운영자가 작성, 유지해야 함
- 하나의 반입신고서에 다수의 구역관리번호가 부여될 수 있음
 - 컴퓨터에 구역관리목록이 유지되는 경우 출력본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반입신고서 번호에 따른 일련번호로 목록이 구성될 수 있고 혹은 운영자가 부여한 참고번호로 개별 반입신고서를 정리하여 반입목록을 유지해도 됨⁵⁶²⁾
 - 만약 컴퓨터에 구역번호목록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입물품목록은 반입신고서 번호

558) 19 CFR 146.53

559) 19 CFR 146.26

560) 19 CFR 113.73(a)(2)

561) 19 CFR 146.82(a)(8)

562) 19 CFR 146.37(a)(1)

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 한편 운영인은 요청이 있을 경우 항만청장이나 물품 양도를 신청하는 자에게 물품 조사서 복사본을 제공해야 함

- 물품 반입, 전시, 단순작업, 제조가공, 멸실(폐기) 혹은 양도에 대한 세관의 허가서 복사본과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동안 물품의 상태나 수량 변화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 복사본을 반입물품목록에 보관해야 함
 - 1년 단위의 포괄 작업신고(blanket CBPF 216)⁵⁶³가 허용된 경우 개별 목록에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도 됨
 - 또한 개별 허가서나 기타 증빙서류는 세관심사가 즉시 가능하도록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2일 이내에 재고장부시스템에 기록해야 함

- 한편 화물식별번호체제(UIN)나 기타 세관이 허가한 재고관리방식에서는 반입신고목록이 반입신고서와 기타 증빙서류로 구성됨
 - 반입신고목록은 반입신고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지되며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작업과 물품 양도는 재고관리체제의 일부로서 간주되고 반입신고목록에 보관되어야 함⁵⁶⁴

-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운영자는 물품을 인수받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인에게 양도하는 물품의 과거 전력에 대한 서류목록⁵⁶⁵을 제공해야 함

563) Application for Foreign Trade Zone Activity Permit

564) 19 CFR 146.37(a)(2)

565) 해당 서류는 19 CFR 146.66(c) 참조

〈부표 1〉 반입신고목록에 보관되는 각종 양식 및 증빙서류

양식번호·명칭	사용처
1. 물품장치	
e-214/CBPF 214: 반입신고서	물품 반입신고와 자유무역지역 신분(status) 지정
CBPF 6043: 물품인도서(Delivery Ticket), e-PTT 인가통지	반입허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 인도
CBPF 7512: 운송신고·세관감독·허가 대상 물품목록	반입허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 인도 혹은 운송업체의 동의에 의한 직접인도
MDR(Manifest Discrepancy Report): 적하목록 오차보고서	물품반입시점이나 그 이전의 수량 이상 보고: 운송업체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증빙서류 첨부)
CBPF 6423: 손상·과부족·샘플 보고서	세관이 적발한 용기 내부의 손상이나 과부족 보고 혹은 세관의 표본추출 보고
CBPF 7514, 7512 또는 7551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TTBFs 5100,11, 1689, 5110.30, 1582-A와 1582-B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주류 양도(내국세 미납)
TTBF 5200.14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담배제품 양도(내국세 미납)
2.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작업	
CBPF 216: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허가서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전시, 단순작업, 제조가공, 멸실(폐기) 혹은 일시 전출 및 반품
e-214/CBPF 214, CBPF 7501	과잉물품 신고
CBPF 7501, MDR	과부족물품 신고
운영자 양식	100달러 그리고/혹은 가액 1% 이하의 과부족 물량 신고
CBPF 214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신분변경 신청
CBPF 4315: 관세감면신청서	손상 혹은 기타 적격한 사유로 손실된 물품 보고
CBPF 5955A: 벌금고지서, 손해배상 통보 및 납부고지서	화물 관련 불이행 처분
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물품 양도	
CBPF 3461(/추정서): 즉시 양도신고서	수입신고서
CBPF 7501: 요약 수입신고	요약 수입 신고서(entry summary)
CBPF 368, 368A	비공식 수입신고
CBPF 7512(/추정서): 운송신고·세관감독·허가 대상 물품목록	운송, 수출, 운송 및 수출 혹은 선(기)용품 및 기타 특정물품 신고
CBPF 5125: 어선 보세 선용품 신고서 및 사용인증서	어선 선용품 공급 신고
CBPF 6043, 물품인도서, CBPF 7512	다른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창고, 혹은 선착장(공항)으로의 물품(선(기)용품) 양도 혹은 수출을 위한 양도
CBPF 216: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허가서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일시 전출과 반환, 자유무역지역 신분을 취득하였으나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의 전출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Field Operations, Foreign Trade Zone Manual, 2011, Publication Number 0000-0559A

- 항만청장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 감독하지 않는 한 운영인은 허가 받은 단순작업, 제조가공, 전시 혹은 일시 전출 또는 폐기 사실의 증명을 작업허가서 (CBPF 216)에 명시해야 함⁵⁶⁶⁾
 - 이와 달리 일괄작업신고의 경우 운영자가 작업 결과를 재고장부시스템에 기록하여 사후심사에서 물품 추적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blanket application)
 -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일시 전출되는 물품은 개별 작업허가서에 적시해야 함

- 운영인은 반입 당시나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양도되는 물품의 상태나 물량이 회계장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역 설립자도 자유무역지역 법령⁵⁶⁷⁾에 따라 일정한 장부기록 및 보고의무가 부여됨
 - 보관양식과 방식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관할 정부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유지해야 함
 - 또한 설립자는 매년 연차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추가하여 위원회가 지정하는 대로 운영, 수입, 경비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외 운영자와 설립자 사이의 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자는 설립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

6.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작업(operation)

가. 일반사항

- 법에서 금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국내외 물품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유입, 보관, 판매, 전시, 분할, 재포장, 조립, 유통,

⁵⁶⁶⁾ 19 CFR 146.52(d)

⁵⁶⁷⁾ 19 U.S.C. § 81p

정리, 분류 혹은 외국물품과 혼합되거나 제조된 이후 원래 포장 상태나 다른 상태로 수출 또는 폐기되거나 혹은 관세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음⁵⁶⁸⁾

- 자유무역지역에서 금지되는 작업은 별도로 논의함
- 법령(19 U.S.C. § 81c)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된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없고 자유무역지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대신 지역 밖에서 허용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운영인은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모든 단순작업, 제조, 폐기, 전시행위와 보안 및 보관 상태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운영인은 신중한 관리자가 채택할만한 수준의 감독을 수행해야 하며 사용자가 행사하는 관리감독 정도를 감안하여 그 수준을 결정함⁵⁶⁹⁾
- 운영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자나 소유주가 물품을 보관, 유지,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또한 사용자나 운영자 사이의 명의이전⁵⁷⁰⁾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해야 함: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세관의 신고양식은 없으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세관이 법령 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영자 혹은 사용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명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역내로 반입하고 제조 가공할 수 있음: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작업을 허가하는 한 소유권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고 시점에는 신고권한이 있는 자가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음(toll processing)⁵⁷¹⁾
- 운영자가 소유하지 않은 물품도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할 수 있지만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양도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운영인이 신고를 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 물품은 절도나 손상되지 않고 세관이 효율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

568) 19 U.S.C. § 81c

569) 19 CFR 146.4(a)

570) 명의이전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매 판매행위(19 U.S.C. § 81o(d))에 해당하지 않음

571) 19 U.S.C. § 1484

관되어야 함

- 설립자와 운영자는 각종 법령에 부합하도록 자유무역지역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운영해야 하며 항만청장은 결함이 수정될 때까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작업이나 물품 인수를 정지할 수 있음⁵⁷²⁾

나. 물품 보관

-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 이외 다른 물품은 세관의 반입, 일시장치, 직접인도 혹은 이와 유사한 승인 없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할 수 없음
- 항만청장은 세수 확보와 법 집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자유무역지역 신분을 취득한 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⁵⁷³⁾
 - 그러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동일한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 특히 구역제한물품이 동일한 종류의 다른 물품과 섞일 가능성이 있으면 별도로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항만청장은 반입신고 당시 구역제한물품의 보관방식을 지정해야 하며 이 때 구역제한물품 특히 대체 가능한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으며 세관 조사가 가능한 방식을 고려해야 함(한 예로 기름이나 곡물 같은 물품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관세영역으로 실질적으로 양도되어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나가기를 기다리는 물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유무역지역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별도로 보관되거나 운영인이 양도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⁵⁷⁴⁾
 - 또한 자유무역지역 신분을 취득한 물품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화물신분을 부여받지 않은 물품은 따로 장치해야 함: 일시장치물품, 경유물품, 직접인도절차물품, 조사대

572) 19 CFR 146.82(a)(2)

573) 19 CFR 146.51: 세관은 지방세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운영자가 별도로 지방정부에 물품보관과 관련한 요건을 확인해야 함

574) 19 CFR 146.71(c)

상 물품, 관세영역으로 실질적으로 양도된 물품, 사무용품 등 자유무역지역법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의 물품

○ 이외 손상물품의 경우 표시를 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 보관방식에 있어서는 복도가 확보되고 세관직원과 기타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접근을 위하여 출입구가 막혀있지 않아야 함⁵⁷⁵⁾

○ 구역관리번호(화물식별번호물품)를 부여받은 모든 물품은 '물품위치시스템'에 의하여 보관 장소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함

○ 구역관리번호 물품: 개별 반입신고서별로 물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포장화물에는 구역관리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모든 포장화물에 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장점검, 수량계산 혹은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항만청장은 포장단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

○ 기타 재고관리방식 물품: 상품이나 상자에 대한 표시 혹은 물품 특성에 따라 물품 확인이 가능하여 세관과 운영인이 재고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시 전출허가를 제외하면 외국물품은 어떤 경우에도 작업이 가동 중인 지역 이외의 장소에 보관될 수 없음

○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을 제외하면 작업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장소에 외국물품을 보관하면 이는 허가 없이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

○ 내국물품도 가동 중인 지역에 장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그 사실을 재고장부에 기록해야 함⁵⁷⁶⁾

다. 작업 허가

□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은 관련 규정⁵⁷⁷⁾에 의한 세관의 승인 없

575) 19 CFR 146.4(f)

576) 19 CFR 146.22

577) 19 CFR 146 Subpart E

이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단순작업, 제조, 전시 혹은 멸실(폐기)될 수 없음

- 내국물품의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요구하거나 다른 자유무역지역 신분을 취득한 물품과 결합 혹은 혼합되는 경우 작업허가가 필요함⁵⁷⁸⁾
- 작업신고서(CBPF 216)의 작성상 '제조'는 외국물품의 실질적 변형으로 다른 이름, 성질, 용도를 갖는 새로운 혹은 상이한 물품을 유발하거나 품목분류번호가 바뀌거나 혹은 수입신고의 요건이 달라지는 작업을 의미함⁵⁷⁹⁾
- 한편 '전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장래의 매입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물품을 진열하는 것을 의미함
- 신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이전에 승인받은 제조가공 작업을 변경하거나 생산을 상당히 확대하거나 원료 구입처를 변경하거나 혹은 원료 관세율(inverted tariff)을 적용받는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⁵⁸⁰⁾

□ 운영자는 작업 개시 이전에 항만청장에게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단순작업, 제조, 전시 혹은 멸실(폐기)을 위한 작업 신고서(CBPF 216)를 제출해야 함⁵⁸¹⁾

- 항만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작업 또는 제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해야 하며 법 집행에 필요하면 항만청장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신청서를 반환할 수 있음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일괄작업(blanket operation) 신청이 가능한데 그 사이에 작업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해야 함⁵⁸²⁾

□ 항만청장이 작업 개시를 허가하고 운영자가 동의하면 사용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전시 혹은 검사할 수 있고 잠재적 매입자가 검사하는 것도 허락할 수 있음

- 같은 조건 아래서 사용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 견본(샘플)을 채취하여 자유

578) 19 CFR 146.43(b)

579) 15 CFR 400.2(g), (k)

580) 새로운 작업으로 인하여 공익이 저해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15 CFR 400.28(a)(2)(3))
관련 절차와 기준은 각각 15 CFR 400.32(b), 15 CFR 400.31 참조

581) 일괄작업 신청도 가능함(blanket application)

582) 19 CFR 146.52(b)(2)

무역지역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첫째, 일시전출절차(temporary removal)에 따라 물품이 잠시 역외로 나갈 것 둘째, 물품을 다시 포장할 필요가 없이 견본이 채취될 것 셋째, 구역제한물품이 아닐 것
-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샘플을 이동할 수 있음⁵⁸³⁾

□ 항만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작업 신청서를 승인함

- 첫째,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작업 둘째, 작업장소가 화물신분이나 성질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장소 혹은 셋째, 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한 작업
- 항만청장은 어떤 작업 신청도 불허할 수 있고 일괄작업을 거부하는 대신 개별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음⁵⁸⁴⁾

□ 항만청장은 관련규정의 요건⁵⁸⁵⁾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일괄작업 대신 개별 작업을 신청하도록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신청인은 규정⁵⁸⁶⁾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일괄작업의 경우 운영인은 별도의 일괄작업 신고서 목록이나 재고장부시스템에 승인 받은 작업내용을 기록하여 사후심사나 회계관리에 있어서 승인받은 절차에 따른 물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⁵⁸⁷⁾

- 한편 개별 작업신고서와 구역관리번호가 연계되면 작업 신고서는 해당 반입목록에 보관해야 하며 세관이 승인한 재고관리방식에 따라 운영되면 작업신고서는 자유무역지역 재고장부에 함께 보존되어야 함
- 항만청장이 현장 감독을 수행하지 않는 한 운영자는 작업 관리를 위하여 작업신고서에 승인받은 작업의 결과를 기록해야 함(일괄작업은 제외)

583) 다만 물품가액이 1달러 이하로 절단되어 주문 용도로 반입되는 견본품은 예외임(HS 9811.00.60)

584) 19 CFR 146.52(b)(2)(1), (2)

585) 19 CFR 146.52

586) 19 CFR 146.82(b)(2)

587) 19 CFR 146.52(d)(2)

- 항만청장은 작업신고를 승인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작업결과가 표시된 작업신고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 항만청장이 다음과 같은 사례로 확인을 하는 경우 운영인은 물품 손실이나 자유무역지역에서 행방이 묘연한 물품에 대한 책임이 없음⁵⁸⁸⁾
 - 첫째, 애초에 해당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유입되지 않거나 둘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적정한 허가 없이 물품이 전출되지 않았거나 혹은 셋째, 화재 등의 재해나 증발 혹은 누출 등의 유사한 원인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멸실되어 관세영역으로 유입되지 않음
- 항만청장은 또한 모든 물품에 대한 폐기(멸실)를 허가할 수 있고 상업적 가치가 없는 잔여물은 처리를 위하여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영역으로 나갈 수 있음
 - 주류는 폐기할 목적으로 구역제한물품으로 반입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반입된 주류는 관할 재무성 관할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만 폐기가 가능함
- 물품 폐기에 앞서서 운영자는 항만청장에서 작업신고서(CBPF 216)에 멸실 신청을 해야 하는데 1년을 단위로 하는 일괄적인 폐기 신청도 가능함
 - 운영인은 해당 물품이 완전히 멸실됨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청서에 폐기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함: 즉 상업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이 없음을 보증하고 대상물품의 특성에 합당한 폐기방법을 제시해야 함
 - 상업적 잔여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은 멸실이 아닌 단순작업으로 간주되어 재고장부시스템에 단순작업으로 기록되어야 함
 - 구역제한물품의 경우 불완전한 폐기는 멸실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분적 소실 이후 수출되거나 잔여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규정상⁵⁸⁹⁾ '수출과 폐기 혹은 보관'으로 간주됨
 - 또한 구역제한물품의 폐기로 발생하는 잔여물이나 폐기물은 위원회가 공익상 허용하지 않는 한 국내로 수입될 수 없음

588) 19 CFR 146.53(c)(1)

589) 19 U.S.C. § 81c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항만청장은 폐기작업 신청을 허가해야 함
 - 첫째, 계획된 멸실작업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거나 둘째, 물품 신분 혹은 정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멸실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셋째, 안전하고 청결한 방식으로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폐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항만청장은 그 어떠한 폐기작업도 허용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경우 신청인은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음

- 폐기의 특성상 소실 이후에는 물리적 증거나 남지 않으므로 항만청장은 특히 제한물품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감독하거나 운영인에게 감독을 명령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물품 멸실이 어려우면 항만청장은 신청자의 비용과 부담 하에 역외에서의 폐기작업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세관이 폐기작업을 감독할 수 있고 세관이 확인 서명한 작업신청서는 운영인에게 제출되어 장부기록으로 보관해야 함⁵⁹⁰⁾(운영인이 감독하는 경우도 동일함)

- 국내로 수입되는 각각의 외국물품이나 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최종 구매자와 원산지국을 표시해야 함⁵⁹¹⁾
 - 항만청장의 허가 아래 그러한 표시가 없거나 허위로 표시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교정할 수 있음
 -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실질적 변형작업을 통하여 새롭거나 다른 물품으로 전환되면 국내로 반입할 때 외국물품이 아닌 미국산 물품(Made in U.S.A.)으로 표시할 수 있고 세관은 이에 대하여 승인 혹은 거부할 수 없음
 - 또한 이러한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역내에 있는 미국산 물품은 미국산 이외 다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음
 -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세관은 허위나 기만적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작업 신청을 허가할 수 없음
 -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제적된 물품은 상표권 위반으로 수입이 금지되며 미국인이나

590) 19 CFR 158.43(d), 19 CFR 101.2(c)

591) 19 U.S.C. § 1304

미국업체가 보유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령⁵⁹²⁾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물품을 반입, 제조, 단순작업, 전시 혹은 폐기하려면 운영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또한 운영인 자신이 물품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⁹³⁾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기된 물품이나 소유주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운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체납한 물품 처분의 일차적인 책임은 운영인에게 있음
 - 따라서 이들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옮겨서 정부 처분에 맡기려는 행위는 세관이 허용하지 않음

- 소유주가 운영인에게 서면으로 물품을 포기하는 경우 운영인은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해당 물품을 수출, 판매 혹은 폐기 등 처분할 수 있음
 - 세관이 아닌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경매 처분할 수 있으며 물품을 수입 신고하면 그 소유주나 구입자가 관세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
 - 지급불능이나 체납에도 불구하고 서면 양도가 없으면 자유무역지역이 위치한 관할 주의 법에 따라 운영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매가 허용되면 구입자는 물품 처분을 위하여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음
 - 물품 소유주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법에 따라 물품이 처분됨

- 설립자나 운영인은 관세영역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을 격리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람, 물품, 운송차량 혹은 선박 출입을 위한 설비를 장치해야 함⁵⁹⁴⁾
 -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위임으로 항만청장은 가동 중인 구역의 보안과 접근설비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⁵⁹⁵⁾
 - 운영인은 세관의 보안기준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화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반입화물에 대한 기록과 화물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음: 운

592) 19 CFR 146.9

593) 19 CFR 146.71(a)

594) 19 U.S.C. § 81(f)

595) 15 CFR 400.41

영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자나 물품 소유주가 물품을 보관, 유지 혹은 취급하고 관련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⁵⁹⁶⁾

- 규정⁵⁹⁷⁾에 따라 재무성 장관은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관직원을 자유무역지역에 파견할 수 있지만 설립자의 책임⁵⁹⁸⁾을 감안할 때 그 대신 설립자가 운영자와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지역 보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⁵⁹⁹⁾
- 세관이 자유무역지역 작업 개시를 승인할 때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운영자가 유지해야 하며 세관이 마련한 '화물보안기준'⁶⁰⁰⁾을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 작업개시 시점에 수행한 보안점검 이후에도 세관은 사후심사와 이행조사를 통하여 운영자의 보안기준과 세부항목을 점검할 수 있음

- 세관은 다음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첫째, 심각한 보안위반 사례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도난사고가 일어난 경우 둘째, 운영인이 안전한 설비를 장치하지 않거나 자유무역지역 화물을 적절하게 경비하지 않아 작업 정지나 자유무역지역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 셋째, 2종화기(Title II firearms)를 보관하는 고도의 보안설비

□ '화물보안기준'은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동 기준 이외 화물의 성격이나 다른 보안조치 등 여타 요인을 고려하여 보안체제의 결함을 운영자 담보상의 의무 불이행(default)⁶⁰¹⁾으로 판단함

- 보안 결함으로 허가없이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방출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물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상청구(liquidated damage)에 대한 감면 탄원에 서 보안 문제가 가중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596) 19 CFR 146.4(c)

597) 19 U.S.C. § 81(d)

598) 19 U.S.C. § 81(f)

599) 이와 별도로 항만청장도 세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음(19 U.S.C. § 81(d))

600) Standards for Cargo Security(TD-56)

601) 의무 불이행(default)이란 운영자의 담보 책임 아래 관세 등의 세금, 수수료나 손실 청부를 유발하는 행위나 부작위를 의미함

- 중대 결함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의해서만 세관은 자유무역지역 허가나 작업개시 허가에 대한 정지 명령을 취할 수 있음: 즉, 중대한 화물 손실을 유발하는 만성적이고 개선되지 않는 보안 결함에 대해서만 가동정지 결정이 내려짐
- 운영인은 내국물품을 포함한 화물 도난이나 의심 사례를 즉각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⁶⁰²⁾
 -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도난은 대체로 주간교역(interstate commerce) 혹은 무역 물품의 도난으로 간주되어 최대 25만달러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처벌됨⁶⁰³⁾
 - 항만청장은 운영인에게 다음 인원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생일, 출생지 등의 신원정보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 1) 자유무역지역 작업과 직간접적인 금전상의 이익이 있는 직원이나 핵심인사 2) 자유무역지역 신분을 취득한 물품의 운송, 전달, 인수를 위하여 운영인이나 사용자가 고용한 자⁶⁰⁴⁾
 - 항만청장은 또한 필요한 경우 세수 보호를 위하여 이들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개인비밀보호법 적용 면제를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7.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물품 양도

-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온 국내외 물품은 원 상태나 제조가공을 거쳐서 수출, 멸실(폐기) 혹은 관세영역으로 양도될 수 있음
 -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외국물품의 경우 미국 관세법의 적용을 받음⁶⁰⁵⁾
 - 그러나 다른 물품과 결합 혹은 부품이 되는 내국물품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국내

602) 19 CFR 146.53(a), (b)

603) Interstate Commerce: 19 U.S.C. § 549, 3571

604) 19 CFR 146.7(g)

605) 캐나다와 멕시코로 수출되는 물품은 NAFTA 관세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19 CFR 181.53)

로 반출될 수 있음⁶⁰⁶⁾

- 양도(transfer)는 화물신분을 취득한 물품을 소비, 수출, 운송, 보관을 위하여 혹은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이동하는 것을 말함 (선·기용품 포함)⁶⁰⁷⁾

- 다른 화물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과 결합되지 않거나 그 부품을 이루지 않는 내국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세관 허가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될 수 있음⁶⁰⁸⁾

- 다음의 경우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되어 그 신분을 상실할 것으로 간주됨
- 운송업체, 소유주, 구입자나 기타 적정한 자의 인수 영수증으로 입증되듯이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양도되고 또한 재고장부시스템에 물품 양도가 입력된 경우

- 외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되어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변형될 수 있음
- 한 예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양도되려면 작업신고서(CBPF 216)에 항만청장이 수입신고 면제를 승인해야만 됨

가. 일시반출(Temporary removal)

- 항만청장이 허가하면 자유무역지역 화물신분을 취득한 물품도 최대 120일 동안 물품 보수, 복원, 부수작업⁶⁰⁹⁾을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될 수 있음
- 일시 반출은 물품 소유주나 구입자가 작업신고서(CBPF 216)를 작성하여 신청하는데 1년 단위의 일괄적인 일시전출은 허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 항만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전출 이후 작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606) Second Proviso, 19 U.S.C. § 81c(a)

607) 19 CFR 146.1(b)

608) 19 CFR 146.43(b)

609) incidental operation: 환급법상(19 U.S.C. § 1313(a))의 제조 가공이 아닌 검사, 분석, 측정, 견본, 세척, 재포장, 측량, 복사 등의 작업을 말함

을 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반출된 물품은 운영자의 담보 책임 아래 있으며 그 상태에서 관세영역으로 수입될 수 없음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시반출을 허가할 수 있음
- 첫째, 승인 이전에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동하지 말 것
 - 둘째, 보수를 제외하면 다른 물품을 추가하거나 결합하지 않고 물품가액이 추가되지 않을 것
 - 셋째, 자유무역지역에서 금지된 작업이나 거래를 위하여 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 넷째, 120일 이내에 동일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환되고 항만청장에게 이를 보고할 것(기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환된다면 장치장소는 상관없음)
 - 다섯째, 신청건별로 양도된 물품과 반환된 물품의 수량이 대조되어야 함: 다만 상이한 신청건이지만 특정 장소에 이동하였다가 다시 반환되는 대체 가능한 물품(fungible merchandise)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추적이 가능하면 됨
-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환되면 신청자는 그 사실을 서명한 작업 신고서를 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일시반출기록을 종식함
- 일시반출 당시 자유무역지역 신분은 계속 적용됨
 - 물품을 제 때 반환하지 않거나 일시반출 요건을 위반하면 허가 없이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⁶¹⁰⁾ 운영자의 담보 책임하의 의무 불이행(default)으로 처벌됨

나. 수입신고

- 관세법상의 신고요건과 절차⁶¹¹⁾를 고려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물품이 실제로 관

610) 19 CFR 146.51과 19 CFR 146.71(a)

세영역으로 양도되기 이전에 수입신고를 승인할 수 있음(constructive transfer)⁶¹²⁾

- 즉, 자유무역지역 신분을 취득한 물품은 관세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들 물품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동하여 관세법에 따라 필요하면 조사를 받고 반출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양도절차는 이러한 절차적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실질적인 양도절차를 적용받은 물품은 화물신분을 상실하며 더 이상 자유무역지역 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실제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나갈 때까지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함
- 법령⁶¹³⁾에 따라 적정한 양식으로 수입 신고하면 항만청장은 실질적인 양도를 수락해야 하며 만약 수입신고가 그 이후 거부 혹은 취소되면 해당 물품은 이전의 화물신분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다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됨

□ 외국물품이나 구역제한물품은 일반적 수입절차⁶¹⁴⁾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해야 함⁶¹⁵⁾

- 수입신고서는 항만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역 화물신분을 취득한 물품은 수입항의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⁶¹⁶⁾
- 모든 신고서식이 정확하고 완전하여 작성되고 관련 증빙서류도 제 때 제출되며 합법적인 서명이 있어야 함⁶¹⁷⁾
- 수입신고서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 규정⁶¹⁸⁾에 의하여 수입자와 대리인이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611) 19 U.S.C. § 1484

612) 19 CFR 146.1(b)

613) 19 CFR Subpart F: 1986년 이전에는 실질적인 양도를 위한 신청서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실질적인 양도를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어 수입신고에 따라 실질적인 양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짐

614) 19 CFR 142-3

615) 수입신고절차는 19 CFR 141~144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적용되는 신고방식만을 논의함

616) 19 CFR 141.62(a)

617) 이와 같은 행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신고는 거부되며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양도도 허용되지 않음

618) 19 U.S.C. § 1592

- 자유무역지역 물품을 소비를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규정에 명시된 절차⁶¹⁹⁾에 따라 수입신고를 서면이나 전자방식으로 해야 함
 - 정식 수입신고는 일반 수입신고(entry), 요약 수입신고(entry summary)와 즉시 인도(immediate delivery)의 3가지 기본절차가 있음
 - 물품 구입자나 소유주⁶²⁰⁾ 혹은 이들이 지정한 관세사나 하물 인수인과 같이 명의 수입자(importer of record)만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물품 소유주나 구입자가 아닌 운영인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없음

- 한편 수입신고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방식으로 송부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은 승인 서명하여 팩스로 신고서를 반환할 수 있음⁶²¹⁾
 - 전자방식에 의한 신고는 19 CFR 143 Subpart D에 제시되어 있음

- 통상적인 방식에서는 수입신고서(CBPF 3461)⁶²²⁾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송장, 포장명세서와 이외 물품 양도를 위하여 항만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이후 요약신고는 수입신고 이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⁶²³⁾
 - 일반 수입신고서(CBPF 3461)에 입력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Block 1: 도착일자는 신고일자임
 - ② Block 3: 수입신고유형 06
 - ③ Block 14: 설비정보관리체제 코드(FIRMS)⁶²⁴⁾: 물품이 장치된 자유무역지역을 말하며 항만청장이 지정한 코드를 말함
 - ④ Block 15: 'FTZ'와 자유무역지역 번호(예 FTZ 001A)

619) 19 CFR 141~142: 자유무역지역에서 전출될 수 없는 물품이나 견본품의 경우 비공식 수입신고를 해야 함(19 CFR 10.151)

620) 소유자 등은 실제 소유주뿐만 아니라 물품 거래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말함

621) Automated Broker Interface(ABI)에 대한 절차는 19 CFR 143 Subpart A 참조

622) 직접인도절차(Direct delivery procedure)를 신청할 때에도 사용됨

623) 19 CFR 141.12(a), 141.62(a)

624) Facilities Resource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⑤ Block 22: 자유무역지역 화물신분
 - ⑥ Block 23: 적하목록이 없으므로 포장갯수(bulk의 경우 판매단위를 기록)
 - ⑦ Block 12, 13, 16, 17, 18, 21: 입력하지 않음
 - ⑧ Block 26: 외국산 물품이나 특혜물품의 경우 외국제조업자에 대한 정보(MID)
 - ⑨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의 경우 원산지: 미국, 제조자 이름: FTZ, 주소: 자유무역지역 번호, 도시: 자유무역지역 사용자 이름
- 수입자가 원하면 수입신고시점에 요약 수입신고(import summary)를 할 수 있고⁶²⁵⁾ 또한 일정 상황에서는 항만청장은 요약 수입신고를 요구할 수 있음⁶²⁶⁾
-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인 수입신고(CBPF 3461) 이후 10일 이내에 요약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요약 수입신고서(CBPF 7501)에 작성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Block 2: 코드 06(08 NAFTA 관세유예물품)
 - ② Block 10: 원산지(원산지가 다른 다수의 부품으로 된 물품: 가격기준)
 - ③ Block 13: 일반 수입신고 Block 26과 동일
 - ④ Block 8: 일반 수입신고 Block 15와 동일
 - ⑤ Block 21: 일반 수입신고 Block 14와 동일
 - ⑥ Block 9, 11, 12, 14, 15, 16, 17, 19, 20: 입력하지 않음
- 규정⁶²⁷⁾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만청장은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즉시 인도절차를 허용할 수 없음(immediate delivery)
- 만약 즉시인도의 특별허가가 내려지면 19 CFR 141.21~28의 절차를 따라야 함
- 일반 수입신고서(CBPF 3461)와 요약 수입신고서(CBPF 7501)는 법⁶²⁸⁾에 명시된 관련

625) 19 CFR 141.12(a)

626) 19 CFR 141.13

627) 19 CFR 142.21

628) 19 CFR 141~142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수입신고 승인, 물품가액⁶²⁹⁾, 수량, 품목분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함
- 항만청장이나 물품 양도를 신청하는 자가 요구하면 운영자는 물품 반입 당시 제출한 검사확인서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함⁶³⁰⁾⁶³¹⁾
- 항만청장은 증빙서류 제출이 실용적이지 않고 또한 수입신고인이나 운영자가 송장 등 증빙서류 기록을 세관 심사에 대비하여 잘 보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⁶³²⁾
- 이 밖에도 신고금액이 추정세액일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점에 그러한 사실을 세관에 고지해야 하며⁶³³⁾ 나중에 실제금액이 결정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물품 양도가 허가됨(entry bond)⁶³⁴⁾

- 항만청장이 규정⁶³⁵⁾에 따라 담보금액을 결정하는데 건별 담보금은 대체로 물품가액과 관세 등의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며 포괄담보는 5만달러를 최저한으로 이전연도 관세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수입자는 또한 규정⁶³⁶⁾에 따라 관세 등의 추정 세금을 세관에 기탁해야 함

□ 세관은 대상물품에 적용되는 법령과 위험도에 따라 수입신고를 처리하는데 물품 양도 이전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품을 선별하며 보통 수입신고 이후 1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됨⁶³⁷⁾

- 관세 등 제세 납부를 완료하고 관세영역으로 수입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조사가

629) 물품가액이 추정치일 경우 수입신고시점에 이를 세관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추후 실제가격이 결정되면 조정해야 함

630) 19 CFR 146.37(b)

631) 하나의 검사 확인서에 포함된 화물이 나뉘어 나중에 따로 수입 신고될 경우 수입신고하는 물품 수량과 가액을 적시한 검사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음

632) 19 CFR 146.62(c)

633) 19 CFR 146.62(b)(1)

634) 19 CFR 142.4(a): 담보확인서(CBPF 301)를 제출해야 함

635) 19 CFR 113.13(b)

636) 19 CFR Subpart G

637) 물품 선별은 대개 자동적인 선별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System)에 의하여 이루어짐

- 필요 없으면 수입신고서(CBPF 3461, 7501)에 허가 서명이 이루어짐⁶³⁸⁾
- 구역제한물품은 미국 정부기관의 특별허가나 신고면제가 있어야 세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반출시점에 실물검사는 일반 수입품보다 적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부분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 당시 조사대상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거나 또는 반복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물품이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청장은 물품 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물품은 증양검사장(CES)이나 항만청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야 함
 - 조사가 완료되면 수입신고서나 전자방식에 따라 수입허가가 발행됨
- 수입신고를 한 자유무역지역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품목분류방식이 적용됨
- 그러나 특혜물품의 경우 특혜 신분으로 자유무역지역 반입을 신청한 시점의 물품의 성격, 상태 및 수량과 당시 관세율 등에 따라 품목이 분류됨⁶³⁹⁾
 - 반입신고서(CBPF 214)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지 않은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물품으로 간주되며 특혜물품으로 지정되면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고 수입신고서에 비특혜물품과 별도로 표시해야 함
 - 폐기물: 특혜물품에서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특혜신분이 유지되며 특혜신분을 요청한 시점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됨⁶⁴⁰⁾
 - 특혜물품에 대한 제조나 단순작업으로 2개 이상의 물품이 생산될 경우 관세 등은 물품분리시점의 상대가격에 따라 분배되며 이 때 회수 가능한 폐기물을 고려해야 함⁶⁴¹⁾
- 한편 비특혜물품의 경우 관세영역으로 수입 신고된 시점의 물품의 성격, 상태 및 수량

638) 또는 항만청장이 허가한 별도의 서류에 서명이 이루어지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허가가 내려짐

639) 19 CFR 146.65(a)(1)

640) 제조나 단순작업을 거쳐 비특혜물품으로 전환된 회수 가능한 폐기물과 다름(19 CFR 146.42(b))

641) 19 U.S.C. § 81c(a): 석유정제작업에서는 물품분리시점이 전체 제조기간으로 가공과정의 개별물품 평균가격에 따라 관세 등이 배분 부과됨(19 U.S.C. § 81)

과 당시 관세율 등에 따라 품목 분류됨⁶⁴²⁾

- 특혜물품이나 내국물품의 제조 또는 단순작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비특혜물품으로 간주됨⁶⁴³⁾
-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경우 적용 가능한 개도국에서 직접 수입되고 비특혜물품으로 수입 신고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함

□ 특혜물품과 비특혜물품은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물품가액이 평가됨

-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되는 물품가액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 반입을 초래한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법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포함함⁶⁴⁴⁾
- 실제 지불한 금액이나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양도 당시 전체 완성품 가액(zone value)⁶⁴⁵⁾에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가공 혹은 제작비용, 일반경비 및 이윤과 운송·보험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관세평가액이 됨
- 관세 평가액은 수입 신고되는 완성품 제조나 작업에 투입된 외국물품의 가격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가공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이나 부산물 가액은 제외됨⁶⁴⁶⁾
-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이 혼합될 경우 관세 평가액은 제조 작업에 포함된 외국물품 가액을 합친 금액임

642) 19 CFR 146.65(a)(2)

643) 19 CFR 146.42(b), (c)

644) 19 CFR 146.65(b): The dutiable value of merchandise transferred from a zone i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in the transaction that caused the merchandise to be admitted into the zone plus the statutory additions contained in 19 U.S.C. §402(b)(1) less, if included, international shipment and insurance costs and U.S. inland freight costs.

645) 해당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되도록 초래한 거래에서 판매자에게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이러한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양도된 물품과 관련된 모든 부품비와 가공비용을 포함함(19 CFR 146.65(b)(1))

646) 19 CFR 146.65(b)(2)

- 외국물품 제조 작업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이나 부산물은 회수 가능한 이들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되도록 초래한 거래에서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평가됨
 - 수입 신고되는 완성품 제조 작업에 사용된 특혜 외국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제외되는 폐기물(부산물) 공제액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외국물품 시장가액⁶⁴⁷과 폐기물(부산물) 시장가액의 차액을 나타내야 함
 - 항만청장은 규정⁶⁴⁸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상이나 부패 등에 따른 공제를 허용할 수 있음

- 추정 혹은 표준비용으로 물품가액을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은 실제 비용이 확정될 때까지 정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liquidation extension)
 - 수입신고시점에 신고금액이 추정 혹은 표준비용 기준임을 미리 세관에 명확하게 통보해야 하며 추후 실제 금액이 결정되면 세관의 정산절차⁶⁴⁹⁶⁵⁰에 따라 신고해야 함
 -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물품은 수입 상태로 특혜물품으로 지정되지만 관세영역으로 수입할 때에는 반입시점의 관세율이 아닌 수입시점 관세율이 적용됨⁶⁵¹

다. 주기적 수입신고

- 2000년 이후에는 제조물품을 포함한 모든 자유무역지역 물품⁶⁵²에 대하여 사용인이나 운영자가 1주 단위의 주기적 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⁶⁵³
 -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첫 날짜에 추정 수입신고서(CBPF 3461)를 제출하고 개별 물품의 성격과 수량 및 물품가액을 명시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647) 즉, 적정하게 평가된 외국물품 가액을 폐기물 수량과 곱한 금액을 말함

648) 19 CFR 158 Subparts B and C(19 CFR 146.65(b)(3))

649) CBP Reconciliation Procedure

650) 또한 식약청(FDA)에 규제하는 물품에 대한 주기적 신고는 세관과 식약청이 개발한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함

651) 15 CFR 400.33(b): 비특혜물품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이미 물품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나중에 수입신고할 때 반덤핑관세를 적용할지 여부가 결정됨

652) 그러나 설탕제품에 대해서는 주기적 신고가 허용되지 않음

653) 19 U.S.C. § 1484(as amended by the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 Title IV, Section 410)

을 첨부해야 함

- 주기적 신고(및 보완신고)에 적시된 물량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출하면 수입허가 없이 관세영역으로 반출되어 운영인의 담보책임을 위반한 것⁶⁵⁴⁾으로 간주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물품 반출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됨
- 재무성 장관은 세관이 승인한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설치하여 주기적 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회계, 운송 및 기타 물품 통제가 세관기준을 만족해야 주기적 신고를 허용할 수 있음

□ 주기적 신고에서는 화물신분과 상관없이 개별 HS 단위 물품의 수량과 물품가액을 신고해야 함⁶⁵⁵⁾

- 주기적 신고 이후 규정⁶⁵⁶⁾에 정해진 기한 이내에 약식신고(entry summary)를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실제로 반출된 물품 품목분류번호와 수량 및 가액을 명시해야 함
- 수입신고서에 명기된 품목수(HS 번호)가 주기적 신고에 적시된 품목수를 초과하거나 물품 수량 혹은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입신고는 승인되지 않음⁶⁵⁷⁾
- 주기적 신고가 적용되는 7일 동안 추가되는 수입물품을 위하여 보완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반출되는 물품이 없으면 운영인은 항만청장에게 추정 수입신고를 취소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 주기적 신고에서는 수입신고 이후 추가 제조나 기타 작업을 금지하는 규정⁶⁵⁸⁾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아직 수입되지 않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추후 물품이 반입되고 요약 수입신고서에 포함된다는 조건 아래 주기적 신고가 허용됨⁶⁵⁹⁾

654) 19 CFR 146.71(a)

655) 19 CFR 146.63(c)

656) 19 CFR 142.12(b)

657)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추정 물량에 대해서는 합리적 설명이 없으면 항만청장이 주기적 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658) 19 CFR 146.71(c)

- 미국 식약청(FDA)이 규제하는 물품에 대한 주기적 신고는 식약청과 세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절차에 따라 식약청과 세관에 모두 서면 신청을 해야 함
 - 신청서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할 작업 성격에 따라 개별 물품과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한 예로 제조공정을 진행할 경우 상품명, 물품설명서, 품목분류번호, FDA 상품코드, 제조업체 주소와 이름, FDA가 규제하는 원료나 부품 명세서가 필요함⁶⁶⁰⁾
 - 식약청은 대상물품의 위험도와 제조업체의 과거 이력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 신고를 승인하며 식약청의 특별관리 프로그램(OASIS)에 의하여 관리 감독됨

라. 보세창고, 전시, 임시 보세수입(TIB), 외교물품 등의 양도신고

- 규정에 의하면 특혜신분을 취득한 외국물품은 관세 등을 납부해야 관세영역으로 반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등의 납부가 지연될 수 없음⁶⁶¹⁾
-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창고로 반출되는 물품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수입신고절차가 적용됨
 - 특혜 외국물품이나 이러한 부품으로 구성된 물품은 보세창고로 양도하기 위한 수입 신고를 할 수 없음⁶⁶²⁾
 - 다만 특혜부품이 부품을 구성하지 않는 비특혜 외국물품은 보세창고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수입되지 않았다면 보세창고로의 양도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물품도 수입 후 5년을 초과하여 보세창고에 남아 있을 수 없음⁶⁶³⁾
 - 구역제한물품의 경우 내외국물품 공히 보관후 수출을 조건으로 보세창고로 양도신고 할 수 있으며 보관후 수출 이외 다른 조건은 자유무역위원회 허가가 필요함⁶⁶⁴⁾

659) 이외 재무보고서상 특별한 재고처리방식(inventory relief point)에 대해서는 19 CFR 146.71(c) 참조

660) 반면 자유무역지역에 단순히 보관할 경우 외국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MID), 원산지, 운송업체의 이름과 주소 등이 필요함

661) 19 CFR 146.62

662) 19 CFR 146.64(a)

663) 19 CFR 146.64(d)

- 내국물품이나 이미 수입 신고된 물품은 보세창고로 반출될 수 없음
 - 이외 섬유제품의 경우 소비를 위하여 국내로 반출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항만청장이 승인하면 보세창고 양도가 가능함
- 둘째로 특혜 외국물품이나 이러한 부품이 포함된 물품은 일시보세수입절차(TIB)⁶⁶⁵를 통하여 반출될 수 없음⁶⁶⁶
- 구역제한물품은 자유무역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승인하고 일반적 수입신고 이외 다른 형태의 신고를 지정하지 않으면 일시 보세수입이 가능함
 - 한편 비특혜 외국물품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시보세수입절차에 의한 양도가 가능함: 첫째, 부품 중 특혜 외국물품이 있거나 1년 이상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되어 있었거나 혹은 관세할당(쿼터) 대상으로 할당량이 소진된 물품
- 셋째, 특혜 외국물품은 무역 전시를 위한 반출신고가 허용되지 않음
- 구역제한물품은 자유무역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승인하면 전시용으로 반출되었다가 통상의 수입신고가 가능함
 - 특혜 외국물품이 부품을 구성하지 않는 비특혜물품은 전시용으로 반출되었다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⁶⁶⁷
- 이외 미국정부 책임으로 수입된 물품은 일반적인 신고 및 조사절차를 적용받음⁶⁶⁸
-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제외하면 관세가 부과되며 또한 자유무역지역 반입 당시 특혜물품으로 지정된 후 면제대상 물품으로 변형된 일부 물품은 관세를 납부해야 함⁶⁶⁹

664) 19 CFR 146.70(c)

665) Temporary Importation Bond

666) 19 CFR 10.31

667) 19 CFR 147.42

668) 19 CFR 10.100

669) HS 품목분류에서 98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면제 대상인데 Subchapter VII 물품은 특혜물품으로 지정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외교·국제기구 용품도 일반수입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운영인이 별도로 통제할 책임이 있음
 - 국무성의 요청이 있으면 이들 물품은 외교용품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유무역 지역에서 반출될 수 있지만 판매 등 상업용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⁶⁷⁰⁾
 - 또한 보세창고 작업에 허용되는 일괄 양도허가⁶⁷¹⁾가 적용되지 않음
 - 국무성은 상대국에 있는 미국 외교관 등이 호혜적 대우를 적용받고 타당하다고 판단 되면 해당 항만청장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은 국무성 허가서류(DS Form 1504)와 함께 약식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운영인은 수입신고서와 증빙서류 복사본을 자유무역지역 반입목록에 보관하고 해당 외교용품은 보세운송절차를 적용받지 않고 사용 장소로 이동함

마.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양도신고

- 다른 항만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이동할 수 있고 또는 법이 허가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항만에서의 수입신고나 보세창고로의 보세운송이 가능함
 - 자유무역지역 사이의 물품 양도도 건별 혹은 주기적 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운송신고서(CBPF 7512)⁶⁷²⁾에 자유무역지역 물품임을 명기하고 물품 신분과 물품이 출발하는 자유무역지역 고유번호를 기입해야 함
 - 또한 규정에 따라 구역제한물품, 섬유제품, 다른 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이동 등을 명기하거나 이서를 해야 함
 - 한편 자동 전자신고시스템(ABI)의 보세운송절차⁶⁷³⁾를 이용하면 주기적 신고를 이용하지 않고도 운송신고서를 발급받아 물품 이송이 가능함

670) 19 CFR 148.85

671) blanket transfer permit(19 CFR 19.6(d))

672) 운송신고 및 세관감독·허가 대상목록(Transportation Entry and Manifest of Goods Subject to CBP Inspection and Permit)으로 지칭됨

673) QP/WP 및 QX/WX Procedure(Automated Broker Interface in bond system)

- 동일 항만에 위치한 다른 운영자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양도하려면 운송신고서(CBPF 7512)⁶⁷⁴⁶⁷⁵에 즉시수송을 표시하여 승인을 받음
 - 세관운송인, 보세운송업체 혹은 물품을 인수하는 운영인이 운송을 직접 담당하며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지역에 반입신고서(CBPF 214)를 제출해야 함⁶⁷⁶
 - 항만 내 양도에 대하여 정식 운송신고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물품을 인도받은 운영인이 제대로 물품을 통제하고 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임
 - 물품을 보내는 자유무역지역 운영인은 해당 물품의 이력⁶⁷⁷도 함께 보내야 하며 항만청장은 물품인수시점에 운송신고서 복사본을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동일한 항만에서 같은 운영자가 담당하는 자유무역지역 사이의 물품 이동은 물품인도서(CBPF 6043)⁶⁷⁸를 승인을 받거나 또는 항만청장이 승인한 지역물품 통제 시스템에 따라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물품 이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동일한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한 물품손실로 간주되고 법령에 규정된 서류 제출⁶⁷⁹이 필요하지 않음

- 그러나 다른 항만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양도하려면 보세운송절차(QP/QX 7512)에 즉시 보세운송을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⁶⁸⁰를 제출해야 함⁶⁸¹
 - 이 경우 전술한대로 물품을 인수하는 운영자에게 물품 이력을 보세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음

674) 운송신고서 대신 법에 명기된 절차(19 CFR 118)에 따른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음

675) 이외 다음의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19 CFR 146.62(b)(1), 146.66(b), 146.70(d))

676) 19 CFR 146.66(a)

677) Merchandise history(19 CFR 146.66(c))

678) Delivery Ticket

679) 19 CFR 146.62(b)(1), 146.66(b), 146.70(d)

680) 19 CFR 146.62(b)(1)나 146.70(d)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의미함

681) 19 CFR 146.66(b): 모든 운송신고서 복사본에는 해당 물품이 고유번호가 지정된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동함을 표시해야 함

- 우선 구역관리번호에 의한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유지되고 있는 물품의 경우:
- 반입신고서(CBPF 214) 원본과 반입 당시 제출된 모든 송장(보고서), 반입 이후 물품신분 변경 당시 제출된 반입신고서 복사본 그리고 물품 제조나 단순 작업시 제출한 작업신고서(CBPF 216) 복사본을 송부해야 함
 - 한편 구역번호 재고관리시스템이 없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송부해야 하는 서류가 동일하지만 다만 이들 서류는 개별 재고관리방식에 따라 관리되는 서류를 말함
 - 이와 같은 자료 송부가 어렵거나 상당한 서류작업이 필요할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운영자는 운송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물품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신분, 물품가액,⁶⁸²⁾ 관세평가액, 수량, 물품 명세서, 화물식별번호(반입 후 신분변경과 세번변경을 초래하는 단순작업 수행 여부)와 함께 이들 자료가 자신의 재고장부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함
 - 마지막으로 구역관리번호 재고시스템에는 없지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작업이 진행된 물품의 경우에도 앞서 논의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함
-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하면 일반적인 절차⁶⁸³⁾에 따라 물품이 반입되는데 다만 항만청장은 세관의 물품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이전 자유무역지역에서 취득한 물품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에도 이전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을 고려하여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함
 - 물품을 인수받은 운영인은 물품이력 서류를 반입신고서와 함께 보관하고 관련 정보를 재고장부시스템에 입력해야 함⁶⁸⁴⁾
 - 또한 물품을 양도한 운영인도 양도시점으로부터 5년간 모든 자료를 유지해야 함⁶⁸⁵⁾
-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자유무역지역 물품은 일정 절차⁶⁸⁶⁾에 따라 다른 항만으로 이

682) 항만청장이 승인하면 기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전체 물품가액을 사용할 수 있음

683) 19 CFR 146.32

684) 19 CFR 146.66(d)

685) 19 CFR 146.4(d)

686) 19 CFR 118

동하여 수입 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 보관될 수 있음

- 이 경우 운송신고서(CBPF 7512)에 명시하여 도착지 항만청장과 하물 인수인에게 양도의 성격을 주지해야 함⁶⁸⁷⁾
- 즉, 물품 구입자나 소유주 등 신고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올바르게 신고할 책임이 있으며 담보를 제공한 신고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대신 수출할 의향이 있을 경우 항만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세관 감독 아래 수출할 수 있음

- 처음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주류와 담배제품으로 수출되지 않고 수입, 보세창고 입고 혹은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동하는 물품은 일정 기한 이내⁶⁸⁸⁾에 내국세를 납부해야 함(관세 제외)⁶⁸⁹⁾
 - 수출의 경우 내국세가 면제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주류 등의 양도를 신청하는 자에게 있으며 구역제한물품으로의 양도나 수출로 신고하면 됨
 - 운송신고서와 함께 요약 수입신고서(CBPF 7501) 및 세금을 제출하고 수입신고서 복사본을 도착지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세금 납부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물품 양도 이후 처음 신고하는 자에게 부과됨

바. 수출을 위한 양도신고

- 국내외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었다가 수출될 수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외로 직접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무역통계규정⁶⁹⁰⁾에 따른 신고가 필요함
 - 즉,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수출지 세관의 전자수출신고시스템(AES)⁶⁹¹⁾에 접속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함

- 수출방식은 물품 양도형태에 따라 직접수출, 즉시수출 그리고 간접수출 세 가지 방식으

687) 19 CFR 146.62(b)(2), 146.64(c), 19 CFR 146.70(d)에 따른 진술을 말함

688) 해당 물품이 원래 자유무역지역에서 나간 날이 속한 1/2월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이내임

689) 26 U.S.C. §5061(d) and 26 U.S.C. §5703(b)(2)

690) Foreign Trade Statistics Regulation(FTSR) 19 CFR 30

691) Automated Export System(AES)의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EEI)

로 구분될 수 있음

- 직접수출(direct exportation): 관세영역으로의 양도 없이 세관운송인(cartman)이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수출선박 등에 직접 선적하는 방식을 말함
- 즉시수출(Immediate Exportation): 자유무역지역이 위치한 항만에서 수출하지만 우선 관세영역으로 양도되는 방식으로 운송신고서에 즉시수출을 위한 수입신고를 해야 함: 신고자는 수출 보증을 위하여 담보확인서(CPBPF 301)를 제출하고⁶⁹²⁾ 물품은 세관운송인이 절차⁶⁹³⁾에 따라 선적장소로 운반하여 수출절차를 진행해야 함

□ 간접수출(indirect exportation): 다른 항만으로 운송 및 수출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양도되는 물품은 운송신고서에 ‘운송 및 수출’을 표기하고 보세운송인에게 수출 책임이 부여됨⁶⁹⁴⁾⁶⁹⁵⁾

- 이 때 수출항에서 선적이 분할되거나 물품 일부가 수출되지 않는 경우 적하목록의 발취본을 운송신고서에 명기해야 함: 간접수출신고를 하고 도착한 물품을 분할하는 작업은 수출선박 등이 모든 물품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도착지 변경이나 부두에서의 상품 보관에 따른 절차 규정⁶⁹⁶⁾을 준수해야 함⁶⁹⁷⁾
- 구역제한물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은 간접수출을 신고한 항만청장에게 요청하면 간접수출신고 대신 수입신고로 신고유형을 변경할 수도 있음⁶⁹⁸⁾
- 간접수출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90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⁶⁹⁹⁾ 최대 1년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함⁷⁰⁰⁾

692) 19 CFR 113.62과 19 CFR 146.67(b)

693) 19 CFR 125: 세관과 세관운송인은 운송신고서 전후면에 운송 및 용적기록을 명기해야 함

694) 19 CFR 18.26과 146.67(e)

695) 보세운송업자를 구할 수 없으면 항만청장의 승인을 전제로 수출자 담보를 이용하여 간접 수출할 수 있음(19 U.S.C § 1553)

696) 19 CFR 18.23과 19 CFR 18.24

697) 특혜물품 신분의 항공기 연료(19 U.S.C § 1309)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어 보세 운송된 이후 일시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수출을 위하여 보관될 수 있음(CBP 223268 (10/15/91))

698) 수출항에서 국내로 위법 유입될 가능성 때문에 규정 19 CFR 146.62(b)(2)과 19 CFR 146.70에 따른 진술서가 필요함

699) 19 CFR 18.24

700) 기내판매를 통한 수출을 위하여 공항에 보관된 물품에는 특별절차가 적용됨(CD 099-3280-008)

- 수출신고는 운송신고서(CBPF 7512)를 제출하거나 전자신고(QP/WP나 QX/WX)로 하는데 다음의 용도로 운송신고서 복사본이 교부되어야 함
- 운송허가용으로 운영인에게 교부, 보세운송을 위한 전자운송시스템 작동⁷⁰¹⁾에 사용, 보세운송업체(혹은 세관운송인)에게 교부, 수출선박 등에게 물품 인도시 사용
 - 수출방식과 상관없이 수출 신고인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각종 진술서⁷⁰²⁾를 운송신고서에 첨부하고 직접 혹은 즉시수출방식의 경우 담보확인서(CBPF 301)⁷⁰³⁾를 항만청장에게 제출하며 또한 구역제한물품에는 이서(endorsement)⁷⁰⁴⁾가 필요함
 - 담보 당사자는 수출을 책임진 자이며 ‘운송 및 수출’을 담당할 보세운송업자는 해당 물품의 수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수출 증빙서류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⁷⁰⁵⁾
 - 우편을 이용한 수출이 가능한데⁷⁰⁶⁾ 이 경우 수출자가 우편물에서 물품을 빼내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는 이서를 해야 하며⁷⁰⁷⁾ 우편물은 관련절차⁷⁰⁸⁾에 따라 세관운송인이 우체국으로 이송해야 함
- 세관이나 수출 운송선의 대표는 운송신고서에 수출선적을 확인해야 함
- 수출 사실에 대한 증빙책임은 운송업자에게 있으며⁷⁰⁹⁾ 수출 확인에 따른 세관의 담보 해약은 관련 규정에 명시됨⁷¹⁰⁾
 - 수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항만청장은 수입신고서와 담보확인서상의 책임자나 보세운송업자에게 손실 청구할 수 있음(liquidated damage)
- 수출신고를 하였지만 선적되지 않은 물품은 항만청장이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

701) Automated Commercial System

702) 19 CFR 146.62(b)(2)

703) 19 CFR 113.62

704) 19 CFR 146.70(c)(d)

705) 19 CFR 18.26(d): 세관 운송인은 수출 선적장소의 물품 운송만 책임짐

706) 19 CFR 145 Subpart F

707) 19 CFR 145.71(b)

708) 19 CFR 125

709) 19 CFR 113.62(h)(3) 혹은 19 CFR 18.62(d)

710) 19 CFR 113.55: 우편물의 경우 우체국이 인수사실을 서명한 영수증으로 수출을 증빙할 수 있음

인 절차를 적용받음⁷¹¹⁾)

- 다만 수출 운송업자가 화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환될 수 있음: 만약 자유무역지역이 같은 항만에 위치하면 물품 반송과 함께 운송신고서가 취소되며 그렇지 않고 다른 항만에 있을 경우 물품 반환을 위하여 새로운 운송신고서(CBPF 7512(IT))를 제출해야 함
- 수출신고자가 신청하고 부두 책임자나 항공사가 동의하면 항만청장은 최대 90일간 부두나 공항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음⁷¹²⁾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신고한 물품을 신고 없이 다시 하역할 경우 불법 수입된 물품으로 간주되어 벌과금 혹은/그리고 금고형을 적용받고⁷¹³⁾ 물품은 몰수되며 또한 사기나 태만에 의한 환급 청구의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별도의 규정⁷¹⁴⁾에 따라 변형 제조된 섬유제품은 수출된 이후 다시 관세영역의 보세창고로 반송될 수 있음⁷¹⁵⁾
-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으로 수입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을 적용받음:⁷¹⁶⁾ 즉 외국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입부품과 국내에서 추가된 부품에 대하여 관세 등이 적용됨
- 다만 국내부품만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관련 규정⁷¹⁷⁾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되는 물품이 재수입되면 품목분류 98부 Sub-Chapter I⁷¹⁸⁾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 자유무역지역 운영인이나 사용자는 수출품에 대하여 1주 단위로 운송신고, 수출신고 혹은 운송 및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⁷¹⁹⁾

711) 19 CFR 144.37(f)

712) 19 CFR 18.24(a)

713) 18 U.S.C § 544

714) 19 CFR 146.63(d)

715) 19 CFR 146.67(d)

716) HQ 225903 dated January 9, 1995

717) Second Proviso, 19 U.S.C § 81c(a)

718) 수출 이후 원상태로 재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임(19 CFR 146.67(e))

- 신청인은 대문자로 '주기적 신고허가 신청'을 명기한 운송신고서(CBPF 7512)를 항만청장에게 제출하고 이와 함께 규정⁷²⁰⁾에 명기된 견적서(일정표)를 같이 제출함: 승인이 있기 전에는 물품을 양도할 수 없음
 - 실제 양도물량이 신청서에 적시된 물량보다 많으면 보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주기적 신고는 세관을 대신하여 운영인이 개별 운송신고서를 허가하는 제도로 주기적 신고가 허용되면 신청인은 7일간 개별 선적물품에 대하여 세관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수입신고와 달리 주기적 신고에 포함된 물품에 대한 운송업자의 인수 서명이 있어야 운송 및 수출신고가 가능함⁷²¹⁾
- 주기적 신고는 대상물품에 대한 명세서와 그 기간을 신청서에 적시하고 개별물품 유형별 수량에 대한 견적서(일정표)와 관세평가액을 제출해야 함
- 항만청장이 신청서에 허가 서명하고 이를 반환하면 물품 양도를 시작할 수 있음
 - 즉, 신청인은 개별 운송신고서상의 운송이나 수출을 실행할 수 있고 물품양도시점에 운영인은 운송업체로부터 물품인수를 운송신고서(CBPF 7512)에 확인받음으로써 책임을 운송업자에게 넘기게 됨
 - 세관 입장에서 운송신고는 물품을 이동하는 운송업자가 영수증에 서명한 시점에 이루어지며 이를 위하여 운영인은 규정에 따라 보세 운송업자에게 개별 운송신고서 복사본을 교부해야 함⁷²²⁾
 - 또한 운영인은 운송업자가 물품을 수령한 날 다음 영업일까지 항만청장에게 운송신고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⁷²³⁾
 - 개별 신고서는 법령⁷²⁴⁾에 규정된 기타 진술서가 포함해야 하며 항만청장은 운영자 그리고/혹은 신청인이 보세운송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여 보세운송업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또한 세관은 운송신고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세운송시스템에

719) 19 U.S.C § 1448(19 CFR 146.68(a))

720) 19 CFR 146.63(c)(1)

721) 19 CFR 146.68(b)

722) 19 CFR 18.2(c)

723) 19 CFR 146.68(b)

724) 19 CFR 146.66(b)나 19 CFR 146.62(b)(1)을 의미함

입력하여 항만 사이에 화물 이동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청인은 7일간의 주기적 신고가 종료되는 주의 두 번째 영업일까지 항만청장에게 신고된 양도물품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야 함
 - 목록에는 고유한 보세운송번호에 따른 개별 운송신고서를 포함하고 신고물량과 세관에 제출한 운송신고서상의 실제 양도물량의 차이를 확인하여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설명해야 함⁷²⁵⁾
 - 주기적 신고목록이 제출되면 세관은 신청서와 운영인으로부터 받은 개별 운송신고서 복사본을 비교 점검해야 하며 만약 신고물량 보다 실제 양도물량이 많으면 초과물량은 운영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의무 불이행(default)으로 간주됨⁷²⁶⁾

사. 선(기)용품 양도신고

- 자유무역지역 물품은 실제로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혹은 항공기의 선(기)용품이나 설비를 위하여 양도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⁷²⁷⁾
 - 동일 혹은 다른 항만(공항)에 있는 선박 등을 위하여 선(기)용품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신고서(CBPF 7512)와 함께 진술서⁷²⁸⁾를 제출하고 또한 담보확인서(CBPF 301)도 제공해야 함⁷²⁹⁾
 - 실제로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되는 물품과 설비만이 면세가 가능하며 시운전 등의 목적에 공급되는 용품은 면세대상이 아님⁷³⁰⁾ 다만 다른 항구 등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싣기 위하여 빈 채로 가는 선박 등에는 면세가 가능함
 - 일반적으로 연안무역에 공급되는 물품에는 면세가 허용되지 않지만 하와이(알라스

725) 19 CFR 146.68(c)

726) 19 CFR 113.73(a)(2): 이 밖에 주기적 신고 신청서에 적시된 물품이지만 7일 동안 양도되지 않아 운송신고서에 없는 물품은 양도 허가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됨

727) 19 CFR 10.59~10.65 그리고 19 CFR 146.69(a): 선(기)용품 양도는 보세창고와도 관련됨

728) 19 CFR 146.62(b)(2) 이외 필요한 경우 19 CFR 146.70(d)를 포함함

729) 19 CFR 146.69(a)

730) 19. U.S.C § 1309, 1317

카)와 다른 미국지역 사이의 선(기)용품⁷³¹,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선용품(기용품은 아님) 및 미국과 미국 속령 사이의 선(기)용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가능함

- 기국주의에 따라 미국 국기를 장착한 선박(어선 포함)이나 항공기에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는 식료품, 필름, 페인트, 로프, 연료 등으로 제한됨
 - 선박(어선)의 경우 일반 물품 이외 선박 수리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도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 상대국이 미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호혜적인 규정을 적용할 때만이 보수 유지를 위한 장비와 재료에 대하여 면세함⁷³²)
 - 어선의 경우 주류에 대한 면세는 어업허가를 받은 등록된 미국 국기 어선이거나 혹은 5톤 이상의 외국 국가 어선에 대해서만 허용됨: 또한 항만청장은 대상 선박이 상당 시간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정원 및 항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물량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면 면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⁷³³)
 - 또한 국내 담배제품의 선적과 관련하여 세관은 선박 정원, 일정 및 항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세물량이 적정하며 항해용품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선박 소유주가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⁷³⁴)

- 미국이 운영하는 선박과 항공기와 기국주의와 상관없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선박에 공급되는 물품도 면세가 허용됨
 - 이외 외국정부의 선박과 항공기가 무역에 종사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면세가 적용됨⁷³⁵)
 - 담배제품의 경우 미국정부가 관할하지 않는 외국영역⁷³⁶)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

731) 그러나 하와이(알래스카)와 미국 태평양 연안 항구만을 오가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은 면세가 제공되지 않음(19 U.S.C § 1390(a))

732) 19. U.S.C § 1309(d)

733) 19 CFR 10.59(e): 이외 어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절차가 적용됨

734) 19 CFR 10.65(a)과 27 CFR 290.62: 이외 5톤 이하의 외국 어선에는 담배제품을 면세로 공급할 수 없음

735) 외국 군용기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면세조항이 없지만 19 CFR 148.90과 HTS Subheading 9808.00.30에 따라 면세특권이 부여됨

736) 즉, 3마일 밖이나 국경선 밖을 의미함(19 U.S.C § 1317)

서만 관세와 내국세가 면제됨

- 또한 어선에 공급되는 외국산 담배제품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으며 항해일정 없이 계속 미국 영해에 정박한 선박에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⁷³⁷⁾

□ 선박(항공기)에 공급되는 물품과 보수 유지를 위한 물품 혹은 항공기를 위한 지상장비 등은 규정⁷³⁸⁾에 따라 외국 선박(항공기) 용품으로 간주되어 관세법과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출에 따른 면세가 적용됨

- 그러나 규정상⁷³⁹⁾ 미국 국기를 장착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되는 물품은 수출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구역제한물품, 주류 혹은 담배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같은 의미에서 관세법이나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품의 공급도 허용되지 않음

□ 선박(항공기)에 물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운송신고서(CBPF 7512)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일반신고와 마찬가지로 5장의 복사본을 마련하고 추가로 항만청장이 요구하면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복사본을 준비해야 함

- 운영인은 양도 허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1장을 간직하고 자동화 전자문서체계(ACS)⁷⁴⁰⁾에서 보세운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1장이 필요하며 이외 보세운송업자나 세관 운송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운영자나 사용자가 복사본을 준비해야 함

□ 어선용품을 포함하여 선(기)용품도 담보확인서(CBPF 301)를 제공해야 함⁷⁴¹⁾

- 그러나 군사용 선박이나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선박에 선적, 사용되는 담배제품에 대해서는 담보가 필요 없음⁷⁴²⁾
- 규정⁷⁴³⁾에 의하면 선(기)용품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당사자가 물품 선적과 적정한 사

737) 19 CFR 10.65(b)

738) 19 U.S.C § 1309(a)(2), (3)

739) 19 U.S.C § 1317(b)

740) Automated Commercial System

741) 19 CFR 10.60(c)과 19 CFR 146.69(a)

742) 19 CFR 10.60 (e)와 19 CFR 10.65(c)(1)

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다른 항구로 운송 및 선적되는 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업자가 선(기)용품 용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⁷⁴⁴⁾

-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선박(항공기)에 선적하는 경우 운송신고와 담보가 승인되면 물품은 선박(항공기)로 직접 인도하기 위하여 운영인에게 양도됨⁷⁴⁵⁾
 - 자유무역지역에 있지 않은 선박(항공기)에 선적되는 경우 하역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나 세관운송인의 인도를 받도록 운영자에게 양도됨
 - 그러나 부두(항공기) 소유주가 동의하고 수입 신고자가 신청할 경우 선(기)용품은 부두나 공항에 90일간 보관될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기간 연장이 가능함⁷⁴⁶⁾

- 어선에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양도 허가에 앞서서 항만청장은 담보확인서(CBPF 301)와 함께 특별허가서(CBPF 5125)를 승인해야 함⁷⁴⁷⁾
 - 물품이 선상에서 소비되거나 혹은 세관 감독 하에 다시 하역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소유주는 선박의 연속적인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특별허가서(CBPF 5125) 원본과 복사본을 세관에 다시 제출해야 함⁷⁴⁸⁾
 - 물품 양도에 따른 신고 요건을 위반하면 전체 물품에 대하여 일반 수입신고와 같이 관세 등이 부과됨⁷⁴⁹⁾

- 한편 담배제품의 경우 외국영역에서 소비된다는 면세로 양도가 가능함
 - 담배제품은 250개 시가나 1,000개 담배 단위 이하로 상자에 포장되고 각각 번호가 매겨지고 표시되어 상자 단위로 신고해야 함⁷⁵⁰⁾

743) 19 CFR 113.62(h)

744) 물품이 선(기)용품으로 선적되면 운송업자는 국제운송담보에 따라 물품 보관과 처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됨(19 CFR 113.64(b))

745) 19 CFR 146.69(b), (c)

746) 19 CFR 18.24(a)

747) 19 U.S.C § 1309

748) 19 CFR 113.62(h)(2)

749) 19 CFR 10.59(e)

750) 19 CFR 10.65(c)

- 항만청장은 선박(항공기)이 외국 영역에 도착한 이후에 소비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자가 사용 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은 상습적으로 선(기)용품 선적을 물리적으로 감독하지 않으며 대신 선박(항공기)의 대표가 서명하는 선적 증명서를 통하여 관리 감독함
 - 세관은 출항 적하목록과 함께 운송신고서(CBPF 7512)에 의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항만청장에게 양도신고를 하면 담보가 해제됨⁷⁵¹⁾

아. 구역제한물품 양도신고

- 구역제한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국내 수입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만 관세영역으로 양도될 수 있음
 - 수출, 운송 및 수출, 수출을 위한 보세창고 장치, 멸실(주류 제외),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양도, 규정에 따른 선(기)용품 양도
 - 반면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특별히 양도방식을 지정하지 않고 허가하면 국내소비나 보세창고 혹은 즉시운송 등을 목적으로 구역제한물품을 양도할 수 있음⁷⁵²⁾
- 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구역제한물품의 수입신고를 허가하면 항만청장은 이서 승인하고 일반적인 수입절차⁷⁵³⁾에 따라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야 함
 - 즉, 비록 대상물품이 미국산 물품이나 이전에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품일지라도 다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관세법에 따라 면제가 되지 않는 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물품 반출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물품가액이 50만달러 이하⁷⁵⁴⁾이면 사무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떤 경우에도 항만청장이 수입신고서에 이서해야 함

751) 19 CFR 10.64(a)

752) 19 CFR 146.70(a)

753) 98부 Sub-Chapter I, HTS(19 CFR 146.70(b))

754) 15 CFR 400.44

- 구역제한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어 보세창고에 일시장치 후 수출될 수 있음
 - 항만청장은 해당 물품이 국내소비용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약 수입신고서(CBPF 7501)에 이서해야 함
 - 또한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보세운송되는 구역제한물품의 경우 운송신고서(CBPF 7512)에 해당 물품이 구역제한물품으로 수출을 위한 보세창고 보관용임을 이서하고 이와 함께 수입신고서(CBPF 7501)에 국내소비용이 아님을 확인해야 함
 - 보세창고로 양도된 구역제한물품은 수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장이나 포장을 푸는 작업을 제외하면 단순작업도 할 수 없음⁷⁵⁵⁾
 - 또한 구역제한물품은 미국 국기를 장착한 선박이나 미국 속령으로 양도될 수 없음

자. 자유무역지역 물품 양도의 기본원칙

-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⁷⁵⁶⁾을 제외한 그 어떤 물품도 적정한 양도신고⁷⁵⁷⁾에 의한 세관의 허가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될 수 없음
 - 항만청장은 세관의 실물조사 없이 물품 양도를 허가할 수 있지만 운영자에게만 물품을 양도해야 하고 대신 운영자는 수입자나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음⁷⁵⁸⁾
 - 물품 반출을 위하여 운영자가 별도로 허가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운영자가 물품 반출을 거부하면 양도신고는 취소되며 해당 물품은 실질적으로 원래의 신분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다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됨⁷⁵⁹⁾
 - 운영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모든 물품 양도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⁷⁶⁰⁾
- 세관이 물품 양도를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지 않으면 운영자는 양도신고나 기타 관련 양식에 표시된 물품 수량과 상태에 한하여 그 책임을 부담함

755) 19 CFR 146.70(c)

756) 19 CFR 146.43

757) 19 CFR 146

758) 19 CFR 146.71(a)

759) 19 CFR 146.61

760) 19 CFR 146.4(a)

- 운영자는 신고서상의 수입자나 운송업체가 서명한 인수 영수증을 받아야 관리 책임에서 해제되고 또한 물품 상태에 대한 오차보고서(discrepancy report)를 통하여 운영자의 책임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운영자는 항만청장의 지시에 따라 운송수단을 봉인할 권한이 있는데 운영자가 구입하는 봉인은 규정에 따른 기준과 규격⁷⁶¹⁾에 합치되고 세관이 이를 승인해야 함
- 운영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전출)된 모든 물품을 기록하는 재고장부 시스템을 유지하고⁷⁶²⁾ 자유무역지역 화물신분을 취득하여 역내에서 반출된 모든 물품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야 함
- 특히 이러한 장부 시스템은 세관이 승인한 재고관리방식에 따라 모든 양도물품을 물품반입시점까지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함⁷⁶³⁾
- 세관이 관세영역으로의 양도를 허가한 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일로부터 5일(영업일) 이내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전출되어야 함
- 항만청장은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전출을 기다리는 물품은 실질적으로 관세영역으로 반출된 물품이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가로 제조하거나 단순작업도 허용되지 않고 또한 다른 물품과 격리되거나 운영자가 해당 물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⁷⁶⁴⁾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다음의 경우 예외조치를 허용하고 있음
- 수입신고나 운송 그리고/혹은 수출을 목적으로 주기적 신고가 허용된 물품에 대해서는 역내 제조나 단순작업이 가능하고 반출에 필요한 합리적 대기 기간이 제공될 수 있음
 - 또한 운영자가 합리적 사유로 신청하면 양도허가가 난 물품이라도 자유무역지역에 기

761) 19 CFR 24.13(a)

762) 19 CFR 146.21(a)(1)

763) 19 CFR 146.24(a)

764) 19 CFR 146.71(e)

한 없이 보관할 수 있는데 다만 수입신고 당시 수입자가 다음의 사항을 서약해야 함

- 첫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동안 세번을 변경할 목적이나 수입제한조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단순작업 혹은 변형하지 않고 둘째, 수입신고를 하고 난 이후 역내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물품을 변형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세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장부기록을 유지하고 심사를 허용할 것
- 이와 같은 약속을 위반하면 벌칙⁷⁶⁵⁾이 적용되며 수입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됨⁷⁶⁶⁾

□ 외국물품, 구역제한 물품 그리고 규정⁷⁶⁷⁾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도된 물품이 다음의 상황에 처하면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양도물품으로 간주되고 운영자에게 부여된 감독 책임이 해제됨

- 세관이 양도신고를 허가하고 운송업체, 수입자 혹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자유무역 지역에서 물품을 실제로 이동하도록 서명함
- 한편 내국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실제로 이동하고 그 사실이 재고장부 시스템에 입력되면 양도된 물품으로 간주됨

차.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반환 및 체류

□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정해진 기한⁷⁶⁸⁾ 이내에 물품이 반출되지 않거나 반출되더라도 그 이후 관세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내국물품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다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승인을 취소해야 함

- 만약 수입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으면 항만청장은 수입 승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해당 물품이 내국물품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제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음
- 수입 승인이 취소된 물품은 가장 근래의 화물신분을 다시 부여받아야 함⁷⁶⁹⁾

765) 19 CFR 146.71(d)(1)

766) 19 U.S.C § 1592

767) 19 CFR 146.61

768) 19 CFR 146.71(c)

769) 19 CFR 146.71(d)(1)

- 이와 같은 규정은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방치된 물품을 처분하고 관세영역으로 실질적으로 반출되어 화물신분을 상실한 물품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 또한 수입신고 당시와 다른 형태로 물품이 관세영역에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예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입하고 난 이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환하여 관세율이 높은 완성품으로 추가 가공되거나 수입이 금지된 물품으로 변환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임⁷⁷⁰⁾

- 다만 다음의 물품은 비록 자유무역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수입 승인이 취소되지 않음
 - 생산설비와 건설자재를 포함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소비되는 물품, 구역제한 물품으로 다시 반입된 물품 혹은 보유기간이 제한되지 않은 물품⁷⁷¹⁾
 - 또한 내국물품, 무형재화⁷⁷²⁾ 그리고 수입신고가 면제된 물품⁷⁷³⁾도 이에 해당함

- 물품이 미국 관세영역으로 들어왔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만청장이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 첫째, 자유무역지역으로 반환되기 전의 역외 장치기간 둘째, 수입인과 그 대리인 혹은 수입인과 협의한 자가 물품 반환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셋째, 수입 당시 수입자가 물품을 반환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 넷째, 내국물품 신분으로 반환됨으로써 고율 관세나 수입규제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수입된 이후 물품이 사용되거나 사실상 판매된 물품이 아닐 것 여섯째, 자유무역지역 밖에서 추가로 제조 가공되지 않을 것(혹은 추가 가공이 최소한에 그치거나 미관을 수선한 정도일 것)
 - 이해 당사자나 세관 직원은 규정⁷⁷⁴⁾에 따라 각각의 개별 사실관계에서 해당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할 수 있음

770) LD 79-0229, C.S.D 79-378 and HQ210108

771) 19 CFR 146.71(d)(1)

772) General Headnote 4 HTS(품목분류해설집)

773) 19 CFR 141.4

774) 19 CFR 177(TD 86-16, 51 FR 5040)

- 수입신고에 포함된 물품 일부만이 반환 혹은 보류되는 경우 수입신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고 보류분에 상당한 관세는 수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 이들 물품은 나중에 관세영역으로 양도될 때 다시 수입신고를 해야 함

- 항만청장이 실무적인 잘못이나 사실관계의 실수라고 판단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오류가 아니면 수입신고에 포함되었으나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원래의 물품신분을 다시 지정받도록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일정한 절차⁷⁷⁵⁾에 따라 세관은 수입신고를 수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증빙서류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으면 항만청장은 당해 물품을 과잉신고물품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⁷⁷⁶⁾을 적용할 수 있음

-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관세법을 피하기 위한 방법⁷⁷⁷⁾ 이외의 사유로 수입 신고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환되면 해당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반입되어야 함⁷⁷⁸⁾
 - 즉, 수입 신고하고 관세영역으로 들어왔다가 수출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다시 반환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화물은 내국물품의 지위를 부여받음

카. 자유무역지역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수입신고한 물품으로 그 이후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환급절차와 다른 규정이 적용됨
 - 부품 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성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⁷⁷⁹⁾에 따른 제조에 의한 환급(Manufacturing drawback)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부품 수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출되지 않거나 멸실 폐기되지 않으면 미사용에 따른 환급이 허용되지 않음(unused drawback)⁷⁸⁰⁾

775) 19 CFR 173.19, U.S.C § 1520(c)(1))

776) 19 CFR 146.53(d) 및 19 CFR 146.71(d)(2)

777) 19 CFR 146.71(d)(1)

778) 19 CFR 146.71(d)(3)

779) 19 U.S.C § 1313(i)

- 부품 수입일은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일이나 수입신고일이 아닌 다른 날임⁷⁸¹⁾
- 관세 환급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는 국내에서의 제조활동으로 간주됨
 - 국내로 수입되었다가 나중에 수출되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특혜 외국부품⁷⁸²⁾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며 제조를 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특혜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환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음
 - 한편 비특혜 외국부품을 사용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반출되었다가 수출되면 직접 혹은 대체 환급(substitution drawback)⁷⁸³⁾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특혜 및 비특혜 외국부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국내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수출된 물품은 수출 이후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음

하. NAFTA 관세유예도(NAFTA Duty Deferral Requirements)

- 자유무역지역은 미국 관세영역에서 제외되지만 NAFTA에서는 미국 영토에 포함되므로 NAFTA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음⁷⁸⁴⁾
 - 하지만 이러한 특혜관세와 수출에 따른 부품 면제라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 그리고 일시 보세수입제도(TIB)에서 제조나 상태 변경⁷⁸⁵⁾을 거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출되면 미국 국내수입으로 간주되어 해당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부과됨
 -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었다가 원 상태로 캐나다 등에 수출되는 물품은

780) 제조환급과 미사용 환급은 보완규정이 아니므로 제조환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미사용 환급을 보장하지 않음

781) 19 CFR 101.1에 부품 수입일이 규정됨

782) 특혜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반입 당시의 부품 상태와 수량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음

783) 국산부품을 사용해도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함(19 U.S.C § 1313(a),(b))

784) U.S.C. §3332(p)(31):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Annex 201.1

785) 동일한 상태(same condition)란 검사, 포장, 세척, 손질, 방부제나 상표 부착 등의 작업이 가능하지만 물품 성격을 바꾸지 않는 작업을 의미함(19 CFR 181.45(b)(1))

NAFTA 관세유예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미국 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부과한 관세에 상당한 부분을 감면해주기 위하여 최대 60일간 미국에서 관세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⁷⁸⁶⁾

□ 동 제도를 적용받는 물품은 NAFTA 환급대상물품⁷⁸⁷⁾으로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을 의미함

- 1) NAFTA 국가로 보세 운송되어 수출되는 물품 2) 수입시점과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는 물품 3) NA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NAFTA 국가에 수출되는 물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물품 4) 사탕무당(HS 1701.11.02)으로 캐나다(HS1701.99.00)와 멕시코 물품(HS 1701.99.01(99))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물품 5) 캐나다로 수출되는 감귤류와 의류 부품
- 특혜 및 비특혜 외국물품이 모두 해당되지만 원산지가 NAFTA 국가이거나 완제품이 이들 국가에서 무관세를 적용받으면 제외됨

□ 동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약식 수입신고서(CBPF 7501)를 제출해야 함

- 신고인은 외국물품의 품목분류번호, 관세율, 관세 유예액과 완성품의 품목분류를 신고하고 지난 1주 동안의 선적에 대하여 신고해야 함
- 관세유예신고(신고유형번호 “08”)는 수입신고(Part I)와 관세유예신청((Part II)) 부분으로 나뉘는데 수출일로부터 60일간 세관이 수입신고를 보류하면 운영인은 그 동안 수출 사실과 캐나다나 멕시코 관세 납부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함
- 미국 관세와 캐나다 등의 관세 차이를 비교하여 차액을 납부하는데 만약 이들 국가에 납부한 관세가 미국 관세보다 많으면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⁷⁸⁸⁾

□ 동 제도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자유무역지역(신고유형번호 “06”)을 선택하면 됨

786) 19 CFR 181.53

787) 19. U.S.C § 3333

788)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등은 조정대상이 아님

- 이 경우 미국 관세를 경감 받지 않고 대신 일반 수입신고나 약식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운송신고서(CBPF 7512)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8. 오차보고의무(discrepancy report)

가. 일반사항

- 운영인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인수, 반입, 반출, 제조가공, 멸실(폐기), 전시되는 모든 물품과 장부기록, 물품안전 및 보관 상태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⁷⁸⁹⁾
 - 특히 세관 실사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을 승인한 경우 운영자는 즉각 물품 수량과 상태를 확인해야 함⁷⁹⁰⁾
 - 또한 운영자는 재고 통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속적이고 주기적인 조사를 하지 않으면 최소한 1년에 한번 재고 실물조사를 해야 함⁷⁹¹⁾
- 둘째로 운영인은 항만청장의 승인 하에 컨테이너의 봉인을 탈·부착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세관 감독하에 진행된 것으로 간주됨⁷⁹²⁾
 - 운영자는 직접인도나 일시장치제도⁷⁹³⁾를 포함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한 물품의 봉인을 조사하고 봉인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등 모든 이상 상황⁷⁹⁴⁾에 대하여 항만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세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화물을 그대로 보관해야함
 - 만약 운영자가 봉인 상태에 대한 운송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항만청장은 봉인이 온전한 것으로 간주함⁷⁹⁵⁾

789) 19 CFR 146.4(a)

790) 19 CFR 146.37(d)

791) 19 CFR 146.23(c)

792) 19 CFR 146.8

793) temporary deposit(19 CFR 146.35)

794) 잘못 부착되거나 부적절하게 다른 봉인으로 대체되거나 손을 대신 흔적없이 봉인이 다시 부착되는 등 조작이 발견된 경우를 모두 포함함

795) 19 CFR 146.8

-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인수할 때 신고물량보다 많거나 적은 등 오류가 적발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에 자세히 명시됨⁷⁹⁶⁾
 - 항만청장이 사전에 반입을 승인한 물품의 경우 운영인이 인수사실을 서명하는 순간부터 운영인에게 책임이 부여되며 직접인도절차나 일시장치제도에서도 물품 인수를 서명한 시점부터 책임이 부여됨
 - 그러나 적절한 양도허가를 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인도된 물품은 비록 운영인이 물품 수령을 서명하더라도 세관이 반입 허가를 통보할 때까지는 보세운송업체에게 책임이 부여됨⁷⁹⁷⁾
 - 마찬가지로 이미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화물에서 초과물량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운영인이 반입 허가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책임을 지게 됨

나. 자유무역지역 물품도착시점(반입 이전)의 오차

- 모든 운송선은 적하목록을 소지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이 도착한 당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고 적하목록 수정을 위하여 적하목록 오차보고서(Manifest Discrepancy Report)를 제출해야 함
 - 적하목록 오차는 반입신고서(CBPF 214)나 전자 반입신고를 사용하여 보고하면 되는데 그 절차⁷⁹⁸⁾는 아래와 같이 규정됨
-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한 화물 중 봉인이 손상되거나 벌크화물에서 수량 차이 등 오차가 발견되면 운영인은 2일 이내에 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⁷⁹⁹⁾에 운송업체와 공동으로 오차보고를 하고 서명해야 함⁸⁰⁰⁾
 - 발견된 물품 차이에 대하여 오차보고서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야 함

796) 19 CFR 146.37(c), 19 CFR 158 Subpart A 및 CBP Directive 099 3240-067A

797) 한 예로 반입 직전에 세관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을 말함

798) CBP Directive 099 3240-067A

799) CBPF 6043(인도 증명서)나 CBPF 7512(운송신고서)를 말함

800) 19 CFR 146.37(C)(1)

- 손상되지 않은 봉인화물이나 상자에 포장된 화물이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한 이후 20일 이내에 수량 차이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운영인은 본인 명의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 사실을 세관에 보고해야 함⁸⁰¹⁾
 - 운영인은 오차보고서와 함께 부두 영수증이나 물품을 인수 혹은 수입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봉인에 이상이 없고 수입 이전에 봉인이 부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한편 반입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발견된 오류는 반입 이후 신고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⁸⁰²⁾

- 봉인이 손상된 컨테이너 화물이 도착한 상태에서 항만청장이 세관 감독 없이 물품을 하역할 것을 승인하면 운영인은 인수받는 화물 물량과 적하목록에 명기된 물량과의 차이를 조사하여 차이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함
 - 만약 세관이 도착화물을 직접 조사하여 차이를 발견하면 세관은 반입허가서에 그 사실을 기입함으로써 오차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이 면제됨

- 벌크 화물의 경우 습기, 온도, 중량계측 오류 등으로 적하목록의 물량과 도착물량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차이라고 항만청장이 판단하면 오차보고를 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원유와 석유제품의 경우 적하목록에 명시된 물량의 1%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⁸⁰³⁾
 - 벌크화물의 경우 항만청장은 측량을 위탁한 업체 대표가 서명한 독립적인 측량 결과 보고서를 수용하여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물량을 조정해 줄 수 있음

- 운영인은 반입신고서에 적시된 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반입되면 이를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과다 반입이 발견되고 난 이후 1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됨

801) 19 CFR 146.37(c)(2)

802) 19 CFR 146.53(a)

803) 19 CFR 4.12(c)

- 물품반입시점에 손상물품이 발견되면 운영인은 관세 공제신청서(CBPF 4315)⁸⁰⁴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항만청장이 승인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운영자의 책임도 면제됨⁸⁰⁵)
- 직접인도절차나 일시장치제도에 따라 수령한 화물 물량에 대해서는 운영인 자신의 담보 하에 책임을 져야 함
 - 실제로 인도받은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에 대한 이상이 있으면 항만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절차에 따라 일단 반입이 된 화물에 대해서는 운영인에게 책임이 부여됨
 - 한편 운영자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포장상자 내부 물량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항만청장이 수입과정에 연루된 당사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적하목록 오차보고서 이외 다른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음⁸⁰⁶)

다. 자유무역지역 반입 이후의 물품 오차

-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반입되고 관련 절차⁸⁰⁷)에 따라 반입시점까지 물량 차이가 조정된 이후에 운영자가 물품을 반출하기 이전에 발견한 과다·과소 물량 상태도 항만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절차⁸⁰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항만청장이 판단하지 않는 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반입된 이후 위치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부상 차이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책임이 부여됨(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은 제외)
 - 첫째, 처음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물품 둘째, 허가를 받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전출된 물품 셋째, 화재 등의 재해, 증발, 누수 등의 이유로 분실 혹은 멸실되어 국내로 유입되지 않은 물품⁸⁰⁹)

804) Application for Allowance in Duties

805) 19 CFR 158 Subpart B

806) 19 CFR 146.40(c)(4)

807) 19 CFR 146.37

808) 19 CFR 146.53

- 이와 같은 물품을 제외한 다른 분실물품에 대해서는 항만청장이 요청하면 운영인은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⁸¹⁰⁾
- 관세영역으로 정식 수입되었다면 100달러 이상의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실물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항만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discrepancy report)
 - 첫째, 절도나 절도로 추정되는 물품 분실 둘째, 적법한 방식으로 반입되지 않은 물품 셋째, 화물식별번호나 구역번호가 적용되는 화물로 물량이 1% 이상 부족한 물품
 - 운영인은 항만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오차에 대해서도 장부기록시스템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규정⁸¹¹⁾에 따라 1년 단위로 작성하는 연차조정보고서 (annual reconciliation report)에도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함
 - 절도나 절도로 추정되는 물품 분실을 제외하면 운영인은 허가가 필요없는 내국물품의 과다 혹은 과소 상태에 대하여 항만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조정보고서에도 적시할 필요가 없음⁸¹²⁾
- 오차 상태를 확인한 시점은 그 차이의 성격과 규모를 적발하고 결정한 시점을 말하며 확인이란 운영자나 사용자가 이상 상태가 확실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함
 - 이상 상태가 확인된 이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되지만 절도의 경우 전화 등을 통하여 항만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물품 이상이 발견되면 각각의 확인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취급하여 기록해야 함
 - 즉, 과다물품과 과소물품을 상계하여 균형을 맞출 수 없으며 주기별로 차이가 나는 물품을 상계할 수도 없음(Netting)

809) 19 CFR 146.53(c)(1)

810) 19 CFR 113.73(b)

811) 19 CFR 146.25 및 19 CFR 146.53(a)

812) 19 CFR 146.53(b)

- 그러나 사무적 착오나 기록 오류 등과 같은 유사한 사유로 개별 구역이나 재고의 과다 혹은 과소물량이 발생하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운영인이 항만청장에게 충분히 설명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항만청장에게 오류를 보고하고 재고기록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규정⁸¹³⁾에 따른 과소물품의 보고나 과다물품의 반입(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수입신고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⁸¹⁴⁾

- 운영자의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어차피 보고되므로 중요하지 않은 오차를 반복적으로 보고하여 업무가 과중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물품 부족 사태가 1%와 100달러 요건을 충족해야 운영자는 항만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보고함⁸¹⁵⁾
 - 구체적으로는 분실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이 100달러를 초과하고 동시에 1년에 한번 수행하는 실제 재고조사에서 발견된 물량을 포함하여 부족 물량의 규모가 개별 구역이나 화물식별번호에 포함된 물량의 1%를 초과해야 서면보고가 필요함
 - 그러나 1%/\$100 요건은 확인할 수 없는 분실에만 해당하며 허가 없이 고의, 사기 혹은 태만 등 부정한 사유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전출하는 행위의 평계가 될 수 없음⁸¹⁶⁾
 - 즉, 물량, 물품가액 혹은 관세납부액과 상관없이 고의, 사기 혹은 태만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손실청구가 따를 수 있음(liquidated damage)

- 1%/\$100 요건은 누적적인 개념으로 운영자의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일련의 물품부족 사태가 동 요건을 충족하면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이후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1%/\$100 요건이 시작됨
 - 운영자의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동안 발생한 물품부족 상황을 모두 보고해

813) 19 CFR 146.53

814) 19 U.S.C. § 1520 및 19 CFR 173.4 혹은 19 CFR 173.4a

815) 19 CFR 146.53(a)(3)

816) 19 CFR 146.51 혹은 146.71(a)

야 함

- 또한 법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외국물품이나 구역제한물품도 물품가액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물량이 1%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 발견되면 항만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항만청장은 1%/\$1,000 요건을 충족하는 물량부족 사태를 손실청구가 필요한 무단 반출로 간주해야 함

- 도난을 포함하여 규정⁸¹⁷⁾에 따라 서면 보고가 필요한 물량부족에 대해서는 오차보고서(MDR)나 일반적인 절차⁸¹⁸⁾에 따른 수입신고서로 보고할 수 있음
 - 대체로 포장상자에 장치된 물품 부족으로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오차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여전히 항만청장은 관세 등의 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음⁸¹⁹⁾

- 운영인은 물품가액이나 관세액과 상관없이 모든 물품부족 혹은 오차에 대하여 재고장부나 필요한 경우 구역목록⁸²⁰⁾에 기록하고 연차조정보고서에 이를 명기해야 함
 - 운영인은 이전에 항만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물품부족 등 오차⁸²¹⁾에 대하여 연차조정보고서에 그러한 사실을 명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여 수입신고시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즉, 모든 물품 오차에 대하여 세관에게 보고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음

- 과다물품이 발견되면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할 자격이 있는 자는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신고를 하거나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5일 이내에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⁸²²⁾

817) 19 CFR 146.53(a)

818) 19 CFR 141과 19 CFR 142

819) 19 CFR 146.53(c)(2), 19 CFR 113.73(b)

820) 19 CFR 146.23(b), 19 CFR 146.37(a)(1)

821) 즉, 1%/\$100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고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822) 19 CFR 146.53(d)

- 과다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이 반입된 이후에는 적하목록 오차보고서를 이용한 보고가 허용되지 않음
- 화재나 폭발 혹은 천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증발이나 누수 등의 유사한 원인으로 인한 물품 멸실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⁸²³⁾
 - 이외 부피의 축소나 계측 차이도 사실상 용적량의 변화가 아니므로 관세가 부과될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⁸²⁴⁾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연차보고서에 보고를 해야 함
 - 그러나 천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실이 1%/\$100 기준을 초과하면 일정 절차⁸²⁵⁾에 따라 항만청장에게 관세경감을 위한 보고가 필요함(CBPF 4315): 이 때 운영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정도로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빙서류가 규정상⁸²⁶⁾ 충분히 제시되어야 함⁸²⁷⁾
 - 운영자와 항만청장은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기 이전에 개별 물품에 고유한 용량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으며 변동 폭에 대하여 절차 매뉴얼에 자세히 명기할 수 있음⁸²⁸⁾
-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손상으로 인한 물품가액 손실에 대하여 운영자의 담보책임이 조정될 수 있음
 - 운영자는 손상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 물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표시를 해야 함⁸²⁹⁾

823) 19 CFR 146.53(c)(1)(iv)

824) 19 CFR 146.53(a)(3)

825) 19 CFR 158 Subpart C

826) 19 CFR 158.27

827) 세관규정 Part 146(subpart H)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석유정제공정의 경우 사업자는 온도 차이에 따른 용량 변화를 수정해야 함(19 CFR 146.94(d))

828) 관세청장은 철제탱크에 저장되는 오렌지 주스 농축액의 질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용량 차이에 대하여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탱크로 주스가 주입되거나 방출될 때마다 계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됨(19 CFR 146.53(c))

829) 19 CFR 146.53(e)

- 손상 사실을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서류기록을 원하는 운영자는 보고서(CBPF 4315)를 제출할 수 있으며⁸³⁰⁾ 수입신고 당시 규정에 따라 물품가액 조정이 허용될 수 있음⁸³¹⁾

라. 관세영역으로 운송시 물품 오차

-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이 양도될 때 세관이 현장 감독을 하지 않으면 운영인은 수입이나 양도신고서 등에 적시된 물품 수량과 상태에 대해서만 책임이 면제됨
 - 또한 운영자는 수입서류나 그러한 서류에 명기된 운송업체의 서명 영수증을 받아야 책임이 면제됨
 - 한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물품 양도 이후 15일 이내에 운영인과 보세 운송업체(혹은 수입자, 세관운송인 등)가 공동으로 서명한 오차보고서에 따라 운영인의 책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동 서명한 보고서는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만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조정은 수입신고서나 전출신고서 등의 서류에 명기되어야 함⁸³²⁾
- 운송업체나 수입자 등이 운영자가 부작한 세관 봉인 상태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봉인 상태는 온전한 것으로 간주됨
 - 만약 항만청장이 물품 선적이나 양도에 대하여 세관의 현장 감독을 지시하면 세관은 수입신고서 복사본에 모든 물품 이상 상태에 대하여 명기해야 함
 - 세관이 보고한 물품 이상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책임이 조정될 수 있음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운영자의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됨: 첫째, 항만청장이 적절한 절차⁸³³⁾에 따라 물품 양도를 허가하고 둘째, 운영자가 수입서류나 그러한 서류에 명기된 운송업자의 서명을

830) 19 CFR 158, Subpart C

831) 19 CFR 146.65(b)(3)

832) 19 CFR 146.71(b)

833) 19 CFR 146.71(a)

받은 경우

- 관세법령에 따라 확인된 물품 오차는 운영인의 재고장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연차조정정보고서에 완전하게 보고되어야 함
 - 운영인은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양도된 날로부터 5년간 물품 오차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함⁸³⁴⁾
 - 세관이 물품 오차에 따른 조정을 승인하거나 확인하면 항만청장은 그 사실을 운영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운영인의 담보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함

9.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작업공정·양도 등의 규제

가. 일반원칙

- 자유무역지역법에 의하여 따로 규정된 물품⁸³⁵⁾을 제외하면 모든 내외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보관, 판매, 전시, 재포장, 유통, 분류, 제조, 가공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이나 작업이 금지 혹은 제한되는 물품은 법에 규정되기도 하고 법에 따라 하위 법령에 규정되기도 함
- 우선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이 금지되며 그와 같은 물품이 발견되면 압류 처분을 받게 됨⁸³⁶⁾
 - 그러나 국내반입이 금지된 물품의 경우 관련기관의 승인 하에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이 가능하며 역내에서 작업을 거쳐 국내로 수입될 수 있음

834) 19 CFR 146.4(d)

835) 19 U.S.C § 81c(a)

836) 19 CFR 146.31(b)

- 또한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공익, 보건 혹은 안전을 침해하는 물품이나 작업공정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배제할 수 있음⁸³⁷⁾
 - 특정 물품의 반입을 아예 금지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특정 공정의 배제, 국내수입 금지, 운영기간이나 화물신분 제한 등 일정한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음
- 자유무역지역에서 작업이 허용되는 제조활동, 완성품과 부품의 범위는 자유무역지역 허가 신청서(승인서)에 제시되며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위원회 지침에도 포함됨
 - 그러나 제조활동이 이들 물품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설립자나 운영인은 제조가 공활동이나 부품 공급처에 변경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함
 - 국산부품만 사용하는 제조활동은 언제든지 허용됨

나. 물품규제

- 앞에서 언급된 수입금지 혹은 공익저해 물품 이외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반입절차를 지키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이 거부될 수 있음⁸³⁸⁾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이 제한되거나 조건부로 반입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던 물품은 구역제한물품으로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이 가능함⁸³⁹⁾
 - 둘째로 일부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동일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선박 등의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설립허가서에 규정할 수 있음⁸⁴⁰⁾: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항만청장에게 그렇지 않다고 통보하지 않는 한 세관은 지역으로 반입되는 철강제품과 같은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된다

837) 19 U.S.C § 810(c)

838) 19 CFR 146.32

839) 19 CFR 146.11(d), 146.44(d), 144.37(g)

840) 19 U.S.C § 1626(FTZO 234, 321)

는 가정 아래 자유무역지역으로 인도되기 이전에 수입신고하도록 요구할 것임

- 셋째, 미국 환경법령에 합치되게 보수 혹은 가공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개인이 아닌 구입자나 소유주 등 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직접 반입신고를 해야 함⁸⁴¹⁾

- 넷째,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주류와 담배제품은 구역제한물품의 신분으로만 반입이 가능함⁸⁴²⁾
 - 이들 물품은 반입 시점에 수출된 것으로 간주되며 관할당국(TTB)⁸⁴³⁾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와 수출보세창고 사업주만 담배제품을 수입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수 있음
 - 이전에 미국에서 수출된 담배제품도 관할당국의 증명서가 있어야 수입되거나 미국⁸⁴⁴⁾으로 들어올 수 있음

- 다섯째, 총기류는 대체로 관할당국(TTB)의 허가과 함께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춘 장소에서의 보관이 필요함
 - 총기류 반입과 지역에서의 작업공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자유무역 지역 위원회의 서면허가가 전제되어야 함

- 여섯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대상물품은 특혜 외국물품의 신분으로만 반입이 허용되며 이후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할 때에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적용됨⁸⁴⁵⁾

841) 위임장이 있을 경우 관세사나 운영인도 대리 신청이 가능함

842) 다만 주세율 인상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현재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특혜 외국물품의 신분을 취득하고 반입될 수 있다는 것이 세관 해석임(Floor Stock taxes): C.S.D. 86-4 December 31, 1985

843)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844) 즉, 관세영역인 국내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이 가능함

845) 15 CFR 400.33(b)(2): Timken Co. V. United States, 865 F. Supp. 413 (CIT. 1994)

다. 작업공정 규제

- 자유무역지역법과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일부 작업공정이 제한 혹은 금지될 수 있고 허가가 필요한 작업공정도 행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
 - 우선 모든 제도가공 작업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⁸⁴⁶⁾ 새로운 공정은 연방관보상의 승인 혹은 신청 및 심사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허용되며 공익을 저해하는 이유로 거부될 수도 있음
 - 한편 거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부기관 직원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은 가동 중인 자유무역지역에 거주할 수 없음

- 작업개시가 승인된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특별허가가 없는 한 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음⁸⁴⁷⁾
 - 소매업이란 소량으로 물품이나 서비스⁸⁴⁸⁾를 직접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의하는 활동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물품을 역외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함
 - 자유무역지역 안이라도 작업개시를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는 소매업이 가능함
 - 이를 위반하면 항만청장은 설립자, 운영인 혹은 임직원 등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외 손상청구가 가해질 수 있음⁸⁴⁹⁾
 - 소매업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 수선 혹은 판매할 수 없음: 그러나 등록된 수입업자, 자동차 제조업체, 도매업체 등은 소매활동이 아니라면 그러한 활동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주류, 담배와 총기류의 제조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 즉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허용된 작업⁸⁵⁰⁾을 제외하면 주류 등 물품 제조를 위하여

846) 15 CFR 400.28(a)(2)

847) 15 CFR 400.45

848) 항공, 여행, 자동차 수선 혹은 개인용품 등을 포함함

849) 19 U.S.C § 81s 및 19 CFR 146.81

850) Fifth Proviso, 19 U.S.C § 81c(a): 1949년 이전에는 증류주나 포도주의 정류나 음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알콜제품의 제조는 가능하였음

내국이나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들여와서 작업을 할 수 없음

- 다만 내국세 납부를 피하는 방법의 일환이 아닌 일부 공정에 한정하여 증류주이나 변성 증류주의 사용은 허용되며 관할당국과 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제조공정이 아닌 단순작업⁸⁵¹⁾은 허용될 수 있음
 - 즉, 의약품, 식료품 혹은 향료제조를 위하여 면세 상태로 반입된 증류주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세금을 납부하고 반입된 변성 증류주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음⁸⁵²⁾
 - 이외 관할당국의 승인 아래 멸실(폐기)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주류제품을 반입할 수도 있음⁸⁵³⁾
- 한편 나중에 수출하는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일부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외국산 철강제품을 사용한 제조공정을 아예 금지하는 조건으로 설립이 허가될 수 있음
- 또한 철강제품에 대한 모든 가공작업은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철강제품에 대한 원료관세 선택권(inverted tariff)을 부여하지 않고 폐철 회수공정도 금지하고 있음
 - 이외 수입 철강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수출용이 아닌 작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위원회가 상당한 제약조건을 부여하기도 함
- 섬유제품도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할 수 있고 수출용으로 제조가 가능하지만 외국과의 관세할당(쿼터)이나 수출면허협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할 수 없음
- 한 예로 관련 규정⁸⁵⁴⁾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공익을 이유로 일정 지역에서 세번이나 원산지 변경을 유발하는 공정을 쿼터 등의 대상물품 여부와 상관 없이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851) 즉 주류제품의 보관, 혼합, 재포장 등은 가능함

852) 19 U.S.C § 81c(c)

853) 27 CFR 252.35~38

854) 19 CFR 146.63(d)

-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는 생산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쿼터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설탕을 반입하여 역내에서 설탕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을 규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세관은 국내 수입이 가능한 설탕제품 물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위원회 허가가 있지 않는 한 이듬해까지 수입신고를 받지 않음
 - 또한 설탕을 함유한 제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하려면 반입신고서(CBPF 214)에 별도로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받게 됨

- 수출품 제조가 아니면 휘발유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작업도 금지되며 혼합이나 가공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석유제품은 특혜 외국물품의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함
 - 또한 석유정제공장의 경우 정제과정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함
 - 한 예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알콜 · 개스홀 제조나 혼합은 위원회가 규제함⁸⁵⁵⁾

- 육류 쿼터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육류를 반입하여 가공하는 일부 공정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면 공익을 이유로 금지되고 있음
 - 과거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제한 혹은 금지되었던 작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 1) 특정 외국산 색소를 이용한 프린터 잉크 제조 금지 2) 타이어, 골프카트, 체인 톱 제조에 대한 원료관세 선택권(inverted tariff) 제한 3) 텔레비전 튜브(TV tube)의 품목분류와 관세율을 변경하는 제조작업 제한 4) 품목분류가 바뀌는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에 대한 가공 금지

- 관련법에 따라 허위의 원산지 표기가 금지되며 금은제품에 대해서도 실제보다 과장된 세공작업이나 품질을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됨⁸⁵⁶⁾
 - 따라서 항만청장은 수출을 포함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위법적인 상표표시 행위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가 진행된다면 손상청구를 해야 함

855) CBP Ruling 217421 (Dec. 7, 1984), 217851(May 2, 1985)

856) 15 U.S.C § 1124, 294

- 그러나 허위로 표시된 물품 상표를 말소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반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권 위반물품이 역내로 반입되면 지적재산권법⁸⁵⁷⁾을 적용받음
- 마지막으로 구역제한물품으로 반입된 물품은 수출되거나 멸실(폐기)⁸⁵⁸⁾되거나 혹은 보관만 가능함⁸⁵⁹⁾
 - 또한 이들 물품은 수출, 멸실 혹은 보관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단순 작업이 가능함

라. 관세영역으로의 물품양도 규제

-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관세영역으로 소비를 위하여 양도될 수 없음
 - 특혜 외국물품이나 그러한 물품이 부품을 구성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없음
 - 또한 내국물품이나 내국물품 혹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으로 구역제한물품의 신분을 취득한 물품도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없음⁸⁶⁰⁾⁸⁶¹⁾
 - 비특혜 외국물품은 수입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있음⁸⁶²⁾
 - 이외 수출용 이외에는 세번 혹은 원산지 변경을 유발하여 제조가 제한된 섬유제품은 국내수입을 위하여 인도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항만청장이 배서하면 보세창고로의 이동이 가능함
- 특혜물품이나 특혜물품이 부품을 구성하는 물품은 임시 보세수입품(TIB)으로 양도될 수 없음⁸⁶³⁾

857) Lanham Act(15 U.S.C § 1127)

858) 주류제품은 제외(19 CFR 146.44)

859) Fourth Proviso, 19 U.S.C § 81c(a)

860) 19 U.S.C § 1557

861) 다만 구역제한물품의 신분을 취득한 외국물품은 위원회가 다른 처분을 승인하지 않는 한 일시보관 및 수출이라는 조건 아래 보세창고로 양도될 수 있는데 항만청장의 이서가 필요함(19 CFR 146.70(c))

862) 19 CFR 146.64(d)

863) Temporary Importation Bond(19 CFR 10.31)

- 그러나 구역제한물품은 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임시보세수입품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다만 수입시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고 관세할당(쿼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임시 보세수입품은 최초의 수입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세관은 구역제한물품의 수입신고를 허가하지 않음
- 연방법이나 규정 그리고 설립허가서에 따라 수출용으로 제한된 자유무역지역 물품은 세관이 국내수입을 승인하지 않음
 - 다만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양도신고나 선용품 사용을 위한 양도신고는 가능함
- 이 밖의 물품 양도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할당(쿼터)을 우회할 목적의 육류 가공은 금지되며 수출용으로만 양도가 가능함
 - 둘째, 유독성 물질이 다른 물품으로 제조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수입될 경우 당해 유독성 물질과 제조물품은 유독성물질통제법을 적용받으며 유독성 물질과 완제품 수입에 대한 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함
 - 셋째, 도로교통 안전기준에 부합하게 제조되지 못한 자동차는 관계기관이 허가서를 항만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되거나 판매 제의를 할 수 없으며 환경기준도 마찬가지임⁸⁶⁴⁾
 - 넷째, 쿼터대상인 설탕이나 설탕제품의 경우 쿼터를 적용받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주기적 신고대상이 될 수 없음⁸⁶⁵⁾
 - 다섯째, 특혜 외국물품의 신분을 부여받은 원유로부터 정제된 석유제품이 군사용으로 판매되는 경우 면세기준이 원유가 아닌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된 석유제품이므로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⁸⁶⁶⁾

864)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소매 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양도된 이후 판매도 교통안전이나 환경규제를 담당할 기관의 허가가 필요함

865) 19 CFR 132.11(a)(a)

866) 19 CFR 146: 규정(Chapter 98, Subchapter VIII, HTS)에 의하여 면세가 명백히 명시된 정부용품 이외 정부용품의 제조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원료가 특혜물품으로 반입되면 관세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관세 면제가 어려움

- 여섯째, 수입 신고되기 이전에 변형된 수입 알콜원료는 물품에 포함된 주류성분에 대한 내국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관할당국이 지정한 증류주 공장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⁸⁶⁷⁾에 따라 물질(article)로 분류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장에서 나갈 수 있음⁸⁶⁸⁾

- 불량품과 혼합된 반도체 물품이 일시 장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양도된 이후 분류작업을 거쳐서 정상품은 수입되고 나머지 제품은 구역제한물품으로 반입되어 멸실(폐기) 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정상 수입되는 반도체 신고가격에는 폐기 처분되는 물품의 생산비용이 제외됨
 - 한편 폐기과정에서 회수한 귀금속은 구역제한물품이지만 위원회가 승인하면 공익을 위하여 수출되지 않고 국내로 반출될 수 있음

- 설립 당시 운영기간을 제한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위원회가 기간연장을 하지 않으면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물품을 역내로 반입하거나 가공할 수 없음
 -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물품과 구역제한물품은 다른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창고로 양도되거나 수입 혹은 수출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양도 처분되어야 함

867) 26 U.S.C § 5214(a)(11)

868) 이외의 경우 알콜원료는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직접 반출될 수 없음

관세연구 12-05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 화물관리절차를 중심으로

2012년 12월 21일 인쇄
2012년 12월 27일 발행

저 자 장근호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642-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